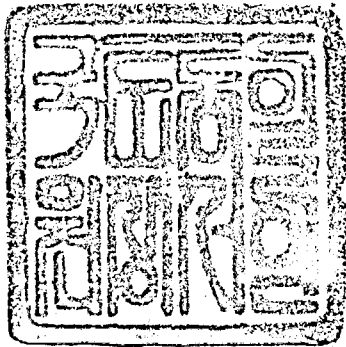


民主 統一論

1990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1990年度版을 發刊하면서

매년 統一教育 基本教材인 『民主統一論』을 펴낼때마다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懇望해 왔으면서도 새해에는 例年과 달리 각별한 기대를 갖게된다.

그것은 80年代에 우리가 겪었던 대내외적인 도전과 혼란과 갈등의 한時代를 마무리짓고 「待望의 90年代」를 맞이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에서가 아니라 격동과 급변을 거듭하는 오늘의 國際情勢—특히 소련을 비롯한 東歐共產圈에서 세차게 일고 있는 世界史의 大變革의 餘波가 早晚間 北韓땅에도 닥쳐올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變革의 큰 흐름이 體制改革·社會開放을 통한 민주화와 경제생활 향상에 있을진대 어느누가 이같은 人間의 基本的 欲求와 萬人의 共同善을 거역할것이며 또한 어느국가, 어떤체제가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領域에서 하나의 生活共同體를 지향하는 오늘의 國際社會를 외면하고 獨自的인 生存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北韓에서는 개방과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式대로 살아가자」는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閉鎖社會를 고집하고 一黨獨裁體制를 유지하려해도 이미 限界에 이르렀기에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머지않아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우리와 손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때일수록 國際情勢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야하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국민 모두가 自主・平和・民主統一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希望을 가지고 국론통합과 사회안정의 바탕위에 國家力量을 모으는 길 밖에는 없다.

우리는 이마 공산권의 변화상을 통해 自由民主體制의 所重함과 우월성을,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오늘의 동서독관계에서 우리 統一政策의 正當性を 거듭 확인하지 않았던가.

이에 當院에서는 작금의 상황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통일문제 전반을 보다 넓은 視角에서, 영역별로 심층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統一觀 定立에 기여코자 1990年度版 『民主統一論』을 발간한다.

아무쪼록 本書가 통일교육의 바른 길잡이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원고집필 및 내용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內外 教授陣과 斯界專門家 그리고 原稿校正에 많은 애를 써준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統 一 研 修 院 長

차례

I. 南北韓 統一政策

1. 序言	11
2. 分斷의 原因과 責任	13
3. 統一의 當爲性和 歷史的 意義	22
4. 統一問題의 本質과 特性	28
5.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40
6.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7
7. 北韓의 統一路線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	96
8. 統一의 展望	114
9. 結言	121

II.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1. 문제의 제기	126
2. 최근의 주변정세 개황	128
3. 주변 주요국의 政策方向과 한반도	132
4. 統一環境의 변화	168

III.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1. 序言	176
2. 共產主義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	178
3. 북한의 對南革命戰略	195

4. 북한의 對南革命戰術	207
5. 結 言	233

IV. 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1. 序 論	240
2. 政治體制的 形成過程	247
3. 統治理念	257
4. 權力構造	270
5. 세습후계체제의 구축	283
6. 結 論	287

V. 北韓의 經濟現況

1. 序 言	292
2. 북한의 經濟體制와 政策	293
3.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306
4. 民族共同體 回復의 필요성과 展望	326

VI. 北韓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

1. 序 言	332
2. 社會構造	334
3. 住民生活	341
4. 結 言	379

제 1 편

統一問題

I. 南北韓 統一政策

金 炅 泰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11
2. 分斷의 原因과 責任	13
가. 國土分斷의 原因과 類型	13
나. 政治的 分斷의 과정과 正統性	15
다. 民族分斷의 實相과 責任	20
3. 統一의 當爲性과 歷史的 意義	22
가. 통일의 意味	22
나. 통일의 當爲性과 필요성	25
다. 平和統一의 歷史的 意義	26
4. 統一問題의 本質과 特性	28
가. 韓半島 統一問題의 구조적 특성.....	28
나. 統一로 가는 길	30
다. 統一論議의 効用과 限界	35

5.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40
가. 1960年代末까지의 名分論的 統一試圖	41
나. 1970年代의 政策轉換과 南北對話	43
다. 1980年代 中盤까지의 統一政策과 進展	46
6.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7	
가. 統一政策의 基調	57
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대통령 特別宣言」.....	63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69
라. 前向的 統一政策 展開過程	91
7. 北韓의 統一路線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 ... 96	
가. 北韓의 統一觀과 統一路線	96
나. 聯邦制 主張의 變遷과정	99
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內容	100
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	103
마. 「고려연방제」와 有關한 對南提議	106
8. 統一의 展望	114
가. 統일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116
나. 短期 및 中・長期的 展望	118
9. 結 言	121

1. 序 言

1988년 이래 우리 통일문제는 안팎에서 새로운 局面을 맞고 있다.

안으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발전의 過程에서 대북 관계 및 통일정책의 기조가 前向的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자료의 공개, 통일논의의 개방화와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고, 「7·7선언」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북한을 대결·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해야 할 동반자,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보고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돕겠다는 對北포용정책을 펴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우리 국력과 민족문화를 世界萬邦에 과시·선양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민들은 민족적 自矜心과 함께 모처럼 東西和合의 평화제전을 서울에서 열면서 이를 민족화합의 축제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데 대한 自愧心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자긍심과 자괴심은 바로 통일에 대한 소원을 통일의지와 열정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밖으로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폭이 넓어지면서 마침내 헝가리·폴란드·유고슬라비아와의 修交, 소련·불가리아 등 東歐圈과의 무역사무소 개설과 경제협력이 실현되는 등 北方政策 성과가 可視化되었다. 한편, 미·소를 비롯한 東西간의 평화공존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중·소和解, 아프가니스탄의 內戰수습,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식, 캄푸치아에서의 월남군 철수,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 기미 등 국제질서는 화해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여 재편되어 왔다. 따라서 1950년대의 東西冷戰構造의 역사적 유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서울올림픽에서 얻은 남쪽의 名聲과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닫힌 사회¹⁾”로 이름난 북쪽의 聲價까지 겹쳐져서 한반도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나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는 거부하거나 천연시키면서 국회연석회의, 3자회담, 정치협상회의, 학생회담, 체육회담, 고위정치군사회담 등 多次元的인 대화공세를 펴고, 한국내의 반정부단체와 인사를 북한에 초청하거나 密入北유인하는 등의 多目的的인 對南정치심리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百花齊放, 百家爭鳴」식 통일논의가 무성하고, 반체제적인 통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내외적 통일여건과 환경 속에서 「7·7선언」에서 밝힌 통일·외교정책의 基調 위에 국민적 통일 여망과 예지를 민주적으로 수렴한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을 定立,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천명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후, 20세기의 異變으로 기록될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장벽 개방에서 비롯된 동서독의 통일기운과 東歐의 급격한 變革은 우리 통일 소용돌이 (쇼크)에 또 다른 충격이 되어 마치 평화와 통일이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선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평화와 통일의 實體는 무엇이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없는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맹목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은 불같이 뜨

1) 東歐圈의 언론이 북한과 알바니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거운 열정 못지 않게 열음같이 찬 理性이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국토와 민족의 분단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적 意義는 무엇이고, 우리 통일문제의 본질과 특성은 어떤 것인지, 통일정책의 발자취는 어떠한지,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기조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이며,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개관하고, 통일을 전망하고자 한다.

2. 分斷의 原因과 責任

5천년이라는 悠久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어 왔고, 근 1,300년(AD. 668-1945)동안 민족국가를 경영해 온 우리 겨레가 어떻게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분단의 원인, 과정 및 책임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 現代史에 대한 올바른 理解라는 역사인식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우리 통일문제를 옹기 풀 수 없고, 통일조국의 미래상도 올바르게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의 深化過程을 조명하는 시각에서 1945년의 국토분단, 1948년의 정치적 분단, 그리고 1950년이래의 민족분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國土分斷의 原因²⁾과 類型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가 남

2) 국토분단의 원인에 관하여는 「남북대화백서」(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PP. 9~16 참조

북으로 분단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戰後處理과정에서 戰勝國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북위 38°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한 데서 비롯하였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군사행동의 개시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미·소 양군이 서로 만나는 선을 어디에 劃定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케 한다. 미국에서도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과 戰略을 간파한 일부 외교관들은 극동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加速化하여 최소한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소련군의 한반도 進入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소련군이 對日參戰과 함께 북한지역의 동북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미군은 겨우 「오끼나와」(沖繩)近海에 머물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8월 11일, 육군성의 「본스틸」대령과 「러스크」³⁾ 대령의 건의를 받아들여 38° 선을 경계로 한 美·蘇 양군의 한반도 進駐와 지역내 일본군의 항복 접수라는 案을 채택하고, 이를 8월 13일, 英·中·蘇의 3국 정부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는 한편, 8월 15일에는 이를 一般命令 제1호로써 「맥아더」사령부에 하달하였다는 기록이 근래 공개된 미 국무성의 비밀문서에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권력정치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우리 국토의 분단유형⁴⁾을 「국제형분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역사적 史實을 외면하고,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

3) 본스틸 대령은 후일 주한UN군사령관, 러스크대령은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였다.

4) 분단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通說은 중국과 월남을 국내형, 우리나라와 독일을 국제형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15광복 이후 좌우익대결의 內爭의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소수설)도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원천적으로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국제권력정치의 所産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군”⁵⁾으로 묘사하면서, 분단의 책임이 마치 미국에게만 있고, 미국이 통일의 「기본적 장애」라고 단정하는 학원가의 일부 反知性的 움직임은 진실을 이데올로기에 예속시킨 역사의 歪曲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소민족의 권익을 度外視한 강대국들의 恣意的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바깥 세계에 대해서 물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독립역량이 부족하였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고, 이것이 국토분단의 遠因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 이후의 분단상황에서도 우리는 민족역량과 통일역량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잃고 정치적 분단을 자아냈던 면도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영·불·소 등 4대국의 점령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세력들이 제휴하고 大聯合⁶⁾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外勢의 간여를 배제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침내는 外軍을 철수시키고 1955년에는 자유민주체제로 中立化통일을 실현시켰는데, 이는 우리의 분단심화과정과 견주어 볼 때 示唆하는 바가 크다.

나. 政治的 分斷의 過程⁷⁾과 正統性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하여는 정부수립(출범)시기의 先後문제(1948년의 8월 15일과 9월 9일)만을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의 是

5) 그 근거는 미·소 군정당국의 布告文 문맥에서 왜곡한 것인데, 소련군은 공산당의 혁명 무력(정치군대)으로서 정치선동적 修辭를 사용하였는데 반해서 정치성이 없는 미군의 포고문은 군사행정적 용어로 규제사항을 고시한 것을 놓고, 일본의 좌익계 학자들이 왜곡평가한 文件을 운동권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

6) 戰後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당 출신 칸·레너 博士를 중심으로 좌우익 정치지도자가 연합하여 1945. 4. 27,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해 11월의 총선결과 우익보수당(인민당)이 과반수 의석(인민당 85, 사회당 76, 공산당 4)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정파가 참여하는 大聯合을 실시하여 외세하의 분열을 예방하였다.

7) 전계서 PP.17~21

非를 잘못 가리는 예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아래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사실상 먼저 수립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분단의 전개과정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1945년 8월 9일의 對日 선전포고와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한 소련군은 8월 24일에는 평양에 들어오게 된다. 그들은 사전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소련군이 처음 평양에 진입하였을 때 북한지역의 행정권은 이미 민족진영 인사들이 일본당국으로부터 인수해 놓고 있었다. 기독교 민주당 당수 曹晩植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인사 18명과 국내파 공산주의자 2명으로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지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소련 군정당국은 8월 26일에 이 조직을 같은 수의 좌우의 인사로 구성하는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케 하여 예속시켰다.

이어서 그들은 9월 14일, 최초의 포고문을 통해, 군정의 목표를 ① 근로자·농민·산업노동자 및 日帝에 항거한 인사들을 대표로 하는 정부의 조속한 수립, ② 농민을 위한 토지분배, ③ 노동자위원회 등에 의한 敵產産業施設의 접수, ④ 친일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숙청, ⑤ 모든 교육 문화시설의 公有化 등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체제의 수립과 非공산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숙청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소련 군정당국은 10월 28일에는 북한지역 「5개도 인민정치위원회」를 통합하여 「5道行政局」으로 개칭하였고, 1946년 2월 8일에는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한 실질적 공산체제를 갖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단독정권을 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앞서 그들은 1945년 10월, 평양에서 「북조선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열게 하여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케 하였는데, 이 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 낯선 金日成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이 「分局」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하면서 김일성을 당의 「책임비서」(당수)로 선임케 하여 黨權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당시, 북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국내파, 延安(중국)파, 소련파로 나뉘고, 국내파에는 북한파와 남한파, 소련파에는 순수 소련파와 김일성을 위시한 甲山派가 분파를 이루고 있었으나, 소련은 북한 지역의 공산화를 위한 前衛勢力으로서 비록 생소하지만 이용가치가 있는 갑산파를 택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 북한체제를 소련의 「괴뢰정권」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8월에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 노동당」으로 개칭하게 된다.

이어서, 1946년 12월에는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47년 2월 17일에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함께 政府編制를 갖춘 「중앙인민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 公共 및 산업시설의 國有化, 1개년 경제계획의 추진 등 국가계획 차원의 조치들이 펼쳐져서, 1946년말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후 북한지역에서 전개된 정권수립과 관련한 要式的 節次들은 다음과 같다.

1947. 2. 17; 최고인민회의 구성 및 중앙인민위원회 발족

1947. 6. 1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칭의 단독정권 수립 방침 공표

1947. 11월; 헌법 起草에 착수 (1948. 4월 초안 채택)

1948. 1. 23; 소련군사령관,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총선거 감시 협조 요청 거부(공문회송)

1948. 3. 25; 북로당, 金九 金奎植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수락

1948. 4. 19; 평양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군중대회를 열어 남측 대표를 來賓 취급)

1948. 8.25; 남한지역 출신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총선거 실시를 날조 주장(572명 중 360명 선출 주장)

1848. 9. 9; 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범

한편, 美軍政하의 남한지역에서도 북한지역에서의 일련의 사태 진전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1946년 2월에 군정청 자문기관으로 「조선民主議院」을 구성한 바 있는 미군정당국은 1946년 12월에는 이를 「過渡立法議院」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은 북의 지령에 따라 그 선거를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마침내 군정당국은 좌익계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10월에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고 군정청의 시책에 대항하는 불법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우익의 민족진영 인사들 사이에서는 내부분열이 시작되었다. 소련의 企圖를 간파한 李承晩 중심의 우익진영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46년 12월에 이승만이 渡美하여 朝野 要路를 상대로 정부수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김구·김규식 등 臨政세력은 單政수립에 반대하여 이승만과 노선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미군정당국은 1947년초까지도 4개국 信託統治案(1945. 12. 16-20, 모스크바 3相會議 결정)을 옹호하였으나, 우리의 「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 20일에 신탁통치 거부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자 미국의 정부와 군정당국도 마침내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UN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1947년 9월 17일, 이를 UN총회 議題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UN총회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41(반대 6, 기권 7)로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마침내 1947년 11월 14일에는 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UN감시하의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土着人口比例 원칙에 입각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로 하여금 독립된 통일정부를 수립케 한다, ② 정부 수립후 모든 外軍을 철수시킨다, ③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UN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43(반대 9, 기권 6)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승만 중심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측은 환영하였으나, 김구 등 臨政세력은 국토의 영구분단 위험성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함으로써 우익 진영내의 진통이 계속되었다.

이런 이유로 1948년 3월 8일, 김구·김규식은 「북조선로동당」에 대해 통일정부 수립을 협상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3월 25일에 이를 수락함으로써, 4월 19일에 평양에서 동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김구 등이 의도하고 제의했던 「정치협상회의」가 아니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 「회의」를 대규모 정치선전장으로 꾸며놓고,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일방적 정치연설로 진행시켰을 뿐 아니라 남측 인사들은 내빈이나 방청객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들 一行은 失意를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1948년 1월 8일에 내한한 「UN한국임시위원단」은 1월 12일에, UN총회의 결의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감시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위원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소련군사령관과 만나겠다는 書翰을 보냈으나, 소련 軍정당국은 이 서한을 접수도 하지 않

은 채 1월 23일 반송함으로써 북한지역 방문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UN小總會는 2월 26일 “UN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전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이른바 “선거감시가능지역내 선거”의 길이 열렸다.

마침내,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지역에서 UN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유권자의 80%가 자진 등록하고 그중 92.5%가 투표에 참가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制憲國會를 구성하였고, 여기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선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족사적 法統性면에서 뿐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國號 및 건국이념 등 민족사의 계승,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UN감시하의 총선, UN의 唯一合法政府 승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한반도에 걸쳐 주권을 가지는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②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을 채우도록 촉구하며, ③ 북한의 收復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⁸⁾과 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民族分斷의 實相과 責任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은 지금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가.

8)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건국이념(3.1독립정신 계승)을 규정한 헌법 前文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이란 한 핏줄을 이어받는 血緣共同體이다. 이 혈연성만이 지금 남북으로 단절된 겨레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을 뿐이다.

민족이란 오랜 세월, 같은 생활공간 속에서 生을 營爲해온 地緣共同體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40여년 동안 헤어진 血肉간에도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격리된 생활공간에서 살아왔으니 지연성은 회박해지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뿌리를 가지는 歷史共同體이다. 그러나 남쪽에는 民族史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에서는 唯物史觀을 바탕으로 꾸며놓은 계급혁명투쟁사만 있으니 역사를 共有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말과 글을 쓰는 言語共同體이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표준말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각색된 「文化語」⁹⁾ 보급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언어의 이질성도 차츰 심화되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문화전통과 美風良俗을 이어가는 文化共同體이다. 그러나 史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남북이기 때문에 민족문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 가고 있다.

이상이 有形的인 민족형성요소라면, 「한민족」을 같은 겨레로 엮어 놓는 끈, 즉 무형적인 민족 유대가 강해야 민족의 一體性이 유지된다. 이것이 곧 동포애와 운명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民族意識이다. 그런데 남북의 겨레의 가슴에는 反目·不信과 적대감이 누적되어 왔다.

이 같은 민족이질화의 원인과 책임은 분단의 長期化에서 비롯된

9) 「문화어」는 “당의 영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전체인민의 규범으로 삼는 풍부하게 발전한 민족어”라고 풀이하였다. (북한의 「문화어사전」. 이 사전에는 낱말마다 「김일성의 敎示」가 引用되어 있다.

자연발생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공산체제의 異端적인 이데올로기와 路線, 그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인위적인 민족이질화정책에 있다. 同族相殘의 전쟁의 도발, 계속된 군사모험주의적 대남폭력혁명노선, 폐쇄체제의 유지, 반민족적 정치교육 등 북한체제의 行態가 오늘의 비극적인 이질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난날과 같은 단절과 대결구조 속에서 동족끼리 반목·불신하고 경쟁하는 데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自尊과 위신을 서로 훼손시키는 民族自害行爲가 계속된다면 민족의 영원한 분단, 다시말해서 民族史의 단절 위험성이 크다. 다만, 이같은 민족이질성의 심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고유한 민족문화라는 깊은 뿌리가 아직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復元力으로 민족의식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 「한민족」의 재결합을 밝게 해 주고 있다.

3. 統一의 當爲性和 歷史的 意義

가. 통일 的 意味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로 되는 통합(Integration)이나 통일(Unification)이 아니라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1300년의 統一史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다시 재결합하려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再統一(Reunification)¹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再統一」은 復古的인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進運과 軌를

10) 분단국 재통일의 의미에 관해서는 李相禹,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민족화합 민주통일론」(국토통일원, 1982)P. 61이하 참조

같이할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통일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單一國家 곧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에 있다.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여러가지 상이한 觀點과 視角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국가·민족·체제라는 次元에서 통일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본 통일은 하나의 헌법 밑에 하나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어 對內外的 主權을 행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 차원에서 본 통일은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까지 완성시킨 상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한민족공동체」가 완성된 상태가 곧 통일이다.

셋째, 체제 차원에서 본 통일의 개념인데, 이는 한반도에 엄연히 두 개의 주권국가가 實在하는 객관적 분단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民族 2國家」가 아니라 「1民族 1國家 2體制」까지만을 인정하려는 민족감정에 바탕한 주관적 분단 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주관적 분단 인식을 전제로 한 체제 차원의 통일이란 두 말할 것도 없이 명실상부한 「1民族 1國家 1體制」의 완성을 의미한다.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통일 개념에 공통되는 것은 정치체제적 통합까지 끝나야 통일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국가적 통일이든, 민족적 통일이든, 체제적 통일이든 간에 「한민족」은 우리 통일문제의 알파(α)인 동시에 오메가(Ω)이기도 하다.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 아니었거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문제 자체가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일의 출발점, 통합의 공통분모는 5천 년 동안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한민족」이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궁극적 목적도 民族으로 귀착된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 그 자체가 至上의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건이며, 따라서 통일은 민족의 至上課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마땅히 어떤 통일이어야 하느냐 하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限定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수단 방법에 의한 통일이든,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이른바 統一至上論은 배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조국 재통일은 곧 그 成員인 「한민족」의 재결합을 의미하는데, 이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40여년의 분단과 대결구조 속에서 누적된 동족간의 반목·불신과 이질화가 통일의 과정에서 해소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민족의 내면적 통일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체제적 통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로서의 통일 못지않게 過程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면문제로 제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대결관계가 동반자관계로 개선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 바탕 위에서 민족의 공동번영과 一體性 회복을 위한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이 실현되어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한다면, 비록 “목표로서의 통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단의 고통은 거의 제거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 내면적 통합, 즉 민족사회의 통합이 없는 조국의 통일은 일방의 힘에 의한 무력통일

이나 收復통일인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화적 통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나. 統一의 當爲性和 必要性

“우리가 왜 통일해야 하느냐”를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이질화와 민족공동체의식의 쇠퇴현상을 반증하는 비극일 수도 있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요, 하나여야 할 「한민족」이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민족의 원상회복인 동시에 有機體로서의 민족의 생명력을 되찾는 당위적인 일이다.

첫째, 통일은 민족 自存의 길이다. 우리는 통일하여 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自尊을 지키고 民族史를 연면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켜온 단일민족이며, 어떻게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역사와 문화였던가를 생각할 때, 다시 하나 되어 자손만대에 이를 물려주어야 하는 일은 민족사의 엄숙한 召命이다.

오늘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 전쟁재발의 위험성, 민족이질성의 심화현상 등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분단과 민족사의 斷絶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자존을 지키는 길은 평화적인 민족통일에 있다.

둘째, 통일은 민족 변영의 길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그저 떨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팎에서 반목·대립하면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권위와 위신을 서로 훼손하는 민족自害行爲를 하고 있다. 남북한을 합쳐도 국토와 賦存資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갈라져서 동쪽끼리 대결하는 데 민족의 발전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도 서

로 교류·협력하면서 共存共榮의 길을 넓혀 가고 있는데, 우리는 1950년대의 東西냉전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자해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니 민족적 自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복지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열릴 수 있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자유를 伸張하는 길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안팎에서 제약하고 있다.

민족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① 혈육간 離散의 아픔 ② 전쟁재발 위험성에서 오는 공포 ③ 남북 대치상태에서 비롯되는 기본권의 제약 및 유보 ④ 복지정책 추진상의 재정적 제약 ⑤ 북한동포의 참담한 생활상과 통제체제하에서의 기회의 逸失 등 민족의 자유는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제약 받고 훼손 당하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의 분단과 대결구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주변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간여와 영향을 받아야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過當競爭으로 인하여 민족적 自尊과 自由를 훼손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 신장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 平和統一의 역사적 意義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과 相剋的인 정치이념에 따른 정치적 분단, 그리고 40여년이라는 단절의 장기화 속에서 축적된 동족간의 反目·不信·적대관계와 민족이질화 등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족의 생존·번영·자유를 보장하고 민족사의 연명한 계승 발전을 기약하는 민족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곧 통일의 역사적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밝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인구 6천만이 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單一民族國家가 된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理想的인 규모의 민족공동체적 통일국가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先進文化大國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뛰어난 민족적 자질과 창의로써 과학기술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분쟁의 火藥庫 같았던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寶庫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志向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통일된 우리 민족은 세계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地政學的 위치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는 강대국들이 넘보고 탐내는 국제권력정치의 客體에 불과하지만, 힘이 있으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利害를 조정하는 平衡錘의 역할을 하는 역사의 主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은 에게海에서 출발하여 地中海와 대서양을 거쳐 바야흐로 태평양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조국은 이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당당히 공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문명만이 인류의 평화와 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역사적 進運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통일된 한민족은 그 자질과 능력으로써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한 분단을 자주적으로 극복하고, 동서이념의 상극성과 동서진영간의 對峙關係를 해소하여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을 실현한다는 자체가 세계사의 신기록이 되고 인류

문명에 찬연한 본보기를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인류문화사적 의의도 큰 이유이다.

4. 統一問題의 本質과 特性

가. 韓半島 통일문제의 構造的 特性

우리 통일문제는 당위적인 면에서나 논리상으로는 한반도의 主役인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본시 국제문제였다. 분단유형도 우리 민족의 意思에 反한 국제형 분단이었으며,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이 東西 양진영의 경계선이 되고,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상극적인 정치이념과 체제의 前哨的 對峙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가 UN의 年例的 논쟁대상이 되었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문제는 엄연한 국제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지배질서가 차츰 변하기 시작하였다. EC圈의 浮上, 일본과 중국의 국제무대 등장, 비동맹권의 대두 등으로 미·소 양극체제는 多極體制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동서간의 냉전구조도 비록 起伏은 있었지만 화해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나라는 이데올로기나 진영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키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대외정책을 펴게 되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우리 민족만이 1950년대의 냉전구조 속에서 생긴 역사적 유물을 안고 같은 민족끼리 반목 대결하는 데 역

량을 낭비하고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을 뿐, 우리 국토와 민족의 오늘의 분단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주변4강은 1970년대 이래 이념 및 체제의 차이를 뛰어 넘어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공존공영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민족적 자각과 주체적 역량의 伸張과 더불어 우리 통일문제를 차츰 민족내부문제화하는 데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 민족의 自決領域이 차츰 넓어져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추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결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만은 아니다. 오늘날 주변4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對韓半島政策은 세력균형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 확보와 안정 속의 實利追求면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라는 現狀固着化에 있는 것이지,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주변4강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는듯이 공언하여 왔지만, 그들의 外交辭令的 修辭에도 불구하고 국제권력정치 屬性은 분할통치(Devide and Rule)이며, 한반도의 정치체제적 통합에 대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4강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이 尙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통일문제의 특성을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통일문제는 세 가지 變數, 다시 말해서 남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3要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성패와 시기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

면 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변수는 다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制御와 造成의 대상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결코 독립변수가 아니라 從屬變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먼저 남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함께 추진하였을 때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民族自尊 차원에서도 소망스런 일이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휘방하는 상황에서는 次善策으로서 우리 일방의 힘만으로라도 국제적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이 국제환경이 북한의 노선과 태도의 변화에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평화통일의교정책, 그 중에서도 북한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소련·중국·동구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국제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 北方政策¹¹⁾의 과제이기도 하다.

나. 統一로 가는 길

우리 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평화 실현의 문제이다. 평화통일만이 한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본질상의 이유에서나, 평화적 통일환경 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써만 올바르게 풀릴 수 있다는 현실인식의 면에서나 평화적 통일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代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없이는 민족의 평화도, 동북아의 평화도, 나아가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도 실현시킬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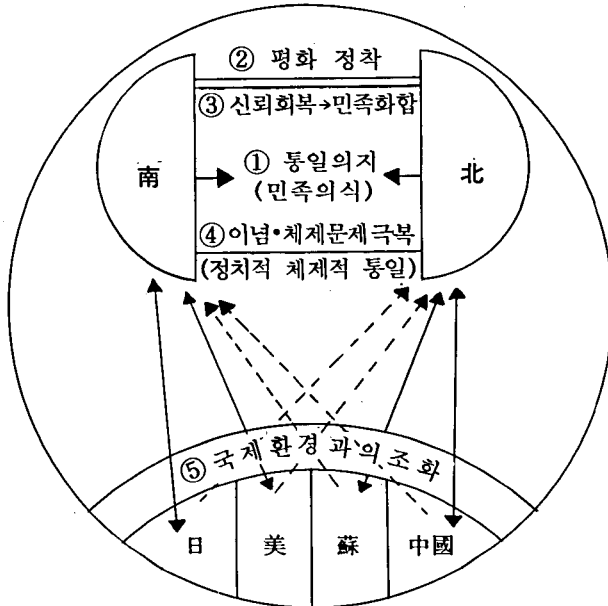
11)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말 서독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對蘇 및 東歐圈政策)에 상응하는 용어개념으로서,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국방대학원 특강(1983년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6.23선언중 공산권에 대한 상호문호개방을 추구한 것과 4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을 펴 온 것도 북방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한민족의 화해와 재결합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 아니고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길도 없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없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듯, 우리 통일문제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환경으로서의 평화와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필요로 하고, 통일의 결과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평화 실현 문제로 始終된다.

이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표1>의 「평화통일 접근 모형」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表1> 平和統一接近模型



① 통일의 원동력은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되는 統一意志에 있다. 이 민족의식과 통일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통일을 촉진하는 힘이 강하고 그 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의지는 분단의 장기화와 민족이질성의 深化에 따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는 올바르게 傳授되고 교육을 통하여 복돋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②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평화정착의 과제는 1차적으로는 남북한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간에 평화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 보장장치까지 곁들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민족의 자존과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형식과 내용이 보장될 수 있다면, 국제적 보장장치가 先行되든, 남북한과 주변4강이 공동으로 마련하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1970년대에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한 것은 이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 당사자간에 먼저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서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4대국 교차승인을 평화통일의교정책으로 펴 온 이유도 이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가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가 1987년 8월 3일,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면서, 그 의제로서 1)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문제, 2) UN동시가입문제, 3) 4대국 교차승인 실현문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10월 19일, UN총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 미국·소련·중국·일본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의 창설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주역과 오늘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4강이 공동으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③ 위와 같은 남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반 위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시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의 一體性을 되찾는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이 실현되어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가 회복되면, 이는 정치체제적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내면적 통일, 다시 말해서 민족사회의 통합은 실현되고 분단의 고통은 사실상 해소시킨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족사회의 통합은 곧 국가적 통일, 바꾸어 말해서 정치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민족공동체 헌장」과 「남북연합」은 바로 남북이 공존공영의 바탕 위에서 국가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민족사회의 통합을 실현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④ 국가적 통일, 즉 정치적 민족공동체까지 완성하려면 남북간의 이념 및 체제의 차이,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국가형태와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 하는 難題를 풀어야 한다.

이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및 체제를 선택하는 일은 민족의 死活的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통일하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국가형태, 어떤 정치체제로 통일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곧 6천만 민족이 주인이 되고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복지국가여야 하고, 하나의 憲法 아래 통일정부를 세우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단일민족국가여야 할 것이다.

이 정치이념 및 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성원의 총의로써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으로서, 남북한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통일협의 기구」에서 통일조국을 설계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협의·결정하여 6천만 민족의 총의로써 확정케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예지로써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창출해 내든, 정치협상을 통해 절충하든, 통일조국은 민족성원이 주인이 되고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며, 민족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과 자유로운 主義主張 표현과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복지국가여야 하고,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민족국가여야 하며, 모든 나라와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평화애호국가이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미래상을 想定할 때, 통일조국의 이념적 指標는 의당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상의 우리나라 國是¹²⁾이기도 하다.

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통일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주변4강의 본질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형태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의 통일은 국제적 평화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세계적 進運에 이바지하는 평화이념

12)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나라의 國是이다. 憲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과 선린우호의 대외정책을 펼 수 있는 통일조국의 설계도(미래상)를 제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때만이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조국은 주변국가에 위협이 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이래 對공산권 외교를 비롯한 비동맹권 외교를 적극화하고,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東西和合의 평화제전으로 승화시킨 것이나, UN동시가입과 4대국 교차승인 같은 평화통일외교정책을 펴 온 것도 모두 국제적 평화통일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표1>의 모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과 국제환경의 상호작용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북한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되면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국제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 일방의 힘으로 조성한 국제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노선 수정에 영향을 주어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촉매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교정책은 全方位的 연계정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統一論議의 効用과 限界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의 道程에서 통일논의도 개방화·자유화·활성화되었다. 이는 통일이 특정정권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死活的 문제이므로 당연히 민족성원의 슬기와 힘이 결집되어야 하고, 국민적 참여와 聲援속에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위적인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슬기와 힘이 상향식으로 수렴된 통일정책만이 정통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반 위에서 형성된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이라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얻어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진실에 바탕해야 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合憲的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통일논의는 眞實性이 있어야 한다. 진실에 바탕하지 않는 통일논의는 원천적으로 虛構일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역사와 현실을 특정 이데올로기에 從屬시켜 왜곡하고 날조한 거짓의 바탕 위에서 전개하는 통일논의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불순한 선전선동의 방편이지 결코 진실한 통일논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에 바탕한 통일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사항들, 예를 들면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주도역량, 북한의 노선과 실상, 통일환경의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일논의에는 상당수준의 專門性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둘째, 바람직한 통일논의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는 合目的性과 目標指向性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목적적인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이 되려면, 우리가 염원하는 자주·평화·민주적인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예지와 역량을 동원·결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논의,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통일논의, 국민적 합의로써 결정된 통일정책에 역행하는 통일운동, 민족분열과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통일논의와 운동 등은 모두 이 合目的性을 잃은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통일논의와 운동은 政策代案을 導出해 내고 평화통일 주도역량을 제고하며 통일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논의는 實現性과 現實性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空理空論이 되거나 幻想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실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與否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당장 실현되느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넷째,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약요건은 合憲性의 문제이다. 憲政秩序를 무시하는 논의와 운동까지 허용하는 체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일정책이 ①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고, ② 평화통일정책이어야 하며,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총의로써 채택, 선언한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다.

여기에서,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주체는 국민의 受任기관인 정부여야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우리나라의 통일관련 國是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한 의무로서 규정한 것도 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통일논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수복통일론」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협상이 무모하다고 비판하면서 「멀공통일」을 부르짖는 강경론도 있다.

종교계의 일각에서는 북한에 福音을 전파하고 잠재적 종교세력을 소생시키는 것이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보는 「복음화통일론」

을 제창하고, 학계의 일각에서는 「중립화 통일론」¹³⁾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중립화통일론」 속에는, ①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東西 兩陣營에서 이탈하고 한반도에 힘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논리, ② 통일조국의 대외정책이 주변4강의 보장에 의한 永世中立이어야 한다는 논리, ③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및 체제가 민족 고유의 제3의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는 理論 등이 같은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데, 통일조국의 대외정책이 중립이어야 한다는 중립화통일론은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모색할 수 있는 통일논의로서 제기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논의는 실현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는 좌경세력의 위협한 선전 논리가 깔려 있기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환상적이고 공리공론적인 통일논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의에 그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論」을 실천이 수반되는 「운동」으로 행동화하거나,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 형성된 통일관련 國論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을 때는 사회혼란과 평화통일 저해요인이 된다. 가령, 「멸공통일론」이 통일논의에 그쳤을 때는 對北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라도 있지만 실제 무장력을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나라의 기강과 기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적 슬기와 힘을 결집하며,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계층(계급)만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그들만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보다 많은 국민과 국민의 수임기관인

13) 「중립화 통일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문답식 통일문제 해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PP. 42~45참조

정부까지도 통일방해세력으로 독단,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미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통일실천운동을 펴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른바 「민중통일론」¹⁴⁾에 바탕한 「민족·민주·민중통일운동」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통일을 “반외세 민족해방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여,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인 이른바 「基層民衆」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민중통일론」에서는 기층민중을 통일주도세력이라 하고, 그에 동조하는 지식인·학생·중산층 등을 보조세력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통일추진세력인 민중이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통일방해세력으로는 정부·집권층·고급관료·자본가·부농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구조적 兩分法에 따라 민중의 의식화를 통하여 민중의 이익이 배제된 하부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일을 당면 실천과제라고 제시한 이 「민중통일론」은 사실은 계급투쟁의 논리를 「민족·민주·민중통일」이라는 修飾語로 포장한 반체제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민중통일론」은 통일의 궁극적 목적에 어긋나는 反民族·反平和운동이다. 왜냐 하면, 통일은 국가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민족통합을 실현해야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민족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데, 특정계급에 의한 특정계급을 위한 통일은 반민족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북한체제와도 대화·협상·화해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안에서 계급간의 투쟁을 내세우는 것은 反平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4) 민중통일론에 관해서는 「통일대화의 광장」(국토통일위, 1985) P. 78이하 참조

둘째, 통일과업과 같은 민족적 大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수임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데, 이를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憲政秩序와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자유민주체제에서 국민을 계급구조로 양분한다는 것은 허구일 뿐 아니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유민주체제는 治者와 被治者,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自同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근로자가 내일의 기업주가 될 수 있고, 어제의 治者가 오늘에는 被治者가 될 수도 있다. 다스리는 힘도 다스림을 받는 국민의 自律과 自治를 의미하기 때문에 봉건적 身分制나 공산주의적 계급구조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實在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통일 선전논리가 바로 “남조선의 해방”이고, 이른바 “反美自主化, 반파쇼 민주화”를 선동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민중통일론」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그에 동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함께 지닌 통일논의이다.

5.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한국은 분단 이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試圖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수립 이전에는 비록 자주적 통일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시도하였고, UN의 결의를 얻어 全韓半島에서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평화통일은 기본적 국가정책목표로 채택되어

역대 정부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 대남혁명전략 아래 和戰양면전술을 구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골육상쟁의 전쟁, 국토의 초토화, 민족간 반목과 불신의 深化, 민족이질화 등 평화통일의 저해요인만을 누적시켰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기초와 대남전술의 변천에 관하여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편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통일노선과 관련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詳述하겠으므로 이 章에서는 한국측 통일정책의 변천과정만을 年代別 특성을 중심으로 간추리고자 한다.

가. 1960년대末까지의 名分論的 統一 試圖

분단이래 1960년대말까지의 우리 통일접근 시도의 특징은 ① 자주적 통일역량의 부족(1940년대) ② UN의 권능에 기대는 依他的 통일노력(1950년대) ③ 통일에 대비한 국력배양(1960년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 마디로 “명분을 앞세운 소극적 통일접근 자세”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노력 속에는 다음과 같은 史實들이 포함된다.

첫째, 분단(광복)이후 정부수립까지는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미국의 도움으로 얻어낸 「UN의 統韓決議」에 따라 UN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의 시도와, 金九·金奎植 등 臨政勢力이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북측에 제의하여, 비록 북한측의 책략으로 실패하였지만 정치적 분단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남북협상 노력이 있었다.

둘째, 정부수립과 함께 내외에 천명한 통일실천방안, 즉 ① 한국 정부의 전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 선언, ② 선거가 유보된 북

한지역의 민주적 선거를 통한 국회 의석(100석 유보)의 충원 촉구, ③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수복)의 권리 선언 등을 내용으로 한 통일실현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법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6.25남침에서 휴전후의 제네바회담 이전까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북한공산집단의 전쟁도발을 응징하고 수복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국민운동적 구호에 불과할 뿐, 평화적 수복통일이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넷째, 제네바회담 이후 5.16군사혁명 이전까지는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였다.

휴전협정 제4항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열린 참전국 고위정치회담이 곧 제네바회담(1954년 4월~6월)이다. 이 회담에 참석한 卞榮泰 외무부장은 「통일에 관한 14개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6개월 이내에 UN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②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수를 정하기 위한 UN감시하의 國勢調査, ③ UN감시단원과 입후보자들의 이동 및 언론자유 보장, ④ 새 입법부에 의한 헌법개정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 유지, ⑤ 선거일 1개월전까지 中共軍의 완전 철수, ⑥ UN군의 철수는 통일정부가 전한반도에 대한 완전 통치를 실현하고 이를 UN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UN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원래 공산측은 휴전협정을 재무장을 위한 정비기간으로 이용하려던 것으로, 이 제네바회담도 그들의 정치선전장이 되었을 뿐이었다.

다섯째, 제2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제네바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4.19혁명 이후 탄생

한 민주당 정부는 1960년 8월에 발표한 外交施政方針에서 “UN의 결의를 존중하며 UN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에 관한 국론도 갈려 있었다.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가 적극화되고 「연방제」통일방안이 나온 것도 이 때에 맞춘 것이다.

여섯째,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국의 혼란, 반공태세의 약화, 감상적 통일논의에서 비롯된 국론분열 등을 극복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民政이양으로 수립된 제3공화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先 建設, 後 統一”이라는 정책지표가 말해 주듯이 통일논의보다는 평화통일을 주도할 힘을 기르는 「통일역량배양정책」을 1960년대말까지 추진하였다.

나. 1970년대의 政策轉換과 南北對話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배양된 통일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정치적 實體로 인정하고 자주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정책전환과 「先 平和, 後 統一」이라는 현실적 정책기조 위에서 평화통일정책을 펴고 남북대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朴正熙 대통령은 광복 제25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무력적화 企圖의 포기가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임을 밝히면서,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좋은 사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開發과 建設과 창조를 향한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평화통일構想 宣言」¹⁵⁾을 하였다.

15)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 앞의 「남북대화백서」 P.445

다음 해인 1971년 8월 12일에는, 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소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¹⁶⁾을 제의하였고, 1972년 7월 4일에는 그동안의 非公開 남북고위회담을 통해 합의한 ①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원칙, ② 상호 중상·비방 및 무력도발 중지, ③ 다방면적인 교류, ④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常設, ⑤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¹⁷⁾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때까지 벽에 부딪혔던 적십자회담도 進展을 보게 되었다. 이후 적십자회담은 7차에 걸친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고, 남북조절위원회의 본회의도 3차례 열렸으나, 1973년 8월 28일에 북한측은 이른바 「金英柱성명」¹⁸⁾을 통해, 「6.23선언」을 영구분단책이라고 왜곡·비방하고 그 철회를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6.23선언」은 1973년 6월 23일에 공표된 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¹⁹⁾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①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용인, ② 통일될 때까지 남북한의 UN동시가입, ③ 정치이념과 체제가 다른 모든 나라(공산권 위시)에 대한 상호문호개방 등 현실적인 대외정책 방향과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기조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어서, 1974년 1월 18일에는 「남북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²⁰⁾하였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집대성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²¹⁾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16) 상계서 P.452

17) 상계서 P.54

18) 상계서 P.104

19) 상계서 P.453

20) 상계서 P.457

21) 상계서 P.463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우리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和合이라는 평화 실현의 바탕 위에서 정치적 통합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의 對北 주요 제의와 남북대화 실현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8. 6. 23;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제의

1978. 8. 12; 「남북적십자총재회담」 제의

1979. 1. 19; 「남북한당국 무조건 대화」 제의

1979. 2. 17; 남북變則對坐〔당국대표(남)와 정당·사회단체 대표(북)간의 대화, '79. 2. 17~3. 14, 3회〕

1979. 2. 27;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회의 (79. 2. 27~3. 12, 4회)

1979. 7. 1;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대표회의」 제의

1980. 2. 6;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80. 2. 6~8. 20, 10회)

위와 같은 1970년대의 통일노력은 북한측의 대남노선과 그에 따른 대화자세 때문에 회담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값진 교훈을 얻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성

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첫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한반도에서 조성된 긴장과 전쟁위기상황을 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완화시킴으로써 전쟁 재발을 예방할 수 있었다.

둘째, 분단 2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의 길을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상호 개방,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도시 건설, 주민의 의식주 생활양식의 일부 개선 등 정책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셋째, 우리로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대화전술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들의 二重的 의식구조, 즉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型의 人間像」의 虛實을 파악함으로써 대북자신감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여는 관건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통일의지와 통일정책 및 통일접근노력의 합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 1980年代 中盤까지의 統一政策과 그 進展

1980년대 초에는 남북한이 각기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중반기에는 수재물자 授受를 계기로 닫혔던 남북대화의 문이 12년만에 다시 열리고, 비록 起伏은 있었지만 남북대화의 폭(분야)이 넓어지고 그 빈도도 높았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분단 이래 가장 빈도가 잦은 통일관련 提議를 교환하였고, 통일환경도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 1980년대 중반까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章에서는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1987년말까지의 평화통일 노력과 그 진전상황만을 간추리고자 한

다.

정부는 1981년 1월 1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① 남북간 신뢰회복과 전쟁재발 방지 ②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²²⁾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월 19일, 金一(副主席·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1.12제의」를 “두 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책동”이라고 거부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① 현 정부의 퇴진과 聯共정권으로의 대체 ② 모든 정치범의 석방 ③ 반공관계법령의 폐지와 반공기관·단체의 해체 ④ 「6.23 선언」의 철회 ⑤ 주한미군의 철수 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6월 5일, 새로 발족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식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12제의」 수락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²³⁾을 제의하면서, 그 장소와 시기의 선택을 북한측에 일임하였다. 이 「6.5제의」에서는 「남북頂上會談」이 실현되면 이미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동안 쌍방이 제시했던 통일방안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이미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제시, 협의하려고 마련하였던 우리측의 통일방안, 즉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²⁴⁾을 1982년 1월 22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3원칙으로 ① 민족자결의 원칙 ② 민주주의 원칙 ③ 평화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을 제의

22) 상계서 P.472

23) 상계서 P.474

24) 상계서 P.481

하였다.

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합리적인 길로서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민족 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②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통일헌법안을 마련하고, ③ 이 헌법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친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공포하며, ④ 이 통일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정치이념·국내외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협의될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기구 밖에서 일방적인 선전의 소재로 삼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측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이 협의기구에 내어놓고 상호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單一案으로 만들자는 것도 제의하였다.

셋째,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하였다.

앞에서 제의한 통일헌법 제정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

여 그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民族自愛的인 正常關係로 전환시킬 것을 함께 제의한 것이다.

이 「잠정협정」의 합의사항으로 제시한 7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② 쌍방은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③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④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⑤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人的往來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交易·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종교·문화·報道·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傾注하기로 한다.

⑥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체제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여러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多者間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

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⑦ 쌍방은 각료급 全權代表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常駐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넷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수락을 촉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고위대표간의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의 실마리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쌍방의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므로, 이 「정상회담」수락을 촉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쌍방 고위대표간의 예비회담을 열 것도 제의한 것이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대북제의를 적극화하였는데, 1984년 가을부터는 1970년대초 이래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시키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다각적인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등 한정적이거나 교류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관련자료를 일람표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대북제 의 및 행사명 (일자·형식 등)	주 요 내 용	배경·반응 등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82.2.1	1)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2)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3)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설악산 이북 금강산 이남) 4) 관문점을 통한 해외동포 조국방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한 제의

<p>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자유교역항 개방(인천·남포) 6) 쌍방 정규방송 자유 청취 7) 판문점을 통한 '86·'88체육행사 참가 8)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의 자유 왕래 9) 공동 어로구역 설정 10) 남북간 각계 인사의 상호 친선방문 11) 기자의 남북한 자유취재 보장 12) 민족사 공동연구 13)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 14) 일용품 교류 15) 자원공동개발 및 이용 16)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17) 비무장지대 경기장 시설 18) 비무장지대 학술조사 19)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 20)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개설 	<p>·「잠정협정」체결 이전에 쌍방 합의만으로 실천 가능</p> <p>· 20개 시범사업의 유형</p> <p>사회개방: 8개항</p> <p>교류협력: 8개항</p> <p>긴장완화: 4개항</p>
<p>「남북한 고위대표회담」제의 82. 2. 25 정부의 대북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각료급 수석대표 포함 각 9인 · 의제—1) 「민족통일협의회」구성문제 2) 「최고책임자회담」개최문제 3) 긴장완화·교류협력문제 4) 북한측의 주장(100인 정치인연합회의) · 기타—「100인 정치인 연합회의」를 제의하면서 우리측 대표 50인을 지명한 북한측의 그릇된 자세 시정 촉구 	<p>· 북한측은 우리 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사업 제의를 호도하기 위해 82. 2. 10, 「북과 남, 해외동포 100인 정치인 연합회의」를 제의</p> <p>· 우리측 대표 50인을 자의적으로 선정·지명</p>
<p>「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실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정상회담」수락 촉구 · 북한 포함 공산권 거주 동포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화합의 수범 · 중국 및 동구권 거

52 I. 南北韓 統一政策

<p>및 「공산권거주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개방」천명 82. 8. 15 대통령의 경축사</p>	<p>대한 우리 사회의 우선개방 · 안전한 왕래보장 ※동포애의 발로</p>	<p>주 동포의 모국방문 접증</p>
<p>「남북한정상회담」의 4개항 의제 제시 25) 83. 1. 18 대통령의 국정연설</p>	<p>· 「최고책임자 회담」 수락 재촉구 · 동회담에서 긴급히 협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4개항제시 1) 긴장완화 및 전쟁재발 방지문제 2)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문제 3)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역량 낭비 방지문제 4) 국제적 평화통일 여건 조성문제</p>	<p>· 쌍방 통치책임자만이 협의· 해결 할 수 있는 민족의 현안문제임 · 우리의 포용성 과시 · 86. 1. 1, 김일성의 「신년사」에서도 이 정상회담의 필요성 인정</p>
<p>「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제의 83. 2. 1 국토통일위원장 대북성명</p>	<p>· 당국을 포함시킨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 의제 : 1) 최고책임자회담 실현 문제 2)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의제의 포용성</p>	<p>· 83. 1. 18, 북한측은 「남북 諸政黨·사회단체 연석회의」제의 · 미군철수 단일의제 ※당국 배제 각 3개 정당대표로 예비회담</p>
<p>「IPU 총회에의 북한 대표 참가 희망 및 신변보호」언명 83. 6. 1 대통령의 제2차 「평통자문회의」 개최사</p>	<p>·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촉구 · 83. 10월 서울 개최 IPU 총회에의 북한대표 참가 희망</p>	<p>· 제70차 IPU 총회 (83. 10. 2~13)</p>
<p>북한의 변칙적 「3자회담」제의와 관련한 대</p>	<p>· 아웅산 폭발만행에 대한 시인·사과·관계자 처벌 촉구</p>	<p>· 북한측 84. 1. 11, 변칙적 「3자회담」제의</p>

25) 상계서 P.485

<p>응조치 및 제의 84.1.1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 성명 84.2.10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84.3.10 국무총리의 대북성명</p>	<p>• 남북한 당사자(한반도의 주역) 회담의 당위성 강조 • 「최고책임자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수락 촉구 • 先 당사자회담, 後 관련국 회의 가능성 시사 (동일 내용의 대북서한 및 대북성명)</p>	<p><명의>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내용> 先, 미국과 평화협정 後, 우리와 불가침선언 ※아웅산만행관련 위장평화전술 • 「정무원 총리」(이종욱)의 우리 국무총리 앞 편지(동일내용을 84.1.11 발송) • 「정무원 총리」(강성산)의 같은 형식의 편지</p>
<p>「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²⁶⁾ 84.8.20 대통령의 하계기자회견</p>	<p>•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시대 제창 •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 물자·기술의 무상제공 용의 표명 • 이산가족 재회, '86·'88체육행사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 희망</p>	<p>• 84.9.1의 서울지역 수해를 기화로 북한적십자회가 9.8 수재물자 제공 제의(「8.20 제의」에 대한 역제의)</p>
<p>북한적십자회의 「수재물자제공」 제의의 수락과 물자교류의 실현</p>	<p>• 북한적십자회의 제의 : 84.9.8 • 대한적십자사의 수락 : 84.9.14 • 물자인도인수 : 84.9.29~10.4 • 수재물자(인수) — 쌀 5만석, 직물 50만 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 ※북측 수송요원에 대한 선물 인도 — 일용공산품</p>	<p>• 先수락의 역사적 선례 • 상부상조, 교류협력의 기틀 마련 • 국제적으로 우리의 자신감과 아량 과시 • 대화재개의 계기 마련</p>

26) 상계서 P.488

<p>「남북접식자회담」의 재개제의 84.10.4 한적총재의 대북서한</p>	<p>· 제7차 본회담(73. 7.11 평양)을 끝으로 중단된 적십자회담 재개제의 ※ 제8차 서울</p>	<p>84. 11.20. 실무접촉으로 「적십자 본회담」 재개 합의</p>
<p>「남북한체육회담」의 재개제의 84.10.6 대한체육회장의 대북성명</p>	<p>· 체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체육회담의 재개제의 ※84.4. ~5월 3차로 중단</p>	<p>· '86, '88 행사에서의 민족역량 과시</p>
<p>「남북경제회담」제의 84.10.1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대북서한</p>	<p>· 남북한당국 및 민간경제분야 대표간의 회담제의 (차관급 수석대표) ·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설치 희망 · 일시·장소결정을 북한측에 일임</p>	<p>· 「8.20제의」의 실천정신 · 남북한의 균형 발전 및 민족공영 도모 · 84.11.15 이래 5차례의 경제회담 개최</p>
<p>「남북적십자 본회담」 제8차 : 서울 85.5.28~29 제9차 : 평양 85.8.27~28 제10차 : 서울 85.12.3~4</p>	<p>· 참가(왕래) 규모 : 84명, 3박4일 ·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남—이미 합의한 5개항 의제의 사업추진(추진기구 및 시설의 설치 등), 회담의 조기 종결 북—자유왕래만 주장할 뿐 실질적 사업추진에는 무관심 · 부차적 성과—이산가족 고향방문단(50인) 및 예술공연단(50인)의 동시교환방문 실현 85.9.20~9.23 적십자 대표 포함 151인</p>	<p>· 이미 합의된 의제 및 사업 1) 주소 및 생사확인 문제 2) 방문과 상봉문제 3) 서신거래 문제 4)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문제 · 자유왕래를 선전하지만 고향방문단의 평양이의 지역의 고향방문 거부</p>
<p>「남북경제회담」 제1차 : 84.11.15 제2차 : 85.5.17</p>	<p>·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남—민족공영을 위한 교역 및 경제협력 ※제1차 회담때 쌍방 제안중 일치</p>	<p>· 제1차회담 때의 쌍방 제안중 공통분야 1) 교역대상품목 2) 경의선 연결</p>

<p>제3차 : 85. 6. 20 제4차 : 85. 9. 18 제5차 : 85. 11. 20 ※장소 : 판문점</p>	<p>된 분야의 추진 북—정치선전차원의 경제합작만 주장 · 부총리급을 수석으로 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구성에 합의</p>	<p>3) 교역항 지정 4) 협의기구 구성</p>
<p>「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제1차 : 85. 7. 23 제2차 : 85. 9. 25 ※장소 : 판문점</p>	<p>· 85. 4. 9, 북한측, 「남북국회회담」제의 의제 :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 형식 :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 · 85. 6. 1, 우리측이 의제 수정 역제의 · 남북한 기본입장의 차이(의제) 남—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문제, 평화통일기반 조성문제 북—불가침공동선언 문제 · 예비접촉—각 3개 정당출신 5인</p>	<p>· 불가침공동선언 문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당국의 고유기능임 (정상회담의 협의사항) · 「3자회담」실현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의 저의 · 上層 통일전선전술</p>
<p>IOC 중재 남북체육회담 제1차 : 85. 10. 8~9 제2차 : 86. 1. 8~9 제3차 : 86. 6. 10~11 제4차 : 87. 7. 14~15 ※스위스 로잔</p>	<p>·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남—북한측의 '88올림픽 참가, 일부 종목 분산개최 북—'88올림픽의 공동주최 · IOC 위원장 중재안 1) 탁구·양궁·축구예선 4조중 1조 북한 개최(제4차에서 여자 배구 추가) 단체자전거 도로경기 남북중단 2) 87. 9. 17한 서면 통보 요구(대북) (1차지한 86. 6. 30)</p>	<p>· 북한은 그동안 '88올림픽을 「대북도발」이라고 반대공작 · 기정사실화하자 공동 주최 주장 · 방해 또는 공산 진영 참가 저지술책</p>
<p>「남북수자원당국회담」제의 86. 11. 28 건설부장관 대북서한의</p>	<p>· 공유하천의 합리적 개발 이용문제(금강산댐) · 공사중지 촉구 및 손실보상 용의</p>	<p>· 86. 10. 21 북한측 금강산댐 건설 공표</p>

<p>「남북총리회담」제의 87.3.14 정부(총리 및 국방부장관)의 대북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실현 절차 마련 • 북측이 주장하는 의제 토의 • 3월중 수자원회담 개최, 4월중 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3.3 북한측의 「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역제의
<p>「남북총리회담」의 전제로 3개 회담일자 지정 제의 87.4.10 국무총리의 대북서한</p>	<p>수자원회담—87.5.6(판문점) 경제회담(제6차)—87.5.12(판문점) 적십자회담(제11차)—87.5.19(평양)</p>	<p>87.3.30, 북한측의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4.23)제의에 대한 대응</p>
<p>「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및 의제추가제의 87.6.3 제4차 「평통」자문회의 개최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수락 재촉구 • 동회담의 4개항 의제(83.1.18 제의)에 “대한민국이 거두어온 경제·기술 및 제반분야의 결실을 북한동포와 함께 나누는 문제”를 추가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대의와 명분이 북한동포에 대한 구원과 해방에 있음과 남북체제경쟁 終焉의 선언
<p>「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 87.8.3 외무부의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 1)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2) UN 가입 및 교차승인 실현문제 3) 수자원회담 및 기존대화 재개문제 4) 총리회담 및 최고책임자회담의 준비문제 5) 군축 등 북한측의 제의사항 • 시기 및 장소 : 임의선택(9월 UN 총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7.23 북한측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에 대한 역제의
<p>「남북외무장관회담」 수락촉구 87.8.13 외무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외무장관회담의 부당성 지적 • 남북한 직접대화 재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의 87.8.6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반박

그러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북제의와 북한측 제의의 수용을 통한 남북대화의 다각화와 접촉기회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북한측은 12년만에 재개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서 회담 본연의 사업 추진을 가로 막았고, 1986년에 들어와서는 연례적인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예정된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86. 1. 20)시켰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군사당국자회담」(86. 6. 17)이니, 「多國의 군축협상」(87. 7. 23)이나 「3자 외상회담」(87. 8. 6)을 제의한다든지 「비핵평화지대 창설」 또는 「병력 10만의 일방적 감축 조치」를 선전하는 등 위장평화공세만을 벌였다. 이는 북한의 대남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대남제외의 내용은 제7장에서 살피고자 한다.

6.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가. 統一政策의 基調

통일정책도 하나의 국가정책인 이상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인 政府가 교체되면 국민에게 公約한 새로운 통일정책을 펴게 되고, 통일주도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보다 포용적인 통일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 통일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와 같은 통일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客體와 環境의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펴야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先導하고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前向的인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할 때, 통일정책의 可變性이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기조는 크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과연 통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國家次元에서는 하나의 憲法 아래 하나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어 단일주권국가가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민족 차원에서 보면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한민족공동체」가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일의 목표는 「한민족」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같은 통일조국이어야 「한민족」을 위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이 주체가 되어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은 민족의 自尊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권력정치의 屬性上 실현성도 없기 때문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민족성원의 희생과 국토의 焦土化를 가져올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으로는 민족의 自滅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동족상잔으로 민족역량이 消盡되어 한반도에 힘의 眞空 상태가 생긴다면 비록 외형상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地政學的 여건으로 볼 때 외세의 유입과 간여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성원의 참여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은 결코 특정정권이나 집단, 하물며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자유가 걸린 死活的인 민족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自主·平和·民主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쟁재발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나 민족의 화합,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이란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화해, 화합과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민족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이래 「先 평화, 後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는 평화통일정책을 펴 왔다. 이는 1960년대말까지의 “UN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 우리 통일정책의 바탕이었던, 대한민국의 법통성에 입각하여 우리 헌법 아래 북한지역을 수복하겠다는 명분론적 정책기조에서 북한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實體로 인정하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더불어 풀겠다는 현실인정의 정책기조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는 1970년대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정착, ②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과 민족적 신뢰회복, ③ 그 바탕 위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이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74. 8. 15)으로 示顯되었고,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서 ② 통일헌법을 함께 마련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나타냈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을 集大成, 體系化하여 밝힌 「한민족공동

체 통일방안」(89. 9. 11)도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에 따라 「南北聯合」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형성하여 민족의 공존공영을 도모함으로써 「民族統一」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 「國家統一」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서 이 「선 평화, 후 통일」을 정책기조로 한 것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서는 뒤에 詳述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래의 통일정책기조와 통일방안과의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 책 기 조 통 일 방 안	평 화 (先)		통 일 (後)
	한 반 도	한 민 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74. 8. 15)	평 화 정 착	민족적신뢰회복	총 선 통 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2. 1. 22)	남북한관계 정상화	민 족 화 합	「통일민주공화국」 완성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9. 9. 11)	남 북 연 합 (사회·문화·경제적민족공동체 실현)		「통일민주공화국」 완성 (정치공동체)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對北觀)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남북대화의 多角化와 평화적 통일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對北認識의 변화(발전)추이가 상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일방적이고 先制的인 양보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다각적인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의 進展度를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의 對北觀, 즉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一方主義的인 포용의 과정이었다. 즉, 북한측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그 瓦解를 기도하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이라는 일관된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이래 북한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

제(1988년 이래)는 북한을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로서 포용하는 통일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인식의 변화추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관계
건국이래~1960년대말	체제부정, 수북통일의 대상	적 대 관계
1970년 ~ 1987년	실세인정, 대화협상의 대상	대결·경쟁관계
1988년 이래(현)	공동번영해야할 민족공동체	동반자관계 지향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實體는 상호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외교정책에서 북한체제를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고, 남북한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對南路線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는 限, 바꾸어 말해서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군사적·실정법적으로는 적대관계 또는 대결관계일 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 남북대화와 통일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남북대화가 평화적 통일의 기본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화의 多角化·廣幅化의 效用과 限界에 대한 통일정책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대화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측은 1988년 하반기 이래 정부당국간의 대화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 기존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도, 국회연석회의·학생회담·3자회담·정치협상회의를 주장하고 「전대협」 및 「전민련」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등 選別的·多次元的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의식이 없는 무원칙한 대화·접촉의 확대는 도리어 북한측이 노리는 「上下層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동족간의 대결과 단절에서 비롯된 불신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그 빈도를 높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쌍방 당국대표간의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 대화의 量보다 質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며 그 선행 조건이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남북한 정부당국간의 회담에서만 협의·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또한 평화의 바탕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정치적 통합, 즉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국간에 연합·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남북한간의 모든 대화, 접촉, 교류, 협력은 쌍방 정부당국의 허가·주선·통행 및 안전의 보장 등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위와 같은 정책기조 이외에도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에서 비롯되는 정통성과, 對北認識 및 통일에 관한 發想과 認識의 一大轉換에서 연유하는 민족적 正統性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수립과정에서 통일논의를 개방화·활성화하여 국민의 염원과 창의와 예지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와 지지의 기반 위에 형성한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통일지향면에서도 국민의 성숙한 민족공동체 의식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포용하기 위해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돕고, 베풀어서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垂範·先導하려는 民族正氣에 뿌리박은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다음에 記述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나. 「民族自尊과 統一번영을 위한 特別宣言」²⁷⁾

(1) 「7.7선언」의 背景 및 主要內容

盧泰愚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一大轉換을 의미하는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 기본방향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 7선언」이라 한다)으로 내외에 밝혔다.

이 「7. 7선언」의 배경은 먼저 국내여건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候補遊說를 통해 국민에게 公約하였고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외교분야의 政策意志와 통일청사진을 구현시킬 필요성과 함께, 때마침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민적 통일여망과 열정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6. 23 선언」(73. 6. 23)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제질서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발전을 시도할 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開放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킬 轉機를 마련해야 하였다. 여기에 올림픽의 개최, 국력의 신장 등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서 오는 민족적 自矜心과 통일주도역량의 확보를 自負하는 국민적 자신감이 이를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면에서도, 미·소의 화해와 협력추세 속에서 동서냉전체제가 평화공존 및 협력구조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美蘇양극체제의 희생이 되었던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好機를 맞게 된 것이다. 또 우리는 소련·중국·

27) 상계서 P.495

동구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開放과 改革의 물결이 폐쇄적인 북한사회에도 파급되도록 북방정책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位相은 민족자존 차원에서나 남북한 總力比較면에서 대결·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족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을 도와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一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7.7선언」의 「政策宣言 6個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

선을 추구한다.

-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6천만 겨레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世紀가 가기 전에 남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偉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7. 7宣言」의 意義

「7. 7선언」은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북한동포도 민족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이다.

이 「7. 7선언」은 이제까지 폐쇄적인 북한을 봉쇄해 온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여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려는 통일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문제를 보는 視角과 認識에 큰 劃을 그어놓은 「7. 7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상호 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민족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對北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남북한이 단절과 대결 속에서 民族自害行爲를 계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 민족自尊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결·비방·경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過當

競爭으로 인하여 민족의 위신과 역량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더욱이 올림픽을 유치·개최하는 국민적 自矜心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선언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두 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통합을 실현해 나가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북한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관계로서 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한 민족안의 두 체제간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개방·협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부문에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실현시킨다는 統一理念을 담고 있다.

역사와 문화, 민족이 다른 나라들로 구성된 유럽공동체(EC)의 경우에도 국경에 관계없이 사회·문화·경제의 교류 등에 있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아가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 이에 비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영위해 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 회복은 용이할 뿐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민족의 一體性を 잃지 않고 민족 본연의 모습을 지켜 왔다. 이같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은 비록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분단되었지만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살아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

도 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족공동체를 향한 「善意的 同伴者關係」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7. 7선언」은 통일·외교정책 基調의 一大轉換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기여하게 하는 데 우리가 협조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까지도 돕겠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바로 통일·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책기조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은 우리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적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평화통일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불균형은 오히려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이제 우리는 북한동포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民族自尊의 정신과 동포애의 發現이 바로 이같은 정책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의 人的·物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북한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합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의 길을 우리가 먼저 연 것도 고향방문, 친척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북한동포의 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선언은 외교면에서의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식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 통일정책의 포용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마침내 「7.7선언」은 88서울올림픽을 12년만의 東西和合의 평화제전으로 뿐 아니라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대한 인류의 文化祭典으로 성공시켜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그 延長線上에서 이루어진 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 초청연설(88.10.19)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和解를 여는 길”이라는 主題의 이 연설에서는 ① 군사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의 실마리를 당사자가 풀어나가기 위해 「南北頂上會談」을 실현시킬 것을 북한측에 다시 제의하고, ②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한반도와 東北亞의 평화 구축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의 협력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소련·중국·일본이 참가하는 「東北亞平和協議會議」를 창설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③ 긴장완화를 상징하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廣場이 될 「平和市」를 비무장 지대에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④ 남북한간의 不可侵宣言이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北에 대해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평화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국제적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이 「7.7선언」의 정책기조 위에서 대통령의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89. 8. 15)를 통해 「統一構想」을 발표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천명되었다.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 147회 정기국회가 열리던 날 「특별연설」을 통해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을 대통령의 「특별연설」속에서 도출하여 간추리고, 새 통일방안의 闡明背景및 意義와 主要特徵을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 위에서 照明하고자 한다.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內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힌 「특별연설」 要旨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南北이 자주·평화·민주의 3原則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통일된 우리 조국은 민족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機會均等이 보장되고 다양한 主義·主張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民主共和體制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恒久的의 安全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單一國家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이다.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永續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정신에 따라 自主的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그리고 民族大團結을 도모하고 民主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言語,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이루어 살아왔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根本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深化되었다.

敵對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半世紀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갈라지고 異質化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南과 北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共存共榮하면서 민족사회의 同質化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

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이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制度化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憲章에 따라 남북이 聯合하는 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加速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過渡的 統一體制라 할 수 있다.

「南北聯合」은 最高決定機構로 「南北頂上會議」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南北閣僚會議」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南北評議會」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實務를 위해 「共同事務處」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平和區域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구역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總理를 共同議長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閣僚級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 분야 등의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懸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人道的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의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이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暢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번영의 經濟圈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休戰協定體制를 平和體制로 바뀌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 國會議員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起草 및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諮問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起草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國號·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對內外政策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각기 構想하는 통일헌법 草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單一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地域代表性에 입각한 上院과 國民代表性에 입각한 下院으로 구성되는 兩院制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統一民主共和國」을 수립하여 통일의 大業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겨레의 理想과 意思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새 공화국 출범이후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轉機를 마련하는데 가장 實効性있는 방법이 남북의 頂上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南北頂上會談」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憲章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基本方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이같은 「民族共同體憲章」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한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1990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하겠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도 自由와 人權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複數政黨制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普遍的 價値이다.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

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合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赤化統一路線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다.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紀元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 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至誠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골격을 構圖化하고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명칭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KNC) 통일방안

② 통일의 3原則

자주—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③ 통일의 過程

共存共榮의 토대 위에서 南과 北이 聯合(「南北聯合」)하여 單一民族社會 指向→單一民族國家(통일민주공화국)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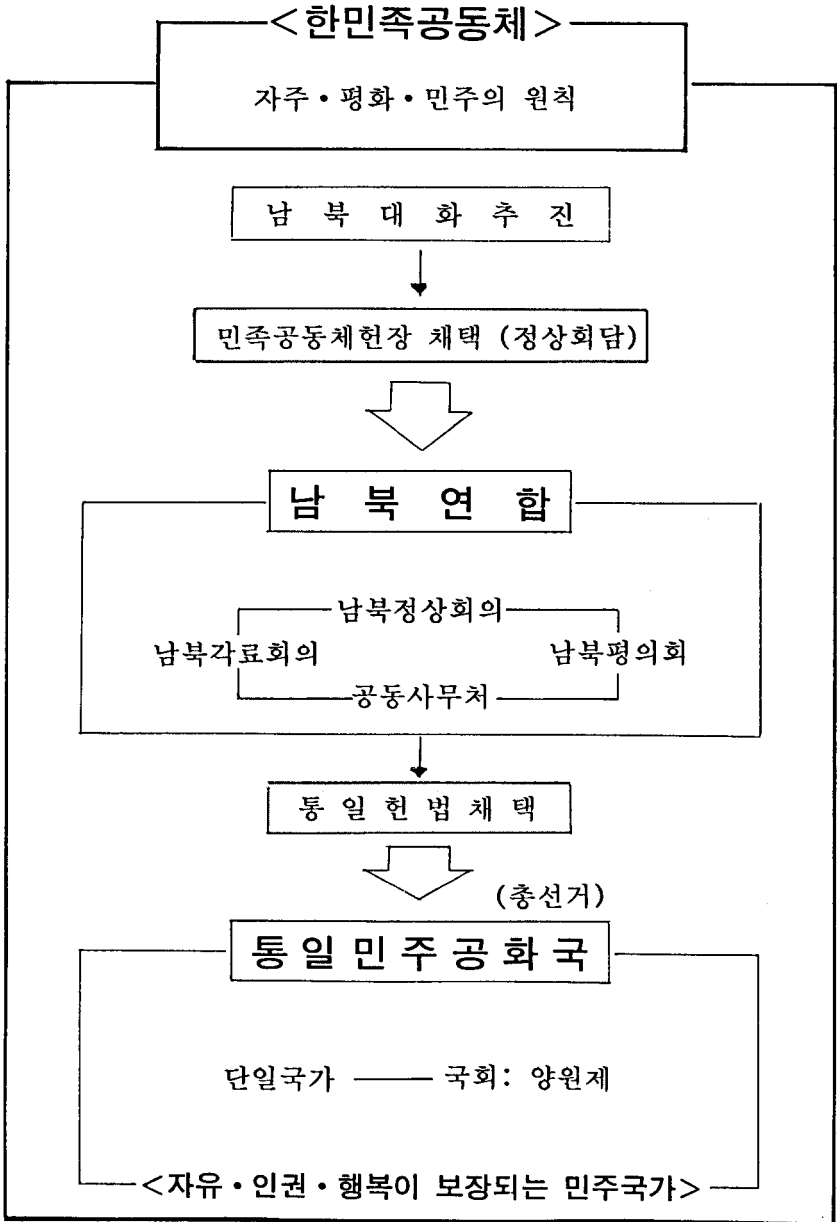
④ 過渡的 統一體制

○ 명칭;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

○ 성격;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

○ 역할; 민족의 共存共榮, 민족사회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

<구도>



圈 형성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실현

○ 憲章; 民族共同體憲章

-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公布

-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 相互不可侵에 관한 事項, 「南北聯合」 機構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남북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

○ 「남북연합」의 기구

□ 南北頂上會議-최고결정기구

□ 南北閣僚會議-협의·조정 및 실행 보장기구

- 共同議長(남북 總理)과 남북 각기 10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

- 남북간의 현안문제·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 보장

- 5개 常任委員會(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 분야) 설치

•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문제

•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 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문제

• 남북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문제

• 민족문화의 창달 문제

• 공동번영의 經濟圈 형성 문제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代替 문제 등

□ 南北評議會-통일籌備機構

-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 國會議員으

로 구성

-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 起草 및 통일
실행 방법·절차 마련

□ 共同事務處- 실무지원기구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관장

- 常駐連絡代表를 서울·평양에 파견

○ 平和區域 設定

- 비무장지대내에 설정, 「남북연합」의 기구·시설 등 설치

- 「統一平和市」(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⑤ 統一國家 樹立 節次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
차로 확정, 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통일국회와 통
일정부 구성→통일국가 완성

⑥ 통일국가의 未來像 — 民族成員 모두가 主人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
國家

- 國家形態; 單一國家

- 國會構成; 兩院制 [상원-지역대표성
하원-국민대표성

- 政策基調

• 民主共和體制(민족성원 전체의 參與와 機會均等 보장,
자유로운 主義·主張 표현)

• 민족성원 모두의 福祉 증진

• 민족의 항구적인 安全保障, 世界平和 기여

•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 유지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闡明背景 및 意義

먼저 새 통일방안의 천명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1982년 1월 22일에 발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때까지의 우리 통일정책을 종합·체계화한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합리적 통일방안이었으나 中間過程의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그동안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도 많이 변화·발전하였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제6공화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능동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사회각계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특히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北方政策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對北 自信感이 제고됨으로써,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前向的인 자세가 요청되었다. 대외적으로는 東西和解와 공산권의 개방·개혁 물결 등 세계질서의 再編 움직임에 따라 바람직한 통일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한반도 주변정세도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능동적이고 탄력성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에 副應하고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의 一員으로 포용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發想과 認識의 一大轉換에 따른 前向的인 통일정책을 펴 왔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7.7 선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와 입장이 일관되게 천명되었다.

비록 북한당국이 아직도 對南赤化戰略을 포기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측의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있으나,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과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실천조치들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時代狀況의 배경에서 정부는 국민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족공동체 視角에서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통해 천명하게 된 것이다.

다음,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닌 意義는 ① 국민적 合意基盤 위에 형성된 정통성이 있는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② 분단 終息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③ 통일民族史를 전개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自信心을 반영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 형성된 통일방안이다.

통일의 主役・主體는 민족성원 전체이고, 통일국가는 결국 민족 전체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통일방안은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은 그 합리성과 현실성 못지 않게 국민의 염원과 창의를 수렴하는 절차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새 통일방안의 立案을 위해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250회에 걸친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언론계・종교계・문화계・경제계・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특히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政治圈은 물론 在野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였다. 또한 통일과 관련한 각계의 주장과 언론매체를 통해 표출된 統一論議 총 426건을 취합하여 분석・정리하였고, 해외동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16,800여명에 대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온 국민의 통일여망과 意志와 창의를 결집하여 창출해 낸 정통성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分斷終息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통일방안이나 상호 제의가 있어 왔으나. 領土的・制度的・政治的 통일 접근 視角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 결과, 40여년간 적대와 대결 속에 분단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민족의 이질화는 심화되고 민족공동체를 훼손시켜 왔으며, 앞으로 분단이 계속될 경우 민족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있는 것이 비극적인 오늘의 분단 현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족공동체의 훼손을 방치함으로써 민족사회가 영원히 분열되는 汚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넘겨 줄 수 없다. 분단민족사를 종식시키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서있는 이유이다.

민족통일의 捷徑은 남북이 共有했던 문화와 전통을 회복하고 민족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사회가 없는 하나의 민족국가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통한 통일에의 접근을 기조로 하는 새 통일방안의 천명은 이념과 체제의 相異로 인한 남북한간의 대결・적대구조를 극복하고 민족自尊과 통일번영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統一民族史 전개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 10대 무역국으로서 성장,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스스로의 位相에 대한 자신감과 自矜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삶의 質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돌림으로써 성숙된

국민적 역량을 민족 雄飛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냉전구조 속에서 이념과 체제에 집착해 온 세계 여러 나라가 앞을 다투어 和解와 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이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역량을 낭비한다는 것은 민족 자긍심에 비추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만큼 역량을 갖추었으며, 북한체제도 세계적인 개방과 화해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限界狀況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공존공영과 평화적 통일의 대열에 同參토록 우리가 이끌고 돕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 통일방안은 성숙한 국민역량과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통일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今世紀안에 반드시 통일민족사의 새 章을 열겠다는 국민적통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앞으로 10년이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分斷 45년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이전에 남북이 民族共同體憲章에 합의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特徵

(가) 統一 3原則의 再確認

자주·평화·민주의 3原則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수용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의 원칙이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좇

고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첫째, 自主의 원칙이 제시된 것은 우리 통일문제는 민족이 주체가 되고 한반도의 主役인 남북한 당사자가 풀어야 할 민족의 문제이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실현하는 통일이어야 민족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기존의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산권마저 개방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그 같은 폐쇄적 자세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참다운 자주를 실현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7.7 선언」을 통해 개방과 화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 개방적 자주의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측도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둘째, 平和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의 어느 一方이 무력행사나 전쟁을 통해 상대방을 전복시키거나 併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대화와 화해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민족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무력의 사용뿐 아니라 일체의 폭력적 방법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은 이미 북한의 6.25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은 극단적인 불신과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 통일이라는 名分으로 무력이나 폭력이 사용될 경우에는 민족이 自滅하거나 영구 분단될 위험성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19일의 UN총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밝히는 한편,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임을 강조하여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킨 바 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 一方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북한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民主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로써 통일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된 조국은 6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主人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이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민족 전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통일방안에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민주원칙을 제시한 것은, 40여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만이 주도하는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포용과 화해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민족대단결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국가적 통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성원 개개인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고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민족대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자주·평화의 원칙과 함께 민주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수용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 3원칙의 有効性を 확인하는 한편 「민주」에 바탕한 「민족대단결」의 중요성과 「민족대단결」의 실질적 의미를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民族統一」을 통한 「國家統一」실현

우리가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려면 분단현실의 認定에서부터 출발하는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을 고려할 때,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일국가를 一舉에 완성하겠다는 것은 감상적이고 공허한 名分論에 불과할 뿐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남북은 우선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共存共榮을 도모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는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²⁸⁾이라는 데서 우리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을 原狀復歸的인 空間的 개념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이라는 未來指向的인 시간적 개념의 통일로 보고 목표지향의 중간단계적 통일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이 이 과도체제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같은 단일민족사회가 형성되어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의 건설, 곧 「國家統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 과도적 統一體制인 「南北聯合」 제의

새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

28) 대통령 특별연설(89. 9. 11)중에서

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 과도체제 안에서 남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서 연합·연계됨으로써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협의·조정하며, 밖으로는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7.7 선언」의 제3항에서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의 古典的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과도적이고 특수한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1民族 내부의 2體制 聯合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남북연합」 안에서 남북은 각기 外交·軍事權 등을 보유한 주권 국가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 동안 單一民族國家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보아 「남북연합」은 “1民族 2國家”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통일을 지향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결합체제, 즉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政治·軍事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새 통일방안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통일방안을 고려하고 또 그 일부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간에 합의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였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한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군사·정치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일은 상호 신뢰조성 및 교류·협력 증진과도 연관되며, 민족공동체

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새 통일방안은 「남북연합」기구인 「남북각료회의」가 “정치적 대결상황의 완화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 나아가서는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조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정치·외교」와 「군사」분야를 다룰 상임위원회를 「남북각료회의」 안에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最高統治責任者의 만남인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하게 될 「民族共同體 憲章」에 “평화를 위한 기본방안”과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에 제반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과 병행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軍人士의 상호교류, 고위군사당국자간의 直通電話 架設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경쟁의 지양 및 군비통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남북한 당국이 1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마) 「平和區域」 및 「統一平和市」構想 제시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의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 통일방안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적당한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평화구역」에는 「공동사무처」 등 「남북연합」기구의 건물과 각종 회의장소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의 場을 마련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示範地域으

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京義線 철도를 연결하는 「統一驛舍」를 건설한다든지,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廣場」, 民族文化館, 學術交流센터, 商品交易場, 운동경기장, 종교인의 공동集會場 등,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설들을 이 「평화구역」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구역」은 남북의 합의와 공동노력에 따라 점차 「統一平和市」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제2, 제3의 「통일평화시」를 건설하여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감돌던 오늘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화합의 地帶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 既存 統一方案과의 一貫性 유지

우리 통일정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統一觀과 통일접근방법을 달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지켜왔다.

통일의 최종목표인 국가·체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통일방안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를 결정하고 통일정부와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자유의사의 반영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命題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며, 사회개방·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한다는 점진적 접근방식

을 택해 왔다는 점이다.

새 통일방안도 이같은 점진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남북연합」을 통한 「민족통합」의 바탕 위에 「국가통일」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일괄타결방식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편으로는 기존 통일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妥當性과 實現可能性에 역점을 두고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정세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統一祖國의 未來像 제시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된 조국이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고 단일국가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정집단이나 계급의 專橫이나 專制가 없는 民主共和體制를 우리 민족의 당위적인 선택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새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체제의 공존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는 미완성형 통일인 聯邦制를 배제하고 민족의 理想인 單一民族國家의 완성을 통일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물론, 통일조국의 國號·정치이념·국가형태·對內外政策의 기본 방향·통일정부와 국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은 궁극적으로 민족성원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통일헌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통일조국은 반드시 민족의 自尊과 繁榮을 약속하고 인류의 복리에 기여해야 하므로, 민족의 理想과 현실에 부합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우리의 意志로써 천명한 것이다.

특히 통일조국의 政策基調로서 ①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主義·主張의 표현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체제, ② 민족성원 모두의 福祉 증진, ③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과 세계평화에의 기여, ④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제

시한 것은, 이들이 비단 우리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염원하고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²⁹⁾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민주복지국가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道程에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이를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 기타 特性面의 參考事項

새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互惠平等의 정신과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더불어 풀어가려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남북대화와의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988년 10월 4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측에서 제시해 온 주장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새 통일방안을 立案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였다.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 온 「정치·군사문제」를 해결과제로 수용하였으며, 「남북연합」의 모든 기구를 남북의 동등한 代表性에 기초하여 同數의 대표로써 구성토록 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籌備會議에 해당하는 「남북평의회」를 남북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토록 제의하였는데, 통일헌법의 起草과정에서 쌍방은 각기 構想하는 통일헌법草案을 「남북평의회」

29) 소련外相(세바르드나제)은 제43차 UN총회 연설에서 “자유·인권·행복은 자유주의 국가의 專有物일 수 만은 없다”고 하며 사회주의국가도 이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또한, 1989. 10. 24, 내한한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장」(마르티노프) 一行中 그나제 연구실장은 남북한 평화통일의 길은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의 평균화와 자유민주주의의 同質化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유·인권·행복·참여·기회균등·복지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성을 긍정한 것이다.

에서 비교·검토하면서 합의를 통해 單一案을 창출해 내고, 남북이 합의한 통일헌법안을 6천만 겨레의 總意로써 확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면, 남북한의 人口隔差(4천만 대 2천만)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새 통일방안과 기존 남북대화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면,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을 위시하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북체육회담 등의 남북대화는 「남북연합」이 발족·운영되면 궁극적으로는 「남북각료회의」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 기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지만, 「남북연합」이 발족되기 전이라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 대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의 전개는 「민족공동체헌장」의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의 발족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民族共同體憲章」의 성격과 내용면의 특성을 살펴 보면, 이 「憲章」은 「7. 4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단순한 원칙문제와 기구설치에 대한 합의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통일조국(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의 남북한관계를 규율하고 정치공동체(국가통일) 형성의 기반인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민족통합)를 실현시키는 章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헌장은 통일에 이르는 남북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민족공동체헌장」에는 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②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③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게 된다. 따라서 이 헌장은 「남북정상회

담」을 통해 합의·확정하고, 각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민족 앞에 공포함으로써 발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분단종식과 「남북연합」의 出帆이라는 역사적인 章을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는 하루속히 「민족공동체현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분단 45년이 되는 1990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표시한 바 있다.

라. 前向的 統一政策 展開過程

제6공화국 정부의 前向的인 통일접근 노력의 展開過程과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 7선언」 이후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제의와 실천적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 일람표와 같다.

조치 및 제의	일자 및 형식	주요내용 및 배경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제의	韓赤 총재의 전화통지문 (88.7.13)	1)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의 상호 교환 2) 1차 고향방문 때 상봉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주선 3)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서신교환 등 알선 4) 88년중 제2차 고향방문 추진 (88.7.30 판문점 회담 제의)
「남북 교육당국자 회담」제의 ³⁰⁾	문교부장관의 대북서한 (88.7.15)	협의과제 - 남북학생 교류문제 · 조국순례 대행진

30) 전게서 P. 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 · 기타 학생 교류문제 <p>일시 및 장소-88.7.30 이내 관문점. ※ 8·15 학생회담 문제와 관련</p>
전향적(대북)외교 정책 선언	외무부장관 발표문 (88.7.16 및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물자 교역 · 민간인왕래·문화 교류·민간 상사의 지점 설치 용인 · 북한의 비동맹 및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정상화와 국제기구 가입 용인 및 협력 · 남북대표간의 대화·접촉 허용 ·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허가된 우리나라 거주여권 소지자의 북한 방문 허용 및 북한 여권 소지 해외동포의 모국방문 보장 ·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당국간의 협의제의
對北 비난방송 중지	정부발표 (88.7.19)	<p>-88.7.19.0시를 기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지역에서의 대북비난방송 중지 · KBS 등 정규방송에서 북한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지양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문공부 발표 (88.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이래 금지되었던 작품의 상업 출판 허용 <p>※ 월북작가 120여명</p>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문공부장관 발표 (8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자료 분류기준 대폭 완화 · 특수자료 이용절차 간소화 · 특수자료 관리운영기관 증설 · 언론기관의 인용보도폭 확대 등

대북한 경제개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발표 (88.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 중계 · 허용 • 북한원산지표시 · 상표 부착허용 • 남북경제인 접촉 · 방문 허용 •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면제 •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 허용 등
남·월북작가의 음악 미술작품 규제 해제	문공부장관 발표 (88.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음악 미술작품의 공개 허용

둘째, 북한측의 정치적 저의가 엿보이는 대남제의까지도 대화 · 접촉 · 교류 · 협력의 폭을 넓히고, 긴장완화와 민족의 화해, 나아가서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大局的 견지에서 수용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용사항	배경 · 내용 및 문제점		
「남북국회회담」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의 「북남국회연석회의」 제의(88. 7. 20)를 「남북국회회담」으로 수용 •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9차례 준비접촉(88. 8. 19-89. 11. 29, 판문점) ※제9차 준비접촉:90. 1. 24, (예정) • 회담 형식 및 의제에 대한 남북한 기본입장의 차이 		
	구분	남	북
	회담형식	대표회담(합동회의도 인정)	연석회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대화 재개포함 다각적 교류협력 문제 • 불가침선언문제 • 정상회담 개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침공동선언문제 •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문제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 (7차때 새로 제기) 	

	기타	제4차(8. 25)까지 올 림픽 참가문제 포함	제3차(8. 22)까지 정 당사회단체대표 및 개별인사 참가 주장
「남북체육회담」 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올림픽 위원장(김유순)의 제11회 아시아 경기 대회(1990, 베이징)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 회담 제의(88. 12. 21)를 우리측이 수락 • 6차례(89. 3. 9~89. 12. 22)의 체육회담(판문점) • 선수단의 호칭·단기·노래에 합의 • 문제점: 합의사항 이행 보장 문제 		

셋째,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두 차례 제의하여 마침내 그 예비회담의 성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88년 6월 3일, 국무총리(李賢宰)의 대북서한을 통해 ① 인적교류 실현문제 ② 올림픽 공동참가문제 ③ 기존대화의 재개문제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6월중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6월 6일,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³²⁾의 성명을 통해 “남북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형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북한측은 1988년 11월 16일, 「정무원 총리」(李根模)의 대남서한을 통해 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방안과 ② 기타 정세완화에 기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총참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7-9인의 대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12월중순에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1988년 12월 28일, 국무총리(姜英勳)의 대북서한으로 쌍방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각 7인의 대표가 참가하는

3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2) 「남북연석회의」는 1988. 1. 1 김일성의 「新年辭」에서 대남제의한 것임(제7장의마를 참조)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여 ① 상호비방증상 중지문제 ② 상호존중 및 불간섭문제 ③ 다각적 교류·협력 실시문제 ④ 군사적 신뢰구축 ⑤ 남북頂上會談 개최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을 수석으로 하는 남북대표 각 5인으로 1989년 2월 중순에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1986년 이래 중단된 제6차 경제회담을 1989년 2월 하순에 판문점에서, 제11차 적십자회담을 1989년 3월 하순에 평양에서 재개시킬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그들이 제의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 대한 수정제의로 받아들여 마침내 1989년 2월 8일, 제1차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이래 1989년 12월 20일의 제5차 예비회담까지 5차례의 대화가 있었으나, 회담의 명칭 및 의제에 대한 異見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넷째,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과 제11차 적십자본회담의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이 1989년 11월 27일까지 7차례 있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①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을 12월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② 그 규모를 571명으로 하며, ③ 제11차 적십자본회담을 12월 15일에 평양에서 재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실상의 노출을 두려워한 북한측이 이미 합의한 「공연물 선정 원칙」³³⁾을 깨고 김일성 위상화를 위한 혁명歌劇(「피바다」, 「꽃피는 처녀」)공연을 주장하여 1989년내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3) 남북은 1985. 9월 제1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실현 때는 물론, 제2차 교환방문 절차 협의과정에서 공연물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자극 또는 정치선전을 배제하고 순수 민족문화물 소재로 한다는 데 쌍방이 합의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아직도 북한의 대남노선과 대화전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끝으로,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 및 정당 수뇌 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남측에 존재하지도 않는 콘크리트장벽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1990년 1월 10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통신·통행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남북頂上會談」개최를 다시 촉구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①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특히 60세이상 노인의 고향방문 실현, ② 남북간 물자교역 및 관광자원 공동개발 등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③ 신뢰구축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축소 통보와 상호 군사훈련 참관 제의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7. 북한의 統一路線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

가. 북한의 統一觀과 統一路線³⁴⁾

북한체제의 最高規範인 「조선로동당 규약」³⁵⁾의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정

34) 「북한개요」(평화통일연구소, 1986) P. 298

35) 상계서 P. 339

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통일관과 통일노선이 「先 남조선 혁명, 後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위와 같은 통일노선은 당간부에게 내린 김일성의 비밀교시(68.7.8)에서도 나타나 있다.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反帝·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舉族的인 사업이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리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혁명역량 강화」라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통일전략은 1964년 2월에 「로동당」의 방침으로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의 근간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 조국의 통일, 즉 조선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에 달려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여 대남혁명지연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한내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켜 사회혼란으로 유

도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남북한의 혁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통일노선에 따라, 북한공산집단은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서 ① 무력에 의한 ‘남조선해방’과 ②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도와서 聯共合作하여 공산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써왔다. 그들은 전자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후자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전쟁과 폭력이 수반되는 反平和, 반문명적 노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통일관과 전략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험주의적인 노선인가를 스스로 드러낸 예로서는 민족적 참화를 입힌 6.25남침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휴전이후에도 이른바 ‘결정적 시기’를 계속 노려 왔다는 점이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1967.12.14)에서 한 김일성의 다음 연설은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기도 하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물질상 면에서 적극 지지 성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 혁명정세가 성숙해서 우리의 지원을 구할 때는 언제라도 남조선 인민과 힘을 합해서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시킬 결정적 싸움에 떨쳐 나서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전략은 “남조선은 외국군의 강점하에 있고, 경제는 식민지 예속경제로서 모든 이윤을 착취당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조작된 對南觀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데, 이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에서 비롯된 통일논리의 조작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체제가 ‘남

조선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을 기만·통제·동원하고 내뺨을 강요하여 장기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對內통치명분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 聯邦制 주장의 변천과정³⁶⁾

북한의 통일노선이 기본적으로 무력과 폭력을 수반하는 공산화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적 통일이니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펴 왔다. 연방제 통일방안도 그 하나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왔으나 오늘날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이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탈바꿈이 있었다.

처음 연방제를 내놓은 것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4·19직후의 우리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엿본 위장평화공세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과도적 통일형태로서의 연방제”와 “남북의 정부당국 대표로써 연방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북한은 1971년 4월 12일, 당시 외상이었던 許鎔의 이른바 「8개항제의」³⁷⁾ 속에 이 연방제 통일을 포함시켰고, 1972년 11월 3일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1973년 6월 23일, 마침 평양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서기장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제」

36) 상계서 PP. 303~313

37) 상계서 P. 306

로 바꾸어 내놓았다. 이 「고려연방제」는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³⁸⁾(또는 5대방침)속에 들어 있는 한 항목인데, ① 군사문제의 선결 ②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제 통일 ⑤ 단일국호에 의한 UN가입 등 5개항 중 제4항에 들어 있다. 이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자의적으로 붙였을 뿐 아니라,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남한의 정부당국을 배제하는 등 대남전략적 기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오늘날 까지도 북한의 통일노선과 대남제외의 준거가 되고 있다.

이 「고려연방제」가 1980년 10월 10일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³⁹⁾에서는 「민주」라는 修飾이 첨가되고 연방기구의 구성원칙 등을 구체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제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연방제」가 「고려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제」로 변천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라고 하던 것을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통일의 완결형태”라고 선전하고 있다.

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內容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고려연방제」라고 약칭한다)은 ①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이라는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결조건」에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先行을 전제조건

38) 상계서 P. 307

39) 김일성의 「로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 보고」

화하여, 「고려연방제」로 통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대한민국이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고 이른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② 북한이 조작한 유령단체인 소위 「통일혁명당」(1985. 7. 27. 이래 「한국 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을 비롯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정권이므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는 聯共政權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그들은 이를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④ 우리 정부가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에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⑤ 미국의 “분열주의적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내정간섭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위와 같은 「선결조건」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둘째, 이런 「선결조건」과는 二律背反되는 연방제 실시원칙과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연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국가의 機構로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

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機構들이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 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의 「정권창건 제35주년 경축연회」 연설을 통해,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북과 남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자”고도 하였다.

셋째, 연방제로 통일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협력을 거부하는 논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연방기구를 통해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단결과 협작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연방제 실현 뒤에 시행하겠다는 정책방향들을 「10대 시정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정책 실시
- ② 전지역·전사회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 도모
-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과 민족교육의 발전 도모
- ⑤ 북과 남의 교통·체신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체신 시설 활용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증진
- ⑦ 북과 남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민족을 보위
- ⑧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 ⑨ 통일 이전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 등을 통일적으로 조정
- ⑩ 통일국가로서 우호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라. 「고려연방제」의 問題點

「고려연방제」는 통일방안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면에서나 논리 면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표방하였지만 내용은 「선 남조선혁명, 후 적화통일」의 대남혁명전략을 펴기 위한 위장평화전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 자체가 평화통일 방안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잃은 것이고, 「고려」라는 국호도, 「연방제」라는 국가형태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의 의사나 타방 당사자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반민주·반평화적 「통일논의」 또는 「통일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 실시하겠다는 「10대 시정방침」도 통일방안과는 관련이 없는 하나의 修辭에 불과하고, 통일 뒤에나 교류·협력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발표한 통일원칙을 배반한 것이다.⁴⁰⁾ 왜냐 하면 통일방안이란 통일로 가는 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어야 하는데, 통일 뒤의 정책방향을 나열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정치선전에 불과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은 자주·평화·민족적

40) 金兌泰, “남북한의 통일원칙 적용논리의 비교연구” 「통일문제 연구」(통일연수원, 1985) 참조

대단결의 원칙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것인데, 이 「민족적 대단결」을 통일 뒤로 미루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서인지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을 1980년대 이래 자주·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로 변조하여 「고려연방제」의 선전논리와 결부시켜 圖式化하고 있다. 즉, 自主는 「남조선혁명」을 노린 「선결조건」과 결부시키고, 평화통일은 연공합작하는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며, 민족적 대단결은 「10대 시정방침」과 연관시켜 선전하고 있다.

둘째,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실시원칙」에서는 남북한의 현존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마치 체제공존논리를 펴는 것 같이 위장하였다. 그러나 「선결조건」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이 먼저 실현되면 남쪽의 聯共(容共)정권과 북쪽의 공산정권이 정치적 합작을 통해 적화통일하겠다는 대남혁명전략을 평화통일방안 같이 꾸며 놓은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제도의 상호 인정과 용납”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조건」이 충족된 상태의 남쪽의 사상과 제도, 즉 인민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와의 공존을 의미하므로 「선결조건」과 「연방제 실시원칙」 사이에는 속임수가 있을 뿐이지 논리적 모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방」이라는 용어 사용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두 체제의 공존협력지향적 통합형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표방(「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영문표기: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하고, 내용상으로는 연방정부가 군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통일지향적 통합형태인 연방제(Fed-

eration)⁴¹⁾인 것같이 대내선전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선결조건」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공산주의식 병합(Annexation)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디 공산주의에서 「연방」이라는 것은 연합·연립·합작과 같은 개념으로서, 공산주의가 비공산주의적 요소를 흡수·통합하는 공산화과정의 한 과도적 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사용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레닌은 1920년 7월 28일, 제2차 코민테른에서 “민족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 정치조직으로서 연방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적 연방국가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의 제도”임을 1981년 2월 2일자 「로동신문」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도 소련·중국·월남 등 다른 공산국가들이 공산화과정에서 시도했던 연합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고려연방제」의 문제점은 그 비현실성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보면, 연방구성국가간에 정치이념과 사회제도가 같고, 평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多民族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결조건」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현실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또한 5천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연방제로 통일해야 할 이유도 없다.

북한에서 발행한 「정치용어사전」에서도 “연방제는 말과 풍습,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국가구성형식의 하나”라고 정의하였고, 연방제 형성요건의 하나로 「연방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고려연방제」의

41) 연방제의 일반이론에 관하여는 김학준, “정치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의 虛實” 「민족화합 민주통일론II」 (국토통일원)P.122이하 참조

선전내용과 모순될 뿐 아니라 그 策略性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민족국가에서 연방제가 무의미하고 연방헌법이 없는 연방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허구적인 「고려연방제」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그 「선결조건」에서 對南赤化戰略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밖에도 복합적인 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남관계에서 「연방」, 「민주」, 「고려」 등 용어 자체가 함축하는 보편성을 이용하여 통일에 관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한 것이다.

둘째, 국제적측면에서 「고려연방제」를 마치 남북한의 체제공존형 평화통일방안인 것 같이 선전함으로써 평화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이 「고려연방제」를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과 결부시켜 김일성의 우상화와 세습체제 형성의 政治教化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당국은 이 「고려연방제」를 勢不利할 때 분단고정화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고려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도가 좌절되고 그 체제 유지도 어렵게 되었을 때는 남북분리정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에 동독이 「국가연합」안을 내놓고 “두 개의 독일정책”으로 이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對南提議

북한은 이 「고려연방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 방안”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오직 「선결조건」의 실현을 노린 대남

제의만을 계속해 왔다.

이 「선결조건」의 실현을 겨냥한 대남제외의 특성으로는 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간의 회담을 기피하고, “각당·각파·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선전장을 마련하려 하고, ② 남북한당국간의 당사자회담을 기피하면서도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거듭 제의하며, ③ 적십자회담·경제회담·체육회담 등 실질관계개선을 위한 기존대화는 중단시키면서도 군축협상, 고위급정치군사회담, 국회연석회의, 정치협상회의 등을 “군사문제 선결”의 맥락에서 제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북한측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기본노선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① 김일성 자신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 ② 대남제외에서 「대한민국」의 정식명칭을 표기한 점 ③ 정부당국간의 회담을 제의 또는 수락한 점 ④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대남제외의 내용과 배경을 간추리면 다음 일람표와 같다.

우리는 이 일람표를 통하여 북한의 평화 및 대화공세가 우리의 정치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對南提議 一覽表

제의명(일자)	제의기관·형식	배경 및 골자
「고려연방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제의(80.11.1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편지	• 당국을 배제한 정당·사회단체대표 및 각계 인사로 구성 • 국내외 각계인사에 편지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제의 (81.8.6)	「정당·사회단체연합」 성명(祖戰中央委결의)	• 「선결조건」실현을 위한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6.5제의」, 「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의」에 대한 반응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제의(82.2.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대표 50인 명단 일방적 지명 공표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사업 제의」에 대한 반응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의(83.1.18)	「당·사회단체연합」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철수의 단일의제 • 남북의 각 3개 정당대표로 예비회담
연방기구 운영방안 제의(83.9.9)	김일성 연설(「9·9절」경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장·공동위원장제로 윤번제 운영 • 국제적 비판에 대한 대응
3자회담 제의(84.1.11)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미국과 평화협정 • 後 우리와 불가침선언 ※ 군사문제선결 • 아웅산 만행과 관련한 위장평화전술
수재물자제공 제의(84.9.8)	북한적십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 수재물자 제공 ※ 우리의 「8·20제의」에 대한 逆제의
남북국회회담 제의(85.4.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성명 및 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 • 불가침공동선언문제 협의
남북대화 중단성명(86.1.20)	남북회담 북한측대표단의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훈련 구실
군사3당국자회담 제의(86.6.17)	「인민무력부장」(오진우)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중지 및 군비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담재개의 전제 조건화
<p>「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p> <p>86.12.30</p> <p>87.1.11</p> <p>87.1.30</p> <p>87.3.3</p>	<p>「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시정연설」(86.12.30)</p> <p>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의 대남편지</p> <p>※ 방송을 통한 공개제의 (87.1.11) 및 서한 (87.1.30, 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부총리급 (단장), 군총참모장급(부단장) 포함 7-9인 • 의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비방중상 중지 및 다방면적 합작교류)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무력축소,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연습 중지, 중립국 감시군 조직) • 기존대화재개의 전제조건화
<p>「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제의 (87.3.30)</p>	<p>「정무원총리」의 대남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회담(3.14제의) 수락 및 장관급 예비회담 제의(87.4.23, 판문점) • 先 총리회담, 後 기존 대화 재개 주장 • 의제를 군사문제에 국한
<p>남북대화 전면거부 성명 (87.4.24)</p>	<p>정무원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4.10자, 우리측의 기존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거부 반응 • 대화 중단 책임의 전가
<p>「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87.7.23)</p>	<p>정부 성명</p> <p>※ 「정부 성명」 형식은 이색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형식 : 남북한 및 미국의 회담에 중립국 4국 대표가 방청참가(1988년 3

		<p>월,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 1) 88-91년까지 단계적 무력축소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 하 병력유지) 2) 단계적 미군철수 (1992-완전철수) 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4) 중립국 감시군 주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말까지 인민군 10만 일방적 축소 · 「정치군사회담」의 직접 대화 논리에서 다시 「3자회담」으로 후퇴
<p>「3자의무장관회담」제의 (87.8.6)</p>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 (87.8.3)에 대한 「3자회담」(미국무장관 포함)의 선전 논리 · 차관급 예비회담(87.8월말)제의 · 쌍무적 예비접촉 주장 ※ 미·북한의 공식접촉 시도
<p>「남북연석회의」제의 (88.1.1)</p>	<p>김일성의 「신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범위: 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재야의 개별인사 · 협의사항: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문제, 군축문제, 올림픽 공동주최문제, 비방중상 중지문제

<p>「남북연석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제의 (88.1.14)</p>	<p>중앙인민위·정무원·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회담 명의의 편지)</p>	<p>일시 : 88.2.19 장소 : 판문점 대표 :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5-7인</p>
<p>「남북학생회담」제의 (88.4.2)</p>	<p>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및 조선학생위원장 공동명의 편지</p>	<p>일시 : 88.6.10 장소 : 판문점 ※ 88.3.29,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국토 중단순례” 실현공약에 대한 반응</p>
<p>「남북국회연석회의」제의 (88.7.21)</p>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의 편지</p>	<p>· 의제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 회담형식 : 예비회담없이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8월중 평양 ※ 88.7.9, 우리 국회의 “88서울올림픽 참가촉구결의”통보에 대한 반응 · 북한은 동일자로 미국 상하 양원에 미·북한 국회회담을 제의</p>
<p>「고려연방제」실무협의를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구성 제의 (88.9.8)</p>	<p>「정권창건 40주년기념연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p>	<p>·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 및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제시</p>
<p>「평화보장4원칙 및 포괄적 평화보장방안」발표 (88.11.7)</p>	<p>「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 연합회의」성명</p>	<p>· 4원칙 : ① 통일지향 ② 외군철수 ③감군 ④ 당사자협의 (3자) · 방안 : ①단계적군축 ② 정치군사적 대결완화</p>

<p>「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제의 (88.11.16)</p>	<p>「정무원 총리」의 편지</p>	<p>· 의제: 정치군사적 대결상 태 완화 (비방중상 중지·체제반대 법제 폐지·합작교류·비 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연습 중지·군사책임 자간 직통전화) 대표: 부총리급을 대표로 7-9인 일시: 88.12월 중순 ※ 전항의 평화공세의 일 환</p>
<p>「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 한 범민족대회」를 위한 예 비접촉제의 (88.12.9)</p>	<p>「조국평화통일위원장」 (허담)의 성명</p>	<p>· 한국 재야단체의 「조국 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창을 수 락하면서 남북 및 해외 동포 대표의 예비접촉 제의</p>
<p>「3자회담」을 위한 실무대 표 접촉 제의 (88.12.20)</p>	<p>「정무원총리」(연형묵)의 편지</p>	<p>· 남북한 및 미국의 차관 급 실무대표 · 12월중 제네바 등 제3국</p>
<p>「남북체육회담」제의 (88.12.21)</p>	<p>북한 올림픽 위원장(김유 순)의 편지</p>	<p>·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에 단일팀 구성 출전을 위한 회담</p>
<p>「전대협」을 제13차 세계청 년학생축전에 초청 (88.12.26)</p>	<p>「축전준비위」 및 「조선학 생위」의 공동명의 편지</p>	<p>· 학생대표 9-11인으로 3 월초 판문점에서 예비 회담을 열 것을 제의</p>
<p>「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 (89.1.1)</p>	<p>김일성의 「신년사」</p>	<p>· 「고려연방제」협의를 위 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한국의 4당 총재 및 재야인사를 지 명 통보</p>

<p>총리급 고위 정치군사회담 수락 (89.1.16)</p>	<p>「정무원 총리」의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12.28, 한국 총리의 「고위 당국자회담」제의 서한에 대한 사실상의 수락
<p>「민족통일 협상회의」제의 (89. 9. 28)</p>	<p>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남북동수의 代表 60명 내외 • 의제: 1)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의 조국통일 방도 협의문제 2)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선언 문제 • 형식: 多務的 圓卓會議 • 일시 및 장소: 90. 2. 20, 평양 ※ ① 「정치협상회의」의 명칭변경 불과 ②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응조치
<p>동 「협상회의」 예비회담제의 (89. 12. 14)</p>	<p>동 「협상회의」 북측준비위원장(정준기)의 대남 편지(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 1. 17, 판문점(각계대표 1~2명)
<p>「남북한당국 및 정당 수뇌 협상회의」제의 (90. 1. 1)</p>	<p>김일성의 「신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형식: 남북의 최고 위급이 참가하는 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 • 협의대상: 남북자유왕래 및 전면개방등 구국대책 협의 ※ 1) 남쪽의 콘크리트장벽 철거 주장 - 동베를린 장벽 제거와 관련한 기만술책 2) 「남북정상회담」의 거부논리

8. 統一의 展望

남북한의 통일관, 통일정책, 통일접근자세는 상극적이리만큼 대조적이다. 다음의 비교일람표<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의 개념, 목표, 주체, 원칙, 과정 등의 근본적인 차이는 통일을 민족의 화해와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으로 보는 우리의 통일관과 이를 계급혁명⁴²⁾을 통한 전한반도의 공산화라고 보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통일관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표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일람표

구분		한국	북한
요소별			
정책면	통일의 개념	민족공동체 회복·발전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의 목표	국가적통일(1민족1국가)	연방제 (지역자치제)
	통일의 주체	민족	노동계급 (공산당 및 동조세력)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의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연공합작) (통일후 교류협력)
	통일의 과정	남북연합→통일민주공화국 (민족통합)→(국가통일)	선 남조선 혁명 후 흡수통일(적화통일)
접근자세면	전제조건문제	조건없음	선결조건 제시
	상호인정문제	동반자 관계 지향 (정치적 실체로 인정)	체제부정 (혁명의 대상)
	대화기구문제	실질적 협의기구	군중대회(선전장)
	교류·협력문제	당장 실시	연방제 실시 이후

42)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해방노선에 관하여는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구조 비교” 전계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P.79이하 참조

이와 같은 외형상의 상극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내부의 여건은 내면적으로 착실하게 성숙하고 있으며, 통일환경도 예상밖의 빠른 속도로 바람직하게 조성되고 있다.

첫째, 우리의 통일주도역량이 신장되어 북한을 대결·경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동반자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포용하여 돕고 이끄는 통일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주체역량의 신장에는 민족의 저력과 자각에서 비롯된 성숙한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 민주발전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국력의 신장과 이에 따른 국제적 지위의 향상, 서울 올림픽을東西和合과 민족문화 선양의 大祭典으로 성공시킨 민족적 자긍과 국위선양, 北方政策 성과의 可視化⁴³⁾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뒷받침한 것이다.

둘째,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여야 하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할 북한은 아직도 교조적이고 군사모험주의적인 대남혁명노선과 시대역행적인 폐쇄·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도 자유와 인권, 민주와 복지, 개방과 실용, 화해와 평화, 공존과 공영을 향한 세계적 추세와 이에 합류하는 공산권의 개방 및 개혁의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⁴⁾ 이에는 소련·중국 등 배후세력의 압력, 북한주민의 욕구수준 향상, 외부 文物의 유입에 따른 폐쇄

43) ① 동구권 수교관계: 헝가리(89.2.1) 폴란드(89.11.1) 유고슬라비아(89. 12. 28)

② 소련 및 중국의 당국 및 각계가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實存하는 현실 인정 및 한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③ 공산권과의 무역사무소 개설: 소련(영사관계 대행) 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90년예정) 등

44) 89년 10월, 제44차 성체대회(서울)에 참가한 로마교황(요한 바오로 II세)은 “동구권의 개방과 개혁은 그들에게는 자유와 민주 기초가 있기에 빠른 진전과 확산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큐바에는 자유와 민주 기초가 없으므로 그 파급에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및 통제의 한계성, 「자급자족적 자력갱생노선」의 허구성⁴⁵⁾, 남북한 발전격차의 현격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노선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체제는 이같은 안팎의 압력으로 限界狀況을 맞고 있으며, 노선 선택의 岐路에 서있다고 볼 수도 있다. 1989년 11월 5일의 김일성의 중국비밀방문이 그 焦燥와 진통의 徵候群(Syndromes)일 수도 있다.

셋째, 통일환경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주변정세를 비롯한 국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에는 주어진 것(所與)도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所得)도 있다. 미·소간의 INF폐기협정 체결로 상징되는東西의 화해와 협력, 中·소의 관계정상화, 정치이데올로기와 명분보다는 國益을 우선하는 실리외교 추세, 공산권의 개방·개혁 확산현상 등이 前者에 속한다면, 북한의 동맹세력인 중국·소련까지도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랄 뿐 아니라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아 본받겠다고 교류·협력 및 실질관계 개선을 위해 접근하도록 만들고, 동구권의 헝가리,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와의 修交, 소련·불가리아와의 상호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 특히 소련과의 領事關係 수립 등으로 이룩한 통일환경의 개선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後者에 속한다.

가. 통일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평화와 통일의 길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併存하

45) 북한의 「자급자족경제」는 사실상 허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과학 아카데미 동방연구소의 게오르기·뭉로라야 박사는 “북한에 있는 공장·기업소 64개는 전적으로 소련의 원조에 의해 건설 운영되고 있고, 1993년까지 원조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19개에 이른다”고 공개하였다.(87.2월호 「극동의 제문제」誌, 모스크바)

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와 문화전통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統一意志를 들 수 있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나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의 민족이질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민족문화적 동질화의 가능성과 復元力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 남북간의 인적 교류폭이 확대됨에 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는 5천년의 민족문화를 「공산주의적 새 型의 인간」⁴⁶⁾개조를 위한 40여년의 政治教化로는 말살시킬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와 통일의 주·객관적인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① 주체적 통일주도역량의 신장 ② 북한의 노선조정과 변화의 불가피성 ③ 국제적 통일환경의 개선을 이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인 통일저해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통일주도역량면의 내부적 취약점을 들 수 있다. 만일 우리 체제가 민주발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상충하는 욕구, 무분별한 통일논의로 인한 국론분열, 사상적 혼미, 지역·계층간의 갈등 등 제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하지 못하여 정치사회적 혼란과 국가안보상의 취약점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이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이용하고 「남조선혁명」 또는 「제2의 월남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오늘날 내외적 필요성과 압력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회를 개방하고 西方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공업을 육성하

46) 북한의 교육목표이다 (북한헌법 제39조)전개 「북한개요」 P.355참조

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경제노선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우상화를 바탕으로 한 김일성 세습독재체제의 속성 때문에 개방과 개혁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남혁명노선에 변화가 없는 한 개방과 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일 對南路線의 수정이 없는 개방과 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혁명역량 제고를 위한 「혁명기지」 및 「남조선혁명 지원 역량」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평화와 통일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환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주변4강의 오늘의 對韓半島政策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現狀固着化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통일, 즉, 정치공동체의 완성에 대해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이념·체제·대외정책의 여하에 따라 강대국들의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① 우리의 주체적 통일주도역량 ② 북한의 노선과 기도 ③ 국제적 통일환경이라는 통일여건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나. 短期 및 中·長期的 展望

1988년 후반기 이래 우리 민족내부에서는 통일기운과 통일열정이 어느 때보다도 드높이 표출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남쪽에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북한자료를 공개하고 통일논의를 개방화·활성화시키면서, 「7. 7선언」과 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펴왔고, 여기게 올림픽 이후의 민족적 자긍심과 재야 운동권의 통일운동도 加勢·작용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정과 기대를 고조시켰다. 북쪽에서는 남쪽의 정치적 과도기를 겨냥하여 多次元的인 대화 및 평화공세를 펴고 선별적인 유인공작까지 벌여 환상적인 통

일분위기를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더욱이 1989년 하반기 이후의 東歐圈의 개방과 개혁 추세, 특히 1989년 11월 9일의 동독의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국경의 개방과 이에 따른 동서독 통일기운의 波長이 우리 통일열정을 더욱 增幅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통일열원이고 정책적 지향일 뿐이지 평화와 통일의 實體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의 先決」을 표방하여 왔지만, 그 해결을 위한 「고위당국자 회담」이나 「국회회담」까지 여러가지 구실로 遷延시켜 왔다. 이렇듯 당국간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반정부적인 「全民聯」⁴⁷⁾, 「全大協」에는 추파를 보내고 회담도 제의하였으며, 개별인사의 密入北 유인공작도 펴 왔다. 그들은 이미 합의한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서울·평양 교환방문까지도 파탄시켰지만, 타도의 대상이라고 선전하던 이른바 「매관자본가의 총수」격인 한국의 기업인을 고향방문 명분으로 초청하여 국민 예우를 하면서 금강산 공동개발과 중공업분야의 합작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대화 및 평화공세를 통해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지원하겠다는 공공연한 도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平祝」이후 외래 사상과 풍조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치사상교육과 노력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총동원을 선동하는 데는 남북대화 진전이 가져올 화해분위기보다는 팀스피리트훈련을 「북침전쟁演習」이라고 선전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1~2년의 단기적인 전망은 비록 몇 가닥의 남북대화가 斷續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관

47)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계 개선이나 생산적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빠르면 1990년대 초, 늦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의 중·장기적 전망은 통일을 향한 공존공영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20세기가 가기 전에 민족의 화해와 공존공영의 바탕 위에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국가통일의 기반인 「민족통합」을 의미하는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는 주·객관적 요인들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초에서 중반에 걸쳐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민주복지국가로 되어 공산권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제적 지위에 설 것이다. 북한은 명실 공히 경쟁·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유일사상체제」와 교조적 대남혁명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공산권에서도 고립되고, 체제 자체를 지탱하기도 어려운 안팎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 쯤에는 정치·경제적 노선을 실용적으로 수정하고 사회를 부분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빨치산 世代의 퇴진, 정규교육을 받은 테크노크라트의 등장, 주민의식 및 욕구수준의 향상, 외래사조와 정보로부터의 완전 차단 불능, 중·소의 압력 등이 이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환경의 중장기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제질서와 정세는 공존·공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며,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개방화·자유화·민주화·다원화·실용화·복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1990년대 중반 쯤에는 우리 북방정책의 성과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가 증진되어 국제적 동반

자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통일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국민의 슬기와 힘으로 극복·개선하여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의 垂範·先導·包容으로써 極大化하여 나갈 때,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9. 結 言

우리 민족의 생존·번영·자유와 自尊이 걸린 평화통일은 「되는 것」(Werden)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Machen)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기와 힘으로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가 실현시켜야 한다는 민족사적 소명의식, 민족주의에 바탕한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신념,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 등은 통일의 원동력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분단시대를 사는 현세대의 책임이다. 왜냐 하면 빠른 기간 안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면 민족사의 단절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평화통일주도역량을 기르고, 민

족의 화해와 평화, 민족의 공영과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국론통일과 국민화합을 바탕으로한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전쟁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지켜야 한다. 국가안보의 연장선상에 평화적 통일이 있다.

둘째, 정치발전과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기르고 위어서 남북한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 국력은 곧 重力이요, 重力은 곧 引力이다. 우리가 먼저 선진적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 통일의 準據가 되는 모범을 보일 때, 북한을 민족의 품에 안기게 하는 포용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의지와 역량으로 북한에 대한 설득과 포용을 적극화하여 평화·화해·공존·공영·통일의 광장에 동참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태양과 바람의 외투 벗기기”에서 보여주는 이솝의 寓話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분단 40여년이 길고 비극적이었지만, 5천년의 민족사에서 보편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반세기의 분단사 중에서 남북한간에 대화와 접촉이 시작된 것은 18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5년이나 10년은 우리가 겪은 50년이나 100년보다도 더 빠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단정할 수 있다. 인류문화도, 과학기술도, 思想思潮도 그렇고, 우리 통일문제도 그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1990년은 광복의 환희와 분단의 비통을 같이한지 45년이 되고, 20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는 해이다. 이 1990년을 평화와 통일의 元年으로 삼아 1990년대를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한 우리 세대의 보람찬 연대로 民族史에 새길 수 있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런 밝은 전망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봄이 가까와졌다는 분명한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II.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柳 仁 澤 (國土統一院 研究官)

1. 문제의 제기	126
- 주변정세에 대한 문제의식 -	126
2. 최근의 주변정세 개황	128
3. 주변 주요국의 政策方向과 한반도	132
가. 蘇聯의 政策방향과 한반도	132
나. 中國의 政策방향과 한반도	141
다. 日本의 政策방향과 한반도	152
라. 美國의 政策방향과 한반도	159
4. 統一環境의 변화	168

1. 문제의 제기

- 주변정세에 대한 문제의식 -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180여개의 국가들이 서로 얽혀서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들은 공간적 거리를 초월해서 서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適者生存의 법칙에 변함이 없고 보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변의 정세변화를 직시하면서 그 속에 잠복해 있는 도전요소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劣敗國이 되지 않을 필수 조건이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이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 지고 있듯이 그만큼 국제질서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있어서도 급격해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정세 변화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현재도 휴전선을 경계로 南과 北이 分斷構造를 유지하면서 안보면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 구조는 바로 平和와 統一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주고 있고 이 구조 자체가 강대국의 역학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地政學的 특수성으로 주변정세 변화에 어떤 나라 보다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舊韓末에 경험했던 역사의 교훈은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흔히 지정학적으로 변경적위치, 교량적위치, 완충적위치 혹은 중앙적위치 등의 성격을 갖는다고 일컬어 지고 있다.

邊境의 위치(Rimland Country)란 아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

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침략세력이 침투할 때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소지가 높다는 의미에서 분쟁가능지역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

교량적위치(Bridge Country)란 중·소 등 아시아 대륙세력과 美·英·日 등 해양세력이 각각 해양과 대륙쪽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할 경우 통과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서 양대세력은 다리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멀리는 임진왜란(1592-1598)때 도요도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征明假道란 말이, 근세의 淸·日 전쟁(1894), 노·일전쟁(1904), 中·日전쟁(1937) 그리고 한국전쟁(1950)등이 한반도가 지닌 교량적 성격을 잘 대변해 주는 예이다.

緩衝的위치(Buffer State)란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며 中央的위치(Central Country)란 주변 강대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높고 약할때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지만 강할때는 주변강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특징은 우리나라가 주변정세 흐름에 항시적으로 긴장을 이완시킬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19세기 말엽에 우리나라는 西勢가 동쪽으로 밀고오는 엄청난 변동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對중국사대주의와 시대착오적인 鎖國政策으로 亡國의 길을 걸었었다.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의 신흥세력앞에 이미 무력해진 淸나라에 안보를 의존하려 했는가 하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서구 열강과 동맹외교를 펼치며 단계적으로 공략해 들어오는 일본에 매달려 독립을 보존하려고도 하였다. 러시아의 南進을 막기위해 일본과 영국이 제휴하자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 독립을 보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俄館播遷」이라는 수모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구한말의 역사에서 겪었던 이러한 방황은 주변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파벌싸움등에 눈이 어두어 자주적 정

세관을 확립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국권을 빼앗겼고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 주변정세 변화에 둔감했던 역사적 소산이었다는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정세 변화에 민감한 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정세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통신, 매스컴의 발달로 국내문제의 국제화, 국제문제의 국내화가 일상화 됨에 따라 주변정세의 범위와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가 우리의 통일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주변정세의 흐름을 한반도 통일환경의 시각에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2. 최근의 주변정세 개황

「20세기 종반의 가장 웅대한 드라마」로 표현되고 있는 공산권의 大變革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소련 공산사회의 일대 構造變革을 시도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뿐 아니라 동구권을 중심으로한 공산권 전체에 상상을 넘어선 변혁을 불러일으키면서 전후 40여년간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冷戰體制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

동유럽의 모든나라에서 공산당 독재가 청산되고 복수정당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언론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동서 유럽 분할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을 사실상 철폐하고, 동서독이 비자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독일과 베를린의 분할은 2차대전 이후 전후 체제를 결정지었던 얄타체제의 심벌과 같은 것이었다. 얄타체제는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 수뇌가 얄타에서 회담을 갖고, 전후 국제질서를 美·蘇 兩頭지배아래 두기로 한것이 기본 뼈대였으며 한반도는 “38도선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소련군 책임으로 무장해제시킨다”는 戰域分担 합의에 따라 얄타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얄타체제는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장벽을 설정한 양태로 전개되었는데, 국제질서는 美蘇를 축으로한 양극구조로 이루어졌던 것은 終戰후 미국은 동맹국과 과거 적국(獨, 日, 伊)에 대한 경제원조 그리고 소련은 이념전파 및 군비증강으로, 강력한 세력권을 각각 형성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즉, 동유럽은 소련체제의 직수입을 통해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통제경제 체제와 전체주의적 정치제도를 이식받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군사적 유대를 유지해 왔다. 서유럽의 경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설치로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 들었다.

그러나 이 양극체제는 70년대초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60년대중반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군사비를 지출함에 따라 국내 경제체제의 개편 없이는 경제적 요구와 군사지출을 병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도 베트남戰 이후 점증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및 달러貨의 약세로 終戰직후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대초 美蘇양국은 전후 처음으로 동·서 데탕트에 합의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 데탕트 기간중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를 면치

못했다.

서방진영도 일본의 경제력 신장을 비롯한 경제적 다원화의 출현은 미국의 안보 유지역할과 경제력과의 사이에 격차를 유발시켜서 유럽안보, 경제질서의 유지를위해 끊임없는 협상과 조정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스탈린이 당초 동구권 지배를 추구한 주요동기는「완충방벽」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동구권 지배는 소련 안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냉전을 촉발, 서방과의 힘겨운 군비경쟁과 衛星管理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東유럽은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았고 이에 반해 소련은 동유럽으로부터 저질의 소비재를 수입하는 불리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核시대에 있어서 소련의 동구지배 의미는 쇠퇴하고 영토지배 차원의 안보개념이 낡은 것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귀결인 셈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는 이와같은 배경에서 ①비정상적인 경제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며 이는 소련의 對東歐 경제원조의 축소를 상정하고 있고 ②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스탈린식의 일국사회주의의 수출이 아니라 각 국가별 독창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사회주의 발전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전략은 소련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인정하면서 미국의 對유럽 영향력축소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이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 구상의 핵심인 것이다.

한편 서방국가들은 소련의 공격위협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무역마찰 등 경제관계에 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따라 미국의 정치가들도 나

토 예산지원 등의 문제 보다는 국내 문제에 보다 관심을 쏟게 되었다. 美 前상무장관 베리타씨가 1989년초 “90년대는 경제전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경제전쟁은 바로 무역이다”고 한 발언은 앞으로 미국도 이데올로기 보다는 경제문제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세기末의 세계는 양극적 냉전구조인 알타체제에서 다원주의 데탕트 또는 소련공산주의 퇴조라는 세기적 전환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核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없는이상 다극체제化는 형성과정에 있는 것이며, 당면과제는 유럽의 변화를 어떻게 안정속에 끌고 가느냐가 주요 잇슈로 될 것이다.

1989년12월2일~3일 부시 美대통령과 고르바초프 蘇최고회의의장은 「몰타會談」을 갖고 “이제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질서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한바 있다. 美·蘇간에는 군축문제(핵무기 폐지 감축과 재래식 병력 축소), 동구 및 독일문제, 지역분쟁 문제 등에서 利害를 달리하고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연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는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유럽에서는 화해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印度支那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美蘇가 테탕트를 성공시키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토록하는 압력이 될것이며 나아가서 남북한 교차접촉, 교차승인을 자극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장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유럽에서는 반세기 가까운 대립구조가 붕괴되고 美蘇 냉전의 종말을 함께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脫냉전의 시대적 조류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한반도는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주변 주요국의 政策方向과 한반도

가. 蘇聯의 정책방향과 한반도

(1) 정책기조

소련은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알타체제의 한 주축으로서, 한반도를 직접 분단시킨 당사자로서, 공산권의 종주국으로서, 현재도 북한에 무기를 공여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으로서, 시베리아를 염두에 둘 때 앞으로 우리와 경제교류확대 등, 그야말로 다각적 측면에서 우리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변화와 대내외정책방향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련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黨서기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내걸었는데 이는 再編, 운동, 개혁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또 「그라스노스트」(Grasnost)와 「노보예 무쉬레니예」(Noboe Mishelenie)라는 개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그라스노스트」는 공개성, 공공성, 개방, 「노보예 무쉬레니예」는 「新思考」의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개혁의 부분으로 취급된다.¹⁾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토로이카」를 제기할 때마다 근원적인 개혁을 얘기했다. 피상적인 개혁으로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1) Political Science & Politics, June, 1989. pp. 191~240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소련 經濟의 구조적 침체문제이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경제는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와있다”고 지적했듯이 소련 경제의 주요지수는 소련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소련 경제는 1960년대에 연4%의 성장에서, 1970년대는 3%를 하회했고, 1980년대에는 2%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의 대비에서도 1960년에 소련의 GNP는 미국의 47.7%, 1975년에는 57.9%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1984년에 와서는 57.7%로 상대적인 감축을 보여주었다. 소련은 戰後 5개년 경제계획을 12차 시행해 왔고 「스타하노프운동」을 비롯한 노동력 동원운동도 펼쳐 봤지만 인민의 생필품문제도 해결못하는 후진성을 보이면서 경제구조의 모순만을 누적시켜 왔다. 소련 경제가 침체하게 된 주된 이유는 1인당 GNP 7,000\$ 수준 이상을 포용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즉 私所有를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노동 인센티브가 없고, 아우타르키(自力更生)원칙은 「국제비교우위론」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며, 특히 「빵과 군사력」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군사비의 압박은 경제사정을 악화시키기 마련이란 것이다.

둘째는 軍事費用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와 군비경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대두이다. 소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하고 비용감소를 위해서 군사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소련이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는 연간 3,000억 \$ 대로서 이는 부담한계를 넘어선 過부담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소련의 군사전략은 가상적국들의 군사력 총량만큼 대응 군사력을 건설하여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무한 경쟁을 계속 할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다. 오히려 자국 군사력을 1/2쯤 줄여도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²⁾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군비증강책 및 전략방위계획 추진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관련, 소련으로 하여금 확대균형적 군비경쟁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볼수 있다. 군비경쟁의 지속은 경제적 출혈은 물론, 불필요한 대량파괴무기(核)의 축적이라는 비합리성과, SDI로 인한 핵균형의 安定이 파괴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경제의 침체속에서 SDI를 포함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확대균형적 군비경쟁을 해야할 것이냐에 대해 회의론이 대두된 것이다.

셋째는 소련 국민의 民主化 욕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대이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1억이 넘고 대학 출신자도 1천2백만이 넘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화 민주화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支分國들의 민족주의 의식까지 심하게 표출, 합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혁명」으로 비유되는 개혁정치를 발상했고 추진해온 것이다. 그동안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아래 추진해온 정책은 대내 민주화확대, 대외경제개방(교역의 확대, 합작을 통한 자본, 기술, 경영지식 도입등), 축소균형 군비축소지향, 동구권 개혁지원등 다양한 개념이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는 군사력 균형문제에 대해서도 군사력증강에 의한 전쟁억지가 아니라, 상대국과 정치적으로 협조·의존 체제를 만들어 전쟁을 억지 하겠다고 하는, 즉 군사력균형에 의한 전쟁억지에서 정치력에 의한 전쟁억지(利害의 균형)로 구조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지역분쟁 개입문제도 그것이 對美관계를 불편하게

2) 소련 과학 아카데미 산하 미국·캐나다 연구소 S. Rogov 박사 내한발언(1989. 2.29. 단국대 학술토론회)

하고 군사적,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인식하에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현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여주듯이 무력에 의존한 국제문제 해결방법을 탈피, 관련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킨 정치적 타협을 지향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국제관계에서 민주화를 제창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호 평등을 기초로 각국들의 독자적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이데올로기적 선택까지 포함) 이해의 조정을 통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88년4월 베오그라드에서 「독자사회주의」를 선언한 이래 89년末 유엔연설에서 “모든 국가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재확인하고 89년10월 바르샤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이른바 브레즈네프의 「주권제한론」을 수정하고 동맹국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기조가 동구권의 개혁과 변화를 가속화 시켰음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이상과 같은 소련의 정책 즉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대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 동서 양진영의 관계를 이념과 정책적 차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收斂한다고 보는 「수렴론」(Conversionist)과 본질적으로 합류·수렴될 수 없으며 끝내는 평행선을 긋는다는 「평행론」(Parallelism)이 그것이다.³⁾ 그리고 「합류·수렴론자」들은 데탕트론자와, 「평행론자」들은 냉전주의자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수렴론·데탕트주의자들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즉 1987년12월 美蘇간의 INF 폐기협정, 1986년7월 블라디보스톡선언에 뒤따른 새아시아 정책(소련군의 아프간 철수, 중·소관계 개선, 한·소관계 개선등), 1988년4월 “新베오그라드 선언”으로 바르샤바 동맹국가간의 상호

3) 梁性誌, “北方外交와 韓半島”, 「國會報」(1988.12), p.107

불간섭 및 독자성 인정,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亞·太, 새 정책 제안으로서의 7個案 제시, 1988년 12월 유엔 연설을 통한 50만 병력의 일방적 감축 선언 등을 소련 내부 변화와 함께 동서간의 변화를 연결해서 동·서간의 화해·수렴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반대로 「평행론, 냉전주의자」들은 위의 일련의 정책변화나 노선 전환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방편일뿐 아니라 소련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그 개선을 찾는 전술적 입장에서 풀이를 해야지 美·蘇 및 동·서 해빙, 화해의 선상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 논리에 의하면 INF 협정은 미국이 유럽 NATO국들에 배치한 퍼싱(Pershing) II 및 크루즈(Cruise) 미사일과 관련, 그 배치 반대의 실패를 역전하려는 것이며, 아프간에서의 소련군 철수도 침공의 실패에서 찾아야 하고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내정의 실패를 모면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논지의 중요한 근거로 니카라과를 든다. 즉 미국의 니카라과 叛軍 지원은 실패하고 소련 지지하의 산디니스타 정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對니카라과 정책에 관한 한 아무런 양보나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그의 저서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념적 원천은 레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 말도 평행적 시각에서 본다. 따라서 이들은 소련의 새 정책노선을 단순히 제국적 선별방식(Imperial Triage)으로 본다. 즉 실패한 것은 빨리 버리고 실통치 않은 정책은 척결하고 성공사례는 고수한다는 지론이다.

생각컨대 동서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수렴론·데탕트주의자」들처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으나 역으로 「평행론·냉전주의자」들처럼 지나치게 경계·비판적 관점으로만 볼 수도 없다. 양진영의 이념적, 정책적 괴리는 인정하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진지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고르바초프의 진의는 냉전체제의 핵심인 東歐 지배정책을 종식시키느냐의 여부에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볼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것 같다. 동독, 체코, 불가리아 개혁은 그의 입김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헝가리 개혁세력에 공개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폴란드공산당이 선거에서 패하고 자유노조의 정부구성노력을 방해하고 있을때 공산당 지도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9년12월 몰타會談후 고르바초프는 부시 美대통령과 더불어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오늘날 東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일이며, 그 시기는 이내 성숙돼 있었다.”, “그들 노력이 하나같이 民主化, 인도주의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모색하는데 있음을 보고 스스로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장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소련체제를 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⁴⁾ 그러나 이 改革政策이 成功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對한반도 정책

韓·蘇간에는 1989년12월8일 사실상의 領事관계를 수립하였다. 서울과 모스크바에 있는 양국의 무역사무소에 각각 별도의 領事處(Consular Department)를 설치하고 영사(외교관)를 파견하여 영사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서 韓·蘇간에는 1904년 노·일전쟁후 파브로프(PABLOV)대리공사가 서울을 떠난후 85년만에 영사관계를 다시 갖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北方政策과 소련의 「新思考」(noboie mishellenie)외교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Robbin F. Laird, "The Gorbachev Challenge," in *Soviet Foreign policy*, ed. by Robbin F. Laird, Proceedings at the Academy of science, Vol. 36, No. 4, New York, 1987, p.3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소련이 1973년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한국팀을 초청한 일이 있고 동년 6월 한국의 全經聯 회장(金容完)과 민간기업인(全澤瑤)에 입국사증을 발급한 것을 시발로 80년대 중반까지 극히 적은 차원에서 人的·物的 교류를 이어 오다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는 상당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다. 특히 1986년7월28일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하여 소련도 亞·太국가임을 선언하고 시베리아 개발을 거론한 점과 1988년9월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하여 한반도의 여건호전에 따라 한·소간에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이래 양국관계는 가속적으로 진전되었고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의 소련의 對韓접근자세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문화예술단(발레단, 연주단)을 한국에 보내 우호적·문화적 이미지를 부식시키려고 한것은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련이 한국을 단순한 무역의 상대자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협력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자원의 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서유럽에서는 西獨, 東아시아에서는 한국을 통하여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을 누차 직·간접으로 나타냈었다.(국제학술회의 등)

1988년 10월에 소련연방 商議 부회장 골라노프(Golanov)가 방한하여 한국의 무역진흥공사와 업무협력체결에 합의하고 드디어 1989년 4월 3일 양국의 무역사무소가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개설되었다. 한·소간의 무역량은 약 3억\$대로 추정되어진다. 그것은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기업이 소련내에 합작회사로 진출하고 있고 소련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에 우리 기업이 대거참가하는등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소 양국의 이해와 관련된 공동 관심사는 시베리아 개발 문

제이다.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소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베리아야말로 미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경제의 앞날은 시베리아 개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內治上の 최대 잇슈는 성공적인 시베리아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베리아에는 소련 목재 생산량의 99%, 석탄 매장량의 75%,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60%, 가용수력발전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 寶庫이다.

지난 87년 8월 26일 「프라우다」지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소련은 3,590억 \$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이지역 개발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 및 원유 생산을 2천년까지 2~3배,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은 7~10배 증가 시키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천연자원 보유지역에서 공업지대로 변모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는 美·日 등 서구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인접한 亞·太 국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편 미국은 자국 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급선무이고 한편 시베리아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시베리아 개발 지원이 자칫 소련의 국력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도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시베리아 개발로 소련의 국력이 강화되면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른바 북방 4개 도서 반환 문제와 시베리아 개발 참여 문제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56년 10월의 「일·소 공동선언」은 하보마이島 및 시코탄島는 평화조약 체결 후 양도하고 에도로푸島와 구나시르島는

계속 심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소련의 공식 태도는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개도서 그 자체로서 소련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들을 일본에 반환하였을때 2차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취득한 영토의 반환이라는 위험한 선례가 되므로 선불리 반환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ASEAN국가들은 경제력도 미약하지만 스스로 영역내에 미개발지역들을 가지고 있어 시베리아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처지가 못된다. 이렇게 볼때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소련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서 한국이 꼽힐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련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베리아 진출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일본과 미국을 자극해 보자는 2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 소련이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경제적 이유로 보여진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토협소, 자원부족등 자연적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시베리아나 만주땅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의 개발에 참여하여 「생활의 공간」을 확대시키는것이 「북방정책」의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일본과 미국이 망설이고 있을 때가 우리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베리아와 만주개발에서 몇천억\$의 일감을 따기위해 美·日·韓이 각축을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는 직접 유럽에 화물을 보낼수 있는 육로로서 우리가 이용할 경우 해상운송에 비해 1주일이상 운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소련은 정치적 이유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외교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므로 이에따라 한국과 경제관계를 넓히면 「정경분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한

• 소간의 외교관계 진전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소련은 한국과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영사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한·소간의 준외교관계, 더 나아가서 2~3년내 수교가능성까지 내다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소련과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 북한을 개혁과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남북한 역시 새로운 협력시대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외교 브레인인 알바토프(과학아카데미 美·캐나다 연구소장)는 몰타회담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았다.⁵⁾

나. 中國의 정책방향과 한반도

(1) 경제정책과 對韓협력

중국은 현대화를 위해 대외개방과 개혁의 두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정책은 1978년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3中全會에서 “금세기 말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겠다”는 「4대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계획이 제시됨으로써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현대화계획을 이념적으로 정당화 한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이며 그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鄧小平은 1982년9월 黨12全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현대화건설은 중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활용하고 참고하여야 하나 외국의 경험과 모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5) 「조선일보」 1989년12월5일자.

임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중국의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 위상에 관해서는 趙紫陽 총서기가 1987년 10월 黨13全대회 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가 상정했던 대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기초 위에 건설된 사회주의가 아니며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그 사정이 같지 않다. 인구의 1/4이 문맹 또는 반문맹이고 지역간, 부문간에 심한 격차가 엄존하며 과학기술의 평균수준은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7억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살고 기본적인 수공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의 특수한 사정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는데 중국으로서는 다시한번 혁명정권 수립 직후인 50년대 초기, 중기의 사회주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공유제와 사유제를 혼합한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⁶⁾

黨12全대회에서 趙紫陽에 의해 제기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가목표는 풍부하고 발전한 민주와 문명을 가진 사회주의 근대화 국가건설에 있다. 제1단계 목표는 溫飽(衣食의 최저한도)의 확보이며 그것은 이미 달성했다. 제2단계 목표는 小康사회의 실현이며 금세기내에 달성한다. 제3단계 목표는 1인당 GNP 4,000 \$의 중진국가 수준의 확보이며 2050년 전후에 달성된다. 초급단계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합경제의 확립이 지침이 된다. 생산관계에서는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전제로

6) Zhao Ziyang, “Advance Along the Road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s,” Beijing Review, November 9-15 1987, pp.III & IV.

하면서 개인경영, 사영경제, 경영청부나 리스, 외국자본과의 합작, 외국자본의 단독경영등 다양한 경제형태가 사회주의의 보완으로 허용된다. 분배에 대해서는 按勞分配(노동에 상응한 분배)원칙의 주도적 지위를 전제로 하면서 채권이자나 주식배당 등의 비노동수입(不勞소득)을 포함한 여러가지 분배형식을 허용한다. 先富(일부의 우선적 부유화)도 물론 인정된다。」

중국의 경제개혁정책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도시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계약액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부분은 농민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생산책임(청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83년까지 전국 농가의 9할을 넘을 만큼 보급되었다. 도시에서는 국영기업의 공장장책임제가 채택되고 利改稅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종전의 이윤상납제 대신 工商소득세제가 적용되었다.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법적으로는 79년에 제정된 「中外合資경영기업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경제 발전전략은 外引內聯(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 연해지방을 개발한후 내륙에 연계)東靠西移(동쪽을 개발하여 서쪽으로 이전) 등의 용어로 제시되고 있는데 궁극적 목적은 연해지역과 內地,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간에 나타난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중국전체의 균형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으나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간의 발전에 階層형성을 허용하는 합리성, 차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1979년7월 국무원이 廣東省 深圳에 외국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이어서 珠海,仙頭, 廈門 3개도시에 특구를 증설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84년3월에는 14個 연해도시 (大連, 秦皇島, 天津, 煙台,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福州, 廣

州, 湛江 北海)와 海南島를 개방했고 1985년1월에는 다시 長江三角洲, 珠江三角洲, 閩南廈(門)·漳(州)·泉(州) 3각지구를 연해경제개발구로 개방했다. 特區 우대정책을 點에서 面으로 확대한 것이다. 1988년 3월에는 대외개방의 범위를 다시 廣東省전역, 福建省전역과 陽子江3각주및 遼東반도와 山東반도에 까지 확대시켰다. 이리하여 외국으로부터 합자회사, 직접투자, 차관, 기술이전과 합작자원개발을 유도해 나갔다. 그리하여 1979년에서 1988년까지 중국은 16,325건의 791억 \$ 상당에 달하는 경제협력계약을 해외의 회사나 단체들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내개혁과 대외개방결과 중국경제는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즉 국민총생산은 1978년의 3,742억元에서 1987년에는 8,421억元으로 상승하여 2.25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재정수입, 국민의 평균수입 등이 2배를 상회했고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약 8~9%를 기록하였다. 1987년에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827억 \$)의 비중이 27.9%까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이제 멀리는 4대현대화의 완수를 위해, 가까이는 당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등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GNP에서 대외무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까이 달한다는 점은 중국 경제성장이 국제무역환경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안정된 대외정책 기조를 견지하여야 하고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개방을 권장하고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며 1984년이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이유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경제협력의 좋은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로 이미 1980년에 胡耀邦총서기와 趙紫陽총리가 그들의 개방경제정책이 한국의 발전경험에 자극을 받은것이라고 공언했듯이 한국에서 배울것이 있다고 본다. 둘째로 美國, 서구등의 기술에 비해

한국의 기술은 저렴하고 중국 수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인은 오만하고 대만인은 정치적 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로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하여 의사소통이 쉽고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在中 朝鮮族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75년 「社會科學」지에 쓰여진 黃大明外 7인의 논문 「亞·太 경제태세와 上海경제 발전전략」은 亞·太 경제 발전대를 ①廣州-上海-大連, ②홍콩-台北-釜山-블라디보스톡 ③大連-釜山과 東京-블라디보스톡의 세 경우 형성을 전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느 추세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이 10억 인구의 잠재시장이 현실적 시장으로 轉化되어갈 중국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을 견지해 가는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감은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對韓 인식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韓·中 간접무역은 1979년 2천만\$에서 84년에 4억6천만\$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年 30억\$ 수준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주요품목은 농산물, 견직물, 천연자원(석탄 석유) 등이고 중국이 수입하는 주요상품은 철강, 전기기구, 전자제품, 섬유, 화학비료 등이다. 한국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총액중에서 한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년 기준으로 85.2%에 이르고, 중국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이미 부상했다.

중국은 對韓경제협력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대표단을 교환하고 합자회사설치, 금융지원, 직접자본투자, 기술협력 등에 한국의 참가를 권장해 오다가 89년 「6·4 천안문 사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의 권력편성과 정책전개에 반성과 조정의 계기를 주었음은 물론이다.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그동안 중국측은 做多說小(교류는 많
이, 말은 적게)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차원의 교섭은 주저하면서, 민간레벨이나 省과
市단위 차원의 협조관계를 희망해 왔다. 말하자면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정부간의 무역대표부 설치마저 한사코 꺼려왔다. 그러나
경제협력과정에서 필수적인 상사, 무역대표부의 교환설치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천안문 사태 직전인 89년5월에 趙紫
陽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한·중교류협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중점
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對內 政情의 불안정에 불구하고, 또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 쏘아놓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사안으
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韓·中 경제협력관계는 양국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조정이 되고 유보되는 시점은 있을수 있으나 중·장
기적으로는 확대일로의 궤도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2) 中·蘇 和解

같은 공산국가 이면서도 적대시 하여왔던 중·소가 1989년5월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서 갈등 31년만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였다.

중·소는 1950년2월14일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군사·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다짐한바 있다. 그
러나 양국은 7,500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불분명한 국경선을 맞
대고 있고 외몽고의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된데다가 특
히 중국인들은 영토문제와 관련 소련에 대한 뿌리깊은 감정을 갖
고 있어서 양국간의 불화·갈등은 항상 잠재적인 것이었다. 중국
측에서는 제정러시아와 淸나라간의 불평등 조약으로 프랑스 크기
의 3~5배에 달하는 영토를 소련에서 탈취해 갔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다.⁷⁾

드디어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당대회를 계기로 양국간의 대립이 노출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이 후루시초프를 「수정주의자」로 비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분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근원적인 것은 영토문제에 대한 감정과 불신(국경지대의 소련 군사력 배치로 상승작용), 소련의 공산권내에서의 오만한 독단, 기술이전(核)에 대한 인식 등으로 中華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또 毛澤東의 탄압정책 즉 大躍進운동등을 떠나가는데 있어서도 수정주의적 요소를 차단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중국이 對蘇 투쟁선언을 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중·소관계가 더욱 소원해진 것은 1966년 문화혁명 이후이며 1969년 봄에는 우수리강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빚음으로써 노골적인 적대관계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드디어 1975년 중국의 제3차 헌법에는 소련을 제1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구절이 前文에 삽입된바 있고,⁸⁾ 드디어 1979년4월3일 중국은 소련과의 友好援助條約을 폐기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대내외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鄧小平의 「실용주의정책」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소간의 화해는 예상되는 것이었다. 특히 양국은 함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고 그

7) 중국의 주장으로는 1858년 愛璜조약으로 흑룡강성 이북으로 60만km, 1860년11월 北京조약으로 우수리강 以東으로 40만km, 1864년10월 西北경계의정서로 44만km, 1881년2월 伊犁조약으로 신강성위그르(ighru) 자치지구 7만km 計150km를 탈취해갔고 그의 에도 1911년 중국의 보호령 90km를 외몽고로 分離하여 1921년 소련의 보호령化 하였다고 함.

8) 중국 제3차 헌법 前文에는「...사회제국주의, 제국주의의 침략, 간섭,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의 표현이 있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화해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였는데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정책은 이른바 3대 장애물을 중국이 만족할 정도로 조건없이 제거했다.

첫째 장애는 국경선 확정과 국경지대의 군사긴장완화문제인데 국경회담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우수리강과 아무르강상의 국경선은 수로의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하기로 타결) 국경지대 병력도 대폭 후퇴시킴으로써, 사실상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⁹⁾

두번째 장애물인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소련이 철군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되었고¹⁰⁾ 마지막 장애물인 월남과 캄푸치아 문제는 캄푸치아 주둔 월남군을 철수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된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소 외상회담이 88년12월에 실현되었고 이어서 89년5월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8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31년만의 중·소화해가 성취된 것이다.

중·소 관계개선에 힘입어 중국은 이제 美·蘇간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시도하고 亞·太지역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大三角關係論¹¹⁾ 類가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中·蘇 등거리 카드의 활용 폭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對韓半島 정책

1988년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吳學謙 보고서는 중국 의

9) H. Ellison, "Recent Soviet Policy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oviet Union, China, and Northeast Asia, Seoul, Korea, June 26-27, 1988, p.6

10) *Strategic Survey*, 1987-1988, (London:IISS) pp.135~138.

11) 신화사 논실위원인 彭迪의 주장으로서 「2차대전후의 국제정치」는 美·蘇간에 중국이 어느쪽에 가담하는 不等邊 삼각관계였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等邊 삼각관계가 될 것이라는 이론임.

교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周恩來의 平和共存 5原則을 시대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동 보고서는 ①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평화유지에 노력한다. ②정책사항들을 개개문제별 처리의 원칙하에 실용적으로 결정한다. ③소련이나 미국과 동맹 또는 전략적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④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⑤경제·통상·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와도 협력한다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¹²⁾

위의 원칙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미·소 양진영의 어느 일방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70년대초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일본과 중국과 협력하여 소련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추구했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1989년5월 중·소정상회담과 함께 중·소관계가 정상관계로 회복됐지만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다음 「政經分離」원칙에 따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와도 경제협력은 도모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특히 對한반도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하여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어느나라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현대화된 기술 수준을 '88서울 올림픽 등을 계기로 여러번 확인했고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호의적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수천년 전부터 교호작용을 해왔던 한국과, 외교적 단절을 계속하는 것은 中華의 大道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의식하여, 동맹으로서의 의리와, 북한을 감싸주고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가

12) FBIS—CHI—88—066, April 6, 1988, pp.14~19.

지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먼저 북한과 미·일관계가 진전되지 않는한 북한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북한지역은 아직도 「중국의 정원」 같은 잠재의식이 있어서 북한의 비위를 건드려 소련에 밀착하게 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극히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1988년7월 李鵬총리는 일본의 신문책임자 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非官房의 기구를 통하여 무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년 9월 평양을 방문한 楊尙昆주석은 “중국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한국과 정부간의 관계를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김일성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1989년3월20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2차회의에서 李鵬총리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강조하고 한국과는 민간차원에서 경제관계와 무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관련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한 중국의 학자들은 예외없이 북한측의 정책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있다. 즉 고려연방제, 3자회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고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 등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은 소련, 동구권과 한국과의 관계진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헝가리와 한국이 1988년과 1989년에 맺은 협정들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북한의 반응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련과 한국의 협정과 정부차원의 교류상황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는 것을 환영하고 架橋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북경에서 美-北韓 외교관 접촉이 이루어 지는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1988년8월 다케시다(竹下)수상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와 1989년4월 李鵬총리가 동경을 방문했을 때,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미·일관계가 진전되면 중국이 對韓접촉을 더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趙紫陽이 89년4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金日成은 「2개의 한국」을 철저히 배격한다고 했으나 趙紫陽은 이를 거론하지 않은 점, 89년3월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통일정책도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것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 정부간의 접촉과 교류를 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1988년7월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의 訪中, 1989년5월 이규성재무장관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대회의 참가를 위한 방중이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4대원칙(마르크스·레닌주의 毛思想 견지, 공산당의 지도,사회주의 노선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을 고수하고 있고 또 대만과의 관계에서 一國二體制論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개방이 원심력이라면 4대원칙은 구심력이라고 할수 있으며, 한반도에는 二國論이 적용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공식외교관계수립은 공산권 국가중에서도 마지막 차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소련과 東歐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對韓 경제적 교류이익이 중국의 몫을 압도한다면 중국으로서도 對한반도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韓·蘇간의 사실상 領事관계 수립은 중국의 對韓정책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 日本의 정책방향과 한반도

(1) 정책기조

일본은 이른바 平成(국왕연호)景氣라고 하는 史上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대형경기를 실감케하는 일들이 日常의 주변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매년 10월을 「수입확대의 달」로 정해 “外製사오세요”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든지, 또는 고령자를 위해 여생을 안락한 곳에서 보낼수 있도록 알라스카, 호주 등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른바 「餘生村」만들고 있다든지(Silver Columbia 計劃), 89년10월 마꾸하리(幕張) 메세(Messe)라는 이름의 콘벤션 센터(大會場)가 도쿄 근교에 개관되었다든지¹⁵⁾ 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또 일본은 해외기업의 매수·합병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89년10월 미쓰비시(三菱)그룹에서 록펠러 그룹社(부동산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미국인들로 부터 “미국의 심장을 강탈해 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해외기업 매수·합병 건수는 88년에 315건 89년은 9월말까지 294건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2차대전의 마지막 승자는 일본이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나돌듯이, 전후 주요국들이 군비경쟁과 지역분쟁에 휘말리고 있을 때, 일본은 미국의 核우산 밑에서 安保무임승차(Free Rider)를 하고서 경제건설에만 매진한 결과 1인당 GNP면에서 86年末 기준으로 17,100\$을 기록, 미국의 17,000\$을 추월했고, 88年末현재 23,300\$을 돌파하여 미국의 19,800\$을 멀리 따돌렸다.

15) convention은 스포츠나 음악등의 이벤트, 국제회의 외에 기업이 행하는 각종 見本市 및 박람회, 상품쇼의 개최등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보와 문화 교류의 주체로 풀이 되고 있음,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컨벤션시대의 전제로는 귀족형의 예술과 클럽사회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messe는 중세 독일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을 찾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市 또는 市場의 개념임.

IMF는 88년도 일본의 수출액을 2,729억 \$, 수입액을 1,940억 \$, 무역흑자 935억 \$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일본은 84년에 456억, 85년에 616억, 86년에 1,061억, 87년에 94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축적해 왔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가 되었고 순 해외채권액은 약 3,000억 달러로서 미국의 순채무잔고 약 5,000억 달러와 대조된다. 88~89회계연도에 책정된 순 해외개발원조예산은 100억 \$로서 세계 최대 원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은 유례없는 대형경기를 창출한 경제富國이 되었다. 이제 일본은 “세계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는 세계최고의 기술과 최강의 경제력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역할, 특히 亞·太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日本史의 일관된 목표는 일본민족의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제패였다. 도쿠가와(德川) 막부 말기에는 「아시아연대論」, 明治시대에는 「大아시아주의」, 昭和시대에는 「東西연맹-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다.

亞·太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예컨대 정부개발원조를 88~92년 기간중 500억 \$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 70%는 아시아 국가에 원조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토 서방 7개국 정상회담직전인 88년6월 다케시다(竹下)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고 의견을 청취했는데 Nics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는 제스처라 하겠다. 또 일본은 87년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6개국 정상회담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국민의식이 군국주의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일부 지도층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는것은 주목해야 할일이다. 사

회학자인 시미즈기따로(清水畿太郎)가 1982년에 쓴 논문 「일본이 여 국가가 되자」(부제: 核의 선택)는 일본 방위논쟁의 흐름을 일 단락 정리했다고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시미즈기따로는 “군 대가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는 가설을 세워 일본 헌법 9조가 규정 한 「육·해·공군을 두지 않는다.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도 핵국가가 될것을 제창한바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일본의 특성을 리드한 국수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C 모토오리노리나카(本居宣長)의 「일본문화중심론」, 19C 요시다쇼오잉(吉田松陰)의 「富國強兵확장주의론」, 다루이도키치(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 20C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단서는 아직 없지만 2차대전의 戰犯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거의 손각료가 야스쿠니(靖國)神社 참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드디어 88년5월 오후노는 「전쟁무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82년12월 레이건·나카소네 회담에서 나카소네가 「일본열도不沈般母化」, 「4해협봉쇄」등의 발언을 해서 소련을 자극했던 것도 복고적 소비니즘의 발로라고 할수 있다. 1986년7월 후지오(藤民正行)문부상의 한·일합방 정당화 발언이나 이러한 妄言과동에 고무되어 결성된 자민당의 국가기본문제동지회(41명의 의원이 참여)의 동향(개헌, 핵무장 주장), 심지어 일본 文部省은 92년도에 발행될 국민 학교 사회교과서에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도고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와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를 역사의 10인으로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군국주의 역사재해석의 분위기를 가시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것이라 하겠다. 89년1월 히로이토사망시 가제히데아키(자민당 의원)는

「천왕의 서거는 일본인들의 심리를 얽어매은 2차대전에서의 패전에 대한 상흔을 깨끗이 청산할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일본은 이제 비로소 패전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경제적 성공과 자신감에 바탕을 둔 새헌법을 제정,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한 것도 일본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까지의 일본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全方位외교」였다. “특정방침이 없는 것이 외교방침”이라는 말과 같이 어느 나라와도 등을 지고 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朝日新聞은 「이제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펼 때가 되었다」고 쓰고 있고(88.8), 1988년 11월 다케시다(竹下)는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표방했는데 정치, 군사적 차원의 역할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요컨대 일본 대외정책의 기본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對美 협력관계의 유지 강화로 핵우산의 보호속에 安保를 보장 받으나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이 쇠퇴해질 경우 그때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역할을 맡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88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GNP의 1.013%, FY89-90 국방비 지출액은 3조9천억엔에 달하여 이미 미·소 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소련을 잠재적인 敵國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소련이 일본 북방, 심지어는 4개도서까지 요새화하고 있고 (KAL 격추 사건 때 재확인) 소련 전투기가 일본주위를 연간 350회 비행하고, 연동원 함정 570여척이 일본주위를 돌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¹⁴⁾

14) 日本防衛廳, 「防衛白書」(東京: 大藏省印刷局, 1988), pp. 46~48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4강의 세력균형 유지에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겠다는 것과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안정공급(75% 이상을 페르샤만에서 수입)에 신경을 크게 쓰고 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2) 對韓半島정책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일본은 親韓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있으며 북한과는 극히 한정된 접촉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이 미국의 진영보호 정책에 협력하는 길이고 자국의 안보경제적 실리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969년 11월 21일의 닉슨-사토 공동성명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필수적이다”는 이른바 한국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초 일본내 진보적 지식인들은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밀착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디어 1972년 5월 17일 후쿠다(福田)외상은 “한국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고, 1974년 9월 5일 다나카(田中)정권의 기무라(木村)외상은 의회에서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만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부임초(74.7)에도 “한국의 평화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적이다”는 선언을 한바있다. 이것이 일본의 한반도정책이 「하나의 한국」에서 「두개의 한국」으로 바뀌게 된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對한반도 「등거리정책」은 1975년 월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와 1975년 4월 18일 김일성의 호전적인 북경발언,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땅굴발견 등의 요인으로 재검토 되었고, 1975년 8월 포드-미키공동성명에서는 舊한국조항을 재확인 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에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를 유지 강화함을 기본으로 하는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북한과는 비정치적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환원 한 것이다. 미키(三木)정권의 이러한 對한반도정책은 후쿠다(福田), 오오히라(大平),스즈키(鈴木), 나카소네(中曾根), 다케시다(竹下)등 역대정권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안보적 차원의 한 일관계는 美카터행정부의 철군계획으로 더욱 밀착되었고 레이건행정부, 나카소네정권의 등장과 함께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할수있다.

오늘날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방향은 1987년5월6일 한·일정기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원칙 즉 “①남북대화를 촉진시키고 ②남북한과 주변 여러나라와의 관계균형을 취해가며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대한 그들시각의 해석에서 엿볼수 있다. 그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북한과 활발한 접촉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1971년11월16일 자민당 구노쥬지(丘野忠治)外 2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을 결성하고 1972년1월23일 13명의 의원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89년 현재까지 상당수준의 人的, 物的 교류를 해 왔다. 1985년에 일본을 방문한 북한인사들을 보면 85년2월9일~16일 김세진북한체육지도위원회 사무총장의5명, 85년2월~3월 윤성찬영화총국부국장의30명, 85년3월 사로청 중앙위부위원장등5명, 85년4월 김기남노동신문주필등3명, 85년6월5일~10일 金佑鍾 日·朝우호친선협회장 등이다.

86년~88년기간은 북한 민홍구 하사의 일본망명과 그를 납치했다는 문책으로 일본후지산마루(富山丸)선원을 북한이 억류시킨 문제와 87년11월 안다만해협 상공에서의 KAL기 폭파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제재조치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88년9월 사회당 간사장 야마구찌 쓰르오(山口鶴男)의 방북, 1989년1월 북한 「로동당」 국제사업부 부부장 김양건外 3인의 방일(사회당 당대회 초청) 89년3월 다나베마코토(團邊誠) 방북등은 일·북한 관계를 진일보 시켰으며 특히 89년3월 다케시다 수상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했고 우노소스케(宇野宗佑)는“일본은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택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낸바 있다.

일·북한 경제교역은 한·일 교역에 비해서는 물론 미미하며, 더구나 무역채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76년末까지의 북한의 對日채무는 약 800억엔이었으나 채무불이행, 지불연기합의, 利子추가 등으로 현재는 복잡하게 누적되어 있다. 그리고 일·북한 무역고는 1979년이후 왕복1,000억엔 규모로 정제되고 있으며 1986년에는 600억엔 규모로 격감된바 있다.

그리하여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장기적 차원의 對한반도 정책은 첫째로 일본은 정치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한반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에서 정치대국화의 실마리를 찾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나카소네 前수상이 재임시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관한한 일차적인 발언권은 일본이 갖는다. 이것이 舊세기이래의 기득권이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한반도문제 토의시에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中·蘇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음을 볼수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1978년10월 鄧小平과 1983년11월 胡耀邦총서기의 방일時 또 1984년3월 나카소네 일본수상과 1985년7월 타케이리 일본 공명당 위원장의 방중시,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는 1986년1월 세바르드나

제 의상 방일시, 한반도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의 희망사항을 중심으로한 까다로운 정치문제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도 성공시킬 수는 없었다.

둘째,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후퇴할 경우,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미국의 역할대행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다.

라. 미국의 정책방향과 한반도

(1) 대외정책기조

미국은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원칙과 도덕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한다. 즉 민주주의의 수호, 자유와 인권의 보호, 공산주의 팽창의 봉쇄, 세력균형의 유지, 핵확산금지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국제정치에 있어서 미국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은 자주 결여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레이건행정부 당시에는 힘의 철학, 즉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체제(Pax-Americana)는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대소전략의 경우 소련의 제1격에 대한 보복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공격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종전의 개념(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제1격을 無力化시켜 승리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소련의 승리를 거부」하는 전략, 즉 확증생존(Assured Survival)相殺 전략(Countervailing Strategy)을 확립했다.¹⁵⁾ 이전략은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계획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주무기를 개발하여 소련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스타워즈(starwars)의 연구를 강화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15) Walter B.Slocombe, "Strategic Forces," George E.Hudson and Joseph Kruzal(eds), American Defence Annual, 1985-1986(Lexington, Mass: D.C. Heath, 1985) p.89.

SDI방어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하여는 5천억~1조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고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무기 개발수준이 미국보다 뒤져있고 국내 경제사정상 미국과 우주무기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의 SDI추진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러한 소련의 요구에 따라 미국은 SDI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일단 유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對蘇 강경정책에 따라 미국은 소련의 對美양보 내지 타협자세를 유도해 냈고 對蘇군사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70년대에 손상되었던 세계최강국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지출과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增稅를 반대한 「레이거노믹스」추진은 미국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日, 서구, Nics 등의 세계무역시장진출 등의 요인과 더불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연간 재정적자 약 1,600억 \$ 무역적자 약 1,400억 \$, 이른바 약 3,000억 \$의 쌍둥이 적자경제를 시현하게 된 것이다. 1985년 6월을 기해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한후 89년 현재는 순채무 5,000억 \$을 기록 세계 최대의 빚쟁이 국가가 되었다.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 뉴욕의 티파니보석상을 비롯한 중심가의 상업빌딩, 록펠러부동산회사 등 미국의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로 바뀌었다. 세계2차대전 직후 전세계 GNP의 45%를 점하고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의 富를 자랑하던 미국의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폴 케네디교수는 몰락주의(Declinism)라는 용어로 미국을 경고한바 있지만, 아메리칸니즘의 저력은 미국사회에 새로운 進歩주의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즉 현재의 균형된 상태에서 미·소가 화해하고 관계개선하기를 희망하며 군비축소와 비용이 적게드는 외교를 선호하고 미국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지역분쟁

의 개입을 반대하며, 미국의 힘을 미국경제 활성화에 모을 것을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해 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상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미간의 통상마찰 문제나 방위비분담문제 등은 이상과 같은 배경에 문제의 소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북아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므로 亞·太시대의 당연한 주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략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對蘇전략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그 우선순위는 ①對蘇핵전략 ②유럽및 NATO방위문제 ③中東방위 ④아시아, 태평양방위의 順으로 놓았던 것이 종래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뀌었다고 할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戰後 주요 군사적 대결과 분쟁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둘째로 4強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셋째로 소련,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소련이 亞·太지역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력을 배경으로 군사대국화할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는점과 넷째로 무엇보다도 亞·太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 지역이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亞·太 교역량은 1983년에 이미 1,370억 \$를 달성하여 대서양권 무역규모보다 약 300억 \$을 초과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지하는 것이다. 미국 여론은, 고르바초프가 1986년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소련도 亞·太국가임을 선언했을때, 소련은 亞·太지역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한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바 있다. 미국은

소련의 극동군사력 팽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의 안보역할을 가일층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의 방위비 증가를 계속 촉구하고 태평양해로의 안전권확보를 위해 일본이 1천海里(Sea lane)를 분담토록하며, 한편 美日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효과적인 대소방위를 위해 韓日간의 결속과 그 토대위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4대현대화계획」을 지원하는등 美中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對蘇 연합전선에 가담토록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략은 기본적으로 알타체제, 양극적인 냉전구조를 전제로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美부시 대통령은 1989년12월 고르바초프와 가진 「몰타회담」에서 「몰타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시대」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냉전구조의 청산을 의미한다면 미국의 동북아전략도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에의 소극적인 순응이 아니라 정세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2) 對한반도정책

전국이래 한국의 대외관계는 그 태반이 韓·美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복구사업의 원조, 한국군 월남파병과 현대화,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였으며 단순한 선린의 관계를 넘은 강력한 동맹국의 관계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 국내일부 反美성향과 미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로 야기된 對韓통상압력 등으로 한·미관계는 다소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평가는 시기와 사람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1949년 美合參의 콜린즈 장군은

“한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볼때 동전한푼어치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바 있고 同年 조지 F 케년 교수도 의회에서 “3차대전의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군사적 지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러한 시각이 6·25한국전쟁을 불렀는지도 모른다. 카터 행정부 초기의 철군정책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반적인 미국의 시각은 한국이 對蘇전초기지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亞·太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미국 국익과 관련한 한국의 중요성을 가일층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對蘇 견제와 일본방위에 필요한 「전략적 不動產」 이자 미국경제의 순환을 도와주는 경제적 파트너라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식고조는 1983년11월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중 한미 공동성명 제4항에서 나타난바 “한국의 안전이...미국의 안전에 직결”됨을 천명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死活的利害지역」임을 시사했다.

미국정부는 각 圈域別로 주요도를 설명하는데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에 대해서는 사활적중요(Vitally Important), 利害圈(Sphere of Interest)에는 重要(Important), 그리고 그밖의 권역에 대해서는 아국의 이해(In Our Interest)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수 있다. 종종 어떤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에 緊要한(Essential)것으로 나타낼때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는 西歐, 일본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核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한국을 미국안보에 긴요한 혹은 사활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는 한미관계를 알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관한 이해관계는 한국전쟁중 5만 5천명의 戰死者 180억 \$의 전비투입, 종전후 112억 \$의 대한무상

지원,¹⁶⁾ 현재도 약 4만명의 주한미군 주둔 등이 보여주듯 4강중에도 가장 두드러 진다 할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對韓정책 방향은 1986년10월21일 릴리大使가 부임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한국의 안정과 안보의 지원, 협력, 둘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공약, 셋째, 번영하는 상호무역관계의 배양에 정책의 기본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안보에대한 미국의 협력은 한미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모든 위협과 도발에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문제는 한·미안보협력관계의 핵심사항이다. 현재도 이문제가 다각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주요쟁점은 철수시기, 한국군 작전통제권, 방위비분담문제 등이다. 북한측과 국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회일각에서 즉각철수 또는 단계적 철수를 제기하기도 한다.¹⁷⁾ 그러나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은 「한·미 양국정부와 양국 국민이 원하는 한 주둔한다」(1989, 7,20, 제2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상, 또한 전쟁억지력으로서 수년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주한미군철수문제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에

16)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Overseas Loans, Grants and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74.

17) Doug Bandow, "Korea: The Case for Disengagement"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No. 96 (December 8, 1987) pp.2~24.

Robert A. Scalapino, "The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2, No. 2 (summer, 1988), pp.270~280.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선임장교(Senior US Military Officer in Korea)를 통해 미국측이 갖고 있다는 것이 한·미간에 양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미軍事委員會가 1978년 7월 28일에 하달한 전략지시 제1호(Strategic Directive No 1)가 그 근거이다. 동 전략지시에 의하면 연합군사령부는 “構成軍사령부를 통하여 제공된 한·미군을 작전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 장성이 연합군사령관에 임명된다면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가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는 문제에는 미국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각컨대 작전통제권의 한국이양 문제는 한국의 휴전체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풀리기 어려우며, 한국에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상황에서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 경우 한·미간의 적합한 연합방위체제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작전통제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건의 성숙에 따라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문제도 한·미간의 주요 현안이다. 1988년도 기준 주한미군 유지비의 한국측 부담액은 19억 \$ 이었다. 이액수는 일본 부담액 21억 \$, 서독부담액 110억 \$ 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이나 주둔 병력 대비면에서는 이들 나라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서태평양상에 위치한 미군부대중 한반도 유사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는 연간 약 250억 \$ 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당연히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1988년 5월 태프트 美 국방차관의 서울방문시, 그리고 同年 6월의 연

18) Doug Bandow, "Does Korea Need U. S Now," Reason, June 1989. p.35.

레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측은 페르샤만에서의 미해군작전을 위해 2천만\$을 원조할 것과 4천5백만\$의 주한미군 직접지원경비,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경제원조를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 해군항공기의 유지를 위해 500만\$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이 방위비 부담몹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동의하였으나 페르샤만같이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반대했다. 여기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가 발견되는데 미국측은 「버든쉐어링」(Burden Sharing) 즉 범세계적 차원에서 동맹으로서 폭넓은 협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측 으로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분담」(Cost Sharing)의 시각에서 해석하려 한다. 요컨대 비용분담은 公平분담론 보다는 한국의 자주국방 차원과 그동안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안보협조가 화폐 가치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지출이 傭兵개념으로 인식되어서는 한·미 양국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의 한미 현안은 통상문제이다. 한국이 對美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¹⁹⁾(88년84억\$) 미국은 보호무역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87년에 1,590억\$ 88년에 1,40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對日무역에서만 600억\$ 정도의 적자를,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부터 많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작은 일본」으로 경계하고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쇄고기, 담배, 컴퓨터, 보험, 광고, 금융, 통신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슈퍼 301조(Priority Foreign Country)로 위협하고 있

19) Andrew Tanzer, "South Korea marches to its own Drummer," *Forbes*, May, 16, 1988 p.89.

다.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GNP의 41.3%(일본13.2% 미국5.4%)에 달하므로 왕복 340억\$ 규모²⁰⁾의 미국시장을 경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시장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의 확보, 유지가 긴요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12번째 교역국이고, 미국의 5대농수산물 수출시장이란 점, 또한 한국이 상당수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수산물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라는 점, 이같은 사실은 한·미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가 아니라 동반관계로 성숙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남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다소의 시각차이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문제를 안보(Security)문제로 보는데 반하여 미국은 안정(Stability)의 문제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정책이나 남북대화 추진노력을 적극지지하고 북한의 “3자회담제의”, “대미평화협정제의”등 對美직접협상 전략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외교, 무역및 민간교류의 세부문에서 대북한 완화정책을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교접촉에 있어서는 1988년10월31일 미국의 대북한 완화정책이 발표된 이래 1989년 까지 5회(88.12.6, 89.1.4, 89.5.15)에 걸쳐서 미국무성 관리와 북한의 북경주재 외교관 사에에 접촉이 있었다. 획기적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대국사이의 직접접촉이 수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무역에 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에 상품수출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양국간의 경제관계 수립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20) "Korea's Economic Strength Impacts World Trade," *Interchange*, August 1987, p.2.

은 의료품, 식량 및 교육자재 등과 같은 기본 필수품(Basic Human Needs)에 한정된다고 했다. 셋째, 민간교류를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1989년 한해만도 수개의 事例에 入國査證이 발급되어 북한의 학자들이 미국내의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시민들의 북한 여행도 허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흐름은 약 2,700구로 추산되는 미국인 유해문제의 해결 전망을 밝게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統一環境의 변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알타체제와 동서냉전, 한국전쟁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주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 문제이면서 국제권력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분히 국제적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은 「국제환경」, 「북한의 변화」, 「한국의 발전」이라는 3요소들이 3위일체가 됨으로써 풀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국제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한반도 주변에 있는 4개강국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작용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소는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일본은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중국은 분단고착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4대강국들은 현재 한반도 문제해결에 직·간접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대소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근세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사이에서 양대세력의 각축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의 세력권영향속에 들

어 갔고 두세력의 힘이 팽팽히 맞섰을 때는 분단의 발상이 생겼으며 드디어 1945년에는 분단의 운명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는 “대륙세력권”, “해양세력권”, “분단”의 세가지경우는 이미 경험하였고 어느 세력권에도 편입되지 않고 분단도 아닌 경우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주변4강의 남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분단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공식관계를 가지고 한국의 통일정책이나 남북대화 방침을 지지, 지원해 왔으며, 반면에 소련과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북한의 통일방안과 대화전략을 지지,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와같은 도식적 구조가 최근 들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新思考」 외교정책은 세계질서의 재편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소련의 국익에 부합되면 한국과 소련간의 외교관계가 개설될 수 있음을 내다보게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8년9월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국국명을 사용한 바 있다. 1988년10월11일 이스베스차의 정치평론가이며 고로바초프의 외교브레인인 알렉산드르·보빈은 일본 毎日新聞과의 회견에서 “한반도에는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며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어서 1988년10월14일 게라시보프 소련 외무부 대변인은 모스크바방송 인터뷰에서 “한국현실 공식인정”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89년4월 한·소간에는 무역사무소가 교환설치되었으며 동년12월에는 무역사무소내에 별도의 영사처(Consular Department)를 신설하여 영사업무를 취급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이 시베리아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경우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분위기는 가일층 성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소련이 공식외교 관계를 갖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됨은 물론, 남북

한이 현실인정의 토대위에서 관계개선과 통일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게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도 개혁과 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므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며,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는 1983년 민항기 사건때 「대한민국」 국명을 사용 한바 있으나 한국과는 외교관계를 갖지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공식입장이다.²¹⁾ 그러나 한·중교역량이 약 30억\$에 달하고 있는것은 양국이 서로가 4대무역국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자본력의 침투와 축적은 반드시 정치적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앞으로 韓·中간에도 경제관계의 확대와 함께 무역사무소가 교환설치될 것이며 나아가서 공식외교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 볼수 있다.

이리하여 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승인하게되면 북한도 고립을 피하고 자기생존을 위하여 대내외 정책에 일대 전환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며, 특히 對美·日 접근으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한편, 이들 나라로부터 「국가승인」을 확보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은 그들이 통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조선 정책」을 수정하고 「개혁」을 선택한다는 의미인데 金日成체제가 새로운 정세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본에는 항상 「自由」라는 요소가 동반되기 때문에 서구자본의 도입은 제2, 제3의 변화를 유발해오기 마련이다. 폐쇄를 유지해야

21) 예컨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88.6)은 「對韓半島정책은 한반도의 安保와 긴장완화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韓國과는 外交를 맺지않는다는 것이 기본方針이다」고 하고 있음.

上海 復但大 薛君度교수는 필자 면담시 「中國이 한국과 外交관계를 가지면 한반도 안정을 깨는것이 아니겠는가」하고 反問하고 있음(89.11)

만 안정할 수 있는 金日成체제가 개방시대를 강요받게 되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이데올로기와 개혁 문제를 둘러싼 소련, 중국, 동구권으로부터 불어오는 도도한 外壓(도전)을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마르크스는 일찌기 공산주의가 인류의 최종 이데올로기라고 갈파했지만, 최근 공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동을 직시할 때 몰락하는 것은 오히려 공산주의고 최종적으로 남을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믿음을 굳게해주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공산권 내부로부터 거부되거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됨으로써 이른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엔디즘(Endism)²²⁾적 史觀이 현실적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金日成主體思想도 그 뿌리마저 흔들림으로서 허구의 外皮를 벗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가을이후 동구권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²³⁾ 북한도 비록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집단일 수는 있어도 변화를 오래도록 외면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퇴조경향과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추세는 “공산주의 승리의 확신성”에 기초하여 「전한반도 공산화」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의 통일이데올로기에 강렬한 충격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요컨대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다각적인 요인으로 새로운 지평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일본계 미국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박사는 「National Interest」지(1989, 여름호)에 기고한 “역사의 종언” 제하의 논문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역사의 변동은 끝이 날것이다」는 사관을 제기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

23) 공산권 개혁 진행상황(90. 1. 1 현재)

172 II.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국 가	주요정당	당 수	국가원수	총 리	黨의지도성	자유선거	주 요 민주세력
동 독	사회주의 통일당개명작업중	기 지	게를라흐	모 드 로	헌법삭제	90년5월	新 포 럽
체 코	공 산 당	우르바네크	하 벨	찰 파	헌법삭제	90년6월 까지	시민포럼
폴 란 드	통일노동당 1월해산 예정	라코프스키	야루젤스키	마조비에츠키	90년 1월 黨대회서 포기	89년 6월 4일 실 시	자유노조
헝 가 리	사 회 당	니에르시	쉬 로 시	네 메 트	헌법삭제	90년3월	민주포럼
불가리아	공 산 당	물라데노프 (차우세스쿠축출)	물라데노프	아타나소프	의회검도중	90년 6월까지	민 주 세력동맹
루마니아	공 산 당	쿠축출)	일리에스쿠	로 만	삭제예정	90년 4 월	급 진 민주세력
소 련	공 산 당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리즈코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에서 삭제	인민대표 대회선거 3월 실시 예정	좌익급진 그룹 인민해방 전선

○ 폴란드

89년 8월이후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주도,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음.

총리는 비공산주의자인 타테우스 마조비에츠키, 대통령은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자유노조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공산당은 경찰과 군대를 책임지고 있음. 의회의 경우 완전 자유노조가 지배하고 있고 하원은 연합세력을 이루며 자유노조가 리드하고 있음.

자유총선이 올해안에 실시될 예정임.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번 공산당에 할당된 의석지분도 자유경선을 치르게 되어있음. 자유노조는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아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음.

○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타도된 이후 공산계와 비공산계 인사로 구성된 집권평의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

평의회가 구성한 임시정부는 이온 일리에스쿠의장이 주도하고 있음.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할 예정, 준비가 부족하다며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차우세스쿠를 타도하는 데 한몫을 한 군부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동 독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동독공산당은 구지도부를 교체했고 오는 5월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내각을 이끌고 있는 공산계의 한스모드로총리가 개혁주도 세력의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음. 재야세력 지도자들과 공산계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총선준비와 앞으로 정치개혁 일정등을 두고 원탁회담을 벌이고 있음.

○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재야 연합단체인 시민광장의 지도자 바츨라프 하벨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공산계 개혁파인 마리안 찰파총리와 함께 정국을 운영하고 있음. 21명의 내각구성원중 11명이 비공산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체코공산당의 주요지도자인 발트르 코마레크 제1부총리와 블라디미르들로히부총리가 8일 돌연 탈당함으로써 공산당에 큰 손실을 입혔음.

○ 헝 가 리

지난해 10월 사회당으로 탈바꿈 했음. 개혁파 공산주의자인 임레포즈가이 정무장관이 헝가리의 개혁을 이끌고 있음. 오는 3월에 총선이 실시되어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임.

○ 불가리아

지난해 11월 보수강경파 지도자인 토도르 지프고프가 물러나고 새로 등장한 페타르 몰라데노프 국가평의회 의장은 5월에 자유 총선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음.

새 당지도부는 재야세력의 보다 빠르고 근본적인 개혁요구에 직면, 협상을 벌이고 있음. 의회는 오는 1월 15일 공산당의 지도적역할에 대한 조항을 폐기할 예정임. 터키계 주민에 대한 새지도부의 차별정책폐지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대규모시위가 계속 되고있어 개혁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III.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章 洙 棟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176
2. 共產主義戰略 戰術의 일반운용원리	178
가. 공산집단의 思考 및 行動方式	178
나. 공산화혁명전략 및 전술類型	183
다. 공산화혁명전략 및 전술計劃	190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195
가. 대남혁명 및 「祖國統一觀」	195
나. 대남혁명전략의 基調	198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	207
가. 대남혁명전술의 基調	207
나. 對南戰術의 變遷과정	213
5. 結 言	233
가. 對南策動의 展望	233
나. 우리의 對應方向	235

1. 序 言

여기에서 論及하는 戰略·戰術이란 흔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용하는 戰爭과 관련한 협의의 군사적 개념이 아니라 共產化革命과 관련한 광의의 정치적 개념인 것이다.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대남전략·전술도 金日成의 獨創物이 아니며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¹⁾ 시킨것을 남한실정에 맞게 소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누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략·전술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모든 국민이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전술을 원리적 차원에서 체계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산주의는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전략·전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란 그 운용차원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양자간의 運用次元 및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전략이 마치 전술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중진국이나 후진국(식민지, 종속국)에서 적용키로 되어있는 레닌주의적 連續2段階 革命戰略의 운용원리²⁾를 근본적으로 이

1) 스탈린, 「레닌主義에 대하여」, 1924년, 同 레닌主義의 諸問題 1939, 모스크바, 外國文書籍出版部, 1949(韓國語版), pp.111~119

2) 마르크스·엥겔스, 共產黨宣言, 營川實譯·解説의 三, 第3인터내셔널과 그 「綱領」, 東京, 青木書店, 1955, pp.160~165

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非一非再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부족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모두 일률적으로 임기응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또한 본격적으로 私有制를 타파하는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前段階혁명인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나 「인민민주주의혁명」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그들의 戰略이란 해당 혁명단계의 혁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情勢)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전술이란 그 같은 전략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策動技法이기 때문에 전략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戰略이란 공산화혁명운동에 있어서의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기본적인 계략이라 한다면 戰術이란 가변성이 있는 구체적 행동강령이면서도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이란 2단계로 수행되는 중진국 또는 후진국의 혁명에 있어서는 그 단계별 전략이 각각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북한공산집단의 연속2단계혁명전략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戰術의 전개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은 혼돈을 막고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토대위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戰術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모든 행동원리를 상호연관성있게 분석, 해설함으로써 그들의 反民族的, 反平和의 음모성의 정체를 폭로하여 “知彼知己면 百戰不殆”의 효과를 거두자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일반운용원리

가. 공산집단의 思考 및 行動方式

(1) 唯物史觀的 思考

유물사관이란 唯物辨證法에 입각한 역사관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원시공동체사회가 분업에 따른 계급의 분화로 말미암아 사유제사회인 계급사회로 反轉되어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그것이 다시 공산주의사회로 再反轉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滅舊生新的 역사해석 태도이다.

이와같은 유물변증법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원시공동체가 분업 및 계급분화에 따라 質的으로 다른 계급사회로 轉化된 이후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급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는 불완전한 질적변화 (革命)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다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형태가 바뀐데 불과하고 사유제사회인 계급사회로서의 그 본질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으나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면 고도산업화에 따라 극소수화된 부르주아지를 압도적으로 다수화된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함으로써 드디어 근본적으로 私有制와 그에 따른 계급 자체가 없어지는 공산주의사회, 즉 “발전된 완전한 무계급 共有制社會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質的變化’가 곧 그들이 강조하는 바의 대립물의 투쟁결과로 얻어지는 ‘모순극복’이며 또는 ‘否定’으로 보는 혁명인바, 그것은 낡은것의 소멸과 새로운것의 발생에 의한 멸구생신적인 唯一化, 즉 “비타협적 정복”이며 결코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초월한 통합, 즉 「상호공존적 종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³⁾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물사관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추구하는 바의 統一이 결코 남북한의 대등한 융합적통합이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새로운 요소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포함한 낡은 요소들이 구축, 소멸되는 식의 멸구생신적 정복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될때, 그들이 말하는 合作統一論(고려연방제)이 결코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戰術的인 위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思考 및 행동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서가 아니라 상호연관성있게 유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2) 戰略·戰術的 行動

가) 연혁

공산주의 전략·전술은 대중을 혁명에 동원 및 유도하는 책략적 운동기법으로서 레닌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스탈린에 이르러 그 이론적 「틀」이 정식화 되었고 내용이 더욱 보완되었다. 레닌은 전략적 차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전술이라는 용어로 일괄표현하였으나 스탈린은 그중에서 지속적 본질부분을 「전략」, 그리고 가변적 현상부분을 「전술」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레닌은 러시아革命의 현실적 가능성을 분명히 내다보면서도 그 사회발전단계상 마르크스의 전통적 혁명론에 의해서는 도저히 사

3) 소聯邦科學院哲學研究所, 哲學教程, 第2分冊, 森宏一, 寺澤恒信譯, 合同新書, 1968, pp.418~437.

三浦つとむ 「辯證法이란 어떤 科學인가」, 東京, 講談社, 現代新書, 1968, p. 237. 마르크스, 「헤겔法哲學 批判」(1844), 新明正道 服部英太郎譯, 마르크스·엥겔스全集, 第1卷, 東京, 改造社, 1928, p.353.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 明成出版社, 1982, p.133.

회주의혁명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데 고심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러시아혁명이 직접 私有制를 타도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진행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일단 인정하고 먼저 부르주아 사회계급을 조속히 끝맺게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나서,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혁명을 지체없이 수행하는 연속 2 단계 혁명방식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혁명이므로 비록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수행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그 혁명의 주도권만은 프롤레타리아트(黨)가 장악해야 하며 無力하고 비혁명적인 부르주아지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부르주아민주혁명 그 자체의 수행도 어렵거니와 설사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을 지원하여 혁명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전환이 방해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부르주아지는 다만 전제군주세력에 협력하지 않도록 격리, 중립화시키고 수적으로 우세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처지가 비슷한 農民大衆을 同盟軍(예비군 또는 보조군)으로 삼고 전제군주제를 타도하고 나서 지체없이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나 이에 대하여 멘셰비키(Mensheviki)들은⁵⁾ 부르주아민주혁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여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로서는 다만 부르주아지를 지원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민주혁명 수행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프롤레타리아

4) 스탈린, 前揭書, pp.111~112

5) 멘셰비키는 멘셰비크(少數派)에 속한 構成員, 즉 Menshevist를 뜻한다. 지금의 소련 공산당의 前身인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에는 당시 마르토프를 支持하는 멘셰비크(少數派)와 레닌을 支持하는 볼셰비크(多數派)가 있었는데 이 양파간에는 공산혁명을 위한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트가 상당히 성장한 다음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민과의 동맹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볼셰비크(Bolshevik)와 멘셰비크(Menshevik)는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는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였으나 主力軍과 補助軍(예비군)의 편성, 배치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마르토프 중심의 멘셰비크가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며 기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다면, 레닌 중심의 볼셰비크는 그 교리를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었다.

레닌은 멘셰비크의 태도를 觀照主義라고 비난하고 러시아사회민주당 제2차대회(1903. 7)이후 사사건건 이들 양파가 대립하였는데, 그 중요원인은 전술한 바와같이 전략적 力量配置計劃과 그에 따른 黨組織論에서 비롯되었다. 즉 레닌은 자신의 전략구상에 따라 정예, 비밀 및 집권적인 黨을 원한데 반하여 마르토프등 멘셰비크는 대중, 공개 및 분권적인 당을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서구적 마르크스主義黨에 의한 합법적 투쟁을 구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1902), 「一步前進 2步後退」, 1904),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1905), 「제국주의론」(1916), 「국가와 혁명」(1917), 「프롤레타리아혁명과 背教者 카우츠키」(1918) 및⁶⁾ 「공산주의의 좌익소아병」(1920)등, 일련의 著述들은 한결같이 러시아혁명 및 과도기 사회주의 건설을

6) 레닌은 카우츠키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기피하는 背教者로서 규탄하였는데 그 理由는 그가 暴力使用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위한 전략과 전술적기법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레닌의 저술들은 후일 스탈린에 의하여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1924)라는 저작물로 집대성되었는데 戰略과 戰術이 그 책의 제7장에서 체계적으로 定式化됨으로써 모든 레닌主義黨의 행동지침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나) 특징

스탈린은 레닌主義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지도하는데 관한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별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戰略은 “혁명의 해당단계의 토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方向을 결정하고 혁명적역량(주요 및 부차적 보조군)의 적절한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혁명단계 전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하였다.⁷⁾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黨)가 해당 혁명단계중 타도하고 성취할 목표를 정하고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를 中立化(격리)시킬 것인가를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는 기본계획이 바로 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전략은 상황의 일시적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목표 달성시까지의 일관성있게 지속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戰術은 “운동의 滿潮와 干潮, 革命의 양양과 침체 등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노선을 결정하고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교체하거나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路線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따라서 이같은 전술은 일정한 혁명단계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7) 스탈린, 前揭書, p.111.

8) 스탈린, 前揭書, p.113.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혁명단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혁명단계에 있어서도 정세(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략계획을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戰略的 指導라고 하며 전술계획을 적시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戰術的 指導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전략적 지도면에서 볼때 필요한 보조군과의 동맹을 외면하면 전술적 左傾이 되고 반면에 지나치게 同盟의 폭을 넓히거나 그 時期를 연장시키려는 것은 전략적 右傾이 되며, 전술적 지도면에서도 간조기에 있어 만조기에 쓰이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내걸면 전략적 左傾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술적 右傾으로 지적된다.⁹⁾ 대체로 우경오류는 소심한 겁장이 간부에 의해서 그리고 좌경오류는 혹시 잘못하면 우경으로 몰릴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급진적 경향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左·右傾이 모두 기회주의이며 다만 그같은 기회주의가 안으로 굽으면 「左傾」이 되고 밖으로 굽으면 「右傾」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산화 혁명전략 및 전술類型

(1) 革命의 基本類型

戰略의 유형은 革命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혁명의 유형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필연적으로 反資本主義的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으로만 설명하였고 후진국가에서의

9) 金永學, 前揭書, pp.219~220

혁명문제에 관해서까지 자세히 논한바는 없었다. 그런데 레닌은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발전이 불균등함을 전제로 종전의 선진국가와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는 국가사이의 植民地 쟁탈전으로 나타나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는 식민지에서의 수탈로 인하여 국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후진국가는 대내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첨예화됨으로써 국제제국주의전선중 가장 약한 고리로 된다고 하였고¹⁰⁾ 바로 그같은 처지에 있는것이 러시아이므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레닌의 敎示를 토대로 하여 코민테른(國際共產黨) 제6차 대회 (1928. 7~8)에서 채택된 강령에 의하면 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一國革命方式이 제시되고 있다.

가) 先進國의 革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충분히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즉시 프롤레타리아(共產黨)獨裁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 방식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민주화가 이룩되었고, 또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충분히 성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아직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성취한 공산국가는 사실상 이 地球上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中進國의 革命

중진국에 있어서는 일단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段階革命



10) 레닌,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1916), 共產主義要典, 東京, 日刊 勞動通信社, 1959, p.148

이 필요한 이유는 중진국가에서는 아직 封建制度가 잔존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으로 공산화된 국가가 바로 소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後進國의 革命

식민지, 半植民地 및 종속국에 있어서는 민족독립투쟁과 반봉건 민주혁명을 성취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되 특히 이미 공산화된 國家(소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후진국에는 外勢가 침투되어 있으며 또한 봉건제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에 의하여 공산화된 것이 소련 이외의 거의 모든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다.

(2) 戰略의 基本類型

전략의 유형은 전술한 혁명유형에 따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전략, 반제·반봉건민주주의(新民主主義·人民民主主義) 혁명전략 및 사회주의혁명전략, 그리고 이같은 一國革命 성취후에 수행되는 세계혁명전략으로 구분된다.¹¹⁾ 그런데 이들 각이한 혁명전략의 차이점은 그 궁극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계·절차상의 당면목표 및 목표수행을 위한 革命力量의 배치계획에 있는데 불과한 것인바, 그 대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르주아民主主義革命戰略

이것은 中進國에서의 전단계혁명전략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우선 封建遺制를 소탕하는 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數的으로 열등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주력군으로 삼되 수적으로 우세한 농민을 그 동맹군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 명칭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전략이면서도 부르주아지는 전제군주세력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무력화한 다음, 전제군주세력

11) <註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을 먼저 타도하는 데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혁명에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것으로 미리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¹²⁾

나)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이것은 후진국에서의 전단계혁명전략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먼저 外勢驅逐 및 국내봉건제도를 타파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영도하의 노·농동맹군을 주력군으로 삼고 타도대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각계 각층을 동맹세력으로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¹³⁾ 그런데 이 혁명전략단계에서는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세와 국내 반공세력의 타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양자를 격리·고립화시켜 차례로 각개격파하는 방식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략적 지도」에 속한다.

다) 社會主義革命戰略

이것은 선진국 또는 중진국과 후진국에서의 후단계혁명전략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私有制를 청산하는 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한 主力軍은 프롤레타리아트이고 보조군은 小作人 등 극빈농에 국한된다.¹⁴⁾ 따라서 소시민계층은 부르주아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부르주아지를 먼저 타도하고 난 다음, 그들을 제거하거나 노동자로 개조하도록 책정하고 있다.

라) 世界革命戰略

이것은 각국이 자국의 사회주의혁명을 기본적으로 성취한 후에

12) 스탈린, 前揭書, p.112

13)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5

14) 스탈린, 前揭書, p.112.

그 혁명을 밖으로 확대 수출하는 단계의 전략인바, 그 전략목표는 국제자본주의의 타도이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하여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주력군으로 삼고 전세계 선진제국의 半프롤레타리아트(農民, 中間層)와 후진제국의 민족해방투쟁세력을 동맹세력으로 책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그들은 각국의 小부르주아민주제당이 부르주아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부르주아지를 집중공격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년에 와서 中·蘇의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언동은 以上에서 언급한 世界革命戰略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 조짐을 보이는 면도 있는바, 이는 공산주의 세계관의 변화여부와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3) 戰術의 基本類型

전술이란 어떤 혁명단계에 있어서나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어서 전략과 같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¹⁶⁾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술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정세변동에 적응하도록 창안될 수도 있다. 전술은 만조기에는 공격 간조기에는 후퇴, 그리고 그 중간기에는 방어를 취하게 된다. 또한 완전한 만조기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역량배치계획에서 책정된 동맹세력들을 포섭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기회있는대로 우회공격으로써 부단히 主敵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구사하는 바,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攻擊型 戰術

혁명의 主·客體의 여건이 양양기라고 간주될 때, 공산당은 평화적 봉기로써 彼我的 力量을 「계산」해 보며, 어느정도 자신이 서

15) 스탈린, 前揭書, pp.112~113.

16) <표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게되면 피아역량을 직접 시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위 「만조기」가 조성되면 이 때를 놓치지않고 武裝蜂起를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봉기방식이다.

만조기란 타도대상인 상층지도계급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기존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¹⁷⁾ 하층계급의 고통이 극도로 악화되어 반항기운이 충만하였을 때¹⁸⁾를 뜻한다.

이와 같은 만조기에 공산당은 정치적 파업과 시위, 국회보이코트, 폭동전개 및 전투적 표어를 제시하여 투쟁하며 그 조직형태는 혁명적 공장위원회, 농민위원회, 파업위원회 및 공공연한 공산당의 地上活動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격형 전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장봉기전술과 인민전쟁전술등이 있다.

나) 後退型 戰術

전술한 바와 같은 공격에 임하였을 때 상대방의 우세한 반격에 직면하여 오히려 위급한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지체없이 후퇴함으로써 자체의 생존유지를 피하게 된다. 후퇴에는 「退却」과 「妥協」이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후퇴는 결코 후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간부구출과 주요진지(既得權)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후퇴후 隊列을 정비하고 역량을 회복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퇴각은 덜 중요한 陣地를 내주면서 계획적으로 예정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후퇴하는 것이며¹⁹⁾ 타협은 일정한 지역과 자체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타협하는 것²⁰⁾을 뜻한다. 이와 같은 수난기

17) 소위 「上層階級の 危機」이다; 레닌, 第2인테내셔널의 崩壞(1914), 吉田弘譯, 東京, 國民文庫版, p.36

18) 소위 「上層階級の 危機」이다; 上揭書, p.37.

19) 中共黨의 「2萬5千里 大長征」(1934)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 레닌이 10月革命 直後 對獨謀和를 呼訴하여 成就시킨 「브레스트·리톱스크」 講和 및 韓國動亂時 北韓共產集團이 蘇聯(말리크 UN 代表)을 내세워 休戰을 제의한 것 등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간조기용으로 교체하고 地下에 숨어들어 전력 재정비에 임하게 된다.

다) 防禦型 戰術

공산당은 일단 후퇴하고 나서 自體戰力を 재정비하는 기간에는 방어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潮水의 침체기에는 수세적 방어로 임하되, 조수가 양양함에 따라 점차 공세적 방어로 전환하게 된다. 방어형전술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平和(共存)戰術이며 중립화전술과 침투·폭로전술등도 방어형에 속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平和戰術은 주적을 상대로 자체역량을 비축하는 기간중 상대방으로 부터의 공격을 피하려는 수법이고 中立化戰術은 中間浮動層을 反政府的 親共的集團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침투·폭로전술은 유리한 객관적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세적 방어수법이다. 이와 같은 방어기간중 공산당은 간조기 및 만조기용 투쟁 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하게 되며 조수가 昂揚됨에 따라 攻勢的 要素를 가중시켜 나가는 것이 戰術的 配合의 原理이다. 공세적 방어수법으로는 平和蜂起戰術과 게릴라전술등도 포함된다.

라) 迂廻型 戰術

혁명운동이 대체로 양양기에 있을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통일전선에 의한 우회공격이 있다. 통일전선전술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방법면에서 위로부터 또는 밑으로부터의 統一戰線構築²¹⁾ 그리고 국제적 통일전선의 형성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같은 통일전선에 의한 수법은 1920년대에 레닌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점차 국제화되면서 1930년대 후

21) 「위로부터」란 幹部經由, 「밑으로부터」란 直接 下位要員 大衆을 包攝하는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이란 共產黨이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때까지 비공산세력을 이용하기 위한 잠정적 동맹조직전술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上層統一戰線戰術(戰術的 同盟)과 下層統一戰線戰術(戰略的 同盟)이 있다.

반에 反파쇼 人民戰線戰術을 거쳐 第2次世界大戰 이후에는 반제·반봉건적 人民民主戰線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로 후진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으로 階梯化되었다. 공산당은 이같은 통일전선의 수법을 구사함에 있어서 守勢 및 攻勢的 방어전술을 밀접히 배합해 가면서 가능한 투쟁·조직형태 및 표어를 취하게 되며 만조기가 조성되면 정면공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 공산화혁명전략 및 전술계획

(1) 段階의 轉換原理

전략은 해당 혁명단계중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기본전략이므로 잠정적인 정세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또는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는 그 혁명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전략 또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이 일관성있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단계혁명이 일단락되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시에는 戰略 역시 사회주의혁명전략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혁명단계는 그 자체의 혁명전략을 지닌다는 점에서 革命과 戰略사이에는 1대 1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같은 관계를 革命과 戰略段階의 一致性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들의 행동에서 변화무쌍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전술부분인 것인바, 하나의 혁명전략단계중에서도 정세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공격, 후퇴, 방어 및 우회공격등으로 변모하는 것이 전술의 단계전환 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전술은 반드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에 대한 종속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目標의 設定原理

전략과 전술의 단계란 어떠한 목표 및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정기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전략과 전술단계의 차이는 곧 지향목표상의 차이와 직결된다. 戰略이 지향하는 목표는 해당 혁명을 직접 완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며 포괄적인 것이나 전술이 달성해야 할 임무는 만조기에는 전략목표의 직접공격 그리고 간조기에는 일시적으로 후퇴임무가 할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후퇴임무를 달성하고나면 곧이어 방어임무로 전환하게 되며 수세적 방어에 어느정도 성공하면 점차 공세적 방어로 전환하여 정세의 호전을 포착하는대로 다시 공격을 취하는 등 戰術任務는 혁명여건의 干滿에 따라 수시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완전한 만조기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공산당은 그저 팔짱만 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세력이면 그것이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세력일지라도 동맹군으로 삼고 主敵을 압박하는 우회공격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²²⁾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統一戰線 수법이다 그런데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견지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같은 전술임무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전술운동상의 원리로 되어 있다. 공산당이 중시하는 것은 전술적 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술적 성과이므로 전략적 見地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전술임무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임무가 설정될 수 조차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戰略·戰術的指導

전략적지도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량배치계획에서 책정된 보조군을 옹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스탈린은 혁명에 이용가능한 보조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여 그 이용방법을 가르치고 있다.²³⁾

22) 레닌, 「共產主義의 左翼小兒病」(1920), 스탈린, 前掲書, p.127

23) 스탈린, 前掲書, p.115

〈직접보조역량〉

- ① 자국의 농민과 중간층(第1)
- ② 인접국의 프롤레타리아트(第2)
- ③ 식민지, 종속국의 독립투쟁(第2)
- ④ 既 전취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第2)

〈간접보조역량〉

- ⑤ 자국내의 비공산주의세력간의 충돌
- ⑥ 자본주의 국가간의 모순 및 전쟁

상술한 바의 보조군, 즉 혁명적 제세력으로 하여금 적시에 공격 또는 후퇴를 취하게 함으로써 속도상실, 또는 시기상조에 빠지지 않도록 전술전환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지도과제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 후퇴시까지도 前衛로 하여금 결코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쟁의 방향을 견지하게 하는것 역시 戰略的 指導에 속하는 과제이다. 한편 戰略的 指導의 主課題는 상황에 알맞는 투쟁·조직형태 및 표어를 구체적으로 교체 및 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혁명투쟁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고리를²⁴⁾ 포착하여 그것을 적시에 끌어당기는 것도 戰術的 指導의 소관분야다.

이와 같이 戰略計劃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며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전략적지도과제라면,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전술적지도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술계획 자체가 전략계획에 종속되고 있으므로 전술적 지도 역시 전략적 지도에 따라 수행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24) 여러 難題中에서 그것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핵심적 문제를 뜻한다. 북한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558

〈표1〉 戰略의 類型과 運用原理

유형	운용	비고(註)
<p>부르주아 민주主義 革命戰略</p> <p>1. 중진국의 前段階혁명전략</p> <p>2. 사유제가 존속하는 연합독재</p> <p>3. 사회주의혁명전략으로 이행</p>	<p>1. 목표:封建遺制 清算(名分上)</p> <p>2. 指導</p> <p>가. 역량배치</p> <p>○주력군: 프롤레타리아트</p> <p>○보조군: 농민</p> <p>나. 속도유지(戰術交替時期)²⁾</p> <p>다. 방향유지(후퇴시 포함)³⁾</p>	<p>1) 동맹 및 고립화대상을 책정하고 임무부여</p> <p>2) 공격 및 후퇴 時期決定, 交替統制</p> <p>3) 어떤 戰術下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戰略目標을 명심하도록 통제</p>
<p>人民民主主義 革命(新民主主義 혁명전략)</p> <p>1. 後進國의 前段階의 革命전략</p> <p>2. 사유제가 존속하는 연합독재</p> <p>3. 사회주의혁명전략으로 이행</p>	<p>1. 목표:外勢驅逐, 封建制 청산(名分上)</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주력군: 勞農同盟軍¹⁾</p> <p>○보조군(I): 각계각층</p> <p>○보조군(II): 국제혁명역량²⁾</p> <p>나. 속도유지(상동)</p> <p>다. 방향유지(상동)</p>	<p>1) 노동자계급 영도하의 勞·農同盟軍이다.</p> <p>2) 공산국 및 비동맹국의 반서방세력을 뜻한다.</p>
<p>社會主義 革命戰略</p> <p>1. 중·후진국의 後段階 革命전략</p> <p>2. 선진국의 革命전략</p> <p>3. 사유제를 否定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p> <p>4. 世界 革命 전략으로 移行</p>	<p>1. 目標:私有制 清算</p> <p>2. 지도</p> <p>가. 역량배치¹⁾</p> <p>○주력군: 프롤레타리아트</p> <p>○보조군(I): 極貧農²⁾</p> <p>○보조군(II): 隣接國 프롤레타리아트</p> <p>나. 속도유지(上同)</p> <p>다. 방향유지(上同)</p>	<p>1) 비공산주의세력간의 갈등 및 자본주의국가간의 전쟁을 「有利한 契機」 즉 간접보조군으로 삼는다.</p> <p>2) 富農은 타도대상, 中農·小農은 중립화(隔離) 대상이된다.</p>
<p>世界 革命戰略</p> <p>1. 모든 국가의 最終段 階 革命戰略</p> <p>2. 일국사회주의혁명후에 移行</p>	<p>1. 目標:혁명의 擴大, 輸出*</p> <p>2. 지도</p> <p>가. 역량배치</p> <p>○主力軍: 國際 프롤레타리아트</p> <p>○補助軍: 반프롤레타리아트 및 民族解放運動</p> <p>나. 속도유지(上同)</p> <p>다. 방향유지(上同)</p>	<p>* 소련 중심의 世界 革命戰略은 와해되었으나 모든 공산당이 세계혁명을 추구하는 목표만은 변함이 없다.</p>

※ 전략단계는 혁명단계와 일치하며 지속성이 있다.

〈표2〉 戰術의 類型과 運用原理

유형	운용	비고(註)
攻撃型 戰術 1. 무장봉기전술 2. 인민전쟁전술	1. 임무: 전략목표 직접 공격※ 2. 指導 가. 투쟁형태: 비합법적 투쟁, 나. 조직형태: 비합법적 조직, 다. 투쟁표어: 好戰의 표어 라. 中心고리: 정권탈취	※) 전략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공격임무
후퇴형 전술 1. 퇴각전술 2. 타협전술 ※타협은 일정지역 장악시 후퇴	1. 임무: 전술적 후퇴※ 2. 指導 가. 투쟁형태: 합법적 투쟁 나. 조직형태: 합법적 조직 다. 투쟁표어: 평화적 표어 라. 중심고리: 생존유지	※) 간부구출 및 중요한 陣地(既得權) 유지임무
防禦型 戰術 1. 게릴라전술 2. 평화봉기전술 3. 침투전술 4. 폭로전술 5. 평화(共存)전술 6. 중립화전술	1. 임무: 守勢 및 攻撃的防禦 ¹⁾ 2. 指導 ²⁾ 가. 투쟁형태: 합법·비합법(配合) 나. 조직형태: 합법·비합법(配合) 다. 투쟁표어: 平和·好戰(配合) 라. 중심고리: 만조기조성	1) 대열정비 및 역량 비축임무 2) 조수가 양양함에 따라 비합법적 요소가 강화된다.
迂迴型 戰術 1. 통일전선전술 2. 인민전선전술 3. 인민민주주의전선전술(전략화)	1. 임무: 포위 및 우회공격*) 2. 指導 가. 투쟁형태(上同) 나. 조직형태(上同) 다. 투쟁표어(上同) 라. 中心고리(上同)	※) 타도대상을 고립화, 만조기조성임무

※전술단계는 조수의 간만과 일치하며 가변성이 있다.

3. 북한의 對南革命戰略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대남전략은 이미 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코 김일성집단의 독창물이 아닌 것이다. 마르크스가 창안한 唯物史觀的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혁명의 실천기법으로서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한 전략·전술 모델을 남한 사회실정에 맞도록 그들 나름대로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 대남혁명 및 「祖國統一」觀

(1) 革命의 기본절차 문제

북한공산집단이 말하는 소위 ‘전조선혁명’이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한지역의 공산화까지를 자기 임무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본래 「조선혁명」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겠으나, 美軍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객관적여건의 제약때문에 북한지역에서만 先行된 셈이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에 한해서만 선행된 공산화 작업을 그들은 「半國的 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은 반국적혁명은 남한지역까지를 공산화하는 소위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 구축에 해당되며 이를 가르켜 「民主基地路線」²⁵⁾이라고 부르면서 무장력, 정치·경제력 및 선전선동 기능강화에 광분하고 있다.

25) 民主基地路線이란 「바그훈」교수에 따르면 “소련의 統制權이 미치는 部分에 우선 소련의 위성국을 수립하고, 그 위성국을 그 나라의 잔여부분에 대한 支配權 確立의 作戰基地로 利用하는 공산화 幟政政策”의 표현이다. (共産圈問題 研究所, 北韓總鑑, 「45~68」 1969.6.25, p.828.) 韓半島의 경우는 북한 지역을 강력한 政治, 軍事, 經濟的 「革命基地」로 만들어 南韓地域까지 공산화하려는 「스탈린」의 소련위성국 확대정책에 따른 對南共產化革命의 戰略的 指導路線에 해당된다.

6·25남침이야말로 바로 半國的革命을 그들의 무력을 이용하여 조급하게 전국적 혁명으로 확대하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우선 북한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본격적인 공산화 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1953년 8월부터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혁명단계를 전환시켰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은 여전히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남북간의 혁명단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북한의 혁명기지적 역할을 내세워²⁶⁾ 남조선 혁명을 전조선혁명의 절차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제2의 朴憲永같은 對北 비종속적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포석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점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남혁명은 곧 북한공산집단의 영도하에 수행되는 남한의 정복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2)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

金日成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상관성, 공통성 및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남공작요원들에게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 별개의 문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같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⁷⁾

첫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조선혁명의 일환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兩者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不可分離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한의 共產化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조

26) 허중호, 前揭書, pp.21~27

27) 金日成敎示,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1968.7.8)에서; 歸順者(金用珪) 證言, 內外政策研究所, 內外論叢, 第4輯, 1982, pp.118~119.

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조선혁명에 기여한다는 공통성이 있고, 또한 주한미군과 한국의 반공정권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데에도 공통성이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혁명투쟁이라는데 있어서도 공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체사상, 주체적 전략·전술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南韓의 자유민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은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 그리고 그를 직접 수행하는 主體가 서로 다르며 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은 남한지역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은 전한반도지역에서 수행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地下黨과 그 주위에 뭉친 勞·農同盟軍과 각계각층인데 비하여 조국통일에서의 主力軍은 남북한 전역의 노·농동맹군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黨도 김일성이 직접 이끄는 북한의 로동당이 된다는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에 의하며,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이룩하여 人民政權(共産黨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을 수립한 후 이정권과 북한의 공산정권간에 形式上의 平和協商節次를 거치는 이른바 合作統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北韓의 「祖國統一」觀

공산주의자들은 해당 社會의 하부구조의 발달정도에 따라 혁명의 방식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전략·전술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 바로 이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국통일에 관한 주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조국통일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족적 및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조국통일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는 남한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적 반봉건사회라는데서 그리고 민족적 및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 까닭은 조국통일문제가 우리민족 내부적인 일국혁명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사실상 조국통일은 오직 혁명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대남혁명전략의 基調

(1) 戰略段階와 목표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은 한국의 현 體制를 타파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각계각층을 규합하여 투쟁하는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도밑에 그들은 남한의 현 처지를 미국 및 일본의 식민지적 종속국이라고 모함하면서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強辯하고 있다.²⁹⁾

따라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구실을 내건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의 목표가 駐韓美軍의 철수와 반공정권의 타도에 의한 소위 인민정권의 수립에 있음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그들이 대남혁명의 목표를, 反帝니, 反파쇼니, 反封建이니 하고 애써 내세우고 있으나,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또한 파쇼나 봉건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그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는

28) 허종호, 前揭書, pp.45~46

29) 1970.11 勞動黨 5次 大會 및 1980.10. 6次 黨大會에서 改正한 黨規約 前文 參照

것은 어디까지나 광범한 反美, 反政府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혁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조작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단 성취되고나면 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되리라는 점은 그들의 革命原理上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이 黨規約 前文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하였고 최종목적을 “은 사회의 주체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그같은 저의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2) 統一의 두가지 方法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⁰⁾

이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비평화적 방법이 여의치 않는 여건에서 평화적 방법을 구상해 낸 것이며, 또한 그 평화적방법자체가 결코 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데 유념해야 한다. 즉 비평화적 방법이란 북한이 무력을 직접동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을 통하여 남한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화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中心고리 전술」이 바로 주한미군철수론인 것이다.

한편 平和的 방법이란 남한 자체내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수행된 다음, 남북정권을 통합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정권(反共自由民主體制)이 「연공정권」(人民政權과 같은 개념임)으로 교체된 다음 남북간의 합작³¹⁾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30) 허중호, 前掲書, pp.264~270

31) 북한공산집단은 「合作」의 뜻을 대부분의 경우「統一戰線戰術」과 同義語로 쓰

때문에 평화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심고리 전술이 바로 남북 연방제통일론인 것이다.

그런데 前者나 後者가 모두 남한의 반공정권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現存하는 남북체제사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美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것이 남조선당국자들과 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을 하자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그러면서도 북한공산집단이 것처럼 요란하게 평화적 통일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평화공세를 펴는 한편, 대한민국이 마치 파쇼적이며 호전적인 집단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려는 데 그 진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對共 경각심을 약화시켜 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것처럼 평화를 애호하고 있는듯이 위장선전하는 데는 앞으로 야기될수도 있는 제2의 6·25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한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도 아울러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3) 戰略的 指導課題

전략적지도란 바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혁명역량을 옹개 편성배치하고 결정적시기에 맞추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

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는 국가간의 일반적 合作교류와 엄격히 구분되며 동시에 두 制度間의 共存을 위한 合作과 교류와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따라서 北과 南의 多方面的 合作과 교류는 광범위한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云云하고 있다. 허종호, 前揭書, pp,229~230.

3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239.

는 속도로 공격전술을 동원하도록 조정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般原理를 북한공산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3大革命力量의 編成

혁명과 반혁명의 역량대비관계에 있어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군을 어떻게 책정편성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일성은 소위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혁명역량을 편성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 ① 「공화국」북반부의 社會主義혁명역량
-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
- ③ 국제혁명역량

여기에서 「남조선의 혁명역량」이란 노동자 계급(黨)이 영도하는 勞·農同盟軍을 주력군으로 ³³⁾삼고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소시민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혁명의 보조군으로서 反美, 反政府的인 統一戰線으로 묶어세운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이란 공산제국은 물론이며 선진제국에서의 노동운동 및 비동맹권에서의 反韓·反西方운동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내의 각 정당및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노사간의 갈등, 미·일양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제국간의 갈등을 間接補助軍, 즉 對南革命을 간접적으로 돕는

33) 1985.7.27.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통일혁명당의 후신)名義로 發表한 “韓國민족자주선언”以後는 主力軍을 勞·農·學同盟과 그 속에 뿌리박은 前衛組職으로 再策定하고 있다;不穩油印物, “주체사상강좌” 제3장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1987.3. p.6參照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革命力量을 기반으로하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니하는 말을 일단 뒤로 미루고 反帝·反封建·反파쇼의 구호를 내걸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실현하여 「人民政權」이라는 共產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것이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정체이다.

나) 3大革命力量의 配置

3대혁명역량을 편성, 강화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수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접전쟁의 방법을 취하느냐 또는 남한 자체내에서의 혁명방식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것을 主力軍으로 하며 무엇을 補助軍(여기서도 우선 순위가 있음)으로 배치하는가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산주의혁명원리에 따르면 아무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혁명역량의 편성과 함께 그 배치문제가 중시되는 것인데 김일성이 對南革命戰略의 指導에서 제시한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의 역량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i) 非平和的 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북한 자체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인 소위 「인민군」이며, 이들이 미군과의 충돌을 될수록 피하면서 국군을 공격하여 섬멸한 후 남한전역을 강점한다.

둘째, 第1補助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이며 이들이 남진하는 인민군의 군사행동을 보조하면서 폭동을 일으켜 남한의 군사력을 분산, 약화시킨다.

34) 内外政策研究所, 前掲書, pp.131~132

셋째, 第2補助軍은 국제혁명역량이며 이들이 국제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성원하고 남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저지한다.

ii) 平和的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중 地下黨(소위 「統一革命黨」 또는 「韓國民族民主戰線」)과 그 주위에 결속된 「勞·農同盟軍」이며, 이들이 남한 전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현정권(反共自由民主政權)을 전복한다. 그리하여 혁명정부 수립선포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둘째, 제1보조군은 통일전선에 망라된 각계각층이며 이들이 主力軍의 혁명투쟁을 보조하면서 각 지역에서 지주, 자본가, 및 반혁명관료(反動官僚)들을 타도한다. 그리고 일부 浮動層에 대해서는 반혁명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격리, 中立化시킨다.

셋째, 제2보조군은 북한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며 이들이 대남공작요원을 대량 남파하여 주력군과 합류해서 무장폭동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남한의 친공적 혁명정권이 요청한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는 구실하에 인민군이 직접무력침공을 감행한다.

넷째, 제3보조군은 국제혁명역량이며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비롯한 남한 지원역량을 약화, 남한을 고립시키고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 성원한다.

다) 速度維持의 問題

共産黨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란 혁명운동의 주·객체적 여건이 성숙되어 소위 “반혁명적 폭력을 혁명적 폭력으로써 일격에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을 뜻한다.

이러한 시점은 전혁명전략단계중에서 쉽게 얻어낼 수 없는 戰術段階로서 이와같이 귀중한 시기를 어떻게 조성, 선택 및 이용하는가 하는 속도유지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戰略的 指導課題

로서 매우 중요시 되는 것이다.

i) 決定的 時機의 展望

그들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는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³⁵⁾

첫째는 기습남침 즉 비평화적방법을 취하는 데 유리한 시기이다. 즉 ① 세계도처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도처에로 분산되지 않을 수 없는 시기, ② 미국내부 여론의 압력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해지는 시기, ③ 남한 전역에서 反美, 反政府的인 대혼란이 벌어지는 시기등이다.

둘째로는 남한 자체내부에서의 革命 즉 평화적 방법을 감행하는 데 유리한 시기이다. 즉 ① 남한에서 지도층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갈팡질팡하게 되는 시기(上層階級の 위기), ② 남한 내부에서 계급적 갈등이 격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下層部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기(下層階級の 위기), ③ 남한의 혁명역량이 튼튼히 편성되어 반혁명세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시기 등이다.

ii) 결정적 시기의 조성

김일성은 “혁명이란 혁명가들의 적극적이고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될 수 있으며 성숙될 수 있는 것”³⁶⁾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즉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그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명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地下黨을 구축하고 그 주위에 「勞·農同盟軍」을 비롯한 광범위한 동조세력을

35) 上揭書, pp.133~134.

36) 허중호, 前揭書, p.173.

규합하여 革命的 力量을 튼튼히 다지며,

둘째,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정부 감정이 일어나 각종 군중투쟁(대중투쟁)을 부단히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反革命勢力을 相互 고립, 약화시키며,

셋째, 국제무대를 통한 해외공작을 전개하여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iii) 결정적 시기의 선택

김일성은 “우리가 혁명적 여건을 의도적으로 성숙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 조국통일의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혁명여건을 분석·판단하고 결정적 시기를 제때에 선택 포착하는 것이며, 일단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결정적 투쟁으로 돌입하는 것이다”³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기선택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제아무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고 배치하더라도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역시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며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혁명과 반혁명간의 역량대비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 및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iv) 決定的 時機의 利用

김일성은 일단 결정적 시기가 선택된 다음에는 지체없이 반동통치배들을 짓부수는 결정적 투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혁명에 있어 근본문제는 政權에 관한 문제이다. 적들의 수중에

37)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김일성주의 혁명론」, 1978, p.173

38) 허종호, 前揭書, p.173

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정치투쟁, 무장투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⁹⁾ 즉 결정적 시기가 선택된 다음에는 지체없이 총공격으로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지도의 과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은 무장봉기를 단행함을 뜻한다. 북한공산집단은 지난날 남한의 「4·19」를 보면서도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戰後 복구사업에 몰두하여 그때까지 主體的力量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던 탓인데 지금도 그것을 “千秋의 恨”으로 삼고 있다.

라) 方向維持의 問題

혁명 수행과정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 선택, 이용하여 적시에 공격으로 전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속도조정문제」가 전략적 지도과제로 제기되나, 사태가 불리하여 후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方向維持問題」(戰略目標堅持)가 戰略的 指導課題로 제기된다.⁴⁰⁾ 즉 「退却」이나 「妥協」은 퇴각 또는 타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새로운 공격을 위한 잠정적인 퇴각이나 타협임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금 명심케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술의 전략목표 지향문제는 비단 후퇴시의 경우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전술하에서도 강조되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戰略上에 기여되지 않는 전술의 성과는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기본 운용원리이다. 다만 전략적 목표를 망각하기 쉬운 시기가 후퇴를 강요당하는 간조기이므로 이 시기에 특히 方向維持問題가 강조되는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이 6·25動亂中 위급한 시기에 소련을 내세워 휴전을 제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나서 전후복구에 임하였고, 이어서

39)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前揭書, p.109.

40)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392

군비확장에 광분했던 것은 바로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전술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전략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것이 戰略的 指導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4. 북한의 對南革命戰術

가. 대남혁명전술의 基調

(1) 전술단계와 임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술은 남한을 공산화함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 따라서 수행되는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의 교체 및 배합기술을 의미한다. 즉 만조기에는 공격을 취하고 간조기에는 후퇴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전술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술적단계가 변화하였다고 하여 전략적 단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만조기에는 전략적 목표인 「駐韓美軍의 축출」과 「反共政權의 타도」를 성취하기에 유리한 시기이므로 공격 및 공세적 임무가 할당되며 간조기에는 불리한 시기이므로 후퇴 및 수세적 임무가 할당된다. 요컨대 戰術的 段階나 임무란 독자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節次 및 手段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전술적 후퇴가 결코 전략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실상 공산주의적 견지에서는 전략적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의견상 후퇴로 보이는 것은 모두 戰術的 후퇴인바, 그 대표적 實例가 6.25동란시 그들의 休戰提議라 할 것이다.

(2) 戰術的 指導課題

전술적 지도란 바로 전술임무의 달성을 위해서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Slogan)를 적시적절하게 교체 및 배합하는 동시에 해당 시점에 있어서의 「중심고리」를 포착하며 그것을 제때에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전술적 지도는 戰略的 指導의 한 부분이며 전략적 지도의 통제하에 수행되는 현지에서의 구체적 통제이므로 현지간부들의 책임소관에 속한다.

金日成은 “조성된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여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을 능숙히 이용해야 한다”⁴¹⁾고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이 남한의 구체적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알맞는 투쟁형태와 조직형태 및 표어를 적시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남한 사회내의 갈등과 약점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現地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지에서 주·객체적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알맞는 투쟁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술적 지도과제이다.⁴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공산집단이 어떻게 對南革命의 전술적 지도를 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쟁형태의 교체·배합

滿潮期에는 공격을 취하며 干潮期에는 후퇴로 전환해야 한다는

41)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72, p.487.

4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91.

것이 그들의 투쟁형태 교체원리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하여 만조기도 아닌 상황에서는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해 나가는 것이 전술적 지도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群衆의 사상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쟁이나 고도의 정치투쟁을 선택하더라도 군중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군중이 혁명적 기세가 높다 하더라도 彼我間의 力量關係를 무시한다면 그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혁명의 主·客體的 與件이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투쟁형태를 취하는 것은 모처럼의 성숙된 기회를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모든 투쟁 형태가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과 군중의 의식수준 및 彼我間의 역량관계에 알맞게 선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⁴³⁾

i) 政治鬭爭과 經濟鬭爭의 配合

북한공산집단이 바라고 있는것은 정권탈취를 위한 대규모 파업, 시위, 폭동, 무장투쟁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아직 정치적 각성면에서 부족하므로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 개선등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으로써 혁명적 의식화 공작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투쟁이 정치투쟁과 적절히 배합되지 못하면 經濟至上主義, 기회주의로 빠져 경제투쟁 그 자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토대위에서 반드시 정치투쟁이 배합되어야만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ii) 合法, 半合法, 非合法鬭爭의 配合

43) 허중호, 前揭書, p.649.

44) 上揭書, p.150.

북한공산집단은 남한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半合法 및 비합법투쟁이 불가피하며, 또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합법투쟁」이란 경제투쟁과 같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비합법투쟁」이란 정치투쟁과 같이 법률에 저촉되는 본격적인 혁명투쟁을 뜻하며, 「半合法투쟁」이란 기본적으로는 비합법투쟁에 속하면서도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식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비합법투쟁은 광범한 大衆을 끌어들일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투쟁만 전개하는것은 黨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합법투쟁 그 자체까지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반합법·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만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혁명역량을 육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⁴⁵⁾

iii)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의 配合

폭력투쟁이란 테러, 파괴, 무장투쟁등인바 말하자면 최고의 비합법적 정치투쟁을 뜻하는 별칭이며 비폭력투쟁은 폭력 이외의 온갖 방법으로 전개하는 투쟁으로서 합법적 경제투쟁등을 기본수단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 및 경제투쟁, 소규모 및 대규모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反革命的 세력을 분산 약화시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투쟁을 결합시키는 데 무관심하고 비합법적, 정치적, 폭력투쟁에 치우치면 左傾 영웅주의적 오류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右傾 투항주의의 오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45) 上揭書, pp.151~152

46) 上揭書, p.152.

나) 組織形態의 交替, 配合

상술한 바와 같은 투쟁형태의 교체 및 배합문제는 필연적으로 조직형태의 교체 및 배합을 수반하게 된다. 만조기에 있어서는 黨이 地上으로 나타나며 혁명적 파업위원회등을 조직하게 되나, 간조기에는 黨이 地下에 잠입하며 합법적인 문화 계몽단체 또는 기존의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등에 침투하여 공작하게 된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하여 만조기도 아닌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합법 및 비합법적 조직형태를 배합하여 工作하는 것이 그들의 공작원리이다. 이와 같은 배합에 있어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비합법적 조직인 것이나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법적 조직을 통한 공작이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건이 不利할수록 既存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높이며 여건이 유리해질수록 비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이용가능한 조직형태를 주어진 여건에 알맞게 최대한로 활용하면서 대남공작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공산집단의 속셈인 것이다.

다) 鬭爭標語의 交替・配合

만조기에는 혁명적이며 호전적인 표어를 제시하며 간조기에는 타협적이며 평화적인 표어를 내걸게 되는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각종 투쟁 및 조직형태를 배합하는 시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어의 배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표어의 배합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원칙은 전략적 및 전술적 표어의 배합, 정치적 및 경제적 표어의 배합,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표어를 상호 배합하는 것이다.⁴⁷⁾ 그들이 이와 같이 각종 표어를 배합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47) 上揭書, pp.147~148.

戰術的 標語는 技術적 當면과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되나, 그 같은 투쟁이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표어로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권의 타도가 투쟁의 기본방향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서로 배합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및 정치적 표어의 배합이 요구되며 또한 反美思想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표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중심고리의 捕捉・處理

「중심(核心的)고리」란 해당시점에 있어서 技術적 성과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적 문제, 즉 그것만 적시에 끌어당기면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技術적 지도과제를 뜻한다.⁴⁸⁾ 이와 같은 중심고리를 찾아낼 줄 알고 그것을 적시적절하게 끌어당겨 戰略的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기본요건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위해서 그때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는가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심고리의 발견과 그 적시적절한 처리문제에 대한 先例는 러시아혁명 직후 전시공산체제하에서 파괴된 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NEP(New Economic Policy:新經濟政策)를 취한데서 찾을 수 있다. NEP는 技術적으로는 후퇴하는 것이었으나,⁴⁹⁾ 전략적으로는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하자면 전략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적 指導에 따라 해당 시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技術적 지도과제가 바로 중심고리의 포착 및 그 조치인 것이다.

48) 북한에서는 「중심고리」라고 표현하고 있다:註24)참조

49) 共產主義的 方向에 逆行되는 個人經營 및 自由商업을 一時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나. 對南革命戰術의 變遷過程

북한공산집단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남전술을 여러 번 바꾸어 왔는데 그러한 전술들이 모두 對南戰略에 종속된 것이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현재까지 취해온 對南革命戰術의 행태를 전술단계와 임무 그리고 「전술적 중심고리」를 위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행동원리를 재확인 하기로 한다.

(1) 8.15解放~6.25南侵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북한)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남한)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對應力量을 약화시켜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세적 방어형 전술과 우회공격형 전술을 배합한 兩面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에서는 소위 「民主基地路線」(북한혁명기지노선)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식 정치·경제적 諸改革을 단행하고 소련 지원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각지에서는 무장유격전과 軍內叛亂, 그리고 10.1大邱폭동, 4.3제주도 폭동 등을 일으키게 해놓고서도 엉뚱하게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담」 등을 제안하는 술책을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하면 그간에 준비한 압도적인 武力으로서 남한정복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打算에 의하여 소련과 공모하여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軍이 先制徹收하면서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9년 6월에 美軍이 남한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2) 6. 25南侵~休戰 提議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만조기단계로 보고 피아역량계산과 시험을 마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한 바탕위에서 본격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격형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초에는 애치슨 美國務長官이 한국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켰으며 더욱이 남한내부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무장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무력남침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조기전술단계의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한 각지에 南勞黨系 당간부를 파견, 각지구당을 양성화시켰으며 또한 好戰的 표어를 내걸어 남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소위「人民軍」의 남침작전을 지원하도록 공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각지에서는 각종 左翼團體가 雨後竹筍처럼 조직되었고 소위「反動分子」숙청이란 명분하에 수많은 양민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력을 다하여 성취하려고했던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전역을 조속히 강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한전역을武力으로 강점하기만 하면 나머지 공산화목적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3) 休戰 提議~休戰 成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본격적인 정면공격이 UN軍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자,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간조기 전술단계로 보고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1950년 9월 UN軍의 仁川上陸作戰을 계기로 그들이 위

기에 몰리자, 생존유지책으로서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적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死力을 다해서 싸우는 양면전술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남한내의 瓦解된 地下黨을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5개지구당으로 개편, 재건하고⁵⁰⁾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5개지구당 통제하에 유격전을 자행케 함으로써 南韓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戰線에서의 보다 나은 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休戰을 가능한한 유리하게 매듭지으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戰線과 남한내의 후방에서 전개하는 유격전을 결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과 보다 명예로운 地位를 차지하면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휴전을 하지 않고서는 生存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휴전을 하기는 하되, 장차의 再南侵을 위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함과 아울러 조금이라도 더 地位를 격상시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침략자」의 오명을 씻고 현실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死力을 다했던 것이다.

(4) 休戰成立~4.19義舉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與件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판단하고 그들의 자체역량을 비축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와해된 隊列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였

50)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集(下卷), 1974, p.71參照

第1地區黨:서울과 경기도 全域統管, 第2地區黨:蔚珍郡(과거에는 강원도)을 除外한 강원도 全域統管, 第3地區黨:忠清南北道 全域統管, 第4地區黨:慶北全域과 江原道蔚珍郡(지금은 慶北) 및 洛東江 以東의 慶南全域統管, 第5地區黨:全南北과 洛東江 以西의 慶南地域 및 忠南論山 地域統管.

다. 즉 6.25남침 실패의 책임을 南勞黨系에 전가시켜 政敵을 숙청하는 한편, 민주기지노선을 재확인하고 전후복구 3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였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둔 5개년계획실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에는 日本에 있는 「在日本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로 개편하여 남한 공산화의 간접기지를 만들어 내었고 그들을 내세워 재일동포 北送工作을 추진한 결과, 1959년 11월부터 재일동포의 복송이 개시되어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이루어지자 이 무렵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통일」을 내세워 對南宣傳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남한은 호전적이고 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권인 것처럼 위장하는 평화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향은 수세적 방어전술에서 앞으로 공세적 방어전술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으며 6.25동란이 남침 아닌 北侵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韓·美兩國을 침략자로 조작하려는 賊反荷杖格인 전술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것은 앞으로의 再南侵을 위하여 북한자체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복구함과 아울러 6.25로 말미암아 꺾멸된 남한내의 地下黨을 再建하는 것이었다.

(5) 4.19義舉~5.16革命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객체적여건은 만조기 전술단계였으나, 그들의 주체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야기된 4.19義舉事態라고 하는 무력재남침에 유리한 여건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노골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平和攻勢에만 의존한 공세적 방어형전술만 구사하였다. 즉 공

산화혁명 성취에 직접 연결될 적극적인 행동은 단행하지 못하고 4.19學生義舉가 마치 북한공산집단을 지지하여 일어난 人民蜂起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남북협상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데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 조성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工作員(間諜)을 대량 남파시켰다.

그리고 「4.19」가 일어난 해인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 김일성은 聯邦制統一案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한의 政局混亂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⁵¹⁾를 새로이 조직하였고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1964년 5월 「社勞靑」으로 改稱)내에 포함되어 있는 學生組織을 별개의 독립된 조직같이 「조선학생위원회」로 탈바꿈시켜 남한학생들의 조직과 대등하게 꾸며서 학생들에 대한 선동과 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북한공산집단은 한편으로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남한의 革新系列을 지원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종속적 괴뢰당으로서의 지하당 조직을 서둘러서 걸으므로는 「평화통일」을 요란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공산집단은 이 시기에는 자체역량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한내에 지하당 구축을 비롯한 容共勢力 扶植을 戰術的 中心고리로 삼고 간첩의 대량투입과 平和統一論을 요란하게 선전하는

5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란 「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46.2)과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46.7)을 통합하여 1949.6.27에 창립한 黨·政聯合體로서 對南平和偽裝統一攻勢에 써먹기 위해 만든 勞動黨의 앞잡이 기구이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란 1961.5.13, 4.19以後 南韓에서 擡頭된 一部 남북협상론에 호응하기 위해 급조한 평화위장통일단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구성원의 하나임.

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6) 5.16革命~對話開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여건을 정면공격 임무가 부여되는 만조기 직전의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 피아역량을 계산, 시험하는 완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5.16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反共態勢가 강화되자 이에 맞서 4大軍事路線(1962.12)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하여 1966년부터는 적극적인 폭력적 대남도발공작으로 전술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靑瓦臺 기습을 시도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울진·삼척지역에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再南侵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力量의 시험이 끝내는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 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데 고무되어 비정규전적인 폭력에 의한 남한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인민무력부정찰국 산하의 124군부대, 283군부대, 17정찰여단등의 특수 게릴라部隊를 통합·개편하여 특수8군단(一名 輕步教導指導局이라 부르기도함)을 신설, 약 10만명 내외의 특공병력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게릴라 투입에 의한 對南共產化를 노려 광분해 보았으나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김일성은 제5차「로동당」대회(1970.11)에서 북한혁명기지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므로 남한에서의 자치혁명역량을 육성, 강화시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대규모투쟁과 소규모투쟁 등을 배합(綜合)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전술적 중심고리는 비정규전방식, 즉 게릴라전술을 구사해서 滿潮期를 조성하려는 것이었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7) 對話開始~對話中斷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客體的 與件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남북대화라고 하는 우회적 방법을 써서 혁명의 만조기를 조성하고자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공산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7.4남북공동성명과 南北對話를 계기로 남한국민들이 통일분위기에 들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편승하여 남한국민들의 대북경각심을 이완시킴으로써 容共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법적 방법으로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드디어 대화의 지속 및 진전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획책하였다. 그와 같은 의도에서 내걸게 된것이 바로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 좌익사상범의 석방 소위 「統一革命黨」을 포함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대화 참여 요구였다. 이것을 두고 一名 남한사회의 「법률적·사회적 조건환경개선론」이라고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시킴으로써 공산화혁명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들의 의도가 쉽사리 달성될 수 없음을 알게되자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1973년 8월 28일 소위 金英柱 聲明을 통하여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8) 對話中斷~버마事件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남한자체내에서의 반미, 반정부운동을 조성, 소위

「인민혁명」의 여건을 고조시키는데 역점을 둔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카터 美大統領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公布하였을 당시에는 對南戰略目標의 우선순위를 先 주한미군철수에 두었고, 레이건 大統領이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자 이번에는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先 반공정권타도 편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신축성있는 전술운용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는 대화에 의한 공산화혁명의 여건조성을 단념하고 남한이 제의하는 대화 및 통일방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을 붙여 반대하면서 「대민족회의」니, 「전민족대회」니, 「정치협상회의」니, 「100인정치연합회의」니 하면서 연방제안을 고집스럽게 내걸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기도해온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연방제라고 하는 南北合作統一論의 저의를 살펴보면 대내외적으로는 남한내 미군주둔의 명분을 퇴색시켜 그 철수를 촉진하고, 한·미간의 유대를 와해시켜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對南面에서는 反共의 명분을 퇴색시켜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고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켜 소위 「인민정권」의 출현을 촉진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人民政權이란 본질적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잠정적인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저들이 주장하는 世稱 「통일혁명당」 또는 「한국민족민주전선」주도하의 연합정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종전에 주장하던 「고려연방공화국」안에 「민주」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創立方案이라는 것을 내놓고 쌍방 군대의 10~15만명선으로의 상호감축과 「민족연합군」의 창설, 운용을 제창하고 있는데,⁵²⁾ 이는 곧 南北聯邦이 실현되면 그

52) 金日成 第6次 黨大會(1980.10) 演說에서.

들 예비군(主로 「로·농적위대」)의 우위성을 이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연합군 내부에 프락치를 침투시켜 적당한 기회가 포착되는대로 政變을 기도하겠다는 底意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的 사고방식은 「正·反·합」的 통일이 아닌 滅舊生新的 「밀어내기式 정복」을 합법칙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기 때문에⁵³⁾ 만약 김일성이 진심으로 남북한의 체제를 공존하게 하는 聯邦을 구상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 반면에 그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연방제 즉 합작통일론을 제창하는 것은 정권탈취목적의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에 따른 전략적 기도로써 이는 남한에서의 보다 광범한 혁명역량을 동원, 배치하고 주한미군축출과 공산당활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술책, 즉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신의 주체사상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로서⁵⁴⁾ 이는 후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좌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기에 全力을 다하여 붙잡고 끌어당기려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全斗煥大統領을 살해함으로써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社會變亂이 발생하도록 誘導하는 것이었다.

(9) 버마事件~88서울올림픽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여건을 침체기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여건을 만조기 직전의 完全한 양양기 전술단계

53) <표5> 「唯物辨證法的 征服方式」참조

54) 金日成의 「주체사상」또는 「자주노선」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결코 독창적인 이론적 「틀」을 갖춘 「主義」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로 간주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역량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만조기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로 임하였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폭발만행사건으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상태를 만회해야하고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3者會談을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힘에 겨운 대남수재물자제공이라는 인도주의적 탈을 써야 했고, 또한 남북회담을 재개해야만 되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소위 「합영법」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난국에 몰려 있을뿐 아니라,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서방제국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더라도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을 向上시켜 줌으로써 金正日의 통치명분을 창출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간에 남북대화에 응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꾸며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이르러 그들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술적 중심고리를 남북대화의 유지에 둔것 같았으나 '85년도에 기도한 남북대화의 성과가 여의치 않자 '86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존대화 不振의 책임을 한국측의 팀스피리트군사훈련으로 돌려 대화를 중단시키고 그 새로운 중심고리 찾기에 무척 고심한 나머지 「군사3당국회담」(86.6.17),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87.1.11), 「다국적 군축회담」(87.7.23), 「3자의무장관회담」(87.8.6), 「남북연석회담」(88.1.1), 「남북국회연석회의」(88.7.20)등을 내놓은 것 같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객체적여건을 보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대학소요가 점점 폭력화, 極左化되고 있고, 勞·使爭議

가 부분적이거나 경제적 利害水準을 넘어 정치투쟁화, 계급투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85.2.12 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여·야간의 갈등, 특히 88.4.26 총선거를 계기로 與小野大 현상의 결과로서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여건을 남조선혁명 전술운동상의 고양된 양양기 전술단계로 판단하고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만조기전술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가용보도매체를 총동원하고 무장 또는 비무장 공작원(간첩)을 집요하게 남파하여 학원소요와 勞使爭議를 선동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민·관·군 이간을 통한 남한의 정치·사회적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성하기에 광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그들이 조작한 남한내 유명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시국의 변화와 당자체의 발전요구라는 명분아래 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을 뿐만아니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도 동년 8월 8일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한데 이어 동년 8월15일부터는 소위 「민중의 매아리방송」을 신설 운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88년 9월1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기로 되어있던 제24회 88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그들의 소위 「3대혁명역량강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판단하에 이를沮止키 위해 온갖 방해공작을 다하다가 마침내는 87년 11월30일 잔인무도하게도 한국의 KAL 858여객기를 그들 工作員을 시켜 공중폭파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기에 포착하고자한 전술적 중심고리는 88서울올림픽개최를 저지시키고 문제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킨 「노·학연계투쟁」전열형성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0) 88서울올림픽~現在까지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體的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여건을 고양된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 역량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만조기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로 임하고 있는것 같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적여건을 보면 남한에서 개최한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한 이로 말미암은 남한의 北方政策이 의외로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⁵⁵⁾ 상대적으로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힘에 겨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平祝行事)을 치려야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퇴조했던 國際革命力量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는 하였으나, 이로말미암아 金正日이 젊어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인 소위 「인민생활」향상은 더욱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내세운 80년대 10대전망목표 및 제3차 7개년 경제계획('87~'93)달성에는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위해, 대내적으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다그치게 되었고, 또한 근년에 신설한 합영공업부('88年 11月 26日)를 통해 서방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 분위기 造成上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지 분명치는 않으나 '89년초에 한미간의 연례행사인 팀스피리트훈련과 동년 4월 17일 문익환목사 구속문제를 핑계로 중단시켰던 기준

55)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韓國과 공산제국과의 관계개신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헝가리(89.2.1) 및 폴란드(89.11.1)와는 대사급수교가 수립되었고, 유고슬라비아(駐韓 88.10.3, 駐유고 88.6.13), 소련(駐韓 89.4.3, 駐소 89.4.13)폴란드(駐韓 89.5.24, 駐폴란드 89.4.13), 불가리아(駐韓 89.7.21, 駐불가리아 89.4.4)와는 상설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교역면에 있어서도 88년도에 소련과는 약3億弗(수출 2억 2천2백만불, 수입 1억 7천 8백만불), 中國과는 약 29억4천만불(수출 18억 1천만불, 수입 11억 3천만불)의 무역실적을 기록한바 있다.(出處:外交關係~外務部, 交易關係~KOTRA)

의 남북대화를 '89년 9월 27일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계기로 형식상이나 전면 재개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客體的 여건을 보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일부대학가의 좌경적 난동이 점차 극렬해져 가고있고 노·사쟁의 또한 대기업에 갈수록 정치투쟁화, 계급투쟁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특히 '88년 4월 26일 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與小野大현상 및 「민주화」바람과 아울러 「5共清算」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팽팽이 맞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여건을 남조선혁명 전술운동상의 高揚된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이 好期를 놓치지 않고 革命的 客體的 여건을 만조기 전술단계로 끌어올리기에 온갖 계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88서울올림픽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올림픽 개최 직전인 '88년 8월 19일까지 끌고 가는 집요함을 보이다가 이 공작이 무산되자 '89년에 들어서서 盧泰愚 大統領의 7.7宣言('88년 7월 7일에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大統領 特別宣言)을 핑계삼아 “黃皙暎”, “文益煥”(89.3.25)등 在野人士들을 개별적으로 入北시켜 그들을 통해 남북간의 민간레벨접촉에 관심을 표명하여 남한내의 각종 반체제성향의 민간단체들에 추파를 던짐으로써 「민주화조류」에 편승한 남한사회의 국론분열을 기도하더니 '89년 7월을 前後해서는 平祝行事('89.7.1~8)를 최대한으로 이용, 그들의 실추된 국제혁명역량 만회는 말할것도 없고, 이행사를 소위 「남조선혁명역량」강화의 일환으로서의 반정부, 반체제세력, 특히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자의 반정부, 반체제투쟁을 고무진작하는 데 심분 활용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남북학생회담 명분하에 임수경(外大 佛文4年)을 마치 남한 학생의 총대표인양 平祝行事期間에 密入北시켜('89.6.30) 대남·대미 비방용으로 이용하고, 끝내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그 선례가 없는 쌍방 합의없는 판문점 월경사건을 자행케 했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89년 7월 9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許鎔명의로 북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남한국민과 해외동포를 이간시키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꾀하는 데 여념이 없을뿐 아니라 1989년 9월 11일 우리의 盧泰愚大統領이 국회연설에서 내놓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마저 분단 고착방안이라 일축하면서 「민족통일협상회의」開催('89. 9.28)라는 상투적인 군중집회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민족통일」이 아닌 남한赤化革命에 혈안이 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점에서 포착하고자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波及效果로서의 한국의 北方外交성과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남한내에서의 반체제적 노·학·재야연계투쟁 전열형성이라고 하는 下層 통일전선전술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工作하는 것 같다. 그러나 最近 東歐事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際革命力量이 여의치 못한 탓으로 전술운용상一種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것으로 보인다.

以上에서 북한공산집단의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남전술의 변천과정을 원리적차원에서 分析해 보았다. 그들은 일단 혁명의 만조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자행하고 그것이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면 후퇴하여 재공격을 위한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彼我間의 力量을 계산하고 시험하는 등 또다시 만조기를 조성하기 위한 工作에 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해 가며 이용가능한 모순과 약점에 파고들어 우리 사회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때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합법적인 경제투쟁 및 소규모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상황이 허용되면 비합법적인 政治鬭爭 및 대규모투쟁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적 지도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체계는 휴식이 없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같은 과정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장차 除去 또는 改造對象으로 책정하고 있는 靑年인텔리층(특히 대학생)과 宗敎人들의 현실비판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을 「革命的 기폭제」,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媒介者」, 「노동자·농민들에게 혁명을 전파하는 교두보」, 「반제·반파쇼민주구국투쟁의 기수」 운운하며 고무, 찬양하고 있는데 이같은 策略이야말로 社會主義革命的 前段階혁명인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단계의 전략적지도에 따른 보조군의 이용수법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성취되고 나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 인텔리 및 종교인들은 마땅히 제거, 또는 改造對象으로 취급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단계이기 때문에 장차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숙청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계층까지도 「민족의 해방」이니 「평화적 민주화」니 「정치적 통일」이니 하는 위장된 구호들을 내걸고 그들 인텔리 및 부동적 중립계층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혁명단계의 전략적 지도에 맞추어 전술적지도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들 공산당의 전략·전술을 두고 “음모의 과학이며 파괴와 반항의 기술”이라고 한 왓슨敎授의 표현은 매우 적

절하다 할 것이다.⁵⁶⁾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전술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모하면서도 해당혁명단계의 전략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원리를 알 수 있다.⁵⁷⁾ 바로 이같은 원리때문에 전술의 전략에 대한 종속성이 유지되며 또한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며 봉사하는 방향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戰略과 南韓의 「民衆民主主義革命論」比較

참고로 大學街를 비롯한 우리사회 일각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민중민주주의혁명론」(主로 N·L·P·D·R派, 自民闘)과 북한외의 대남전략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공산집단은 그들의 「로동당」 규약에서 당면 대남전략 목표를 南韓에서의 인민정권(공산정권)수립에, 그리고 최종목표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두고 있는데 남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도 당면전략목표를 남한에서의 민중정권(공산정권)수립에, 그리고 최종목표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두고 있으며,

둘째, 북한공산집단은 南韓社會의 성격을 美帝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도 한국사회를 미제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북한공산집단은 당면 타도대상을 남한의 미제와 매관자본가(반동관료포함) 계급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남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도 당면타도대상을 한국내의 미제와 매관자본가(고급관료포함)계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56) Hugh Seton Watson, *From Lenin to Malenkov, History of Communism*, Praeger, N.Y., 1954, 2nd ed, Preface.

Watson은 런던大學 교수로서 父子 2代를 이어온 슬라브 東歐問題 專門家이며本書 以外에도 「新帝國主義」(1961) 등 多數의 著述이 있다.

57) <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참조.

넷째, 북한공산집단은 당면 대남공산화를 위한 혁명의 주력군을 남한의 「勞·農·學同盟」세력으로(1985.7.25.以後), 그리고 그 보조군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계층」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남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도 주력군을 한국의 「勞·農·學同盟」세력으로, 그리고 보조군은 당면 타도대상을 제외한 각계각층(野黨까지 포함)의 광범한 민중계층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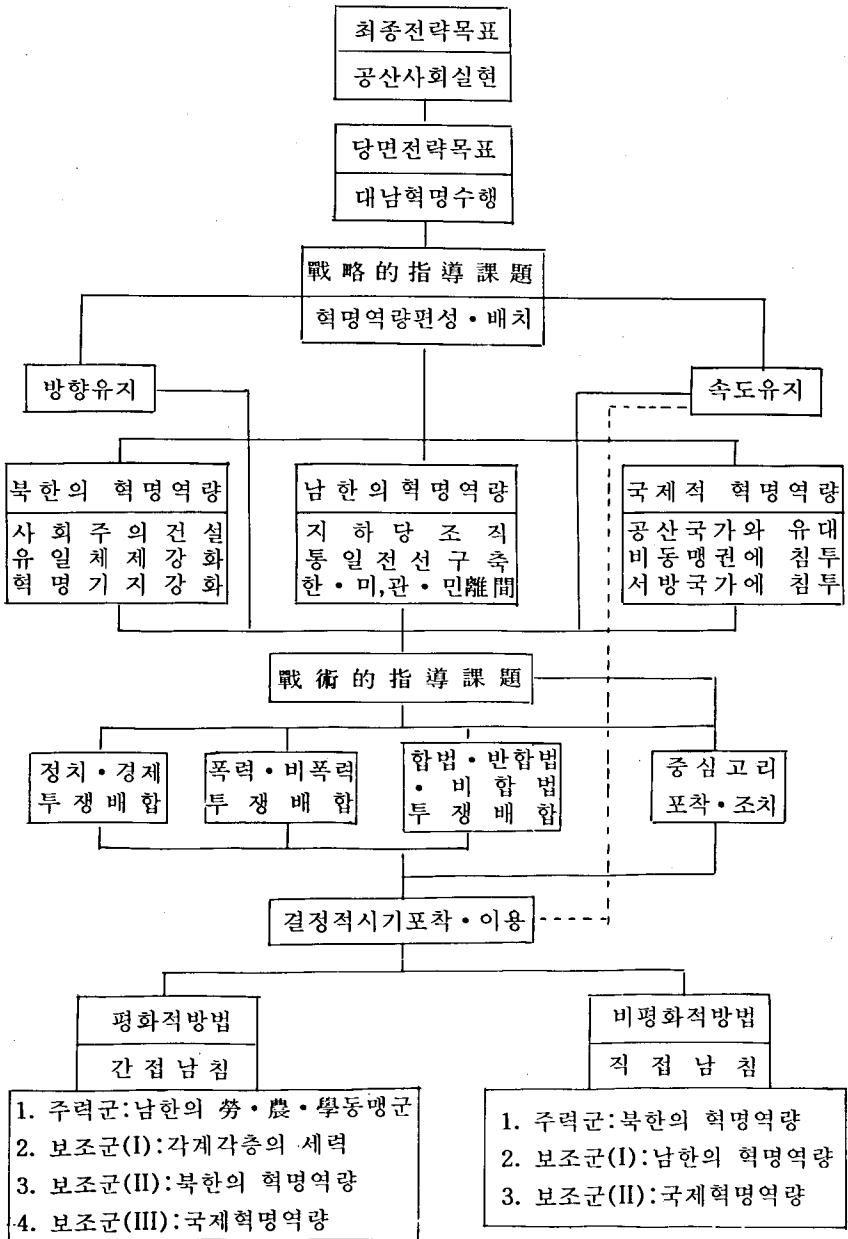
다섯째, 북한공산집단은 무장력에 의한 직접침략 방법으로 「남조선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실로서 反軍·反帝·反戰·反核 투쟁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남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표 3> 對南戰術의 原理的分析

단 계	운 용	비 고
1. 8.15後~ 6.25南侵	1. 임무:역량비축 및 역량시험, 迂迴 攻撃 2. 지도 가. 각종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 배합 나. 中心고리는 미군철수 실현*)	*) 美軍徹收가 실현됨.
2. 6.25남침~ 휴전제의	1. 임무:정면공격 2. 지도 가.非合法 남침단행 나. 중심고리는 남한 전역 강점*)	*) 남한전역 강 점에 실패하였 음.
3. 휴전제의의~ 휴전성립	1. 임무:생존책강구 2. 지도 가. 휴전제의로 협상 전개 나. 중심고리는 유리한 휴전 성취*)	*) 휴전을 성립 시켜 생존유지에 성공하였음
4. 휴전성립~ 4.19義舉	1. 임무:대열정비 2. 지도 가. 평화적선전 강화 나. 중심고리는 전후 복구사업*)	*) 전후복구사 업을 일단 완료 하였음.

<p>5. 4.19以後~ 5.16革命</p>	<p>1. 임무:역량계산 2. 지도 가. 간첩납파 침투, 지하당 구축 시도 나. 중심고리는 지하당 구축*)</p>	<p>*) 지하당 구축에 실패하였음</p>
<p>6. 5.16以後~ 대화개시</p>	<p>1. 임무:공격준비, 역량시험 2. 지도 가. 비합법적 투쟁, 무장공비납파 및 비정규전 시도 나. 중심고리는 만조기 조성*)</p>	<p>*) 만조기 조성에 실패하였음.</p>
<p>7. 대화개시~ 대화중단</p>	<p>1. 임무:우회공격 2. 지도 가. 합법적 선전·선동 강화 나. 중심고리는 지하당 구축 및 합법화 실현*)</p>	<p>*) 지하당 구축 및 합법화 실현에 실패하였음.</p>
<p>8. 대화중단~ 버마사건</p>	<p>1. 임무:공격준비, 역량시험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조직형태 및 표어배합 나. 중심고리는 국론분열 및 반정부세력 강화*)</p>	<p>*) 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도중에 있음</p>
<p>9. 버마사건~ 88서울 올림픽</p>	<p>1. 임무:역량비축 및 역량계산·시험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배합 나. 중심고리는 88올림픽沮止 및 勞·學 연계투쟁 전열 형태*)</p>	<p>*) 攻·守 양면 전술(和·戰양면 전술)을 구사중에 있음.</p>
<p>10. 88서울 올림픽~ 現在까지</p>	<p>1. 임무:역량비축 및 역량계산·시험 2. 지도 가. 각종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배합 나. 북방외교성과극소화 및 노·학·재야 연계투쟁전열형성*)</p>	<p>*) 공·수 양면 전술을 구사중에 있음.</p>

<표4> 對南戰略·戰術의 종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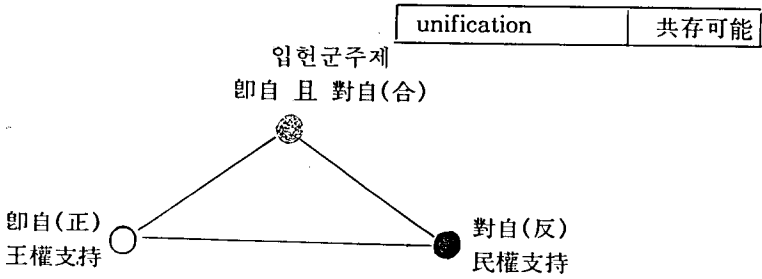
< 표5 > 唯物辨證法的 「征服」方式

1. 헤겔변증법적 「統一」

가. 논리적 특징

- (1) 타협적 공존논리
- (2) 상보적 조화논리
- (3) 개량적 발전
- (4) 뭉치기식 통합

나. 도식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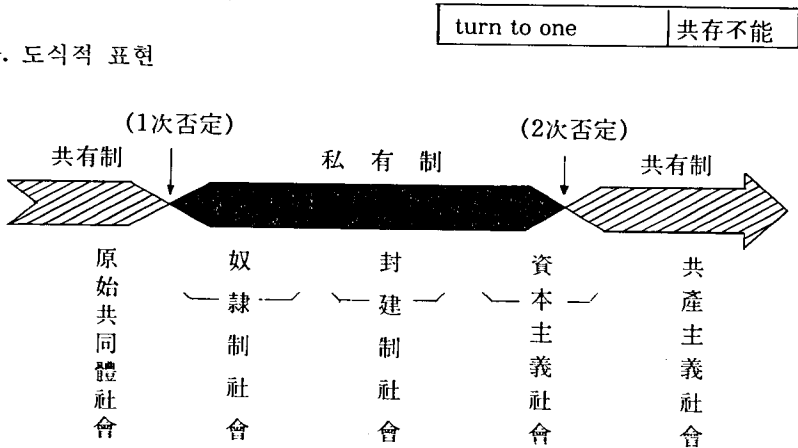


2. 유물변증법적 「정복」

가. 논리적 특징

- (1) 비타협적 정복논리
- (2) 상극적 滅舊生新논리
- (3) 혁명적 발전
- (4) 밀어내기식 정복

나. 도식적 표현



따라서 남한의 소위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혁명론(NLPDR)은 알고보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산화혁명노선인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론」 그 자체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오늘의 韓國속에서 각색한 공산주의혁명이론인 것이다.

5. 結 言

가. 對南策動의 展望

북한공산집단은 결코 무원칙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유물사관적 思考 및 전략・전술적행동방식으로 대남공산화혁명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6.25남침에 의한 남한공산화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남한 공산화의 기도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휴전후에도 지난 36년 동안 대남공산화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全力投球해 왔으며 앞으로도 힘이 미치는 한 그와 같은 책동을 자행해 나갈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의 향후 책동방향은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방식과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온 행태들을 원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明若觀火한 것이다. 즉 그들의 전략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로동당」규약에 명시되고 있는한 그것이 달성될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그들의 戰術은 주・객체적 여건에 따라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만을 달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의 향후동향은 그전술상의 변화가 있을뿐, 戰略的 本質은 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신봉하는한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표어를 내걸고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취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을 기도할 것인가에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關心은 노골적인 무력남침(직접침략), 또는 남한내에서의 혁명유발(간접침략)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力量을 「계산」 및 「시험」하면서 소위 만조기를 조성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이용하려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최근 한국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통일방안 마저도 한마디로 「분열방안」, 「분열주의」운운하며 거부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데서 아직도 민족적 입장에서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국제대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을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버마에까지 무장공비를 투입하는 등, 그들의 잔인무도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바 있다. 그들이 각종 남북대화에 응해오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989년 여름 무리해서 개최한 「平祝行事」로 말미암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합영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둔 전술적 위계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대남공산화전술을 포기한 것은 아닌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제스츄어를 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남한의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계, 또는 각종 재야단체를 선동하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교란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一連의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앞으로도 전략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自認할 때까지 당분간은 東歐圈에서 불고 있는 改革과 民主化 바람의 북한으로의 침습(浸濕) 억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들이 제의한 연방제안과 3자회담 그리고 다국적군축회담,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남북연석회담, 남북정치협

상회당, 민족통일협상회의 등을 고집하는 한편, 남한내에 혁명의 전술적 지도참모부로서의 지하당의 구축 또는 강화와 소위 「민중민주주의혁명」세력 주도하의 반체제적 「勞·農·學·재야연계투쟁」 전열형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남한의 정치적 전환기를 틈타 각종 투쟁형태를 배합하는 등 전술적 지도를 자행해 나갈 것이 전망된다.

나. 우리의 對應方向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악랄하고 집요한 대남공산화 기도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 첫째는 우리사회에 잠재적, 현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취약점을 극소화시킴으로써 공산주의라는 독버섯이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 둘째는 북한공산집단의 전략·전술적 음모나 술수를 우리 4천 2백만 국민이 다같이 알도록 보다 효율적인 국민제도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셋째는 우리의 국력을 대북절대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伸張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공산집단은 스스로가 自進해서 대남공산화혁명 기도를 포기하리 만큼 순박하고 양심적인 집단이 아니므로 오직 타율적인 힘, 즉 우리의 國力伸張을 통한 힘의 뒷받침에 의해서만 그들의 對南共產化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국력신장에는 물질국력 못지 않게 精神國力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넷째는 북한공산집단의 생리야 어떻든간에 南北對

話를 통해 끈기있는 대북설득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력이 물질, 정신 양면에서 共히 대북절대우위를 확보할 때까지는 正規戰이든 비정규전이든간에 이 땅에서의 전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要件들이 갖추어 질때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산화혁명 야욕은 효과적으로 분쇄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7千萬民族이 갈망하는 平和의 祖國統一, 民族統一의 길도 멀지 만은 않을 것이다.

“平和를 바라거든 戰爭에 대비하라”

—베제티우스(VEGETIUS)

“戰爭을 치룸에 있어 物質을 칼집이라 한다면 精神은 칼날이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

“共産主義와의 鬪爭에서 이기는 길은 그들의 전략·전술을 역이용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니이버 (NIEBUHR)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3分物理 7分心理, 3分軍事 7分政治이다”

—장개석(蔣介石)

이상의警句는 우리의 對共安保鬪爭에 있어 어느 하나 빼어버릴 수 없는 敎訓的 名言이라고 생각한다.

제 2 편

北韓實態

IV.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尹 炳 益 (統一研修院 教授)

1. 서론	240
2.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247
가. 소련군정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248
나. 숙청사	252
3. 統治理念	257
가. 「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	257
나. 주체사상	261
4. 權力構造	270
가. 「朝鮮勞動黨」	271
나. 정권기관	277
5. 세습후계체제의 구축	283
6. 결론	287

1. 서론

우리 민족은 1945년 日帝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타의적으로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여 이제 45년의 비극적인 분단민족사를 맞고 있다. 우리 민족은 급변하는 대내외정세 속에서 분단된 조국을 민족자주적으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될 민족사적 소명 앞에 섰다. 이같은 민족사적·시대적 소명을 절감한 제6공화국은 냉전구조적 적대의식을 청산하고 북한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동반자관계의 지향을 제시한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이어 1989년 9월 11일 국회개원 대통령연설에서 역사적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존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민족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를 이론화·체계화시킨 기본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보장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통일이 궁극적으로 달성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면서도 남북한간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헌법하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면 만일 결합이 있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도 물론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오늘날 「주체사상」으로 위장된 북한체제는 결정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오늘날 중·소·동구공산권등 공산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은 비록 지금은 북한연안에 스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최

종적으로 북한땅을 비켜지나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민족통일의 앞날은 그만큼 밝아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은 북한체제가 언제쯤 변화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공산권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원래 마르크스·엥겔스는 노동자의 참상등 초기자본주의 단계에서 표출된 사회적 모순에 충격을 받고 인류의 理想社會를 건설하려는 인도주의적 발상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분석(資本論)을 기초로 인류사회 비극의 원천은 사유재산제도에 있다고 결론, 唯物辨證法(정신도 고도로 조직된 특정의 물질로 보고 헤겔의 관념변증법을 비판)과 이를 인류역사발전에 적용시킨 唯物史觀(인류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간의 계급투쟁이란 역사관)의 역사발전 5단계설(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에 입각하여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사회는 망하고 사회주의사회(공산주의사회)가 도래된다는 이른바 “아래로 부터의 혁명”으로서 「사회혁명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혁명은 인류역사상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마르크스·엥겔스의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으니 공산주의 理論의 허구성이 실증된 셈이다.

이에 레닌은 “아래로 부터의 사회혁명론” 대신 직업혁명가집단(공산당)의 폭력혁명방식에 의한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의 후진국사회주의 혁명론을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실천시킴으로써 인류역사상 공산주의시대를 개막하였다. 그리고 레닌을 뒤이은 스탈린은 소련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국가들로 포위되어 있다는 「자본주의국가에 의한 포위론」을 내세워 「국제 혁명론」대신

소련을 먼저 사회주의국가로 튼튼히 꾸려야된다는 이른바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밑에 무자비한 專制政治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독재,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 2,000~4,000만명을 숙청한 공포사회를 만들어 공산주의는 이런것이다라는 공산주의의 원형을 드러내었다. 이런 소련공산통치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밀로반·지라스가 노멘·크라투라(새로운 계급이란 뜻으로서 무계급사회를 표방한 공산주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상치됨)라고 이름지은 공산관료집단으로서 이들은 브레즈네프의 장기집권과정에서 부동의 세력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즉, 국제공산주의 사상인 마르크스·엔겔스의 理想主義的 공산주의는 불발로 끝났고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레닌의 공산당이론, 폭력혁명론, 스탈린의 공산당 1당독재,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공포사회, 그리고 브레즈네프시대를 거치면서 요지부동으로 굳어진 공산관료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내 이를테면 공산주의의 원형을 이루었으며 특히 공산주의는 곧 스탈린주의를 말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공산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는 바로 스탈린주의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탈린주의로부터의 변화는 흐루시초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당대회에서 ①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는 전쟁을 안할 수도 있으며(戰爭可避論) ② 폭력혁명론 대신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공산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집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른바 평화공존론을 표방함으로써 레닌·스탈린주의에 도전하고 아울러 스탈린격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중국 모택동사상으로 부터 수정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념분쟁이

발생하였다.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자본주의가 전연 발전되지 못한 농업사회로서의 중국적현실과의 결합의 산물로서 노동자 대신 농민(인민)을 사회주의혁명의 主力軍으로 삼아 농촌에 의한 도시포위전략, 유격전, 지구전으로 抗日戰과 國共內戰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상 “공산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게릴라는 인민이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서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인민이 없으면 게릴라는 살수 없다”는 「인민전쟁론」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듯이 인민을 중요시하는 모택동사상은 대약진운동(1958-1962), 문화대혁명(1966-1976), 그리고 당·정·군의 결합체로서의 인민공사제도 등이 말해 주듯이 인민의 힘을 빌어 경제건설을 하려고 하였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등장한 덩소평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른 경제현대화정책은 중국공산당사상 「紅」과 「專」의 투쟁에서 두말 할 필요도 없이 「專」을 중시하는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써 공산주의는 다양한 길이 있으며, 공산주의의 원형으로서의 스탈린주의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명백한 실증이다. 마침내 덩소평의 실용주의노선은 모택동의 걸작품(?)인 인민공사제도를 해체시켜 鄉鎮制를 부활시키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²⁾」의 명분밑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중국은 상품경제라는 용어를 사용)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특정구역내에 전면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실

1)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1957.

2)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기초로서 가령 시장경제원리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사회주의가 완결되지 않은 초급단계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가능하다는 이론.

협하는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같은 개혁·개방이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요구 시위사태로 폭발하자 중국지도층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시키되 정치적으로는 중국공산당 1당독재를 강화시킴으로써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려 하고 있으나, 개혁·개방 그리고 인민경제생활의 향상과 정치적 민주화는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임으로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이탈은 동구 공산권에서도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소련군의 군화의 발길밧에서 공산주의를 강요당한 동구공산권은 원래 서구와 단일문화권을 형성하여 소련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성을 지님으로서 「프라하의 봄」 등 몇차례 이탈을 시도해 보다가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계기로 1989년 말 드디어 폭발하였다. 헝가리, 폴란드를 시작으로 공산당 1당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를 도입하여 민주개혁이 진행되고 1961년 이래 동·서냉전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가시화됨과³⁾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바탕으로 한 20세기 인류의 문명이 저물어 가면서 드디어 공산주의는 노도와 같은 변혁의 물결속에 점차 퇴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공산권의 변혁을 몰고 온 主役은 고르바초프이다. 그는 1970년대가 되면 소련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잡고 1980년대가 되

3)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에 바탕을 둔 분리독립정책에 따라 1972년의 동서독기본조약은 통일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독일 통일 반대정책으로 독일통일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19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지는 사태를 계기로 서독의 콜수상이 10개항 통일방안을 제기하는 등 독일통일문제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음.

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사회주의 이상사회가 도래된다는 1961년 흐루시초프강령을 폐기시키고 정체의 늪에 깊숙히 빠져있는⁴⁾ 소련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하였다. 체제내의 특권에 만족하여 무기력해진 共産官僚群(노펜·크라투라)을 자극하여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고르바초프는 이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어지자 사회체제의 본질적인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굳히면서 선거에서 복수후보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냉전구조적·군사중심적인 국제관을 청산시키고 환경문제 등 미래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른바 「新思考」에 입각한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21세기 아시아·태평양 경제시대를 겨냥하여 이 지역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 시베리아지역을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생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986년 블라디보스톡선언과 1988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이다.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자처한 이들 선언 속에는 극동지역의 군사적 안정과 한국경제의 시베리아개발 참여를 강력히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의 파장은 마침내 한반도에 와닿게 되었다.

물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민주화정책이 진전될수록 소수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극단적으로 소련연방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스탈린주의만을 비판하고 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차원에 머뭇머뭇함으로써 앞날이 불투명하나 이제는 되돌리기 어렵게 된 공산권

4) 공산권의 퇴조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브레진스키의 「대실패-20세기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탄생과 멸망-」.

의 변화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산권 전반의 변화의 물결은 결국 「공산주의의 종말」을 예고케 하는 면도 있다. “볼셰비키혁명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이면 지구상에 공산국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광장에는 지하 공산주의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에 이르렀다.⁵⁾

이와같이 공산권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도 변하지 않는 곳이 있다. 아니 변화의 물결이 마지막 이를 곳이 있다. 그곳이 북한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심지어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며 김일성체제는 神政體制⁶⁾라는 주장도 있다. 김일성은 1982년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 실용주의노선의 발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四川省省都에서의 환영식에서 경제현대화정책의 업적을 높이 칭찬하면서도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결과이며,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은 귀국하는 길로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기한다”는 명분밑에 “협동적소유의 국가적소유화”와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를 지향함으로써 공산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84년 소련 및 동구공산권 방문을 계기로 그곳의 경제발전상에 큰 충격을 받고 1984년 9월 8일 합영법(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모방한 것임)을 제정하고 이어서 북한은 합영법세칙을 마련하고 합영공업부를 설치하는 등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제한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하고

5) 브레진스키의 앞의 책

6)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질, 「북한40년, 을유문화사」 참조.

있으나 국내경제체제를 개혁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조총련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함으로써 40여 개의 합영기업을 만드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⁷⁾

그러나 공산권전반,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의 물결이 점차 밀어닥치는 상황하에서 마침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요구 시위사태의 폭발을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뒷걸음치자 북한은 재빨리 이를 지지하면서 정책적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必滅을 주장하는 정치선전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공산권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로부터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⁸⁾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역행하는, 김일성 「神政體制」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특이한 북한정치체제의 형성과정, 이같은 북한정치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통치이념, 나아가서 당·정권력구조를 분석하고 김일성·김정일 후계세습체제와 북한정치 의 향방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나라를

7) 북한의 합영공업부장 채희정은 100여개의 합영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상당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로 가동중인 것은 30~40개 정도로 추정됨.

8) 북한은 6.4 천안문민주화 요구 시위사태 이후 김일성의 중국방문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동구공산권사태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선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그 이론적 근거는 1988년 9월 25일 「로동신문」에 발표된 김정일 논문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 잘 반영되어 있음.

다스리는 수단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①「강제력」과 ②「권위」(Authority)이다. 전자는 경찰력과 군사력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대신 정치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승복을 창출해냄으로써 정치체제나 정권에 대한 저항을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되는 정치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 를 필요로 한다. 전자가 저급의 정치라면 후자는 고급의 정치이다. 현실정치는 강제력만으로도 안되며 또 권위만으로도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양자를 적절히 배합하나 권위의 비중이 높을수록 훌륭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위는 왕권형 권위 등 여러가지 형태를 갖출 수 있으나 크게 보아 ① 독재형 권위—나치, 무쏘리니 등 파쇼적 권위 및 공산형 권위—와 ② 민주형 권위로 구분될 수 있다.

김일성 「신정체제」로 표현되는 특이한 북한정치체제가 형성되기 까지는 한편으로 무자비한 강제력이 동원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위의 창출작업이 진행되었다. 강제력중 대표적인 것은 ① 북한정권 수립과정에서의 소련군정정책과 ② 무자비하게 진행된 「숙청사」이며 정치권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은 이른바 ① 김일성 「항일빨치산투쟁사」를 날조하고 ② 「주체사상」을 조작하였다. 이들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고 북한정치의 내일을 점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가. 소련군정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소련은 북반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정러시아 이래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진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전후 김

일성을 내세워 북한정권을 수립한 것은 거시적으로 이같은 소련의 기본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원자탄폭격으로 일본군의 패망이 임박한 1945년 8월 8일 對日선전포고를 전격적으로 한 붉은 군대는 연해주, 하바로브스크, 자바이칼 등 3개전선에서 공격을 개시, 일본 關東軍을 격파하고 일본군이 항복한 직후인 8월 21일에는 붉은군대의 선발대가 함흥, 원산으로 들어왔고 24일에는 평양에 진주하였다. 이 보다 앞서 8월 16일 스탈린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미·소간의 38도선 분할점령안인 미태평양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를 수락하였다. 소련당국은 38도선을 「철의 장벽」으로 급변시키고 전통적인 대한반도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8월 25일 평양에 치스차코프를 사령관으로 제25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당관료로서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위원이며 훗날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와 북한 주재 초대대사(1945-1951)를 역임한 스티코프중장이 치스차코프를 직접 지휘하였다. 그리고 치스차코프의 점령정책을 직접 보좌한 핵심막료는 군사령부 민정장관 로마네펬소장이었다.

소련군 점령정책은 우선 각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曹晩植을 위원장으로 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대변하듯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이미 조직된 자치기관들을, 산발적으로 출현한 공산주의자의 참가비율을 높임으로써 「인민위원회」 혹은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시키는 작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만식이하 建準측 민족주의자와 玄俊赫 이하 조선공산당 평남지구 위원회소속 공산주의자를 각각 16명씩으로 8월 26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였다.

소련군사령부는 日帝로부터 접수한 행정권과 日帝소유재산을 「인민위원회」에 이관하고 내정불간섭을 표방하였다. 1945년 10월

12일 발표된 「북조선 주둔 소련 제25군사령부 성명서」는 ① 소련 군대는 조선에 소비에트질서를 설정할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② 반일민주주의 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가함으로써 북한이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때는 이미 북한각도에 「인민위원회」 및 「인민정치위원회」의 조직이 완료된 단계여서 결국 반일민주단체결성의 허용은 공산당집권과정의 민족통일전선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11월 3일 曹晩植을 당수로한 조선민주당창건을 허용하였으나 김일성과인 공산주의자 崔庸健을 부당수직에, 金策을 金在民이란 가명으로 서기장겸 정치부장에 앉힘으로써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선민주당, 공산당, 무소속 인사로 구성된 형식상의 聯立政權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信託統治案 반대를 계기로 曹晩植은 반동, 민족반역자로 몰려 崔庸健이 당수로 선출되었으며 당명도 북조선민주당으로 개칭되어 공산당의 이른바 民主友黨으로 변질되고 曹晩植은 숙청당하고 만다.

소련군정당국의 핵심적 정책은 심복인 金日成을 북한통치자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한 다음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민족적영웅’으로 부각시켰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시 민중대회 직전 극비리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 전략에 대하여”란 이른바 강령적 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영도자’로 확정하였음을 반증한다. 이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되었다. 이는 朝鮮勞動黨의 모체로서-대회소집일인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의 창당일-1945년 12월17~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金日成은 드

디어 당책임비서로 선출된다.

소련군정당국은 북한에 진주한지 반년도 안되는 1946년 2월 9일 극비리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급조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였으며, 그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중앙주권기관」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막(1946.3.20)을 앞두고 북조선단독정부의 모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예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조선민주당, 조선신민당-延安派中心-, 공산당이 가담한 연립정권의 모습을 갖추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법령(1946.3.5),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8.10), 노동법령(1946.6.24),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1946.7.30), 선거법령(1946.6.4), 노동현물세법령(1946.6.30)등을 제정 이른바 반제반봉건 민주개혁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북한은 이미 불세비키화 예비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1월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선거를 실시하여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이 인민회의는 1947년 2월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써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총22명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1947년 11월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의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북한정권의 수립을 서둘렀다. 1948년 8월 25일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지역출신 대의원 212명 이외에 존재하지도 않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60명이 참가하였다는 허위 선전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부터 정권을 위양받아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정권은 소련군정당국의 조직적인 계획과 감시 하에 수립되었으며, 특히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라고 자처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7년 2월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이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음에도⁹⁾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 수립시기를 늦춘 것은 분단을 선도하지 않았다는 한낱 정치선전 목적 때문이었다.

나. 숙청사

김일성은 소련군정당국의 비호밑에 1945년 12월 17~18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권을 장악한 이래 오늘날까지 45년 동안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상 유례가 드문 장기집권을 해 오고 있는 바, 그 동안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생사를 건 권력투쟁에 골몰해 왔고 이에는 처참한 피의 숙청이 수반되었다. 한국전쟁의 실패를 계기로 김일성의 리더쉽은 도전받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 스탈린사망 후 격하운동이 전개되면서 작은 스탈린격인 김일성의 리더쉽이 또 한번 중대한 도전을 받았다. 김일성은 그때마다 도전에 맞섰을 뿐만아니라 무자비한 숙청을 통하여 오히려 권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부터는 북한지배층은 완전히 김일성파로 일색화되

9) 북한은 1977년 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1978년 부터는 1932년에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인민군」 창건일을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음.

었다.¹⁰⁾

김일성의 숙청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 바, 제1단계는 대체로 남조선노동당파(1953~), 제2단계는 소련파(1953~1956)와 연안파(1956~1958) 제3단계는 국내파(1953~1970) 그리고 제4단계는 자파인 빨치산파(1969~현재)에 대한 숙청이었다. 이 4단계 숙청에서 처음 김일성의 빨치산파는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와 동맹하여 「남노당파」를, 다음은 「국내파」와 제휴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소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파를 숙청하는 데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잠재적 정적들이 말살된 후에는 자파인 「빨치산파」내의 비판세력에 화살을 들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 각파는 배반자와 이탈자가 있었고 제2~3단계는 부분적으로 중첩도 되어 권력투쟁의 양상은 복잡했었다.

김일성은 숙청을 결코 권력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분장시켰다.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서 「조선의 당면한 혁명노선」을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을 뿐만아니라, 해방후에는 소련군사령부의 직접 지휘하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므로 노선상의 혼란이 크게 일어날 까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은 항상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분장되어 권력투쟁에서 패배당한 종파는 「우익적편향」, 「좌익적기회주의」, 「종파분자」로 낙인이 찍히고 승리한 종파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명분을 확보하였다.

북한의 정치권력은 일찌기 제거된 曹晩植을 중심으로한 민족주

10)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개최시기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숙청하였으며 그 바탕위에서 5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을 당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하고, 대남전략면에서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노골적으로 표방,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주장하였음.

의세력을 제외하면 남노당파, 국내파, 연안파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파(甲山派)를 포함시킨 소련파 등 4파로 대별된다.

「南勞黨」파는 박헌영이 대표하였다. 대중조직과 지식인포섭에 유능했던 박헌영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재건준비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조선공산당」을 발족, 세칭 「장안파공산당」(이영, 정백, 최익한)과 이념투쟁에 승리함으로써 통일적 조선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장안파의 노선을 「극좌적기회주의」로 규탄하면서 「조선혁명」의 현단계과업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진보적민주주의를 표방, 통일전선의 조직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의 노선과 하등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나 오랜 투쟁경력을 가진 박헌영이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는 이미 북한 국내파공산세력으로까지 암암리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김일성은 1948년 정권수립과정에서 박헌영을 부수상겸 외상으로 옹립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이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이른바 「전쟁발발의 북한내부기원설」¹¹⁾이 나올 정도로 두사람사이의 권력암투가 지속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한국전쟁의 패전책임을 엉뚱하게 박헌영 등 남노당파에 전가시켜 전면숙청을 단행했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유엔군의 반격에 쫓겨 후퇴하던 중 평북 강계 「별오리」에서 당중앙위원회 제3기 정기회의를 열고 “전투를 옳게 조직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무정 등을 일단 숙청하였으나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최고재판소는 「미제국주의를 위하여 감행한 간첩행위」와 「공화국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폭력음모행위」라는 죄목을 걸어 남노당파(이승엽, 조일명, 이강국 등 12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

11)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하여 스탈린의 대극동평창정책의 일환이란 주장과는 달리 김일성·박헌영 사이의 권력암투도 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 김학준교수 등의 주장 -

어서 1955년 12월 최용건을 재판장으로한 군사재판은 같은 죄목으로 박헌영에게 사형을 구형·집행함으로써 남로당파는 전면 숙청되었다.

김일성은 다음으로 소련파와 延安派를 숙청했다. 소련파는 소련에서 거주해 온 「고려인」(조선인) 1세 또는 2세로서 소련공민권을 갖고 소련공산당원 경험을 쌓은 정치·행정상의 일종의 테크노크라트인 소련군정요원들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許可誼, 朴昌玉, 南日 등이었다. 한편 延安派는 中國 연안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공산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항일게릴라전을 해 오다가 1945년 9월 하순경부터 신의주를 거쳐 분산적으로 입국한 「조선독립동맹」계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 무정, 김창만, 허정숙, 李相朝 등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시 당 부위원장겸 조직담당서기의 요직에 있었던 소련파의 거두 허가의를 1953년 3월 숙청(자살 혹은 암살설) 하였으며, 당부위원장겸 선전부장, 정부의 부수상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고위직에 있었던 박창옥을 비판하였으나 소련파, 연안파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직후에 진행되었다. 이 당대회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이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스탈린격하운동이 시작되었다. 흐루시초프에게 정면 도전할 수 없는 김일성은 소련공산당 대회가 있는지 2개월 만에 열린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평화공존정책과 핵무기 등의 준비축소안을 전적으로 찬양하면서도 북한에서 개인숭배를 펴뜨린 것은 오히려 「종파분자들」이라고 규탄, 개인숭배반대운동을 자기의 독재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려 하였다. 이에 최창익(연안파)과 박창옥(소련파) 등은 김일성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과 동구권을 방문한 (1956년 7월-8월) 틈을 타 김일성제거모의를 감행, 1956년 8월30일 김일

성 귀국보고를 위한 당중앙위원회의에서 반김일성파를 중심으로 그의 개인숭배 및 전후복구경제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한 이른바 「8월종파사건」을 일으켰다. 김일성파의 소동으로 회의가 유산됨으로써 영성한 김일성제거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8월종파사건에 놀란 중·소양국이 아직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기 이전이어서 미코얀과 彭德懷를 각각 평양에 파견, 수습에 나서 일단락 되는듯 하였으나, 김일성은 1958년 5월 30일 「당중앙집중지도사업」을 감행, 반당반혁명분자 색출운동으로 전 북한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 와중에서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¹²⁾를 막론하고 반김일성세력을 모조리 숙청하였는바,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 연안파는 모조리 숙청되고 駐蘇대사였던 이상조와 김일성편에 가담했던 허정숙 정도가 살아 남았다. 소련파는 소련으로 피신하여 상당수 살아남았으나 박창옥은 숙청되었으며 국내파 오기섭도 숙청되어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80명과 후보위원 50명은 모두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그의 맹종자들이었다.

그 후 숙청의 표적은 김일성자파였다. 1962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을 제기하여 국방력강화문제가 당면과업으로 등장하자 김일성의 대남군사노선에 반기를 들은 갑산파의 朴金喆 (당부위원장 및 비서국비서)과 李孝淳 (당부위원장 및 중앙연락국장) 및 그들의 부하들을 모조리 숙청하였다. (1967년 5월) 그리고 숙청의 불똥은 군부안으로 번져 1969년

12)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여러계보의 대소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하였음. 초기 조직이 활발했던 함경남도를 비롯하여 (김채용, 오기섭, 정달현, 주영하, 이주하등), 평남에는 현준혁, 장시우 등이 있었고 황해도에도 김덕영 등이 있었으며 이들을 국내파라고 함. 「북한 40년」 중앙호민의 논문, p.50.

허봉학(전군정치총국장, 대남공작비서), 金昌奉(민족보위상), 최광(군총참모장) 등을 숙청하였다. 이어서 1970년 일찌기 민족보위상(1960~1962)을 역임한 부수상 김광협을 국방정책을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숙청하고 197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며 군정치총국장이었던 李勇武를 반김일성계로 몰아 역시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정치세력은 김일성·김정일 세력으로 일색화되었으며, 오늘날 김일성의 「神政體制」는 피비린내나는 북한의 숙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3. 統 治 理 念

김일성은 통치-나아가서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입증시켜 북한주민의 심리적 승복을 유도해 내기 위하여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와 「주체사상」에 대한 정치선동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것은 김일성 신정체제의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가. 「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변증법을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 적용시킨 이른바 唯物史觀에 입각한 歷史發展 5段階說에 따라 자본주의는 망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정치이데올로기교육과 직결시키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의 역사연구 및 교육도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본질적으로는 김일성「신정체제」의 구축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이데올로기의 목적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현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북한에서의 역사연구 및 교육은 일체의 생산수단과 더불어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어 매우 의도적이며 체계적 방식으로 김일성 「神政體制」의 구축에 결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2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하여 한국사 재평가작업의 기준으로써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문화유산연구」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그 역사적·계급적 제약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 재평가작업에서 적용될 기본원칙으로서 역사주의, 당파성, 노동계급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석굴암의 부처 조각이 한국 미술문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민족문화유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불교미신의 선전수단으로써 시대적·계급적 제약이란 기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쳐 인민의 평화와 생활을 지키고 인민의 애국적 전통을 굳건히 하는데 이바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애국심은 인민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봉건적 忠君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히 옛날의 명장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김일성장군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북한은 朝鮮後期の 實學者들이 당시 정치·경제·문화·군사상의 폐해를 깊이 인식한 바탕위에서 여러가지 사회개혁안을 내놓은 진보적학자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유교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봉건적신분제도를 용인하는 한편 농민폭동을 반대하였으며 사회주의사상의 맹아가 되지 못하므로 한계성을 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우리의 민족사를 유물계급사관에 기초하여 서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완전히 다른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족을 이질화 시키고 있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남북한 사이의 이질화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사의 이질화이다. 역사의 이질화는 우리민족을 두개의 민족으로 갈라놓는 본질이기 때문이

다. 북한은 분단 40여년 동안 김일성의 통치명분을 확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갈라놓는 결정적 잘못을 범하고 있다.

김일성체제가 감행한 민족사의 왜곡·날조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이다. 북한의 민족사 연구의 결정체인 방대한 「조선전사」 33권 중 16권으로 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현대편은 바로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사 날조의 결정판이다. 북한은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이른바 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쟁사와 그의 가계사로 완전히 메꾸어 장식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가 워낙 오랜기간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 시시비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최근 김일성의 측근이었던 林隱의 「김일성왕조비사」 및 이 책의 바탕이었던 李相朝의 증언 등이 공개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東北抗日烈士傳¹³⁾ 등 중국측 자료가 이미 부분적으로 발간되고 앞으로 소련측자료가 공개될 날이 멀지않음으로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사의 허구성이 불원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본명이 金成柱인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남리 칠골(현재의 만경대)에서 출생했다. 1930년대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은 1934년 5월에 조직된 중국공산당 東滿특별

13) 中國側資料로는

- (1) 東北抗日烈士傳 3卷(1920年代~1930年代 前後), 1980, 1981. 黑龍江省人民出版社발간
- (2) 료녕인민출판사, 1983, 1986 「조선혁명렬사전」 - 같은 時期中國共產黨에 가입하여 활동한 40여명 취급
- (3) 료녕민족출판사, 「조선족혁명투쟁사」, 舊韓末부터 8.15까지 조선인의 활약상을 체계적으로 서술.

※ 黑龍江省省都哈爾濱에 「抗日烈士記念館」이 있음.

※ 이상 中國側資料는 金日成의 항일빨치산투쟁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 휘하의 동북인민군 제2군 제2독립사 소속 정치위원이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동북인민혁명군의 後身인 東北抗日聯軍 제1路軍 제2군 제3사장(뒤에는 6師長)을 역임한 것으로 史料들은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관용역사가들은 그가 중국계 항일유격대인 抗日聯軍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초기부터 숨겨 오면서 東滿을 무대로한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이란 神話를 날조하여 이른바 애국적 항일무장투쟁을 장엄한 파노라마처럼 묘사하여 왔다.

다음으로 숨겨져 있는 것은 김일성의 소련에로의 도피와 그곳에서의 생활이다. 1940년 말 또는 1941년 초 김일성은 日本關東軍의 토벌작전에 밀려 그가 소속했던 中國 東北抗日聯軍의 극소수 부대원들 속에 끼어 소련으로 도피한 후, 그 곳에서 1945년 8월까지 소련군의 특수정찰훈련을 받았다. 김일성의 소련 망명생활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林隱(本명 許眞 - 在蘇作家 - 의 필명)에 의하여 서술되었다. 그에 의하면 김일성은 1940년 말 아니면 1941년 초 朝·中 빨치산부대와 같이 入蘇한 후 하바로브스크 근처 비야츠크라는 촌락의 밀영에서 5년간을 보냈다고 한다. 소련군 극동정찰국은 이 망명부대원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한 후, 제88특별여단이란 이름의 부대를 편성하여 앞으로의 對日戰에 대비하여 정찰활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여단의 총인원은 200명 정도이고 여단장은 중국인 周保中이었으며 그 중 조선인 부대원은 부인까지 합쳐 60명 정도였다. 김일성은 여단 4개 대대중 제1대대장이었고 계급은 대위였다. 그리고 강건은 제4대대장, 최용건은 여단 정치 지도원, 김책, 안길은 정치부대대장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계급은 모두 대위였다. 김일, 최현, 김광협, 박성철, 서철 등도 이 부대의 부대원이었다. 이들은 1945년 9월 귀국직전 여단에서의 근무와 정찰소조활동의 공로로 戰鬪赤旗勳章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蘇聯入國사실은 귀국직후 그 자신의 부주의한 발설과 몇몇 자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소련생활을 곧 극비에 부쳤고 아직 소련은 당·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1982년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하여 평양에 세계최대규모의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이 日帝로부터 해방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항일빨치산투쟁의 결과”라고 선전을 펴고 있으나 서대숙 교수의 지적처럼¹⁴⁾ 그의 빨치산투쟁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민족의 현대사가 온통 김일성의 빨치산투쟁사로 둔갑되는 엄청난 역사날조는 마땅히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체사상

「항일빨치산투쟁사」의 날조에 이어 김일성의 「神政體制」를 지탱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통치이데올로기는 “김일성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주체사상」이다.

(1) 형성배경

북한의 공산당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확장 정책으로 발생한 소련의 「위성정권」이었으며 따라서 북한공산당은 그들의 통치이념을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차용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해 수정되고 변질된 스탈린주의였다. 그것은 공산당 1당독제체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및 중공업우선정책,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농업의 강제적집단화, 전공업의

14) 徐大肅교수는 東北抗日聯軍으로서의 활동과 普天堡戰鬪등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을 인정하고 있으나, 업적을 과장시킨 역사날조를 비판하고 있음. 서대숙: 「북한지도자 김일성」 참조.

국유화, 유일지도자의 신격화·우상화를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스탈린주의를 북한 땅에 그대로 이식하였으며 스스로 「작은 스탈린」이 되었다.

→ 이러한 「작은 스탈린」인 김일성이 스스로 「주체」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 일꾼들에게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부터였다.¹⁵⁾ 이것은 1953년 스탈린사망 후 전개된 대내외적 도전으로 부터 자신의 권력과 정책노선을 옹호·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흐루시초프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평화공존론」을 제기하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 理念紛爭이 발생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성격을 띠므로써 한덩어리로 뭉쳐있던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이 모스크바형지향, 북경형지향, 또는 독자형지향 등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이 一中心支配體制(Monolithism)에서 多中心的體制(Polycentrism)로 바꾸어 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스탈린」격인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앞에서 (숙청사) 밝힌 바와같이 그 동안 스탈린의 후광을 입은 김일성에 의하여 억압되었던 延安派·소련파로부터의 김일성 제거 모의가 현실화되었으며, 김일성은 이들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 및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소련 및 중국을 믿고 자기의 독재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반당종파분자」로 매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소련 및

15) 김일성 저작집 제9권 p.47

중국방식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창조성도 주체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하여 김일성일파와 반대파사이의 권력투쟁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련파·연안파의 참패로 끝났으며 김일성은 이들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으로 주체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보다 다소 앞선 1955년 12월의 당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주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고 함으로써 그야말로 「주체사상의 주체적 창조」를 과시하려 하였으나 시기가 엇비슷하여 선전효과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 세습후계체제 구축작업으로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창시 시기를 1930년대의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 시기까지 대폭, 소급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엄청난 역사날조를 감행하고 있다. 즉, “수령님께서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靑靑 및 反帝靑年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혔다”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한 젊은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던 혼란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염원,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 보고 주체의 진리를 밝혔다”고 하는 말로써 이른바 주체사상 창시 연대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2)내용 및 전개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적 조류인 유물

1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7

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의 역사였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唯物論과 辨證法의 승리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생성당시의 시대적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때는 노동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은 하였으나 역사의 주인은 아니었으며,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계관”이 이른바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물질과 의식, 存在와 思惟의 관계에서 물질과 존재의 일차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원리라면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제시했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승성과 독창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사람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① 자주성 ② 창조성 ③ 의식성이라고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람의 문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한 관념론이나,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임으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宿命론에 귀착한 형이상학과 다를뿐만 아니라 세계를 물질중심으로 보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히지 못한 지난시기의 유물론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이론가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전략전술임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사상이란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회 역사적 원리를 밝혔다는 것이다. 즉,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세계에 속하며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마르크

스주의를 시인하면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란 사회역사발전에 있어서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회역사원리가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이란 것이다.

즉, 철학적원리에서는 ‘사람’을 핵심으로 했지만 사회역사적 원리에서 ‘인민대중’으로의 보편화를 시도하였고 종래 주장하던 자주성과 창조성에 意識性을 추가하여 혁명의 자주성, 혁명의 창조성, 혁명의 의식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식성에서의 기본은 계급의식이라고 하여 계급의식이 투철한 혁명적인 사람을 유도해내고 있다.

“사람과 인민대중의 기본속성인 (自主性)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 구성부분”이란 것이다. “創造性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으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낡은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해 나가는 투쟁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으로서 인민대중의 계급적사상의식이며 혁명과 건설은 투철한 계급적사상의식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¹⁷⁾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람(철학적 원리)과 인민대중(사회역사적 원리)이 모든것

17) 이상 「주체사상」의 개념은 김정일, 앞의 논문에 근거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인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인민대중과 수령의 지도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일성우상화 논리와 결합시키고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함으로써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의 참모부인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首領論」으로서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혁명 임무를 수행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①사상에서 주체 ②정치에서 자주 ③경제에서 자립 ④국방에서 자위를 제기하고 있다.

「思想에서의 주체」는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 일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처음 제기하여 1966년 10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1973년 2월 김일성의 발의와 김정일의 주도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소조」가 조직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 보다 앞서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을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자로 만들기 위한 중국식 국가주석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6년 4월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인 새 인간」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제정하였다.

「政治에서의 자주」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소이념분쟁의 와중

에서 김일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였다. 김일성은 자주를 내세워 소련파, 연안파를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였으며, 중·소 이념분쟁을 이용하여 이른바 「양다리」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다.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정치·외교에서 자주를 대외적으로 공식선언한 것으로써 “지배주의 정책으로 부터 자주성을 옹호하자”¹⁸⁾는 주장은 비동맹외교의 명분일 뿐만아니라 이른바 「남조선의 미제식민지론」과 연계되어 대남전략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經濟에서의 자립」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56년 12월 11일 김일성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실은 소련블럭국들로부터의 경제원조획득에 실패하자 「사회주의 총노선」, 「대약진운동」등 모택동의 자력갱생방식을 모방한 자구책이었다. 김일성은 1958년 천리마운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주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켜 -정치·도덕적 자극방식- 이른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공산권전반의 경제개혁·개방물결을 외면하고 있으나 1984년 합영법제정을 계기로 제한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정책의 한계성을 자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끝으로 「國防에서의 자위」는 1962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① 전인민의 무장화 ② 전국토의 요새화 ③ 전군의 간부화 ④ 전군의 현대화 등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을 몇년 지연시키더라도 국방력을 일층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김일성이 말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김일성은 1961년 한국의 5.16군사혁명을 구실로 내세워 중·소양국과 우호협력상호원

18) 북한은 「주체사상」 논리에 따라 세계를 지배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미·일제국주의와 한때 소련 사회제국주의- 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국가로 양분하는 국제정세관을 펴고 있음. 지배주의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같은 개념임.

조조약(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10월 쿠바사태시 소련이 보여준 투항주의적 태도와 역시 1962년 10월 중·인국경분쟁사태시 비사회주의국가인 인도를 지원한 소련의 처사로 부터 충격을 받고 전격적으로 「4대군사노선」을 표방한 이래 국민 총생산대비 20~24%의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최신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국방에서의 자립」은 한계성을 지닌 정치 선전상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3) 역할과 한계

주체사상은 김일성 신정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통치이념으로써 오늘날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착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이었다. 1955년 당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로 발단된 주체문제의 제기는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 사설을 계기로 대외적인 자주노선의 선포에 이르고, 이어 1967년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되면서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하고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정착된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및 대남전략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함으로써 만병통치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내세워 소련파·연안파 등 종파분자를 숙청하여 독재정치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상 처

음으로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왕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일성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인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자력갱생방식으로 경제를 건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이념분쟁의 틈바귀에서 「양다리 외교」를 한것도 「주체사상」의 명분을 빌었으며 비동맹외교도 「주체사상」의 자주원칙을 빌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내세워 「4대군사노선」을 강행, 대남군사공격의 능력을 확보하였을 뿐만아니라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 자주노선을 표방하여 이른바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김일성 1인체제를 가능케한 「傳家の寶刀」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날 북한은 바로 그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체제적 한계성에 직면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민대중이 모든 것 - 혁명과 건설 - 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룰테면 인민주체론에 입각한 주체사상은 결과적으로 북한인민을 세계에서 가장 비주체적 인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김일성 獨裁體制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치명분으로서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야말로 인민대중이 지닌 무한한 역량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결국 김일성 個人의 주체사상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은 ① 정치적으로 김일성독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공산세습체제를 합리화시킴으로써 민주적 정치질서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제약하였으며, ② 경제적으로 북한경제를 폐쇄경제체제로 전락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개혁·개방의 물결을 거역하였을 뿐만아니라, ③ 외교적으로 정치선전목적의 불력불가담외교(對비동맹권외교)의 한계성이 노출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리고 ④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입각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사상은 민족사의 심판대 위에 서고 말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북한관계를 고찰해 볼때 결국 김일성의 주체는 오늘날 공산국가들의 自國中心的 공산주의와 구별될 수가 없으며, 대남전략전술에서 主體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북한은 주체의 내용에서 人民大衆의 주체를 강조하였으나 民族의 주체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人民大衆은 계급개념이며 民族은 총체적 개념이다. 저들은 인민대중은 피압박, 피착취계급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 민족에게는 분열을 조장하는 위협적 사상무기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 1인독재체제의 공고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이용되므로 인해 우리 민족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의 산물이다. 主體思想은 남북한관계에서 統一보다는 적대감만 고취하는 것이며 民族和合을 유도하기 보다는 民族構成員間의 이간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강한 민족주의적 인상을 활용하여 우리 내부의 民族主義勢力을 이용하려는 무기로서 선전될 것이며,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가장하여 좌경·급진세력을 더욱 자극하는 문제를 낳게 될수도 있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4. 權 力 構 造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神政體制—김일성·김정일공산세습체제—로서, 해방당시 소련군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범된 김일성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과정을 통하여 기반을 다진 다음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사」를 날조하고 「주체사상」을 만들어 내어 북한주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이제는 공산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물결에 역행하는 독선적 독재체제로 굳어져 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권력구조이다.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주석」을 선거하는 「최고인민회의」이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이른바 「사회주의헌법」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 10월 13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며 “오직 위대한 수령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지도 밑에 움직인다는 뜻이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직을 장악함으로써 전면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가. 「朝鮮勞動黨」

(1) 형성과정

오늘날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창설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모체였던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었다. 「분국」은 미·소공

동위원회가 한반도에 임시정부조직을 위한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 (1946년 4월 18일) 한 것을 계기로 1946년 4월 말경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어 동년 8월 중국 延安에서 평양으로 돌아 온 「조선독립동맹계」를 중심으로 지식층, 소시민층을 망라하고 있던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발족하였다.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정권수립이후 1949년 6월 30일 남·북노동당은 1국1당 원칙에 따라 「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하였다.

(2) 指導理念과 목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은 지금까지 6번 개최된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1956년 4월 3차대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항일 무장투쟁의 혁명전통 (1961년 9월 4차대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 (1970년 11월 5차대회) 그리고 김일성주체사상(1980년 10월 6차대회)으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강화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6차당대회에서 채택된 현존 黨規約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남한까지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주목된다. 다음에 “조선노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고,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서 千里馬운동과 思想・技術・文化革命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북한체제가 얼마나 과격하고 배타적인가 짐작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主體型的 革命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이다.”, “조선노동당은 오직 金日成 首領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하여 노동당이 김일성의 私黨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조직

당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 조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규약 제11항은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체제에서의 「민주주의」는 한낱 장식품 또는 선전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실제 강조되는 것은 「중앙집권제」이다. 그러므로 당규약은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의 당독재는 「중앙집권제」의 구실밑에 강행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여하튼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은 「조선노동당」의 통치조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원칙적으로 매5년마다 열리도록 규정된 당대회이다.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주요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국안에서의 최고실력자로 구성된 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정무원총리) 그리고 김정일 등 5인으로 출발한 정치국상무위원회는 김일의 사망과 이종옥의 정무원총리 경질로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로 축소되어 김일성·김정일공산세습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었다.

한편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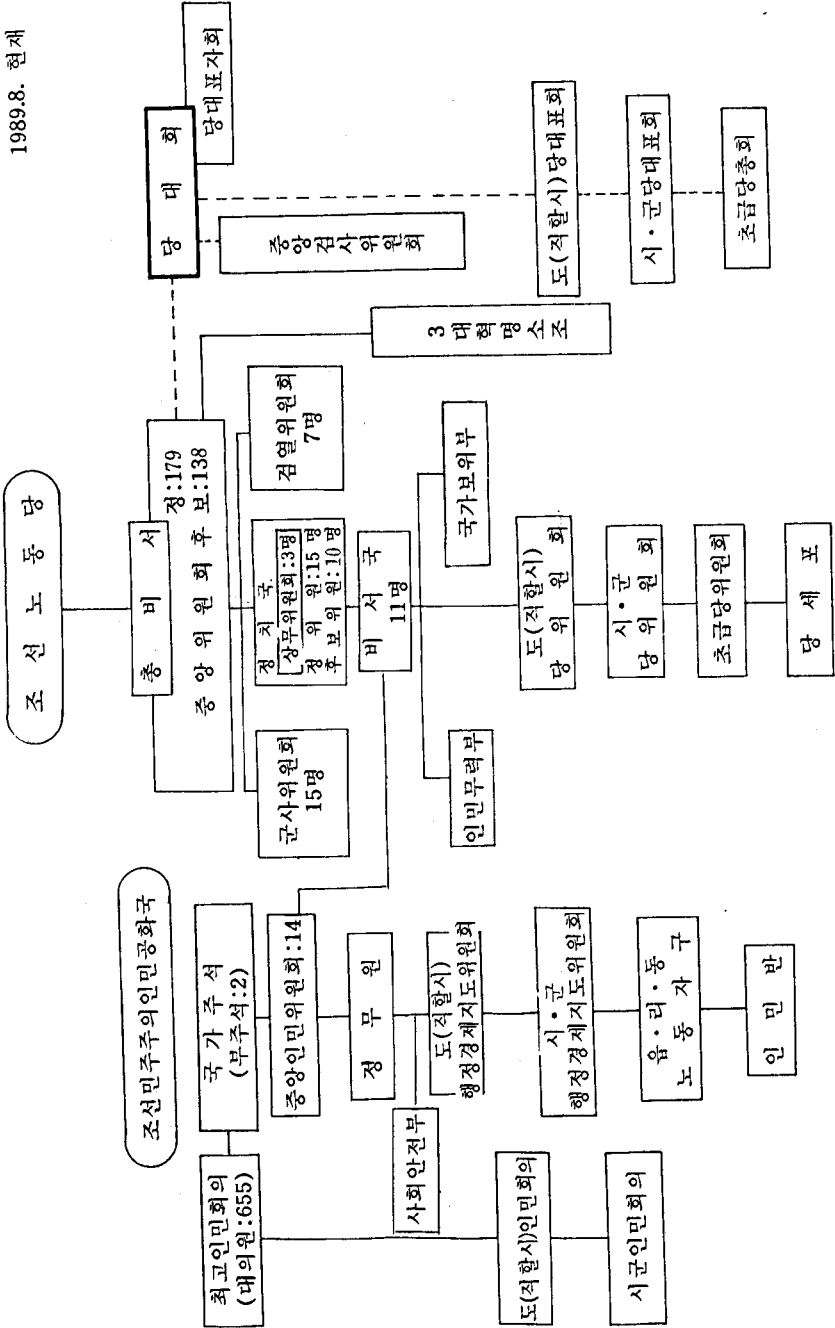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그 밖에 당중앙위원회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및 당의 유일사상을 거역하는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검열위원회와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당중앙검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구당조직으로 전국을 완전히 거미줄처럼 묶어 놓았다. 도(직할시), 시(구역) 및 군 수준에 중앙당의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상응하는 각급 당대표회와 당위원회가 있고 이외에 1급, 2급공장 기업소에는 공장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당의 基層組織은 이른바 「黨細胞」로서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 각급기관, 단체에 당원 3명 이상 있는 곳에서 조직되며, 당원 및 후보의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는 초급당위원회가 조직된다. 당세 또는 당정책을 수행하는 「전투단위」이다.

북한정치체제

1989.8. 현재



(4) 「友黨」과 外廓團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3조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단체와 조직들은 유일당인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물론 형식상의 정당으로 「조선노동당」의 이른바 「友黨」으로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1981년 「조선민주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과 1946년 2월 8일 창립된 「天道教靑友黨」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적인 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비난성명발표 및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주장 때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뿐인 단체다.

그리고 당과 대중의 「引傳帶」이며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이른바 당의 외곽단체들이 있다.

이 밖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 위장평화통일단체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반제·반식민주의 투쟁을 하는 인민들과의 연대성” 표방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및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고 위장종교단체로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 선전과 反韓·反美 선전·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下級組職들이다.

(5) 黨·軍관계

북한의 勞動黨規約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革命的 武裝力”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로 되어 있다. 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 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軍은 黨의 軍隊이다. 이러한 黨과 軍의 관계는 共產主義國家에서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以黨領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인민군은 당의 영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首領의 軍隊로서 金日成의 個人的 武裝力으로서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당의 군대에서 金日成의 軍隊로 그 성격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말로서 “革命軍隊는 오직 수령의 革命思想, 黨의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革命的 宗國적 승리를 위하여”운 운하며, 또한 “김일성동지는 무력건설에서 唯一思想體系수립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공고화를 위한 사업에서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세우셨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나. 정권기관

북한정권은 勞農同盟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권의 지위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引傳帶”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치체제에 있어서 정권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2월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이래 수차례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해오다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제 5기 1차회의에서 종래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

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主席」과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종래의 內閣을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으로 바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권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이른바 “民主主義中央集權制의 原則”에 입각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원칙이 상부의 지도와 하부의 창의성을 결합시키는 이상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선거와 上命下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정치선전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1)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 追認機關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代議員으로 구성되며, 헌법 제76조에 따라 ①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②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 ③ 주석의 선거 ④ 주석의 제의에 의거 副主席, 중앙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정무원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의 선거 및 소환 ⑥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과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및 해임 ⑦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⑧ 국가예산의 승인 ⑨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과 「常設會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常務機關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비교할 때 명목적으로 立法的 機能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다르다.

첫째, 代議員의 地位가 다르다. 현재의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11월 2일 실시된 제8차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655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원은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후보를 100% 투표와 찬성으로 선출됨으로써 西歐民主主義 제도하의 국회의원과 는 성격을 본질적으로 달리한다.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가 없다. 최고인민회의산하 諸委員會는 黨 政治局 및 秘書局委員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셋째는 최고인민회의의 중요권한을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하였다. 즉 헌법의 해석,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상업무의 감독, 행정부 각 部長의 임명, 조약의 비준 및 폐기, 외국에 주재하는 大使, 公使의 임명 및 소환 등을 중앙인민위원회에 이양하였다. 결국 사회주의의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종래보다 더욱 상징적이고 종속적인 기관이 되었다. 다만 198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허담위원장) 의원외교를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主 席

「주석」제는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주석」은 4년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나, 「최고인민회의」는 주석 召喚權이 없다.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①「국가의 首班」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할 뿐만아니라 ②「중앙인민위원회」의 首位로, ③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副主席을 파면할 수 있으나 主席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으며, 中國의 國家主席은 임기 5년으로 1회연임이 가능

한 반면 북한은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中國의 경우 主席有故時 부주석의 지위계승권이 인정된 반면 북한의 경우는 계승조항이 없는것 등으로 보아 북한의 주석제는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쉽게 알 수 있다.

(3)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제와 같이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중앙인민위원회의 首位가 국가주석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석의 직접 지휘·통제하에 운영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석 이외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동당정치국 위원 및 비서국 비서들이 겸직하여 당·정협의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행정부쪽의 권한을 중앙인민위원회에 집중시킴으로써 이른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구현시켰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일뿐이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는 政令, 決定, 指示 등을 내림으로써 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판 및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권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김일성을 정점으로 3權을 장악하고 있다.

(4) 政務院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엄격한 지도와 통제밑에 행정집행업무만을 담당하며 총리 (1명), 부총리 (현재 8명), 14개 위원회, 23部, 1院 (과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소환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무원은 경제부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8년 11월 26일 合營工業部를, 12월 16일에는 電子自動化공업위원회를 그리고 1989년에는 도시경영부와 지방공업부를 신설하였다.

(5) 司法機關

북한헌법 제133조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를, 제143조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구역·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규정에 따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는 각각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며 기타 재판소는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법기관이 김일성체제의 하수자임이 헌법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三權分立의 원칙에 따른 우리의 司法權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북한에서 사법 및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규정되고 있다.

“법이란 정치의 외부적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의 국가정책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관점,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관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 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존재한 것인 만큼, 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곧 진정한 사법기능이라 하겠다.

中央 및 地方裁判所의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최고인민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되며 그 임기는 인민회의와 같다. 직할시(도) 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며 시·군인민회의 임기는 2년이다.

裁判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은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검찰기관체계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로 구성되어 사법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檢事의 임명 및 해임은 판사와는 달리 중앙검찰소가 한다. 그러나 중앙검찰소가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를 받는 만큼 당·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받는 점은 같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법무일꾼」이란 사회주의법무지도위, 사회안전부 등 사찰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민들의 법무생활강화를 촉구하며, 법무생활 강화를 위해 “모범준법꾼칭호쟁취운동”을 벌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조직 뿐만아니라 사회주의법을 통해서도 점차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특수기능조직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 초반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계확립을 위하여 설치되어 오늘날 북한체제의 주요통치장치로 역할하고 있는 특수조직이 있다. 國家保衛部와 3大革命小組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 김일성 1인체제유지를 위한 政治査察을 목적으로 정무원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부만을 독립시켜 신설한 기구로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의 중앙국가기관 개편시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기구에서 제외되면서 그 이름이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 국가보위부는 행정체계에 따라 중앙으로 부터 도·시(직할시)·군은 물론 군대조직에 까지 설치되어 정치사찰을 담당하고 있으나 책임자 및 기타 인적구성이 일체 극

비에 싸여 있다.

한편, 3大革命小組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규정한 사상·기술·문화 등 3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73년 2월 「노동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발기 되어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되었다. 3대혁명소조는 노동당일꾼, 국가·경제기관일꾼, 대학생·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기술자·과학자 등으로 지도대상에 따라 20~50명의 미혼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3대혁명소조는 인민경제부문 뿐만아니라, 행정, 문화기관 및 학교 등 각급 기관에 파견되어 「당중앙」인 김정일의 직접 지도 밑에 「사상혁명소조」는 「주체사상」의 보급과 이행을, 「기술혁명소조」는 기술적 낙후성 분석과 기술혁신을, 「문화혁명소조」는 문화시설면의 낙후성 개선을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노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를 개조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나 김일성부자세습체제구축을 위한 체제개편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당대회 때 3대혁명중심의 전후세대들이 대거 입당하고 오늘날 이들이 당·정주요직위를 차지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으로 성장하였다.

5. 세습후계체제의 구축

일반적으로 공산체제의 결정적 약점 중의 하나는 안정적 권력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산카리스마의 구축에 성공한 집권자는 사망하여야만 권력을 내놓으며, 후임자는 스탈린사망후 흐루시초프나 모택동사망후 덩소평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임자의 업적을 격하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다. 이런 사실들을 목격한 김일성은 사후 자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공산주의사상 예가없는 「공산세습왕조」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神政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首領論」을 만들었듯이 세습왕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혁명 계승론—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완수된다—, ② 혈연계승론—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 ③ 金日成化身論—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이어야 한다—등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어느 정치이론에도 없는 것들이다.

金正日은 1973년 9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되었으나, 본격적인 웅립운동은 1974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 이후 부터이다. 김일성의 實弟 金英柱가 당비서에서 물러남과 동시, 그와함께 권력의 중심부로 급성장했던 南日, 金東奎(부주석) 등이 잠적한 반면, 김정일을 옹호하는 林春秋, 吳振宇등의 위치가 강화되며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1월경 부터 김정일의 자질예찬론을 펴기 시작하였고 1977년경 조총련교육자료 등 해외선전책자는 「당중앙」이란 別稱 대신 김정일이름을 직접거론, 후계자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노동당 제6차당대회에서 김정일이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金日成은 1986년 5월 31일 許鎡이 대독한 당창건기념연설 「조선노동당 창건의 역사적경험」에서 노동당의 후계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공언하였다.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기반은 조선노동당이지만 萬景臺혁명학원 출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김정일의 친위대로서 실질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들은 김일성종합

대학에 입학하거나 고급관리로 등용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이 학원의 제1기생으로 1953년 졸업하였다. 한편, 3대혁명소조는 1973년 이래 1987년 2월까지 약 27만여명의 소조원을 전국 각지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보건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형식상 김정일의 分身이며 권력기반이다.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黨外權力基盤은 이들의 당 및 정권기관에로의 진출과 더불어 실질적 권력기반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1980년 제6차당대회 때 선출된 당중앙위원 248명(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103명) 중 56%에 해당되는 139명이 1970년 제5차당대회 이후 선출된 새로운 인물들이며, 1980~1988년 11월(당6기 14차 전원대회)까지 당중앙위원회 정·후보위원 103명이 교체 또는 총원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출범(6차 당대회) 이후 1982년 2월 28일 615명을 선출한 제7차 대의원선거와 1986년 11월 2일 655명을 선출한 제8차 대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그 때마다 “수령이 세우고 당중앙이 영도하는 혁명주권을 꾸리는데 두고 있음”을 선전한 만큼 이런 대의원선거 때마다 40% 이상의 대의원을 교체 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지지기반을 외형상 확충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軍部쪽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이들을 實勢로 키움으로써 黨·軍關係를 밀착시켜 나갔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의 권력계승작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권력세습이 주석직을 이양받는 등 제도적으로 완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전반의 개혁·개방정책등

국제정세의 급변과 김정일의 혁명업적 및 능력의 결합¹⁹⁾등으로 의형적 지지기반만으로 권력계승작업이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 신정체제와 맞먹는 김정일의 정치적 카리스마조작을 위하여 ① 김정일은 김일성동지의 항일빨치산투쟁의 참모부였던 白頭山 密營에서 백두산정기를 타고 출생하였으며— 항일빨치산투쟁의 실증으로 「구호나무」²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백두산일대를 聖域化하고 있으나, 김정일은 소련태생임—, ② 예술의 천재로서 「安重根 이등박문을 쏘다」, 「돌아오지 않는 密使」, 「춘향전」 등 영화 및 일련의 혁명가극을 지도하였으며— 신상옥·최은희 납치·활용—, ③ 사상의 천재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시한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켰으며, ④ “조선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조물²¹⁾로서”平壤을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게 꾸렸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1982년 김일성 70회생일을 기하여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등 대형건물을 지었고 1989년 7월 1~8일간 平壤에서 개최된 이른바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하여 15만명 수용의 「5월 1일 경기장」, 105층 柳京

19)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발탁된 것이 아니라—혈연계승론과 배치— 그의 능력때문에 발탁되었다고 현준국이 말한 바 있으나, 김정일의 성격은 급하고 포악하며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며, 김정일의 녹음분석—신상옥·최은희가 채취—은 그의 언어구사 및 지적능력의 한계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음.

20) 「구호나무」는 항일빨치산투쟁시기 김일성부대원들이 혁명구호 등을 나무에 새겨놓은 것이라고 함. 북한은 최근 7,000여개의 구호나무가 발견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펴고 있으나, 「게릴라」들이 자기위치를 폭로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세계게릴라전 사상 처음 들어보는 웃음거리임.

21) 북한은 김정일을 「사상의 천재」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 「조선노동당은 트.키의 전통을 계승한당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등 주체사상 관련 모든 논문을 김정일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음.

호텔 등 정치선전용 대형공사를 하여 김정일의 우상화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김정일 우상화작업은 세력기반 강화와 더불어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에 대한 呼稱도 1970년대의 「당중앙」에서 1980년대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바뀌었으며 ‘당·국가의 首位’, ‘金正日時代’ ‘향도의 별’, ‘白頭星’이란 用語가 등장하는가 하면 ‘正日峰’(백두산 봉우리를 명명), ‘正日花’가 생겨나더니 최근에는 金日成에게 사용하는 ‘아버이’라는 용어가 金正日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 「神政體制」로 표현될 수 있는 국제공산주의사상 특유의 북한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왕조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으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中·蘇, 東歐共產圈 등으로부터 강하게 불어오는 外風과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켜 달라는 내부로부터의 압력속에서 金日成有故時 金正日體制가 지탱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6. 결 론

이제까지 북한의 정치를 김일성의 「신정체제」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이란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공산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이 아직 북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소련 軍政政策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출범한 북한정권은 토착민족주의세력, 토착공산세력, 남로당세력, 소련파, 延安派 그리고 自派의 「빨치산」세력 중의 반발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여 적어도 1970년 제5차 노동당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일성·김정일세력으로 북한의 정치무대를 일색화시켰으

며,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날조하여 이른바 김일성의 「抗日빨치산鬪爭史」로 완전히 扮裝시키고, 김일성 「主體思想」을 만들어 내어 북한주민의 혼을 빼버림으로써 김일성 「神政體制」를 가능케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왕조」의 공식적인 출범이 임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금년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받을 것이 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고 1988년 合營工業部를 신설하는 등 부분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시도, 朝總聯企業 중심의 對北韓投資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혁명제1세대인 김일성 治下에서는 본질적인 체제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우선 김정일의 공식적 등장을 기대하는 전문가의 염원이 7차당대회 개최가능성을 예견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여하튼 북한정치체제의 특수성으로 보아 북한에서 東歐共產圈類의 “밑으로 부터의 개혁” 물결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극도의 폐쇄사회체제 속에서 공산권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에 유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40여 년의 愚民統治下에서 북한주민의 주체의식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개혁·개방은 「위로부터」 일어나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다만 혁명투쟁의 경력이 없는 김정일은 통치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와 대내경제체제를 개혁할 수는 없으나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더욱 촉진시키는 등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치지도층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위로부터의」 개혁·개방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은 중·소, 특히 오늘날의 대한반도정책에 비추어 소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정착과 획기적인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김정일 등 북한정치지도층은 남북한간의 발전의 격차를 메꾸려고 합리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개방정책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정치·경제적 개혁은 할 수 없을 것임으로 북한이 본질적으로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한 후 나타날 指導體制의 형태는 ① 김정일의 승계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의 1인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경우 ②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기는 하지만 여러 반대세력들이 부상하여 이들이 김정일과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경우 ③ 김정일이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고 다른 인물 또는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치상황으로 보아 김일성이 有故하면 우선 김정일로 정권이 승계될 것이며 김일성의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나 김정일이 집권후 김일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체제가 장기화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일의 정치능력문제가 제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체제가 장기화되지 못할 경우 우선 집단지도체제가 제기 될 것이다. 북한정권수립 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특히 군부엘리트와 경제엘리트가 성장한 이상, 이들과 김정일간의 권력안배문제가 자연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 다음에는 김정일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예상해 본다. 김일성 및 김정일의 통치체제 전반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도전이 여러 세력에 의하여 제기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래로 부터의」 개혁·개방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억압과

통제의 사슬이 풀리면 의외의 저항요인들이 돌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정치의 변화가능성을 예견해 본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이며 정확한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모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北韓의 經濟現況

李 浩 (國土統一院 研究官)

1. 序 言	292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293
가. 經濟體制 및 特徵	293
나. 經濟政策과 運用	301
다. 改革과 開放에 대한 立場	304
3.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306
가. 최근 北韓의 경제개황	306
나. 國民所得 및 財政規模	308
다. 主要 產業別 生産 및 建設動向	312
라. 貿易 및 國際收支 現況	321
마. 주민의 經濟生活 與件	323
4. 民族共同體 回復의 필요성과 展望	326
가. 민족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326
나. 南北韓 交易 現況과 展望	328

1. 序 言

금후 10년간은 인류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대 전환기로서 매우 의미 깊고 중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세계는 또 한차례 격동과 변혁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징후들은 이미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측자에 따라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작금의 세계정세는 이미 제2차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국제질서 형성의 기본 골격으로 되어 왔던 동·서 냉전구조의 틀을 서서히 벗어나 脫 이데올로기적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요소는 최근 사회주의 제국에서 일고 있는 체제개혁과 개방 추세의 급속한 확산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5년 후가 되는 1995년은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현 시점을 전후한 10년간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러한 전망은 사회주의 제국의 변화가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폐쇄된 북한사회의 개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중·소를 비롯한 東歐 제국이 개방과 개혁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計劃經濟 질서에 대한 자본주의 市場經濟 질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개혁과 개방은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추세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스탈린주의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고는 북한의 최근 경제현황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 경제의 진로를 예측하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북한의 經濟體制와 政策

가. 經濟體制 및 特徵

경제체제라 함은 인간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이 가능한 인적·물적 제자원의 配分方式에 대한 특징을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말이며, 그것은 인간이 可用한 生産手段을 사용하는 하나의 조직 또는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各國이 추구하는 理念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이 相異하므로 인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경제체제의 종류는 그 經濟社會의 수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¹⁾, 그것은 또한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再形成되고 變容되어 가는 것이다.²⁾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체제는 資本主義 경제체제와 社會主義 경제체제로 양분할 수 있다.

「빌진스키」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경

1) 金榮奉, 「經濟體制論」, 博英社, 1987. p.29.

2) 조용범, 「經濟體制論」, 한울, 1985, pp.19~20.

제 運用과 資源配分 방식에 따라서 ① 관료적 중앙집권화 모형(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② 중앙집권적 계량계획 모형(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③ 부분적 분권화 모형(The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④ 보완적 시장 모형(The Supplemented Market Model)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³⁾

북한의 경우는 이상의 모형 중에서도 가장 경직된 체제로 구분되고 있는 관료적 중앙집권화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 학자에 따라서는 封鎖的 共產主義(Siege Communism)에 근접한 예외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

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공산국가들 중에서 1930년대의 「스탈린」식 지령경제체제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알바니아에 불과하며, 북한이 이러한 경직된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스탈린」과 같은 독재를 구사해온 김일성의 장기집권과 면적, 인구 및 경제규모가 왜소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의 실시가 비교적 용이한 여건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을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던 경제체제의 구성요소인 經濟精神,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경제적 配分의 決定機構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經濟精神

하나의 경제체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精神이 존재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지도정신은 營利主義와 合理主義로 대변되는 반면 사회주의 경제의

3) J.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82.p.47.

4) 金榮奉, 「經濟體制論」, 博英社, 1987. pp. 59~60.

지도정신은 利潤動機를 부정하는 集産主義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란 구호를 내세우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강조해 오고 있다.

(2) 社會主義的 所有

북한은 生産手段에 대한 私的所有을 철저히 배제하는 社會主義的 所有제도를 택하고 있다.

북한이 1972년 12월에 改正한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1977년 4월 29일에 공포된 북한의 「토지법」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⁶⁾ 토지의 소유권을 규정한 조항과는 별도로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고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다만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⁷⁾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토지의 이용권만 협동농장에 주고 있는데 불과하고 同法 제9조에서도 “토지는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원들에게 20~30평의 터밭(채전)을 개인이 경작할 수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장 18조~22조 참조

6) 북한 「토지법」 제9조 참조

7) 북한 「토지법」 제13조 참조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협동농장의 規約에 의한 것이며 이것 역시 개인의 소유는 아니다.

국가와 함께 생산수단 소유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협동단체의 소유 대상으로는 “協同經理에 들어 있는 토지, 役畜,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中小工場, 企業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단체의 소유는 점차 全人民的 所有(국유)로 전환시킨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 이점은 1986년 12월 북한 최고 인민회의의 제8기 1차회의에서의 金日成 시정연설에서도 재차 강조된 바 있다.

현재 북한주민들이 私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대상은 근로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나 협동농장원들이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현물 및 화폐, 또한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 제2장 제22조에서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 소비를 위한 소유이며, 이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원들에게 주어진 터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나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計劃的 資源配分과 中央執權的 管理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막론하고 모든 經濟社會가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제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① 무엇을(생산물의 構成) ② 어떻게(생산의 方法) ③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생산물의 配分)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市場과 價格機構에 의해 媒介되고 자동적으로 調整됨으로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장 21조 참조

써 均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 體制의 원리를 부정하고 資源의 配分을 中央集權的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均衡은 우연적인 것이며, 불경기와 경제공황의 반복으로 인하여 경제발전 속도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失業이 발생하게 되고 이 失業을 자본가들이 노동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기초로 하여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계획화함으로써 市場經濟體制와는 달리 안정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과 동시에 內閣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하고 계획경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이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의 항목을 大別하면 ① 物質的 生産부문, ② 社會生産物의 유통부문, ③ 생산과 유통과정의 공통부문, ④ 非生産的 부문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항목을 다시 세분하면 물질적 생산부문에 속하는 계획은 부문별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등이고, 사회생산물의 유통부문에 속하는 계획은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등이며, 생산과 유통과정의 공통부문에는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등이, 非生産的 부문에는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속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 항목들은 다시 세분되어 수없이 많은 구체적 인 지표들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들 항목과 지표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노동당이 제기하는 그때그때의 정치경제적 과업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경제 하에서는 과다한 계획업무로 인한 불충분하고 완벽하지 못한 계획

지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부문간에는 필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위 「계획화 사업에서의 一元化, 細部化 원칙」이다.⁹⁾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一元化, 細部化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앙계획당국이 작성한 경제운용 계획과 이를 집행하는 하급부서간에 상호 일관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계획의 차질을 줄이고 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장이나 가격기능을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단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⁰⁾ 또한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직절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만약 한 부문에서 계획이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경우 그것은 관련된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엄청난 시행착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부문의 계획을 그때그때 동시 병행적으로 수정해 주어야 하나 계획업무의 방대하고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따라 북한의 경제관리 업무 역시 방대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經濟管理의 성격을 “노동과정에서의 指揮者와 생산

9)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계획작성에서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1965.9 이후 省(部·委員會), 中央機關, 道 人民委員會, 道農村經理委員會 등 각급 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단위로 개편하였고, 당시의 경제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던 10,000여종의 계획지표 중 최소한 5,000여개까지는 실제로 작성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참조).

10) 金日成, 「사회주의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p.223.

자, 또는 생산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협조관계”로 보고 있으며, 경제관리는 “사회적 생산과정에 대한 指揮機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관리의 목적과 성격, 기능은 사회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¹¹⁾

북한의 경제관리는 그것이 包括하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공업관리, 농업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관리대상의 單位에 따라서 部門管理, 工場管理 또는 企業管理 등으로 구분하며, 管理의 내용에 따라서 機械·設備에 대한 관리, 資材管理, 노동관리, 재정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경제관리의 개혁을 위해 分權化와 市場經濟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도 고도의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경제관리에 적용하는 원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黨委員會의 集體的 지도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경제기관은 물론이고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까지 모든 경제단위에는 각각 黨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어서 經濟計劃의 수립으로부터 계획집행 과정의 전반을 당이 직접 장악하여 통제하고 있다.

둘째, 政治事業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利潤動機를 부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生産性的 低下를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만회하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해 북한에서는 각종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이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중앙집권적 원칙이다. 북한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11) 「경제사전」,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1970, p.74 참조.

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리는 국가의 統一的 指導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黨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 하며, 모든 생산단위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경제를 唯一的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獨立採算制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社會主義 獨立採算制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物資와 資金(貨幣資源)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收益性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의 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제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意思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이므로 최근 소련이나 동구제국에서의 독립채산제보다 자율성의 폭이 훨씬 좁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장·기업소가 지시된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資金·會計의 측면에서 통제하는데 있으며, 이것을 「원」에 의한 統制라고 한다.

다섯째, 群衆路線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中央執權的 경제관리로 인해 야기된 大衆의 창의성 상실과 관료적이고 행정지향적인 경제관리에서 나타나는 상급부서와 하급생산단위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관리 원칙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의 경제관리는 중앙계획당국이 작성한 경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계획과 관리업무의 방대성에 따라 경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또한 비

대화되어 있다.

북한 노동당 내에서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指導統制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黨中央委員會 비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부서들이다. 1988년 현재 비서국에 소속된 27개 부서 중 경제관련 부서는 제1, 2, 3, 4경제부와 재정경리부 등 11개 부서이다.

中央行政機構인 政務院은 1989년 8월 현재 14개委員會, 23개部, 1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관련 부서가 아닌 곳은 외교부, 문화예술부, 체육지도위원회, 보건부, 교육위원회, 사회안전부 등 6개부서 뿐이며 나머지 31개부서가 경제부서로 되어 있다.

나. 經濟政策과 運用

한나라의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민소득의 증대(成長), 소득분배의 衡平性, 物價 및 雇傭의 안정 등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와 안정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물질적 뒷받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經濟成長은 통상 경제정책의 기초적 과제로 되고 있다.¹²⁾

북한에서는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지배계급 또는 그의 黨이 일정한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사회의 경제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施策”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經濟政策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보다는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건설 목표는 소위 「自立的 民族經濟」

12)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총서」, 1988 pp.50~51.

를 확립하는 것이다.

「自立的 民族經濟」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물론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부단히 장성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될 뿐만 아니라 자체의 기술과 자체의 원료·연료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킨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공업이나 농업부문의 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노선을 「自力更生路線」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은 경제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重工業優先政策과 「國防·經濟」並進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重工業優先策은 해방 직후 日帝가 남긴 전기·금속·화학공업 시설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기계공업을 비롯한 군수산업 건설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國防·經濟」並進策은 1962년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표면화되었다. 특히 中·蘇 理念분쟁이 격화된 이후 金日成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를 이유로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공업우선정책과 「국방·경제병진책」은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生産財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非能率的인 經濟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방·경제

병진책」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은 북한 경제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經濟開發 戰略과 政策의 運用

사회주의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理想이란 측면에서 생각하면 북한에서의 경제개발전략은 당연히 소득의 均衡配分과 安定에 우선을 둔 均衡成長戰略을 추구해 온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채택한 경제개발 전략은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간 불균형은 물론 소비와 축적간의 불균형을 통한 不均衡成長戰略을 추구해 온 것이 특징이다.

북한 노동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공업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건설초기 금융이나 세제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 예를 들면 5개년계획 기간에는 농민은행을 국가은행으로 개편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중공업부문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¹³⁾기간에는 소비재에 대한 거래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소비 억제를 통해 경제건설 자금을 동원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 등이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1차 분배과정에서 분석해 보면 1960년대에는 소비와 축적의 구성비가 80 대 20으로 나타났으나 1984년에는 58 대 42로 소비의 구성비가 개발초기보다 대폭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경제개발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주민의 소비를 극도로 통제하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 예산의 인민경제비 지출항목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13) 1차 7개년계획은 3년간 연장하여 10년간 추진하였다.

투자부문인 기본건설투자액을 분석해 보면 1960년대의 제1차 7개년계획 기간에는 총 투자액의 57%가 공업부문에 투자되었고 그중 80%가 중공업부문에, 나머지 20%가 경공업부문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6개년계획 기간에는 중공업 대 경공업의 투자비는 83 대 17로 중공업부문의 투자비중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자원이나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에 의한 外延的 成長을 추구해 온 점이다. 그 결과 초기에는 높은 성장이 가능했으나, 점차 資本產出量 比率 (Capital-Output Ratio)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자본부족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력갱생 원칙을 고집한 결과 국제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의 노력동원 강화로 부족한 자본을 대체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개발전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다. 改革과 開放에 對한 立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실시된 6개년계획기간으로부터 점차 변화를 시도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60년대 말까지는 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를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였으나 60년대의 중·소 이념분쟁과 사회주의 제국의 국내 경제사정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감

14)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각년도 판 참조

소됨으로써 6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의 조달을 위해서는 서방제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도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과거와는 달리 대외무역에서 수출증대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1984년 9월 서방국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한 「합영법」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1979년 덩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중외합자경영 기업법」을 발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관리의 측면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1978년 12월 지방예산제 실시에 관한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발표, 197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 이후 독립채산제의 강화, 1981년 및 1985년의 지방 경제관리기구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1985년 8월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경제공간의 합리적 이용」이란 논설을 발표하여 원료와 자재 공급에 가격기능과 계약제도 등 시장기능을 활용할 것과 평균임금제 철폐, 수요와 공급관계를 고려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상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타나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움직임은 1985년을 고비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 북한에서도 개방과 개혁에 대한 내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동구제국의 開放과 改革에 대해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개방과 개혁이 김일성 독재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우려에 따라 급진적인 개혁이나 폭넓은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부분적인 경제개방마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지금도 서방으로부터의 합작투자 誘致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한 입장은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구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개방추세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과 건설노선을 견지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들창식 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90년 신년사에도 반영되어 동구사태에 대한 방어적 논리와 사회주의의 역사법칙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쳐 완만한 개혁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가. 최근 북한의 경제개황

북한은 현재 1987년부터 시작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의 연평균 성장율은 7.9%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1980년 「로동당」 6차대회에서 제시한 소위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의 「食·衣·住」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주민생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7년 및 1988년의 북한 경제성장률은 각각 3.3%와 3%로 평가되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의 주요경제시책은 1989년을 「輕工業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의 발전과 주민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투자를 각각 1988년 比 13%와 16%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1989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 건설대상 사업은 영원, 남강, 희천, 금야강, 태천5호 등 수력발전소 건설의 계속, 청진화력발전소의 확장 및 소련이 건설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착수하며, 평양-개성간 고속도로와 평양국제비행장 건설을 완공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9년은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의 개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을 제외한 산업시설 건설부문은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특히 소련과의 경제협력면에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은 소련 자체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으로써 매우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 19개 사업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김책제철공장 2단계 확장공사와 1989년에 착수한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1989년 상반기 중 평양축전 개최와 관련된 건설사업은 대부분 완공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88년 2월에 시작한 소위 「200일 전투」 노력동원운동을 1989년에도 「새 200일 전투」란 이름으로 계속 전개하였다.

나. 國民所得 및 財政規模

(1) 國民所得

인구와 국토면적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勞動力과 市場의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약 2,103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어서 한반도 전체인구의 약 3분의 1이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인구증가율은 1.67%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북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 스스로 출산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산아 제한이나 특별한 인구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지역의 면적은 全國土 면적 22만여Km² 중 55%에 해당하는 12만 2,800Km²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 밀도는 1Km²당 170여명으로 한국의 423명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북한은 인구와 면적 등 환경적 여건이 한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이나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이나 수송문제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평야 면적이 좁아 주곡인 쌀의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자연개조사업을 전개, 서해안 간척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석탄·철·아연·금 등 지하자원 매장량이 한국에 비해 풍부하여 공업발전에 유리한 立地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GNP)규모는 206억불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인당 GNP는 980불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해 한국의 GNP 1,692억불, 1인당 GNP 4,040불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총량지표

로서 국민총생산(GNP)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총생산 개념이나 협의의 국민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¹⁵⁾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1986년의 1인당 국민소득(사회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임)은 2,400불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⁶⁾, 1989년 7월 「평양세계 청년·학생 축전」 당시 평양을 방문 취재한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북한측 관리는 1988년의 국민소득이 2,530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GNP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북한 화폐의 對美 달러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북한의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의 생산 비중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사회주의 개념)액은 북한이 사용하는 두가지의 환율 중 기본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국제무역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업환율로 수정할 경우 북한이 발표한 미국 달러표시 국민소득은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¹⁷⁾

본고에서 평가한 북한의 GNP나 1인당 GNP는 북한이 발표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GNP

15)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총량개념은 주로 사회총생산액(Gross Social Products)과 국민소득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 총생산액은 일정기간에 공업, 농업, 기본건설, 화물수송 등 생산적 부문에서 창조된 물질적 생산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으로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고 있다. 국민소득은 사회 총생산액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한 나머지 부문 즉 그해에 새로 창조된 가치액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GSP=C+V+M$, 국민소득(NI)= $V+M$ 으로 된다. 따라서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GNP, NNP, NI 등 개념과도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공식중 C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액, V는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액, M은 사회적 잉여가치임)

16) 方腕柱, 「조선개관」,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10.

17) 1988년 북한화의 대미불 환율을 보면 기본환율은 1불대 1.02원, 상업환율은 1불대 2.15원이다.

개념으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국민소득의 1차 분배과정을 분석하여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시초소득 총화법에 따라 추계한 후, 이를 상업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표시로 환산한 결과이다.¹⁸⁾

사회주의 국가의 총량규모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체계가 국정가격체계로부터 시장가격체계로 전환되어야 하고 각종 생산통계가 사실대로 발표되어야 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환율제도가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財政規模

일반적으로 財政이라 함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定義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나 공공단체가 經濟主體로서의 기능과 간섭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정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다.

북한 경제에 있어서는 재정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나 중요성은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은 그 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소위 「사회주의적 공장·기업소」¹⁹⁾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金融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1988년 북한의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된 147억 2600만 달러(북한 원화 기준 316억 6,090만원)로 발표되었다. 반면 한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총액이 246억 8,000만불로 북한 예산규모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GNP에 대한 국가예산의 비중 즉, 재정부담율을 계산해 보면 북

18) 북한 국민소득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국토통일원, 「북한 GNP추계방법 해설」, 1988.6. 참조.

19)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장이나 기업소 경영에 소요되는 투자 및 운영자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가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한은 71.5%인데 비해 한국은 14.6%에 불과하다.

북한의 재정부담율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경제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부담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강력함을 의미하므로 정치·군사적 목적에 따라 경제력을 집중 동원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민간주도형 경제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8년 북한 예산의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예산총액의 67.2%가 경제건설 투자를 포함한 소위 人民經濟費에 지출되었고, 19.0%가 교육비를 포함한 社會文化費에 12.2%가 軍事費에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6%가 국가기관 관리비로 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의 세출예산 내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은 군사비 지출이다. 북한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소위 「국방·경제 병진책」을 발표한 직후인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세출예산 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30.4~32.4%로 증가시켰다. 그런데 1972년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계속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서 발표된 군사비의 비중은 오히려 17% 이하로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0년대 중 북한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 내용을 조사해 보면 MIG 21·23·25·29 전투기, AN-2 수송기, YAK-18 훈련기, NI-2 및 500MD 헬기 등 다량의 군용기와 SA-3 地對空, SCUD-B 地對地, SILKWORM 미사일 및 OSA급 유도탄함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군사장비 도입 실적이나 병력수를 보더라도 북한의 실질군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분석한 1988년 북한 실질군사비 지출

규모는 GNP의 21.5%인 44억 2,000만불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主要 產業別 生産 및 建設動向

(1) 農·水産業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진전함에 따라 국제경제질서도 냉전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별 협력체제로 재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각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 가치기준으로 설정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資源이나 技術, 貿易 등 세가지 측면에서 더욱 치열한 經濟戰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식량과 에너지 및 주요자원이 經濟戰爭의 주요 무기로 등장한 바 있으며, 인간의 기초적 생존에 직결된 자원으로서의 식량은 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무서운 무기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화 과정에서부터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량 증산에 주력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주의적 농업생산체제의 모순이 누적됨으로써 식량자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는 協同農場 및 國營農·牧場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협동농장의 생산을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郡 協同農場 經營委員會가 관장하는 農機械作業所, 灌溉管理所, 수의방역소, 자재공급소 등이 있는 데, 이들 기관이 협동농장의 생산을 지원한 代

價는 협동농장의 생산물 결산 분배과정에서 공제하게 된다.

1988년 현재 북한의 耕地面積은 총 214.1만 정보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논(畓)의 면적은 64.5만 정보에 불과하고 그 대신 밭(田) 면적은 149.6만 정보나 되어 식량의 생산은 田作위주로 되어 있고 그 결과 식량의 소비구조도 雜穀위주로 되어 있다.

1988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총 521만 톤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3년간 계속된 흉작을 벗어나 평년작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쌀의 생산량은 209.9만톤에 불과하여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잡곡 위주의 식생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평년작 이상이 되는 연도에는 외화부족으로 인해 쌀의 수출을 강행하는 반면 외국으로부터 값싼 잡곡을 수입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한국보다 넓기 때문에 잡곡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량자급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이 북한 농업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金日成은 현재와 같은 영농기반 위에서는 식량증산이나 自給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80년대 말까지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20만 정보의 「새땅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후 북한은 간석지 개간에 주력하고 있으나 1988년 현재 간석지 개간 실적은 강령강 간석지(5,200정보), 은을 간석지(3,200 정보), 서호 간석지(360정보) 등이 완공되어 농경지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20만 정보의 「새땅찾기 운동」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64년 2월 金日成이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후 추진되어 왔던 농촌의 水利化, 電氣化, 化學化, 機械化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

는데 특히 水利化에 있어서는 80년대 중 이미 분수식 밭 관개화를 착수하여 일부 지역에서 이를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의 수산업 실태를 보면 생산조직은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수산업부와 협동수산업부로 구분되고 있으나 국영수산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국영수산업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산사업소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해안 지역에 21 개소, 서해안 지역에 8 개소가 있다.

국영수산사업소는 어로작업을 비롯하여 漁獲物의 냉동, 염장 및 가공까지를 담당하고 있으나 가공시설이나 수송수단의 낙후 등 문제점으로 인해 내륙지역의 주민들은 신선한 수산물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섬계, 어란 등 고급어종이나 가공품은 일본등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14만 6천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연근해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역마다 淺海養殖場을 설치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가고 있으며, 점차 원양어업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2) 鑛業 및 에너지産業

북한은 自力更生 원칙과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공업원료 및 연료의 수요를 자체생산으로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採取工業(鑛業)과 電力工業 부문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金日成이 소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제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기간인 1971년 이후부터는 원료와 연료의 自給率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²⁰⁾ 製造業에 앞서 鑛業을 확고히 앞세울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생산비의 국제비교우위를 무시하고 원료·연료의 자급을 강조한 결과 需給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편 생산비용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鐵鑛石 생산능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철강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을 自給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鐵鑛石의 수출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철광산으로는 매장량 13억톤의 함경북도 소재 무산광산을 들 수 있다. 무산광산은 당초 露天鑛山으로 채굴되어 왔으나 2차 7개년계획 기간부터 노천채굴과 함께 지하 채굴시설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된 철광석은 청진의 김책제철소로 장거리 精鑛輸送管을 통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황해남도의 은률광산이 중요한 광산이며, 그 외에도 재령, 하성, 덕현(평북) 등의 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석은 황해남도 송림의 황해제철소로 공급되는 수급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철광산 이외에 북한 광업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亞鉛鑛山을 들 수 있다. 함경남도 단천의 김덕광산은 북한 최대의 亞鉛鑛山이며 1983년에는 연간 1천만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選鑛場을 설치한 바 있다.

에너지산업은 공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石炭과 水力資源을 개발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인

20)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경험」,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 1983, p.89.

갈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은 약 147억톤에 달하나(64,500cal기준)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은 79억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석탄 생산능력은 4,07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 무연탄은 2,665만톤, 유연탄은 1,405만톤이다.

최근 북한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탄전 지구는 안주지구 탄전이다. 이 지역은 매장량도 풍부하고, 생산되는 석탄의 열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순천지역에는 현재 연산 10만톤의 순천비날론 공장이 건설 중에 있어서 이 지역의 연료와 원료 공급기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8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능력은 총 690.2만 kw로 평가되고 있다. 연도중에는 태천(75만 kw)과 위원(39만 kw) 수력발전소의 일부 시설이 추가로 조업하였고 순천화력발전소(20만 kw)가 부분 조업에서 완전조업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 12월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44만 kw급 발전설비 4기와 건설 기술을 지원받기로 합의된 바 있으나 아직 건설이 착수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북한의 정유공장은 함경북도 용기의 승리화학공장과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이 있으나 시설규모가 영세하다. 연간 원유 처리능력은 총 350~400만톤 수준으로(일산 7만배럴 정도) 평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에너지공급은 대부분 석탄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서 에너지 부족문제는 북한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일 뿐만 아니라 외화 부족으로 에너지자원의 수입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製造業

한 나라의 工業化 정도는 흔히 工業化率 또는 重工業化率로써 나타내기도 하나 이러한 기준으로 북한의 공업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과정은 통상 초기단계에서는 소비재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킨 후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재 생산부문인 중화학공업 개발로 移行하게 되므로 重工業化率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산업의 고도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1930년대 스탈린 식의 사회주의공업화 이론에 따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소비재공업에 비해 생산재공업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 수준이 그만큼 높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 金屬工業

북한은 금속공업을 製鐵·製鋼 등의 黑色工業과 鉛·亞鉛, 銅 등을 製鍊하는 有色金屬工業으로 구분하고 있다. 製鐵, 製鋼工業은 함경북도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남도 송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두개의 축으로 하여 주변에 중소규모의 제강공장들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1988년 중 9월제철소와 8호제강소 등 중소규모의 공장을 신설하였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제2단계 확장공사와 남포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구 강선제강) 확장공사(200만톤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연도중 북한의 鐵鋼材 생산능력은 銑鐵 517만톤, 鋼鐵 504만톤, 壓延鋼材 397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 시설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여 김책제철과 황해제철에는 產業 텔레비전化和 遠隔調整化가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철강공업은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낙후한 기술수준으로 인해 일관공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製鍊所로는 남포, 문평, 흥남, 해주, 단천, 평북제련소 등이 있고 1983년에는 북창알미늄공장이 건설되었다.

1988년의 비철금속 생산능력을 보면 연간 銅 9만톤, 鉛 8.7만톤, 亞鉛 29.5만톤, 알미늄 2만톤 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철금속은 북한의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설비의 기술수준이 국제수준에는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나) 機械工業

북한의 기계공업은 금속공업과 함께 중공업 건설의 핵심부문으로 육성되어 왔으나 전반적인 생산기술은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일반기계나 공작기계 부문은 자체수요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장 설비는 소련이나 서방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대형공작기계나 공장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장은 용성, 북중, 낙원, 대안 등의 중기계 공장이 있으며 공작기계공장은 희천, 구성, 만경대 및 평양공작기계공장이 있다. 최근 희천공작기계공장은 소련과의 합작으로 시설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운수기계 부문에서는 승리자동차공장과 원산철도차량공장,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 현재 주요제품의 생산능력은 자동차 1.8만대, 화차 3,800량, 공작기계 3만대, TV수상기 24만대, 조선 21.4만G/T 등으로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북한경제의 침체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3만kw급 발전설비, 1만톤 프레스 등 일부 大型 공작기계나 설비를 자체 생산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래식 兵器는 제3세계와 중동지역 국가에 상당량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化學 및 建材工業

북한의 化學工業은 석유화학 보다는 石炭化學 계열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것이 특징이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주요공장으로는 이미 에너지산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과 중국에서 각각 건설을 지원한 승리화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 등 정유공장이 있고 西歐에서 플랜트를 도입하여 건설한 청년화학종합공장이 稼動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주요 화학공업제품은 카바이트, 가성소다, 암모니아, 메타놀 등 基礎 化學제품과 각종 화학비료, 농약 및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학섬유인 비날론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각종 합성수지와 비닐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은 화학비료 351만톤, 농약 3만톤, 주요 합성수지 15만톤과 화학섬유 12.7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최근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어 건설하고 있는 공장은 사리원카리비료공장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인데 순천비날론 공장은 연산 10만톤의 비날론과 각종 비료, 담배질 사료 등을 대량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대단위 화학공업단지로서 개발되고 있다.

建材工業은 주로 시멘트와 마그네샤크링카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승호리, 2.8마동, 해주, 천내리, 고무산, 순천시멘트공장 등이 비교적 규모가 크며, 최근 서독으로부터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건설한 상원시멘트공장이 가동되었다.

1988년 현재 시멘트 생산능력은 총 978만톤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耐火벽돌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샤크링카 생산능력은 260만톤이다.

라) 기타 輕工業

북한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輕工業 부문은 가장 뒤떨어진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시종일관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공업 투자를 소홀히 한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소비재는 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생산규모도 영세하고 제품의 질도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낙후한 실정이다. 특히 가구와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생산은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4) 輸送 및 通信

북한은 休戰線에 의해 海岸線이 동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海運輸送이 制約的이며, 地勢가 험준하여 내륙수송도 발전하기 어려운 자연적 조건 하에 있다. 따라서 輸送問題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障礙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자연조건에 따라 북한의 수송은 道路나 海運 및 航空輸送보다는 鐵道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60년대 이후 북한이 추진해 온 輸送政策의 방향도 철도노선 확장, 기존 철도의 복선화와 중량레일화 등을 통해 철도수송 능력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1988년 중 건설이 완료된 철도공사는 북부철도 1단계 구간을 비롯한 6개 노선 154km이며, 電鐵化 구간은 7개 노선 128km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존 단선철도의 복선화가 추진되고있는 구간은 나진-길주간 220km이며, 6.25이후 폐선된 원산-금강산간 107km 구간의 복구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도로망의 정비에도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1988년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도로는 평양-개성간 및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와 백두산지역의 소위 혁명전적지 답사도로 등이다.

1988년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4,927km이며 그 중 전철화된 구간은 2,996km, 협궤는 460km이다. 반면 도로의 총연장은(한국의 지방도 3급수준)약 2만 3천km이며 그 중 포장도로는 1,438km, 고속도로는 240km에 불과하고 자동차의 총보유 수는 24.8만대로 평가되고 있어서 도로수송은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通信의 기능은 다양해지고 수요도 급속히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폐쇄적인 사회체제와 주민생활의 통제로 인해 북한의 通信施設은 아직도 行政通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88년 중에는 1989년 7월에 개최된 「평양축전」 준비의 일환으로 평양국제통신센터의 건설을 비롯한 국제통신망 확충과 평양 시내전화의 자동화가 추진되었다.

한국이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화보급을 100% 등, 통신시설 수준이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한 현실에 비하면 북한의 통신시설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 貿易 및 國際收支 現況

북한의 무역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무역의 규모나 수출입 품목은 인민경제계획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 등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輸入計劃이 먼저 작성되면 계획된 상품의 수입에 필요한 代金 지불 수단으로써 輸出計劃이 작성되게 된다.

대외무역은 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바터」 무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산제국이나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간에는 통상 5년을 주기로 한 장기통상협정에 의해 수출입 규모와 품목이 결정

된다. 그러나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는 먼저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무역창구로 이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輸出入 규모는 총 51.5억불로서 그 중 수출은 19.9억불, 수입은 31.6억불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11.7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실태를 분석해 보면 비공산권 무역이 1987년의 33.9%에서 1988년에는 32.0%로 다소 감소한 반면, 공산권 무역비중은 66.1%에서 68.0%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외채상환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 신용이 실추되어 서방국가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8년의 북한 外債규모는 전년도보다 9% 증가한 약 52억불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채의 절대액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외채상환 능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금융월간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誌의 조사에 의하면 1988년 3월 현재 세계 11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은 對外信認度(Country Risk)가 최하위로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은 1987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비동맹국 재무상 회의에서 제3세계국가들이 선진국에 지고 있는 외채문제는 채무국이 스스로 상환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무기한 동결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은 물론, 외채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서방 채권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외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은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경공업이 낙후되고 기술수준이 낮아 공산품의 국제경쟁

력이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 결과 경제건설은 자력
 갱생원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주민의 經濟生活 與件

경제학자 「갈브레이드」는 “가장 훌륭한 經濟體制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라고 定義한 바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分配制度가 아무리 훌륭하게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배에 사용할 경제적인 財富나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그 나라의 제도는 장식물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양식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때문에 私人的인 利潤追求를 위한 경제활동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역시 엄격한 배급제도에 의해 통제되고있는 등 자유세계와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주민의 所得源泉은 일반근로자와 협동농장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직업이나 職種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家計所得의 원천이 되며, 협동농장원은 추수가 끝난 후 실시되는 협동농장 결산분배를 통해 각 농장원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현금 및 현물로 분배되는 결산분배 몫이 가계소득의 원천이 된다.

최근 북한이 밝히고 있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100원 내지 150원²¹⁾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취업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75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으며 직업이나 기술 등급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득배분의 平均主義에 따른 生産性的의 둔화를

21) 뉴욕타임즈, 1989. 8. 보도

방지하기 위해 「能力別 差等賃金制」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동일한 직종이나 기술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의 수준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職種과 職級에 따라 결정되는 定額賃金과 생산물의 수량이나 작업량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都給賃金, 생산계획 목표의 수행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作業班 優待制 등이 있다.

협동농장원의 경우에는 소속된 협동농장의 연간 총생산물에서 생산비(종자대, 비료대, 농기계 사용료, 灌溉관리비 등), 협동단체 소득세, 공동축적기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을 각 농장원이 연간 제공한 「勞力日數」에 따라 現物과 現金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협동농장원이 실제로 분배받는 몫은 협동농장 총생산량의 40~45%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협동농장원이 분배받은 생산물은 가족 수에 따른 일정량의 연간 소요 식량²²⁾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 收買機關을 통해 국정수매가격으로 전량 수납하게 되며, 그 代金은 농장원의 연간 가계지출비로 사용하게 된다.

협동농장원의 터밭(통상 30여평)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개인의 소득원이 되며 농민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은 식량이나 기초생활필품 등 소비재의 공급이 배급제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량은 근로자들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연령별, 계층별로 규정된 배급기준량에 따라 자기의 임금을 가지고 구입해야 하며, 여행시에는 인민봉사위원회 收買糧政部에서 발행하는 糧卷을 발급 받

22) 북한 농민의 식량소비기준은 공식적으로는 1인당 연간 양곡 400kg(그중 잡곡은 280kg)으로 되어있다.

아 여행지 식당에서 이 양권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고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물론 발급 받은 양권에 해당되는 식량은 배급량에서 공제하게 된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옷감이나 의복, 간장, 된장, 소금, 생선, 육류, 세탁비누 등 기초 생필품도 가족수에 따라 공급카드에 규정된 양의 범위 내에서 국영상점을 통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주택은 개인소유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나 직장에서 배정한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일정액의 주택 사용료와 전등, 전기다리미, 스피커, 수도 등의 사용료도 개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량이나 기초생필품의 공급가격이나 주택사용료 등은 생산비와 관계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외출복, 가전제품, 가구 등의 가격은 반대로 임금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년제 의무교육, 무상치료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서 의무교육기간중의 교육비는 학용품 구입비 정도에 불과하고 의료비의 부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4. 民族共同體 回復의 필요성과 展望

가. 민족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후 45년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원리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제건설과 발전을 지속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성과는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남북한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를 대비할 경우 1988년 현재 한국은 GNP가 1,692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206억불로 추정되고 있어서 그 격차는 8.2對 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GNP는 한국이 4,040불인데 비해 북한은 980불 수준으로 4.1對 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산업생산력은 대략 생산물의 국내공급량과 대외수출량의 합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현재 한국의 수출액은 607억불, 수입은 518.1억불로 약 8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북한은 수출 19.9억불, 수입 31.6억불로 11.7억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수출규모는 30.5對 1이란 엄청난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의 경제적 상황은 理念 대결과 體制 경쟁의 차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펼침으로써 민족공영의 大義를 실현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일찍부터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온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1981년 현재 GNP는 7.8對 1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GNP는 1.7對 1로 남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힘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가 타당하다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통일접근 노력은 당연히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낙후된 북한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경제력이 앞선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할 민족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1988년 현재 남북한이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를 합하면 연간 12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연간 총 투자율을 GNP의 40%로 가정할 경우 남북한이 지출하는 군사비는 북한의 연간 총 투자액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남북한이 매년 이러한 자금을 경제건설에 추가로 지출할 경우 민족경제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산업구조나 자원의 분포면에서 보더라도 상호 보완적인 요소는 지대하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내수시장의 규모도 그만큼 확대됨으로써 경제발전 잠재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7·7대통령 특별선언」이나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南北經濟共同體의 회복을 그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각국의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우선하는 가치기준으로 작용하여 동·서 협력의 증대와 지역경제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환경조건은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나. 南北韓 交易現況과 展望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물자와 자본 및 기술의 상호교류가 쌍방의 승의에 의해 制度的으로 보장되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국제간 경제협력관계와 다른 점은 민족공영이란 大義가 어느 일방의 경제적인 利害關係보다 우선한다는 데 있다.

1988년 7월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발표와 동년 10월 7일 경제부문 후속조치가 발표된 이후 남북간에는 현재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한 간접교역의 실적을 보면 19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는 4개상사가 신청한 4건의 북한상품 반입이 승인되어 16개 품목 총 103.7만불의 물품이 반입되었다.

1989년에는 9월 말 현재로 37개 상사가 45건, 48개 품목에 대한 북한상품 반입을 승인받아 총 296.5만불의 물품이 반입되었다.

그러나 우리 상품의 대북 반출실적은 지금까지 단 1건에 1개 품목 6.9만불에 불과하여 남북한 간접교역은 한국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의 내용을 보면 광산물로는 무연탄, 활석, 장석, 금속제품으로는 전기동, 아연괴, 연괴, 선철, 열연코일, 빌레트(철강재) 등이며, 농수산물로는 명태, 명란, 인삼차, 담배, 생사, 염장고사리 등이 있다. 그외에 한약재, 도자기, 벼루, 돌공예품 주류, 선반(공작기계 2세트) 등이 소량 반입되었다.

한편 북한으로 반출된 제품은 잠바 5천벌에 불과하였다.

남북한 교역의 확대 및 발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직접교역을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와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제약적이며, 반입이 가능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경제공동체 회복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자본과 기술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라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도 그들의 경제상황이나 국제정세 흐름이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1990년대에는 분명히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I. 북한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

任 鍾 燄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332
2. 社會構造	334
가. 社會정책의 기초	334
나. 북한사회의 이질요소	335
다. 통제적 조직사회체계	337
3. 住民生活	341
가. 의식주 생활	341
나. 가정생활	349
다. 직장생활	351
라. 여가생활	355
마. 보건의료	358
바. 예의범절	364
사. 관혼상제	366
아. 세시풍습	368
자. 종교정책 및 활동	369
차. 언론실태	372
카. 社會統制와 逸脫	375
4. 結 言	379

1. 序 言

남북 분단 40여 년의 역사는 남북을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이질적 체제로 양극화 하였고, 이에따라 南北은 전혀 다른 생활양식과 감정을 형성시켜 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인간존엄, 개성존중에 가치를 둔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신의 삶과 행복 추구를 기초로 하여 민족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상호 협동하고 화합하는 생활조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인간의 합목적성을 부인하며 소위 평등을 표방한 자유박탈에 따른 주민동원체제로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내세워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정당화 하면서 김일성과 당이 제시한 방법으로 생활하고 노동착취를 강요하고 있다.

즉 그들이 규정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란 김일성, 김정일과 당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인간은 원래 다양한 욕구를 가진다.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등의 생리적인 것으로 부터 비롯하여 안전, 소속, 지위, 인정, 성취, 자유 등의 사회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욕구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條件은 黨的 統制에 의하여 개인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관리하여 집단의 욕구에 귀속시키고 있다. 金日成, 金正日과 黨을 위해서, 그리고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서 투쟁하는 方向으로 정립화 되어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적 욕구는 당으로써

터 결정지어 진다. 그것은 당의 결정이 곧 보다 높은 지위, 권세, 안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을 끌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즉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끌고루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국가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은 무료나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 받고 있으며, 의복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주택을 통해서도 막대한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택은 국가자금으로 건설되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은 본질에 있어서 주민에의 공급활동이며, 주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전국의 상업망에 계획적으로 할당되며,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급식사업과 편의서비스사업도 크게 신장되어 그러한 시설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어 적극적으로 직장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北韓은 “金日成의 人民的 시책에 의하여 失業者도 결인도 없으며, 누구나 의식주 문제로 신경을 쓰는 일 없이 넉넉

하고 文化的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¹⁾

北韓의 선전대로 하더라도 주민생활은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당의 계획적 통제와 조직적 배려로 個人的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黨과 政府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의 이러한 선전을 참작하면서 그들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2. 社會構造

가. 사회정책의 기초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본은 階級政策인데, 그 내용은 계급노선과 계급교양을 앞세워 김일성체제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치권력의 안정유지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급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은 人類歷史를 계급투쟁과정에서 보는 공산주의의 계급투쟁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계급정책은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에 입각한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실현에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 사

1)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 번역자료, 1988. pp.150

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표면상으로 볼 때,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특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소위 반당, 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사회를 조직화하며,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人間”으로 개조하는 과정으로 일관된다.

북한이 이와같은 정책목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사회분야의 정책으로는 계급정책을 비롯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풍습의 말살정책, 의식주생활 통제정책, 종교 말살정책, 努力강화정책, 사회통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김일성가계의 우상화 조작과 사상적 교화작업을 통하여 전사회적 동원체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북한사회의 이질요소

民族史的으로 보면 북한사회는 전통성을 완전히 말살한 이질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식으로만 해석하는가

하면 항일독립운동사 마저 김일성일가의 날조된 이상적 신화로 변장시켰다.

북한사회는 근대적 민족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사회, 복지사회, 자유사회와도 거리가 멀다.

소위 남조선 해방을 무력적 방법으로 성취하겠다는 혁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상승배의 파쇼국가적 체제하에 병영사회를 건설하고 주민을 열광적으로 몰고가는 비이성적 사회이다.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主唱하면서도 모든 것을 김일성에 귀결시키고 마는 심각한 言語歪曲 속에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人間속에 잠재한 천부의 재능들을 다양하게 꽃피우고, 고귀한 인격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부터 개성적인 느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고 오직 김일성 1인만의 느낌과 생각과 믿음에 흡수되어야 한다.

인간들을 김일성 한사람의 敎示로 채우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이 만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유재산 소유를 불허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로서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령 발표와 동시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이나 빈농에 무상분배 하였고, 동년 6월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1954년 협동농장을 조직하면서 다시 몰수하기 시작하여 1958년까지 모든 농민이 협동농장에 강제 가입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개인 상공업도 이 시기에 완전히 몰수되어 북한주민은 한낱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

다. 통제적 조직사회체계

(1) 사회 통제구조

북한에서의 사회통제는 體制와 권력 유지를 위한 사상적 통제, 당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규범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통제는 全 社會를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노선이 뒷받침되고 있다.

즉 1946년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노동법령(1946. 6), 국유화법령(1946. 8), 농업집단화(1953. 8~1958. 3), 개인상공업 말살(1957. 9~1958. 8), 중앙당집중지도사업(1958. 5~1960), 주민등록사업(1956~1960), 주민재등록사업(1966. 4~1967. 3), 51계층구분(1967~1970. 9), 당중 재교부(1973), 주민요해사업(1972. 2~1974), 공민증대조사업(1980. 1~현재), 월복자 및 외국귀환자 계층분류사업(1980. 4~현재)과 천리마운동(195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1975. 12~), 3대혁명소조운동(1973~), 자연개조운동(1976. 12~)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한편 통제방법에 있어서도 당의 명령, 지시, 상호 감시 및 조직 등에 의한 강제적이며,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硬直을 초래함은 물론 집단적 통제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공포적인 상황에서 不安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權力과 體制의 존속을 절대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의 행동이나 동기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규정하는 규범에 맹종하도록 강제적 방법이 사용된다.

북한에서는 당의 감시, 감독 및 사상적 통제를 위한 정치적 통제방법과 함께 경제적 통제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의 생산과 소유를 금지시키고 당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생계

수단을 직접 장악함으로써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당장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주체적 판단은 필요가 없고 당의 명령에 절대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요구될 뿐이다.

(2) 조직 통제구조

북한의 모든 조직은 당을 정점으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강제적일뿐 아니라 맹종이 강요될 뿐이다.

북한은 自生的 조직의 생성을 개인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문벌주의, 종파주의로 규정하여 배척할 뿐 아니라 이를 혁명적 투쟁의 타도대상으로 한다.

그 대신 당 조직을 最頂點으로 하여 당의 후비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외곽 조직을 육성하고 이의 활동을 권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직은 일정 연령에 도달되면 그가 어느 계층의 구성원이든 한가지의 조직에는 꼭 속해지도록 짜여지므로 조직의 가입은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생활은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바 14세 이상의 비당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社勞靑」의 제일말단 조직인 里 사로청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모든 조직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한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계층의 구조 역시 그렇다. 이는 집단주의로 인한 개인 또는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조직 및 통제는 타 공산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里 社勞靑會議 實態>

구 분	내 용
강 연 회	○ 月1回(1~2時間), 里 선전실에서 실시 ○ 주요내용: 黨政策貫徹, 김일성교시, 김정일말씀학습 등
생활총화	○ 10日총화, 月총화, 分期총화 ○ 期間中 生活決算 등 자아 및 상호비판, 정치사상학습, 작업 달성 독려, 業務할당 등
궤기모임	○ 수시 실시(모내기, 김매기, 秋收期, 新政策하달시) ○ 里 전체 사로청원 및 3大革命 小組員이 참가하여 靑年突擊隊組職 및 목표 조기 달성 결의다짐
학 습 회	○ 週5回(1時間) ○ 작업반 및 학교 단위에서 初級團體 社勞靑員 대상으로 金日成 敎示, 金正日 말씀 학습, 金日成父子 德性 실기 학습, 사로청조직생활 및 활동방향 학습
회 상 기 발표모임	○ 농번기 기간중 실시 ○ 작업장 및 학교별로 빨치산의 逆境 回想 등을 통하여 思想性和 노력동원 極大化

첫째, 정치성과 사상성분을 기초로 계층과 조직을 구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上向意志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구성되었으며,

둘째, 개인 또는 개성은 集團의 일부분이 되도록 구성됨으로써 독자성, 유연성보다는 귀속성, 의타성이 많은 경향을 띠 수밖에 없고,

셋째, 개인의 경쟁보다는 단체 또는 집단간의 경쟁운동으로 투쟁적이고, 好戰的인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도록 조직되었으며,

넷째, 유아기부터의 집단생활과 빈번한 계층 재분류사업 등으로 항상 집단주의에서의 이탈을 두려워하는 불안의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비행, 약점 등을 폭로, 비판하도록 조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3) 社會의 계층구조

북한이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²⁾

그러나 北韓政權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이며, 사회적 기능에 준하여 특권계급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북한 주민의 성분분류>

(80년대 중반)

구 분	대 상	비율	대 우
핵심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전사 유가족 ○ 피살·전사자 가족 ○ 당·행정간부 가족 ○ 군간부 가족 ※ 공산체제 통치계층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정권, 군간부 등용 ○ 타 계층과 분리 특혜조치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기본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노동자·농민가족 ○ 일반사무원 가족 ※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군중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하급간부 등 기술자 진출 ○ 극소수 핵심층으로 승진
복잡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자본가 가족 ○ 日帝공직자·종교인 가족 ○ 월남·부역자, 포로 가족 ○ 숙청·범죄자 가족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중노동에 종사 ○ 진학, 입학, 입당 봉쇄 탄압 ○ 제재, 감시, 포섭대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강제이주, 격리, 수용 · 감시: 지명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집중적 교양, 세뇌 ○ 극소수 기본층으로 재분류 (자녀)

2)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175)

이와 같은 성분분류는 중앙당집중지도사업(1958-1960), 주민등록사업(1964-1967)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性分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은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 등을 말하며, 사회성분이란 성장과정과 경력을 뜻한다.

북한사회에서는 성분분류가 당성이나 출신성분을 중심으로 좋은 집안과 나쁜 집안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정책은 政權과 함께 자자손손 계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金日成과 노동당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데 있을 뿐만아니라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북한은 전 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3대분하고 그것을 다시 51 계층으로 분류해 각 계층에 상응하는 특혜 조치와 제재 조치를 제도화 하였다.

3. 住民生活

가. 의·식·주생활

(1) 衣生活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로 보급됨으로써 단순, 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한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에 의해 配定되기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 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1950년대 말까지는 소

위 千里馬時代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男子는 인민복에 레닌帽, 女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에 의존하여 왔다.

직물의 절대량도 고물가정책으로 인하여 임금에 비해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재일 조총련계 교포의 北送사업과 관련 入北된자들의 옷차림과 1970年代初부터 南北會談이 實現되면서 韓國人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김정일의 지시(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生活 미감에 적응하라)에 따라 나름대로 단조로운 의복 패턴으로 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후반기 이후부터 各種 옷전시회, 옷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 여성들에게 출퇴근 등 외출시에는 필히 화장을 하고 양장, 또는 색깔있는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할 뿐 아니라 구두도 하이힐을 신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학생의 교복도 점차로 양장으로 교체하였다.

남자들에게는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 짹짹 의복(콤비), 잠바’ 등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일반주민들은 신사복은 구입하기가 어렵고 착용시에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인민복을 계속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외출시 복장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하니 이는 北韓社會의 허상과 實相의 괴리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 등에 피복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옷으로 전국적인 의복전시

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사업으로는 형태, 설계, 가공, 공업화계획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는 金正日이 주창하는 「人民生活向上運動」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라는 패션 잡지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³⁾

그리고 金正日은 1988년 10월 29일 소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창안제작된 의류도안, 신발도안 등 각종 생활용품 도안과 제품등이 전시된 경공업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주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하고 경공업혁명을 계속 벌여나감으로써 질 좋은 여러가지 경공업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경공업제품의 질적 개선과 量産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전시회의 의류부문에서는 7백 80여 점의 도안을 비롯해 남성용 양복, 잠바, 셔츠, 바지 등과 여성용 한복, 외통옷(원피스), 뜨개옷 등 아동의류 또한 신발류에서는 구두, 운동화, 샌들, 장화 등, 모자류에서는 종이모자, 초물모자(밀집모자) 등이 주종을 이뤘다고 한다.⁴⁾

한편 “경공업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리 일으키겠다”는 북한방송 논조로 보아 입는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욕구는 점점 높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경공업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있는 북한이 주민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지는 미지수다.

제13차 축전(1989. 7. 1~8)준비와 관련, 평양 주민들에게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배급해 준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복장의 變化는 金正日후계체제의 구축과 서방세계로 부

3) 岡田聡, 「平壤の人民生活(上)」(現代코리아, 1988.5), pp.41~42 참조.

4) 内外通信(資料版 第614號), 1988.11.11.

터의 자본기술도입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의류공급 기준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비 고
노 동 자	년1-2회	작업복 1착	무 상
학 생	년2회	교복 1착	염 가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1착	염 가
4호대상이상	2년 1회	양복지 1착	반 액

※ 4호 대상 이상:시·군구이상의 당비서, 시·군 인민위원장, 2급 기업소이상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급 등임

(2) 食生活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농업생산체제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농촌 경리의 水利化,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및 화학화” 등 농업근대화를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에 있어서는 식품가공 및 처리기술, 저장수단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데다 중앙당국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각종 식품의 적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식생활의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에 있어서도 북한은 1957년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식량의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해 식량을 완전 배급제로 전환하였다. (단 협동농장원은 연말 결산분배)

그러하여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연명에 그치는 사정이다.

쌀 생산량의 부족은 심각한 실태로서 金日成은 1982년 시정연설

에서 “쌀은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 종래의 의식주라는 語順을 식의주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⁵⁾

金日成은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⁶⁾라고 강조함으로써 식생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30萬정보 干澇地造成”, “20萬 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군(郡) 칭호쟁취운동”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배급은 통상 15일 마다 실시되는데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里, 洞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받으며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비율등에서 차등배급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출장 또는 여행시에는 미리 발부 받은 糧券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방문의 경우에 통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때는 양권을 지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배급시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평양이나 직할시는 6(쌀):4(잡곡)이고 지방은 작황에 따라 다르고 산간오지에서는 2(쌀):8(잡곡)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부녀자들의 노력동원 극대화를 위해서 강조된바 있는 ‘밥공장’의 대폭확대 결정에 따라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는 주식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반제품 부식물 및 국거리를 배급하는 봉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⁷⁾

5)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 1986. 12. 27

6)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김정일, 노동당출판사, 1984, p.7)

7) 「로동신문」, 1984. 4. 2

그로인해 북한 주민중 가족이 적은 가정은 15일간 먹을 식량을 배급 받을때 양곡이 아닌 양권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사하는 것보다 밥공장의 '아침, 저녁 매대'에서 양권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부식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은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상점에서 임의구입이 가능하다.

고기류는 명절 특배를 통하여 할당되고, 김일성부자 생일, 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배급받는데 배급받는 대상과 시기, 수급사정에 따라 공급품목과 수량은 다소 달라진다.

만약에 배급이외의 식량을 구입하려 할때는 비싼 값으로(배급 쌀 1kg 8전, 암거래 10원) 암거래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상천국임을 자랑하는 북한은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 대비하여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즉 주요도시의 정비와 건축물, 주민의 의복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식량부족 현상은 절대량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으나 金日成의 교묘한 統治術의 일환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金日成이 음식이라는 人間의 제일차적인 욕구를 統治수단으로 惡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군사비 부담, 전시적 상징물의 축조[주체사상탑, 개선문, 유경호텔(105층), 5월 1일경기장 등]에 투입하는 재원을 먹는문제 해결에 투입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8) 「북한실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100)

북한의 식량 배급기준(지역에 따라 약간 다름)

구 분	배급량(g), 1인 1일기준	백미 : 잡곡 혼합비율
당 및 정권기관간부	700 g	10:0
특수군인(경보병)	800 g	7:3
군인	700 g	3:7
重노동자	800 g	3:7
일반노동자, 사무원	600 g	3:7
대학생	600 g	3:7
고등중학생	500 g	3:7
인민학생	400 g	3:7
유치원이하 아동	300-100 g	3:7
부양가족등 무직자	300 g	3:7

출처:북한개요 1986

(3) 住生活

북한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성분과 직위에 따라 등급별로 규격화된 독립가옥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를 할당받는다.

주택 형태는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이며 조립식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격화된 아파트와 연립식 주택형태는 시공의 경제성과 편의성 이외에 집단주의적 주거양식에 의거한 획일화 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른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시책의 결과로서 이는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상호간의 감시, 통제 및 주민동원의 용이성등을 고려한데서 기인한다.

주택의 규모 및 시설은 주택의 규격화, 집단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주거생활 공간이 전적으로 협소하고 내외장도 거의 획일화 되었을 뿐만아니라 주택마다 독립적 부대시설도 제한되어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평양시내 주택의 고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0-40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이래 남포, 원산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도 고층아파트(10-30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

住 宅 事 情(平壤)

區分	住 宅 型	家 屋 構 造	入 住 者
特號	獨立 高級住宅	○ 獨立式 단층 또는 2층 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 장치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號	新型고층아파트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변소 ○ 베란다, 冷溫水施設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인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號	中級 單獨住宅 및 신형아파트	○ 방2 ○ 부엌, 倉庫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號	일반아파트	○ 방1~2, 마루방 1, 부엌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장 ○ 일반노동자 ○ 사무원
1號	集團公營住宅	○ 방1~2, 부엌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農村文化住宅	○ 單層 聯立住宅 ○ 방2, 부엌, 창고1	○ 협동농장원
	舊 屋	○ 방2~3개의 農村 既存 舊屋	○ 변두리 농민

出處:北韓概要, 1986.

다.⁹⁾

그러나 연간 주택건설 목표달성의 부진과 공급대상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보급율은 7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결혼하여도 쉽게 방을 할당받을 수가 없어 상당기간 신혼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1세대용 아파트 또는 주택에 2-3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농촌의 경우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1986년까지의 천리마거리 제2기 주택건설, 그리고 1988년까지로 계획된 광복거리의 재개발에 따른 주택건설 등이 이뤄졌으며, 91년 완공을 목표로 낙랑거리, 하당거리 등을 새로 건설하고 이곳에 5만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은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형은 크게보아 부부장급이상 고급간부등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말단 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할당되는 1호 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택배정을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가정생활

가정이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인간적 삶의 공간이며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안식처가 된다.

가정생활은 그 사회의 체제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의 유형이 사회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 국가의 국민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9) 「로동신문」, 1984. 4. 2

북한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役割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변화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¹⁰⁾라는데 기반을 둬으로써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集團主義 체제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同族集團의 조상숭배 개념은 배제되고 그대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가족구성 변형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을 봉건사회의 잔재라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대신 1946년9월1일부터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족범위가 6촌까지로 제한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되어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家父長的 위계질서의 파괴, 그리고 대가족제도의 붕괴를 초래케 하였다.

北韓은 가정이 人間的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黨의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黨의 課業을 촉진하는 媒介集團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양식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北韓의 가정은 최저생산단위인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가정의 정치화가 더

10) 가족사유재산및 국가의 기원, 마르크스·엥겔스, 1984.

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北韓에서는 家庭生活에까지 黨的, 政治的 介入이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수행 단위로서의 家長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성원들은 부부 형제이기에 앞서 사상적 동지가 되어야 한다.¹¹⁾

즉 가정은 혁명의 세포단위가 되며 전통적 친족의 범위는 6촌까지만 인정하는등 가정의 형태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되었다.

다. 직장생활

북한에서는 개인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권리와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調整,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배치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모든 직장이 社會主義 경제체제하에서 노동당의 획일적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리되고, 모든 농장,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집단화 되었기 때문이다.

직장배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性分(출신, 사회성분)과 黨性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표징에 의해 이루어 진다.

북한은 1970년 재 실시한 국민성분조사에서 전 주민을 성분과 당성에 따라 핵심계층(지배계층), 기본계층(동요계층), 복잡계층(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계층에 따라 직장배치가 행해진다.

핵심계층(전체주민의 약 27%)은 당·정·군간부로 등용될 수 있고 승진이 보장된다. 기본계층(45%)은 각종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11) 조선중앙연감 1984. p.302

진출하고 극소수만이 당·정 기관에 상향 이동되나 책임적 지위(위원장, 단위기관 책임자)에까지 승진되기는 어렵다. 복잡계층(28%)은 월북자, 前 지주, 자본가 계급 등으로 유사시 북한정권에 위협요인으로 판단되는 계층으로 이들은 주로 有害, 중노동 직종에 배치된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표징인 직무수행능력으로서, 여기에는 학력, 자격, 전개력,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학력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중간계층(기술계 전문학교까지는 진학 가능)과 복잡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있다.

직장배치과정을 보면 모든 취업은 전적으로 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시·도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또는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직장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도 오직 중앙의 수급계획에 의한 직장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그 다음으로 참작되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노동의 권리, 즉 취업의 기회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즉 정권기관의 노동력 흡수계획에 따라 모든 노동능력자를 일정한 직업에 배정하기 때문에 완전취업이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직장의 선택시 개인의 능력, 성향, 의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실업률이 그만큼 높은 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간부의 자녀는 중앙당과 정무원등 중앙기관에 배치되고 평당원의 자녀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개 지방의 기관및 기업소등에 배치된다.

이와 같은 획일적, 차별적 인력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대업적인 근무자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치 사상 교양이 요구되는 것이며 소위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적 감시에 의한 노력의 집단화와 노력동원의 극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個人, 작업분조, 작업반, 직장, 공장,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을 단위로 하여 大衆的 노력경쟁운동을 계속적으로 強化시켜 왔다.

1957년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비롯하여 6개고지점령운동, 10대과업완수운동, 1974년의 속도전, 1975년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건설대 등에 각양각색의 돌격대(속도전, 붉은청년 돌격대, 2. 17과학자 돌격대 등)를 조직하여 노력동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 100일전투, 200일전투 등 시한적 노력 독려, 숨은 영웅따라배우기운동, 침식을 직장으로 옮기기운동까지 강요하면서 “수령과당이 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는 쉴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라는 구호아래 주민들의 노력을 가혹하게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성별, 연령별에 관계 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으며, 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자, 농장원, 사무원 구분없이 도금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임금은 직종 및 기술 급수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임금기능 등급제를 적용한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에 의해 現金과 現物을 분배받는다. 북한은 당의 일방적 직장배치에서 오는 모순을 탈피하는 한 방법으로 1984년부터는 평양 제일고등중학교라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신설한 이래 1985년부터는 동평양과 각 직할시·도에 1개교씩 증설하는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인력양성에 부심하는 것은 3차 7개년 계획기

<北韓의 階層別 임금(月給)>

區 分		賃金(원)	備 考
事 務 員	部 長 級	300~350	黨政治委員, 政務院 및 黨 部長, 特級 企 業所支配人, 科學院院士 등
	地 方 單 位	100~150	道幹部 및 郡單位 責任者
	一般事務員	70	
技 術 者	責 任 者 級	150~200	1~2級 企業所·工場 등 支配人 및 技師長
	5 等 級 技術者	75~78	
勞 動 者	重 勞 動 者	130	鑛夫·製鐵·製鍊工
	輕 勞 動 者	90	一般機械 운전자
	其 他	60~80	一般 輕勞動者
教 員	大 學	200~250	
	一 般	80	
軍 人 將 校	將 星 級	250~490	
	領 官 級	120~215	
	尉 官 級	84~110	
其 他	醫 師	120~250	※ 평양산원의 경우
	俳 優	200~300	※ 인민배우, 功勳배우 등

간(1987-93년) 동안에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한다는 정책적 고려와 당성과 출신성분위주의 충원방식에서 오는 경제적, 과학적 낙후성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답습해온 사상을 절대시하는 인력활용정책에서 일부나마 자질과 실력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³⁾

라. 여가생활

북한은 주민들에게 여가시간을 가급적 주지않는 것을 政策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여가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려한다.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환경이다.

직업 선택이 당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일터와 직장이 일원적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이 일과표에 따른 생활은 직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일과는 공통성을 띠게 된다.

특히 생산분야 노동자의 경우 매일 완수해야할 작업책임량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에는 각종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등에 동원되는 예가 많으므로 제대로 쉴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개인적 시간은 잡념을 갖게하는 원인이 된다”는 공산주의식 사고 방식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13) 피ョンヤン 見たまま「現代코리아」(1985年8~9月號) pp.28~29.

북한주민의 기본일과표

구 분	노동자·사무원	학 생	비 고
기 상	06:10	06:00	주부:05:30분 기상, 아침식사준비
출 근	07:0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는 탁아소에 맡김
독 보 회	07:00-07:30		정기강연회(07:00-09:00)가 있는날(수·화)은 생략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중 식	12:00-13:00	12:00-13:00	
오후작업(수업)	13:00-19:00	13:00-16:00	인민학생은 오후수업 1시간
과의활동		16:00-18:00	
학습회및 강연회			
퇴근 및 귀가	23:00	18:00	

그리하여 여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관람도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 조직을 통한 집단 관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되는것이 보편적이다. 더욱이 북한의 영화, 연극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때문에 보고 즐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학습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思想教養을 위해 많이 동원되는 작품은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가극과 영화 ‘조선의 별’ 시리즈(전10편) 그리고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 등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앞에 ‘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먼저 ‘꽃파는 처녀’를 보면 한 순박한 처녀가 日帝와 그 앞잡이인 조선인 지주에 대항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계급성과 혁명성을 강조했다며 ‘피바다’ 역시 무식하고 순박한 한 여인이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줄거리를 통해 폭력혁명과 계급투쟁을 선동한 내용이다.

‘조선의 별’은 김일성의 일생을 연대별로 잘라 題名 그대로 김일성을 ‘조선의 별’로 미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촉구한 내용이며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 등도 배경과 등장인물만 다를 뿐이지 계급투쟁과 폭력혁명, 그리고 맹목적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이러한 가극, 영화, 연극 등은 평양과 지방의 각 공연시설, 즉 「동평양대극장」, 「개선영화관」, 「낙원영화관」, 「함흥대극장」 등에서 여가생활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동원된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연 또는 상영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의 경우는 지난 71년 初演된 이래 1천 1백회나 북한 각지를 돌며 공연됐는데 여기에 동원된 주민수는 2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꽃파는 처녀’도 거의 비슷한 공연기록과 관객동원 숫자를 기록했으며, 영화는 평양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개봉된다. 이와같이 북한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연간 평균 25편 정도의 극영화등을 보게 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부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유희장(유원지)에 나들이를 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약 5만의 인파가 모여서 그곳에서 전동열차를 타기도 하고, 곡예공연, 영화, 연극 등을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아주 조용하

게 관람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한 표정들이다.

북한에서도 등산, 낚시, 사냥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나 오락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등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즉 등산은 학교, 공장, 직장 등에서 당의 승인을 받아 단체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단순한 취미를 가지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체육을 통한 여가선용이란 개인적 취미활동보다는 정치성, 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목적 추구의 수단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 운영되며 모든 스포츠 활동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국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은 여가라는 의미가 不道德으로 느끼게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심적인 압박감이 우선되는 가운데 대개가 정치, 사상적 신임을 얻기위한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마. 보건 의료

북한은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모든 보건의료 시설이 소위 국가소유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며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사회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社會主義헌법 제48조를 보면 무상치료제의 공고한 발전, 예방의학적 방침관철, 의사담당 구역제 실시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보건의료제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것은 무상치료제

와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의사담당구역제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치료제

1952년 1월 20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노작발표」 이후 1960년 2월 최고 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보건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무의촌의 근절과 무상치료제 실시를 계획한바 있다.

현행헌법(제48조)과 인민보건법에서도 “예방의학 방침을 위주한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를 明文化하여 정책기조로 하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전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무료로 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최저생활 밖에 유지할 수 없는 명목상의 월급으로 치료비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뿐아니라 매달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도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도 치료비를 내는등 여러 구실로 기본 임금의 10% 이상이 공제되는데 무상치료제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월남자 가족등 敵對階層은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고가의 약품을 쓸수 없으며 市·區域·郡 病院이상의 보다 高級病院에는 입원할 수도 없다.¹⁴⁾

(2) 예방의학적 방침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이 여기에 주력한 것은 1956년경 부터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그 당시 열악한 사회보건 환경에서 연유되었다.

14) 김만철 증언(1987. 1. 15월남)

휴전후 3년간이나 계속된 흉작으로 주민들은 영양실조가 되어 각종 질병이 만연 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의료시설을 가지고서는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은 보건문제에 관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는바 보건 위생의 기본방침이 예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유실을 미연에 예방하려는데 1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당시만해도 의사와 간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 어쩔수 없이 취해진 것이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질병예방 사업이 보건의료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 위생선전 계몽 교양 사업
- 위생 일꾼의 체계적 양성사업
-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 개선사업
- 위생 법규의 제정 및 위생 검열지도
-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 담당구역제 원칙의 실현과 치료예방 원칙의 확대
-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등

(3) 의사담당 구역제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우선 평양을 비롯한 도 소재지등의 몇개 구역병원과 일부 큰 규모의 산업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탄광, 광산에서는 직장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예방의학적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각 의사가 자기가 맡은 책임구역에 나가서 위생, 보건, 접종, 건강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 담당구역 제도는 노동당 제4차대회(1961) 이후 실시하여 왔는바 대개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규모(200-300명)로 구역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순회진료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면 전체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책임제로서 시·군·구역병원, 공장병원, 리 인민병원, 종합진료소와 진료소등이 이사업을 직접 맡아 하고있으며, 의사담당 구역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구역 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임상과의 전체의사들, 그리고 리 인민병원 및 진료소 의사 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 위생 방역사업을 조직, 집행하는데 바치며 검진, 상담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¹⁵⁾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주민을 한나절에 진료해야 되니 정상적인 진료도 어려울뿐아니라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에 충실할 수 없는 실정이다.¹⁶⁾

그런데 이 제도는 질병의 예방적인 면에서 그나름대로 이점이 있으나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질병발생이 은폐되는 경우도 나타나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4) 동의학

북한의 치료예방사업의 특징은 양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북한은 동의학을 과학화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15) 북한총람(북한연구소편. 1983. p1000-1004)

16) 김만철 증언

북한이 동의학에 큰 비중을 두고있는 것은 현대 의약품의 절대적 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려는데 있다.

즉, 북한은 그들의 기술수준으로는 현대의학 개발이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 현대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보건정책 아래 한방을 토대로 한 동의학 연구와 제약공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북한은 1958년 6월 의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각 도·시·군 단위까지 동의학 관리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어 1974년 3월에는 동의학 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동의학 개발에 주력하였다.

1978년부터 북한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대해서 일정한 약초 의무생산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밭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농촌가정에서는 사유경작지로 허용된 20~30평 규모의 터밭중 2-5평 이상씩 약초 재배를 강요하는 등 약초생산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민간요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1964년 11월, 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민간요법연구실의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민간요법을 널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질병의 종류별로 연구, 임상검토 하였다. 북한의 「조선의과학학원 동의학연구소」에서는 45,000여건의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민간요법>, <동의학의 민간요법 연구자료> 등의 서적을 발간한 바 있다.

(5) 의료기관

의료기관으로서는 중앙에 종합병원으로 「중앙병원」, 직할시와 도단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그 외에 결핵병원 등 전문병원이 있다.

시·군 단위는 1-2개의 「인민병원」이 있는데 산업지역의 3급공장 기업소 이상에는 산업병원(4급이하에는 산업진료소) 1개씩, 일

반 시도(도·시의 구역), 郡單位에는 시립병원(도시의 구역 병원), 군인민병원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지역에는 2-3개 동마다 종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里단위 진료소를 里 人民病院으로 개편하였다고 1974년 11월 2일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1-2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의사 1-2명이 배치되어 외상치료등 초보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각급단위의 위생방역소와 협동하여 공중위생지도 및 위생 방역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는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평양시 제1병원 및 제2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근대적 설비와 종합적 의료봉사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¹⁷⁾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이러한 보건의료 시설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질 병

일반적으로 위장계통의 질병이 가장 많고¹⁸⁾ 신경관절계통의 환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장병의 경우 노동시간 과다 및 政治思想學習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 옥수수등 잠곡위주의 식생활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절염은 목표량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동원, 노동 보호물자 부족 및 직업환경의 불비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정신병

17)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번역자료, 1988.

p.187

18) 정병모증언(월남자) 1983.

은 잘 못먹고, 과로에 지친데다가 정치사상교육등의 통제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의학자료에 의하면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암성질병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 이러한 질병들을 미리 막고 제때에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¹⁹⁾

특히 北韓에서 “펠라그라” 병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이 질병은 영양실조로 손발이 까맣게 되고 살 갓이 벗겨지는 특수 질병인데 1970년대 이후 1개 인민반(20세대)에 3~4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바. 예의범절

북한에서 예의범절은 소위 共產主義道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共產主義道德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규범, 인류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참다운 도덕으로서 수령과 당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계급적 원수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고상하고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文化性등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北韓社會에서는 우리 민족 전래의 도덕관과 예의범절이 이른바 共產主義의으로 변질되었다.

19) 주체의학(평양 의학과학출판사, 1988, 3월호 p.3)

20)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20)

즉 모든 규범의 준칙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정신, 노동애호와 적대계층에 대한 증오심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전래문화가 잔재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공산체제에 도움이 되고 共産黨의 利益에 부합되게 변질된 것에 국한 된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예로들면 부모에 불경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되었을때는 이것을 대중 앞에서 반당, 반혁명적인 것으로 폭로, 비판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父母에 효도는 혁명전사가 되는 것이며, 당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공중도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예컨대 버스승차시 순서대로 줄을 선다든지, 노약자에게 자리양보등의 기본적 공중질서는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사람의 합의에 의한 자연적인 것 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

즉 예의범절이라는 도덕적 행위 규범까지 “규찰대”라든가 “법무생활지도 위원회”같은 조직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의 복장을 비롯하여 두발 위생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이 소위 당적 지도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40대 이상층의 구세대에는 아직도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을 중요시 하여 조상숭배의 경향이 잔존해 있을뿐만 아니라 協同意識, 隣保精神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 의식이 남아 있으나 新世代라 할 수 있는 30代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혁명적 동지의식이 강하고 隣保精神에서도 自己中心의이다.

이러한 세대들에게는 조상숭배의식 대신에 오로지 金日成을 따르고 숭배하는 忠誠心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관혼상제

북한은 관혼상제를 포함한 모든 민속과 생활관습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성격의 社會主義的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란 구실아래 전통적인 관혼상제의식을 크게 변질시켰다.

그리하여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소위 관혼상제 간소화 운동이라는 명분아래 이를 단순한 사회적 요구화하는 한편,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 婚禮

북한에서는 혼례에 있어서 男女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兩家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결혼을 남녀간의 애정보다는 혁명전사의 결합으로 “가정혁명화”²¹⁾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당 및 사회단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원이나 사회단체 성원은 자기 신상의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소속당 또는 사회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혼인등의 신상변화를 보고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율법이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당성, 출신성분, 직업등과 관련하여 제한조건이 많이 작용한다.

그리고 결혼연령에 있어서 당적통제는 규정되지 않고 있으나 병역과 노동력 확보등을 위해서 당이 임의로 통제하고 있다. 男子의 경우 군복무연한이 통상 8-10년으로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불허되며, 女子의 경우 女性들에 대한 노동, 계급화, 혁명화와 함께 여성 노동력 확보등 때문에 현재 결혼 연령은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21) 가정의 혁명화(현대조선말사전:1981, p.35)

그리고 결혼택일에는 종래의吉凶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 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으며 회의실이 아니면 신부집에서 하며 주례는 집안의 장 간부가 서게 되는데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주례가 “탄생”과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하는 절차를 치

다. 예복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에 가슴에 붉은 조화를 단다. 최근 평양등 도시지역에는 신랑은 신사복에 넥타이를 신부는 모두 한복차림이며, 식이 끝난후에는 신혼여행을 고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진다.

(2) 葬禮

북한의 장례절차는 극히 간소화되었고 3일장을 치르고 있으나 -2일장의 경우도 많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등이 맡아서 처리한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는 일이 없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 경우가 있으며, 농촌이외의 도시의 경우 상여는 없어지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에 매장한다.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휴가를 주며 장례보 조금 10원과 쌀 1말이 배급된다.

(3) 祭禮

제례에 있어서도 전래적인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된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추석날 성묘와 직계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일에 제사는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래적인 제사의 의미와 형식은 사라

은바, “음식을 많이 차
음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
러놓고 절을하는 것은 아무
죽은 사람을 잊지않기 위한
다 꽃을 갖다 놓든가, 가족들이
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

전래의 세시풍습 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
유로 강력히 배격하였다.

중추절의 경우 봉건잔재유물, 복고주의 부활, 긴장의식
노동력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였는데, 특히 부정의 주된
승의 하나는 명절물품(햅쌀, 새옷등) 공급상의 문제점 때문이
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전래의 음력설, 단오절에도 마찬가지로
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는 추석부터 용인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추석날 인근 조상묘소의 성묘를 묵인하였으며, 증명서
없이 他郡 2일 여행을 허용하더니, 1988년 추석부터는 추석을 휴
무일로 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하여
민족고유 명절을 부활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남북대화 그리고 우리의 해외동포 추석성묘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최근 해외동포들의 北韓訪問이 점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의 명절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소위 “사회주의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선물 전달,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등 각종 축하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격년으로 김정일생일부터 김일성 생일까지 “충성의 축전”기간으로 설정, 각종 우상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명절 및 공휴일

구 분	월 일	구 분	월 일
신 정	1.1	국제노동절	5.1
구 정	음력 1.1(89부활)	정권창건일	9.9
단 오	음력 5.5()	당 창 건 일	10.10
추 석	음력 8.15(88부활)	해방기념일	8.15
김정일생일	2.16	헌 법 절	12.27
김일성생일	4.15		

자. 종교정책 및 활동

(1) 정책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4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 신앙화, 절대화하는 의무와 종교를 반대하는 선전의 자유만 보장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은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²³⁾라고 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주민들의 신앙심을 말살하기 위하여 종교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혹자는 허용한 종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김일성 유일신앙이라고 하기도 한다.

8·15 解放前까지 북한지역에서 종교의 영향은 매우 컸다. 해방 후 소련의 지원으로 金日成政權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이를 반대하는 민주민족진영의 대다수는 바로 종교인이었다. 농촌에서의 유교나 천도교, 불교, 도시를 중심으로한 기독교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종교인구층을 흡수하고자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우당」을 만들어 소위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선」의 산하단체로서 묶어두는 懷柔의 방법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북한은 초기 회유책에 이어 제한정책, 탄압정책, 말살정책등 3단계 종교정책을 통하여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을 말살하였고,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살해하거나 적대계층으로 분류하여 사회진출을 봉쇄하고 요감시 대상으로 박해하였다.

이때의 피해상황을 보면 불교의 경우 400여개의 사찰 가운데 일부(40여개정도)를 제외하고 사라졌으며, 기독교의 경우 1,300여개의 교회가 하나도 안남게 되었고, 30여만명의 신도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천주교신도 5만명, 천도교신도 12만명도 자취를

23) 「김일성저작선집」(1권)pp.205-206

감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의 재산을 몰수 하였으며, 사찰은 일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정·휴양소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종교활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해서 인간내면의 종교적 의식이나 신앙심마저 전혀 없어질 수 있을까?

중·소를 비롯한 동구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종교가 소생하였고, 실제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활동도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종교소생의 가능성을 기대해 보게 한다.

1983년에 월남귀순자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이들의 신앙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 내외가 神, 천국, 영혼, 부활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의 의미는 북한에서 주민의 상당수가 종교적인 심성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이들은 과거에 실제 종교를 믿었거나, 주위에서 종교적 활동을 볼 수 있었던 비교적 고령 세대들이다.

(2) 단체 및 활동

북한에는 현재 「조선기독교도 연맹」, 「조선불교도 연맹」,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등의 4개 단체가 있다.

그러나 각 종교단체는 상층부의 중앙위원회라는 기구만 존재할 뿐, 하부조직은 없으며, 그 활동도 종교행사보다는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대외적으로 국제적연대성 강화 및 정권옹호의 정치활동과 한국청년학생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반정부투쟁 호소 및 이들과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고작이었다.

그리하여 1972년 남북대화 이후부터 종교단체활동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보는 가정을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에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발간하였으며, 1984년에는 구약성서를 발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 석탄절기념예불(음 4월 8일)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가진 바 있고, 1988년 7월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해석한 해제본을 출판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도절(평양 용화사), 열반절(개성 관음사. 음 2.15)행사까지 하고 있다.

또한 1988년 10월에는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건립하였고, 조선천주교인협회(1988. 6. 30), 조선종교인협회(1989. 5. 30)등을 결성하여 대외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북한의 종교행사와 사찰복원, 성당, 교회건립은 종교인들에게 불모의 북한사회에 바늘구멍같은 틈새가 보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본적인 종교관은 변함없이 다만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해외동포나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반종교정책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면서도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종교 신도들을 조국통일과 반파쇼 민주화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운다”는 방침을 추구할 뿐이다.

차. 언론실태

북한의 언론은 언론의 일반적 기능인 보도기능, 교육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가운데 오락이나 광고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메카니즘으로 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레닌이 자본주의 신문을 “부유계층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

구, 그들을 위한 정보·오락도구로, 노동대중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도구”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레닌은 革命수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서만 신문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문을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산주의 언론의 기능이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등 4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언론이 혁명수행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동원되어야 할 政治的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1985년 「중앙방송」 창설 4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방송의 내용에서는 수령과 당의 위대성, 당과 인민의 不敗의 통일단결, 충실성 선전등 사회정치교양 선전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 언론의 이러한 성격은 뉴스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즉 북한에서의 뉴스의 대다수는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것엔 관심이 없이 당이나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만을 보도·전달한다. 이것은 뉴스보도가 선전·선동목적에 기여해야하며,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레닌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이 “신문·잡지·서적같은 출판물이야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 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했듯이, 표현의 자유란 당의 지도이념과 이의 도구를 위한 정권의 지시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3조는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것 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에 역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黨이나 政府管理의 언론·출판제도하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은 이기주의·종파주의로서 배척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여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10조)라고 헌법규정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개인적 기본권에 대한 법적 제한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 언론은 그들 주장대로 “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인 만큼 모든 신문·방송을 비롯하여 「정무원」의 언론관계부서도 「로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자동맹」과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출판총국」등이 있는데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 평양방송등 북한의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집행·총괄하는 부서로서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이나 내용상으로는 당선전선동부와 연락부에 의해 움직여진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크게 나누어 방송의 내용 자체를 지도·조절하는 것은 당체계에 의거하고 방송국의 시설과 기제의 관리와 사무적 운영은 「정무원」에서 관장하는 2원조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무원」 산하의 「출판총국」은 모든 출판물을 검열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검열1부(전단, 광고물, 번역물), 검열2부(정치), 검열3부(문예), 검열4부(경제, 사회, 교육), 제5부(과학, 기술)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북한의 신문·방송은 事實과 眞實을 보도하지 않을 뿐아니라 왜곡시켜 보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요 情報源은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나, 마을과 직장에 설치된 유선방송인 확성기이며, 설사 정보를 들었다해도 전파될 수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은 「노동신문」(당기관지)을 비롯하여 「민주조선」(정무원기관지), 「평양신문」, 「노동청년」(사로청기관지), 「인민군 신

문」등의 주요 중앙지와 9개의 각 도별 신문을 합하여 모두 30여종이 발행되고 있다.

북한신문 편집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의 강력한 보도통제와 사전검열, 속보성, 독자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고, 사회면과 광고란이 없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구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은 對內用인 「중앙방송」과는 별도로 대외 및 對南심리전용으로 「평양방송」이 운용되고 있고, 대남위장방송으로서 「구국의 소리방송」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방송은 해주에서 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종래의 「통혁당방송」을 지난 1985년 개칭한 것으로, 북한은 이 방송을 남한내부의 지하당조직으로 그 실체가 있는 양 위장, “남한 인민의 반체제 반정부 투쟁을 선동·고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89년 1월부터는 음악을 통한 대남 선전선동 방송인 평양 FM방송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방송청취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오래이다.

한편 TV방송국은 1969년에 「조선중앙 TV방송국」을 개설, 정규 방송을 시작했으며, 1971년 「개성 TV방송국」을 개설하여 대남선전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의 「만수대 TV방송」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1972년에 북한 전역에서 텔레비존 수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칼라 TV는 1974년부터 방영되었으나 현재 칼라 TV보급이 15만대에 불과하여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 社會統制와 逸脫

(1) 住民統制

北韓은 주민통제의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을 직업총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의 각종 사회단체에 2중 3중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여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하부는 무조건 상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²⁴⁾

국가보위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북한주민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 통제하고 있으며 반당, 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불순분자”를 숙청한다. 또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여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확립을 위한 자아 및 상호비판을 실시 하고 있다. 가정에서나 인민반에서나 직장에서나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치사상 학습이 그 좋은 예이다.

노동당에 의한 당적 통제는 인간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출신성분 계층에 따라 경제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해서는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복의 배급에 있어서는 기본의복은 염가로 배급하되, 기타는 고가로 매겨서 통제하고 식량배급은 노동자와 비노동자(부양가족)와의 지급기준에 차이를 두어 노력동원의 기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주택에 있어서는 직위를 고려하여 배당하고, 직장중심으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형으로 집단화 하므로 동원,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56조에 의하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직업을 지정하여

24) 북한노동당 규약 제4장 33, 제9장

직장을 배치하여 준다. 따라서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직장 배치를 자의로 거부할 수도 없다.

거주이전도 직장의 선택이 통제되어 있고, 또 주택이 배정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다만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이주, 도시인의 농촌 移住와 같은 강제조치가 있을때만 가능하다.

또한 북한은 주민의 遊休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지역으로의 여행도 통제하고 있다. 여행시는 직장장이 발행한 여행증과 양권, 위생통과증 등을 소지하게 되어 있으며, 출발과 귀착시에는 안전주재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행정의 말단조직인 15-20세대 규모의 인민반은 반원의 가정생활로 부터 개인문제까지 토의 결정하고 상호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1958년부터 시작한 5호담당제는 5세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5호 담당선전원이라는 열성당원 1명씩을 임명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담당세대의 각 가정생활 전반과 사상적 감시, 지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5호담당제에서는 “담당선전원이 매 가정, 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정도, 소질, 취미, 희망, 사상 동태를 정확히 요해 할 수 있다... 매개 주민들을 혁명과업 실천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조직적 정치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²⁵⁾

(2) 사회적 일탈

북한에서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도덕의 가변성과 계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덕은 사회·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회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계급사회

2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

26) 「근로자」, 1962. 11(하)p.30

에서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²⁷⁾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1958년 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것과 때를 같이해서 공산주의적 도덕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후 김일성 1인체제가 더 강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산주의적 도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이에 맞추어 달라져 왔다.

오늘날 北韓의 공산주의적 도덕에서 중요시 되고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화성” 들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요구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부조리 행위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부조리 행위가 경할 경우에는 범행 행위자가 속해 있는 노동당의 조직 및 사회단체들에서 비판 또는 책벌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적 제재를 받기 마련이다.

각종 부조리 또는 범죄행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체제의 경직성, 생활필수품의 절대적 부족현상 때문이다.

뇌물을 상부에 바쳐야 신분상의 특권을 얻는다든가 또는 품귀물품을 구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비리가 계속 만연 되고 있다.

그런데 보도기관에 대한 노동당의 철두철미한 독점적 통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뿐이다.

27)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학출판사 1973, p. 58)

북한의 각종 犯罪類型

구분 종류	내 용	비 고
정 치 범	反黨·反革命 행위, 金日成 권위훼손, 탈출범, 思想不純	金日成權威 毀損: 金日成 투쟁사 비판, 김일성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초상화 파손 및 敎示 비방등
경 제 범	公共財産의 횡령, 양곡거래 및 횡령, 品貴物品의 부정유출, 物品購入時 價格 造作, 정량미달 出庫, 감량판매, 부정계량기 사용등	대다수가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이나 협동단체 幹部에 한함
人身侵害犯	폭력, 殺人, 강간, 간통등	강간, 간통은 노동당원 및 協同農場 간부에 의한 경우가 많음.
기 타	강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등	農民들의 절도형태 : 버가마 숨기기, 숙주머니 만들어 강냉이 알 따내기, 고구마 덜캐기, 달걀 훔치기, 강냉이 따고 흔적 없애기 등

4. 結 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체제는 자율성, 다원성, 개방성을 존중하는 질서로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조선노동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북한 사회는 김일성의 1인지배체제 확립과 그의 권력세습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방사회와는 크게 다른 체제적 특수

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 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적 統制社會이다.

북한헌법 제49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은 항상 전체의 한 세포로서 움직여야 하고 개체의 권익은 언제나 전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個人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와 반대로 전체 또는 集團의 구성 요소중의 일부로 개인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68조는 “...국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사회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정신의 최고 표현은 혁명의 수령(김일성)에 대한 忠誠心에 있다”고 교양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 개개인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집단 전체를 위해 조직을 통해서 헌신, 복무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전체는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 노동당은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개인생활에 대한 절대적 간섭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자유사회에서도 조직 또는 집단생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생활의 시간과 조건이 상대적,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사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思想的 劃一社會가 형성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김정일은 “金日成의 주체사상으로 온사회를 一色化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들은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어떠한 다른 사상이나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김일성의 사상만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모든 생활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전당과 전인민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는 절대성과 무조건성이 부여되며 信條化되도록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법률이나 정책에 우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등 모든 활동과 생활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出身性分과 당성에 따라 철저히 차별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형성 되었다.

8·15解放 이후부터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반복하여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 3대 계층으로 분류하여 차별대우와 통제를 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과 경력에 따라 사회성분을 심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원 특히 당, 정권기관, 군, 사회단체등의 간부들이 특권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핵심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신분상으로나 대우면에서 일반주민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다.

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계급 사회를 표방하고 기존의 구조를 계급적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상, 특히 남북한 사회를 비교하는 경우 사회계층과 계급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 영역이다.

그런데 북한사회가 추구한다는 평등이데올로기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적 모순은 바로 계층화 현상과 그 경직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헌법 제6조에 “북한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악법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북한사회에서는 계급 차별이 없고, 계층간의 대립도 없는 理想社會인 “인민의 낙원”이 성취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사회에 비록 지주나 자본가 계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분분류에 따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계를 규제하여온 새로운 계층 서열의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넷째, 4대군사노선으로 구축된 전시체제적인 兵營社會가 형성되었다.

모든 주민들은 각종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직장과 학교가 군대식 편성으로 下向式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국토의 요새화”와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기치 아래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상 전투에 참가 할 수 있는 긴장된 군사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병영사회에서 출생한 북한주민들은 유아기부터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붉은 청년 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으로 편성되어 모든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다섯째, 북한은 인간의 思想, 意識을 당의 요구에 맞게 改造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情報를 통제하는 폐쇄사회이다.

북한 정권은 권력의 세습화를 강행하면서 주민에게 “인민의 낙원”이라는 虛像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관리와 폐쇄정책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기만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외적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다. 외국의 방송, 신문들을 접할 수 없음은 물론 외국인과의 안 내인을 제외하고서는 접하기 어렵다.

북한 전지역의 일반인들에게 유선방송 라디오의 다이얼 고정인 실증하는 것처럼 노동당의 통제와 조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어진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의 거주 이전과 여행 및 통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양, 휴전선지역, 군수공업 지대등은 특수 여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폐쇄정책은 남북한 사회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거부하게 되고,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남북한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화합의 길을 가로 막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에도 동구와 중국등의 영향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나타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일본등 선진 서방국가들의 문화가 스며들면서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작년 7월에 있었던 “평양축전”과 관련, 청소년들의 획일적인 사고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 사회에서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적 보완조치로서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宣傳을 목적으로한 외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體制의 수정적 변화로 오인하거나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民主統一論 (국통연 89-12-134)

1990年 1月 25日 印刷

1990年 1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 234-4102 · 236-4143

印刷處 農園文化社

